

A F R I C A / M I D D L E E A S T

아프리카 중동

2012 외국의 통상환경

가나 | 나이지리아 | 남아공 | 르완다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 | 세네갈 | 아
랍에미리트(UAE) | 알제리 | 앙골라 | 예멘 | 요르단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
트 | 적도기니 | 카타르 | 케냐 | 코트디부아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DR콩고

5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발간사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통상협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주요 교역대상국의 통상환경을 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역별 통상환경”(4권)과 “분야별 통상환경”(1권)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총 81개국의 경제동향, 우리와의 무역관계, 각종 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의 4개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세,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보조금, 기술장벽, 투자환경 등 15개 분야별 통상환경도 별도 책자로 정리하였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여, 교역규모 기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교역상대국은 물론 신흥국 시장 개척 등을 통해 무역 2조불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자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정부와 민간의 대외 협력활동과 협상 과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개도국에 대한 현지 정보의 부족으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외교통상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경제통상자료실」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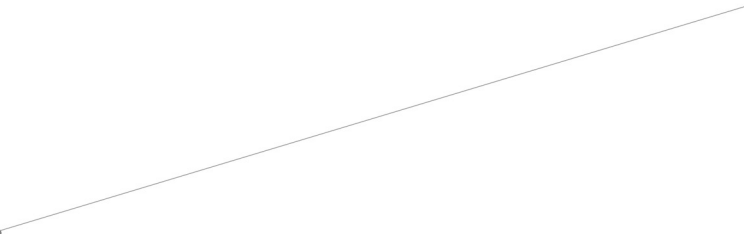
끝으로 이번에 책자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재외공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

통상교섭본부장 박 태 호

박태호

목차

1. 분야별 통상환경
 2. 아시아 대양주
 3. 아메리카
 4. 유럽
 5. 아프리카 중동 •
- 

가나	2	적도기니	308
나이지리아	18	카타르	328
남아공	43	케냐	349
르완다	54	코트디부아르	363
모로코	65	쿠웨이트	369
바레인	80	튀니지	389
사우디	95	DR콩고	418
세네갈	115		
아랍에미리트(UAE)	127		
알제리	158		
앙골라	183		
예멘	190		
요르단	201		
이란	228		
이스라엘	249		
이집트	269		

Africa/Middle East ○

Asia/Oceania

America

Europe

2012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가나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가나는 WTO(세계무역기구),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다른 ECOWAS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가나는 관세율을 0%(서적, 의약품 등 사회적 재화), 5%(원자재), 10%(중간재), 20%(완제품) 등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13개 석유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율은 별도의 리터당 관세율이 적용된다. 2011년도 평균 실행관세율은 13%로서 2000년도 14.7% 대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는 평균 17.5%, 비 농산물 분야는 평균 12.3%가 적용되었다.

가나는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각 상품별 관세율 정보는 관세청(CEPS: Customs, Excise and Preventive Service) 웹사이트(www.cepsghan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부과금

가나는 상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건강보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수입품, 자국생산품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VAT)는 12.5%가, 건강보험세는 2.5%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업체는 비-ECOWAS 원산지 상품에 대한 부과금(FOB+VAT 금액의 0.5%), 관세망(GCNet) 운영에 따른 부과금(FOB+VAT 금액의 0.4%), 비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개발투자펀드 부과금(FOB+VAT 금액의 0.5%) 등도 납부하여야 한다. 면세품목에 대해서도 1%의 통관비가 부과된다.

❖ 참고: 세금, 부과금 현황

구분	세율(%)	과세기준
Import Duty	0	Cost + Insurance + Freight(CIF)
	5	
	10	
	20	
VAT	12.5	CIF + Import Duty
NHIL	2.5	CIF + Import Duty
ECOWAS Levy	0.5	CIF
EDIF	0.5	CIF
Processing fee	1	CIF
Examination fee(Used Vehicles)	1	CIF
Import Excise	25	CIF + Import Duty + VAT
Environmental Tax	20	CIF
GONet Charge	0.4	FOB
Destination Inspection Fee	1	CIF
Withholding Tax(DTRD)	1	CIF

통관절차상의 장벽

모든 수입품은 도착지 검사(destination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의 1%이다. 현재 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4개 민간업체가 도착지 검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입업체들은 동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가나 관세청이 동 서비스를 수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몰트 음료, 물, 맥주, 담배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5~140%의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며, 10년 이상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 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된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 부과 목적으로 중고 차량별 표준가치를 산정·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

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현재까지 우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가나는 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전체가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규제

가나는 국민의 위생 및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중고 손수건, 팬티, 매트리스, 중고 LPG통, 독극물, 타조 꼬리, 토양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는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 제한(쿼터)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gold coin),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 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동·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장비를 수입하려면 통신위원회(NCA: National Communication Authority)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나는 수산업 성수기인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가나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캔류를 제외한 어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및 기술 규제

가나기술표준원(GSB: Ghana Standard Board)은 표준의 제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SB는 약 2,0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44,500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남아공 표준을 선호하고 있다.

GSB는 국제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류(fish) 분야에서 유럽연합, 식품(food) 분야에서 일본과 표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05년부터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공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를 GSB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청(FDB: Food and Drugs Board)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식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B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GHC 300, 가나 내 생산품인 경우 GHC 10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제품 단위로 해야 하며 3년간 유효하다.

Marking, Labelling 규제

1992년 제정된 GSB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컨,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으로 labelling 되어야 한다. labelling이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환경보호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음/일부 영향 있음/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품목별 장벽

2012년도 상반기 對가나 수출액은 145백만달러, 수입액은 13백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32백만달러 흑자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차량, 기계류, 플라스틱, 화학제품, 중고차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코코아, 동(copper) 제품, 냉동어류, 고철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인 중고차의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CIF 금액의 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되고 있다. 기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특별한 장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서명국은 아니지만, 가나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경쟁 입찰, 이 단계 입찰, 제한 입찰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GHC 5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2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GHC 1,50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20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각 부처 정부조달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www.ppaghana.org에 게재하고 있다.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는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무역, 공기업 관련

과거 귀금속마케팅회사(PMMC)는 소규모 광산업체의 금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졌으나 현재는 자격을 가진 민간업체도 수출이 가능하다. 금 수출은 다음 2개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첫째, 아산티 골드 등 다국적 기업이 국제 금시장을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둘째, PMMC를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아닌 소규모 광산업체도 금 수출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PMMC의 중개를 통해서만 합법적 수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이 국제 금시장 또는 PMMC를 통하지 않고 가나산 금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 광산업체, 공인 중개상 등이 PMMC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을 수출하겠다는 제의는 모두 사기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금과는 달리 가나코코아청(Ghana Cocoa Board) 산하의 코코아마케팅회사(CMC)는 아직까지 Cocoa Bean의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가나는 1980년대 말 30여개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부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가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Registrar General)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상표의 등록료는 150달러이다. 특허 신청 및 유지비용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25인 이상 고용업체의 특허 신청비용은 GHC 10이다.

서비스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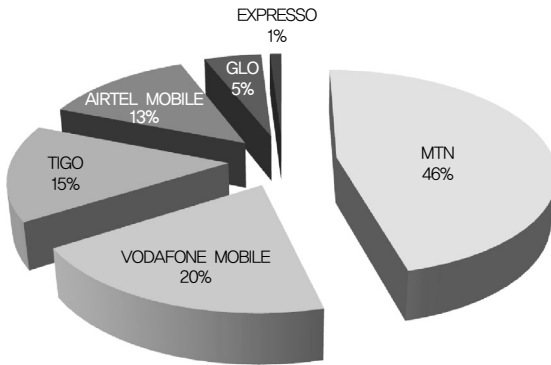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이동통신사 및 시장점유율

가나에는 Vodafone, MTN, Tigo, Expresso, Airtel, Glo 등 6개의 이동통신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2년 7월 통계치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는 약 23.7백만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TN의 사용자는 약 10.1백만명으로 46%의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Vodafone(약 4.8백만명), Tigo(약 3.7백만명), Airtel(약 3.0백만명), Glo(약 1.2백만명), Expresso(약 0.2백만명)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 15%, 13%, 5%, 1%이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제 는 통신위원회(NCA)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가나 정부는 휴대 인터넷(WiMax/WiBro)에 대해 관심은 높으나 기존 통신사업 자들은 채택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나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진흥, 광케이블 건설 등 IT 기반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해 2004년 GIFTEL(Ghana Investment Fund for Telecom)을 설립하였다. GIFTEL은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GIFTEL은 매년 통신사업자의 순익 1%를 출연 받고 있다. 영국, 나이지리아, 가나를 연결하는 2.5 테라바이트급 해저광케이블이 2010년말 설치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유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나 광케이블 상용화 및 최근 인터넷 카페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Wibro 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가나 우정공사(GPC: Ghana Post Company)에서 편지, 100g 미만의 소규모 소포 등 일반 우편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며 나머지 택배 분야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GPC는 사서함 서비스만 제공하고 End-to-End 배송은 하지 않는다. UPS, DHL 등 글로벌 회사들이 택배 분야에 진출해 있다.

운송서비스(Transport Services)

가나는 52,100km의 지선도로, 12,600km의 도시 도로, 13,367km의 간선도로 등 총 78,067km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가나의 모든 주요 지역 및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

가나의 철도는 총연장 1,006km로 보크사이트, 망간, 코코아 등 수출품목을 운반하는 용도로 설계되었으며, 아크라, 쿠마시, 타코라디를 협궤 철도로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행중인 구간은 서부지역 340km, 동부지역 329.5km, ECOWAS 구간 336.8km뿐이다.

가나정부는 철도를 1,771km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으며 이는 약 7,740백만달러 규모이다. 또한, 서부 및 동부 철도 재건공사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4,530백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나정부는 Tema항과 Takoradi항을 서부아프리카의 관문 상업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테마항과 타코라디항은 가나 수출입 물량의 85%를

처리하고 있는데(테마 48%, 타코라디 37%) 최근 내륙국인 말리, 부르키나 파소 등으로 오고가는 통관화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12월부터 쥬빌레 유전의 석유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원유 운송을 담당할 신항만 건설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입지, 투자규모, 참여기업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나는 2011년도에 13.6백만톤을 수입, 4.3백만톤을 수출하였고, 이 중, 78%는 테마항구에서, 22%는 타코라디 항구에서 이루어 졌다. 가나의 2011년도 해상무역 수지는 2010년 대비 29% 성장하였다.

관광서비스 (Tourism Services)

관광업은 가나 총 GDP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 코코아, 해외거주자 송금에 이어 네 번째 외화수입원이다.

가나 관광부는 가나 관광객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관광객 70만명이 방문하였고, 2011년에는 108만명이 방문하여 14억달러(2008년도 2.1억달러)를 쓰고 갔다. 동기간동안 관광 분야 종사자는 약 23.5만명에서 약 33.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가나의 관광진흥업무는 관광부 산하 관광청(Ghana Tourist Board)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나의 주요 관광자원은 해변, 축제, 성곽(castle) 등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국인, 나이지리아인 등을 주 고객층으로 하고 있다.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이나 여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업체 설립 시 가구, 차량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성~5성급 호텔은 설립 후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기타 서비스: 유통, 건설 등

도소매업 등 유통산업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인도, 레바논 등 이민 역사가 길고 현지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도소매기업 층이 두텁다는 점이 우리기업 진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Accra Mall 등 대형 쇼핑몰을 앞세운 남아공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나 주택시장은 주택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자자 금 회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매년 5만호 이상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점, 가나 경제가 매년 6~7%대로 성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나는 2010년 석유생산을 계기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유, 발전 등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원조사업과의 연계가 사업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제도 개요

가나정부는 1994년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는 “가나투자진흥센터법”을 제정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은 가나투자진흥센터(GIPC)에서 담당한다. 석유, 광물, 주식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에너지부, 광물위원회, 가나주식거래소가 각각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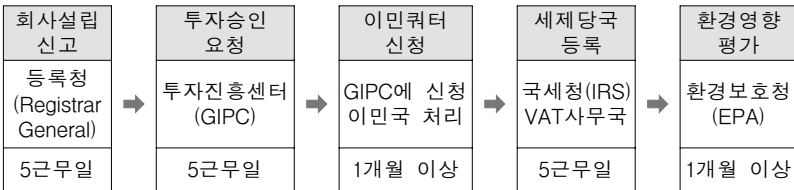
외국인이 가나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합작법인, 외국인소유회사, 무역회사로 구분되며, 회사 형태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진다. 합작법인은 가나인 파트너의 지분이 필요하며 최소 자본금은 10,000달러, 외국인 소유회사인 경우 50,000달러, 무역회사인 경우 300,000달러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다.

투자절차(법인·사무소 설립 절차 등)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는 1) 등록청(Registrar General Department)에 회사설립 신고 2) 투자진흥센터(GIPC)에 투자승인요청 3) 이민국에 이

민쿼터 신청(GIPC가 대행) 4) 국세청(IRS) 및 VAT사무국 등 세제당국 신고 5) 환경영향평가 요청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은행 등의 조사에 따르면, 가나에서 외국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걸리는 행정 시간은 2~3개월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GIPC에 등록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



투자혜택

가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권장 업종인 농업, 농가공업, 제조업, 관광업 등에 대해 법인세 감액, 면제 등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본 법인세율은 25%이나 가나의 비주력 수출상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8%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업종에 따라 세금 면제(tax holiday)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하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최대 18년까지 가능하다.

❖ 법인세 감액 제도

구 분	세율(%)
기본 세율	25%
가나의 비주력 상품 수출업체	8%
호텔	22%
금융기관(농민 대출, 장비임대회사 대출)	20%

❖ 법인세 면제 제도

구 분	기간(운영 개시일로부터)
부동산(Real Estate) 농촌은행(Rural Bank)	5년 8%
농업(Agriculture) - 코코아 재배 - 소 방목 - 유실수 재배(커피, 팜 오일 등) - 가축업(소, 가금류 제외) - 수산양식업, 가금류	영구 면제 10년 10년 5년 5년
농가공(Agro-processing) 폐기물처리(waste processing) 자유무역지대 기업	5년 7년 10년 + 알파(최대 8년)

❖ 법인세 환급 제도

구 분	적용 내용
제조업체 세금 환급(tax rebate) - Accra/Tema - Accra/Tema를 제외한 지역 수도 - 기타 지역	없음 25% 50%
농가공업체의 법인세(5년 tax-holiday 이후) - Accra 및 Tema - 북부 3개 지역 - 지역 수도(북부 3개 지역 수도 제외) - 기타 지역	20% 0% 10% 0%

아울러 가나정부는 사업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Accra, Tema 지역에 외국 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tax rebate)해주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및 지분소유 제한

가나는 노점상, 시장소매상, 이용업, 미용업, 택시업, 도박업, 복권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택시업의 경우 10대 이상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회계, 세무, 법무 등 고급 지식서비스 분야의 투자진출도 제한되어 있다.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의 50%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 상의 제한

가나는 대부분의 토지가 구획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 문서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수도 아크라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단일화된 토지 이전절차도 없어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공무원 부패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토지 등록기간이 대개 1년 넘게 소요된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가능)만을 가질 수 있다. 가나의 토지는 국가, 족장, 개인 소유로 분류되며 70% 이상의 토지가 족장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족장으로부터 토지를 임차 시 족장에게 'stool money'라고 불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가나는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테마 지역의 경우 테마개발회사(TDC)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기타 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토지 등 국가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상의 제한

가나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000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가나 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0년부터는 가나중앙은행에 자금세탁 모니터링 부서가 운영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GHC 대출이자율이 25~30%에 이르고, 달러 대출이자율도 15% 내외여서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 실익이 낮다.

세제상의 제한

가나 국세청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인소득 추정액을 정해놓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1인당 월 3,000달러를 과세 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다.

가나 국세청(IRS)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추정매출액에 기반하여 사전 징수하고 차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IRS가 과다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정산을 미루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가나 세제당국은 징세 실적이 낮을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 정책

가나는 독점적 지위남용, 가격담합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통신, 은행 등 분야별 입법을 통해 해당 분야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통신위원회(NCA)에서 방송, 통신 분야를, 가나중앙은행 은행감독부서(Department of Banking Supervision)에서 은행 분야를 각각 감독하고 있다.

휘발유 등의 석유가격은 석유위원회(National Petroleum Authority)에서 가격산정공식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2008년 국제 유가가 폭등하였는데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석유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등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영 테마정유회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2011.12월에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 추세, 테마정유회사 부채상환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석유제품 가격을 15~30% 인상한 바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체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 가나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상 가나 입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한가나대사관은 단수 비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복수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가나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별로 이민 쿼터를 제한하고 있다. 10,000~100,000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1명, 100,000~500,000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2명, 500,00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4명까지 거주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투자금액별 이민쿼터가 최대 4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파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필요한 인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인력을 파견 받고 있다. 거주허가는 보통 1년, 2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가나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가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온 경우 가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나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부문

가나 은행 부문은 가나중앙은행(Bank of Ghana)에서 규제하고 있다. 현재 26개 시중은행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나이지리아계 6개를 포함하여 13개가 외국계 은행이다.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은 60백만GHC이다. 외국은행이 가나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5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실적 등이 지점 설립 허가 시 고려된다. 은행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2012.9월 가나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약 12.7~26%이며, 일반 상업은행의 대출금리는 20.5%이다.

보험 부문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에서 담당한다.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브로커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고 NIC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25개 보험사, 37개 브로커사, 2개 재보험사가 활동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상업용 건물(건설 중인 건물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NIC는 모든 보험사에 대해 2009년 말까지 재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하였다.

증권 시장

가나는 1990년 가나증권시장(Ghana Stock Exchange)을 개장하여 주식, 채권, 국채 등을 거래하고 있다. 현재 35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2009년 초부터 전자거래가 시행되고 있다. 18개 증권회사가 주식거래를 중개하고 있으며, 2011.1월부터는 가나 증권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가나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가 매우 적고 유동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신용카드 이용 현황

Ghana Commercial Bank Limited(GCB)는 2011.1월 신용카드 발급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발급된 신용카드는 없으며, 2013년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금인출기(ATM)은 다른 종류의 VISA 카드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2013년부터는 VISA Electron 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 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Sur Charge는 Import Duty 금액의 7%, VAT는 Import Duty와 Sur Charge와 CIF 수입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의 5%를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조합에 납부하는 Levy Charge (CIF 금액의 약 2%)를 별도로 지불한다.

(1) 수입관세

나이지리아 관세청(Nigeria Custom Service)은 2008.8.26일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이를 적용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Category 0(관세율 0%): 필수품(교육자재 등)
- Category 1(관세율 5%): 기초 원자재
- Category 2(관세율 10%): 중간재
- Category 3(관세율 20%):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TV 등)
- Category 4(관세율 35%):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

관세 이외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국내 세금 및 수수료 등은 아래와 같다.

- 항구 개발비(Port Development Fee): 관세의 7%
- 아프리카 경제협력 자유무역기구 부담금(ETLS): 관세의 0.5%
- 부가가치세(VAT): 관세의 5%
- 선적 및 검역비: FOB의 1%

(2) 관세장벽 문제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2008.8.26일 발표된 새로운 관세율은 나이지리아의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5%로 완화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빈번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업체나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port practices)이 주요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 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under-valuation)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항의 경우 2009년 하역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은 45일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항구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

(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모든 통관비용을 자동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수입규제

나이지리아 재무부는 종전 수입금지품목(2005.4.6 발표)을 조정한 신규 수입금지품목을 2008.8.26일 새로운 관세율과 함께 발표하였다.

나이지리아 관세청이 최근 새로이 발표한 수입금지 품목은 24개 품목군으로 자국의 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해 특정품목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1.8.17일 공시된 수입금지품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지 품목

1. 산 또는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2. 돼지고기, 소고기(육과 식용 설육)
3. 새의 알(계란 등)
4. 정제된 식물성 기름 및 지방
 - * 아마인유, 아주까리기름, 올리브유는 제외. 식물성 기름 조유(Crude vegetable oil)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5. 코코아(코코아 페이스트, 분말, 케이크, 코코아 버터 등)
6. 스파게티, 라면
7. 과일주스(오렌지 주스, 혼합주스)
8. 물(생수, 소다수 등), 맥주
 - * 에너지, 건강음료는 제외
9. 포대시멘트
10. 의약품(아스피린 등 HS Code 3003, 3004 14개 품목)
11. 폐 의료용품
12. 비누 및 세제
13. 모기향
14. 플라스틱 위생용기

- * 아기용 젓병(baby feeding bottles)은 제외
- 15. 재생 및 중고 타이어
 - * 트럭용 중고 타이어(사이즈 11×20)는 제외
- 16.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 *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 17.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 18. 카펫 등 섬유직물 및 섬유사
- 19.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 * 석유산업, 병원, 소방,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는 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
- 20. 빈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 21. 중고컴프레서, 중고에어컨, 중고냉장·냉동고
- 22.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이상)
- 23. 가구(보행기, 실험실용 캐비닛 등은 제외)
- 24. 볼펜

나이지리아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비누, 세제, 음료, 생수, 신발 등과 가금류, 축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이상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10년으로 완화하였다가 이번에는 15년으로 보다 더 완화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2009.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내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

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택까지 주어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전력·농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2.1.31일부터는 이 부문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현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수입금지품목 지정 및 해제동향과 이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관련설비 및 원재료의 수입정책을 유심히 살피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수출금지 품목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단속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이 지정한 수출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폐철도레일 포함), 처리되지 않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7개 품목이다.

이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도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기사항은 없으나, 나이지리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지양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SPS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수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는 제조업체와

- 적절한 국가기관이 발행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을 구비
- 특정 동물 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
-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the metric system)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

고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 적용은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부처 간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1.1일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와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표준국(SON)은 2005.9.1일부터 필수제도의 하나로 표준품질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은행을 통해 Form M을 작성하여야 하고, 은행은 나이지리아가 지정한 검역기관에 Form M을 송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하여 검역기관에 전달된 Form M과 제반 서류들은 외환송금여부에 따라 'Valid for Forex' 혹은 'Not Valid for Forex'로 명시된다(Not Valid for Forex의 경우는 수입상이 외환송금을 책임지고 은행은 서류대행).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수입상 은행, 나이지리아 세관 및 나이지리아 해운협회(NMA)에 각각 1부씩 보내져야 한다.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사무소나 나이지리아 대사관, 국내은행, 나이지리아 은행 해외 지

접 및 관련 은행에서 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작성된 Form M은 외국소재 선적 전 검역기관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지정은행 혹은 수입자 은행에게 보내지게 된다. 검역제외품목과 재무장관 승인품목 이외의 모든 수입품은 검역기관의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의 발행이 필수적이다.

수입상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종결 후 CRI(Clean Report of Invoice)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수출상에게 72시간 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선적전 검사기관에 제출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출상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선적 전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때는 최소한 3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순수 검사수수료 제외)은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통지를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 요원이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검사준비가 미흡하여 검사 할 수 없어 검사시점을 연기하거나 다시 검사해야 할 경우, 추가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특기할만한 환경관련 규정적용 또는 수입규제나 환경영향평가상의 제약은 없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나이지리아는 각 기관별로 사전에 등록된 CONTRACTOR제도를 운영해 왔다. 입찰시에는 동 CONTRACTOR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응찰자격을 제공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력자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형태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영석유공사(NNPC), 국영전력공사(PHCN) 등 주요 정부기관 구매 입찰은 최고 실력자의 의향에 따라 계약자가 선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9.5.29일 출범한 민선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에 공개 경쟁입찰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전력공사, 석유공사 등의 입찰이 신문에 공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고 후 입찰준비기간이 약 2~3주일 이내로 매우 짧아 발주처에서 기존의 CONTRACTOR들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제입찰 공고 후 입찰서류는 건당 약 200~300달러에 달하며 대형 입찰은 10,000달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불이익을 타파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 및 법인 설립을 하고 정부기관에 관련 제품 납품자로 등록을 하거나 정부기관에 납품자로 등록된 현지 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현지에 근거지가 없을 경우 시장개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업체 입찰참여 제약

상기의 입찰자격이나 사전자격검사(P.Q)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일단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최근에는 낙찰자의 자체 Financing(공급자 금융) 제공여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유력인 또는 관련 업체와의 합작이나 컨소시엄 구성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의 프로젝트는 자국산업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현지화정책 추진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는 현지화정책(Nigerian/Local Contents Development)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입찰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인력·장비·설비·서비스를 나이지리아 내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력, 구매, 조달, 건설, 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 및 합작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안내 또는 사전자격심사초청 등의 공고에 있어서 현지화정책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 자국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국적 석유기업의 경우 모든 직위에 대하여 자국인 채용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자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채용기간을 명시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될 국산화 감시위원회(NCDMB, Nigeria Content Development & Monitoring Bo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영진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석유 및 가스관련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안의 발효와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자국화 목표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해양석유가스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90%
- 가스액화시설(LNG)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50%
- 가스수집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90%
- 심해석유시설의 상부구조물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80%
-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물: 80%

또한, 다국적 석유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1억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참여하는 자국민의 최소한도를 명시한 노무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원청자 및 하청자 그리고 물품구매실적을 감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건설공사 입찰시 응찰자는 입찰금액의 1%를 감시위원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현지화정책은 자국 내의 설계기술 및 제조업 기반의 취약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지화정책을 둘러싸고 외국계기업과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무리한 현지화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현지화정책으로 인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현황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외형상으로 잘 갖추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저작권 조약(UCC)
- 베른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제품의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고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가 외국 방송사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한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거나 동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중파 방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케이블사를 중심으로 외국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방영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오일가스, 무기제조 등 일부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은행, 보험, 광산업 포함)하다. 오일가스부문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와의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무기 및 탄약 제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물질 제조

오일가스부문의 제한

오일가스부문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특히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장벽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오일가스회사가 나이지리아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석유투자관리사무소(NAPIMS)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5년까지 나이지리아는 자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Decrees)’에 따라 기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1995.9월 ‘외국인 투자진흥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Decree)’에 따라 무기 생산 등 일부 ‘negative list’ 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범위 및 지분

- 석유가스와 일부분야(무기, 마약 등)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자가 가능
- 은행, 보험, 광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투자사업에서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
-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 가능
- 자유로운 양수, 양도 보장

○ 합작투자

- 외국인이 현지 투자자와 합작 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현지 파트너의 지분은 자본금의 5% 이상

투자 유망 분야

나이지리아는 청량음료, 섬유,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의 다양성이나 기술수준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다. 기간산업 분야도 최근에는 석유화학, 철강, 비료공단을 준공할 정도로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합작투자 유망분야는 나이지리아 외국인 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나이지리아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Act, 77)에서 정의한 투자 유망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국에서 점차 사양화 되는 노동집약산업(섬유, 신발)
- 생산기지의 이전이 시급한 공해산업(금속가공, 석유화학)
- 자원개발, 확보에 필요한 농·임·광업 분야
-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 등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NIPC)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농업, 수자원, 광물, 제조업, 석유·가스, 무역 및 관광 등 7개 중점투자유망부문을 선정하였는데 거의 전 산업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참고로 현지 각 주정부나 기업인들이 우리와의 합작 요청시 이들의 합작 희망형태는 대부분이

한국의 설비,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 농업: 농작물 경작, 가공·처리, 보관, 버터·치즈·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생산, 밀가루 생산
- 수산업: 대규모 내륙 수산업, 해산물, 새우, 어육업
- 광물업: 납·아연·철광석 채굴
- 제조업: 자국광물을 이용한 철강·석회·대리석·세라믹·시멘트 생산, 비철 금속 용융정제·합금, 비료·석유화학, IT, 항공부품, 태양광발전, 의약품, 비타민, 모기장, 광산·유정 굴착제품(Baryte, 벤토나이트)

※ 상세내용: www.nipc.gov.ng

투자 인센티브

○세금 인센티브

-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30%(농업, 광산업, 오일분야 제외), 처음 5년간은 20% 적용하며, 교육세 2%를 별도로 적용
- 연간자본공제(건물 10%, 플랜트 25%, 가구 20%)와 초기년도 자본공제(플랜트 50%, 건물·자동차 15%) 혜택
-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 투자자는 5년간 세금을 면제
- R&D 투자비용은 120%까지 세금공제(단, 세금공제 R&D투자비용은 총소득의 10%로 제한)
- 경제자유구역(Free Trade Zone)에 투자하는 경우 구역 내의 모든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
- 현지 원재료를 최소한도(농업 70%, 엔지니어링 60%, 화학 60%, 석유 화학 70%) 이상 사용하는 경우 20%의 세액공제
- 기반시설(접근도로, 전기, 상수도)이 없는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건설할 경우 5~100% 투자세액 공제
- 지출의 종류에 따라 10~95% 자본공제

○투자인센티브

- 유자격자를 통한 자유환율(freely convertible currency)로 무제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이익과 배당금 수익의 송금을 보장받음

※ 유자격자를 통해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 환전 후 48시간 이내에 자본 수입증명서(CCI, 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를 발급하도록 함

- 기업은 국유화되거나 수용당하지 않음(단, 국가의 이익, 공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취득)
-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 산업부문 인센티브

- 연간매출액 1백만나이라(6,000달러) 이하인 제조업의 경우 운영시작 후 5년간 최저 세액인 20% 부과
- 연간매출액 1백만나이라(6,000달러) 이하인 제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운영시작 후 5년간 세금면제
- 석유화학 및 LNG 공장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세금면제

○ 광물부문 인센티브

- 3~5년간의 세금 면제
- 법인소득세 20~30% 수준 부과
- 투자금액과 프로젝트의 전략적 성격에 따라 로열티 부과 연기
- 광업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자 초기년도 자본공제 75% 및 2차년도 50%, 투자공제 5% 인정

○ 농업부문 인센티브

- 농업관련 플랜트 및 설비는 50%까지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허용
- 농산물 처리업은 선도사업으로 5년간 세금면제
- 모든 농업시설, 농기계는 관세 1% 부과

○ 전기부문 인센티브

- 변압기, 계량기, 케이블 등 전력설비투자자는 선도사업으로 인정되며 5~7년간 세금면제

○수송부문 인센티브

- 조선, 선박수리, 수중엔지니어링 서비스, 항공기 제조업은 선도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역에 따라 5~7년간 세금면제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및 계약행위를 할 수 없으며, L/C 개설 및 협상도 불가하다. 대표사무소는 오직 홍보 및 연락 기능만 할 수 있으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CAC에 등록해야 한다.

국산화 및 수출의무 부과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 이외의 경우 특기사항 없다.

※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 Local Content Bill에 따라서 현지화 비율 강제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인의 현지 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NIPC)이며 투자제한 대상이 아닐 경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진출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절차가 필요하다.

○사전심사 제출서류

- 설립자/주주 및 보유지분 현황
- 회사명 및 설립자본금, 설립목적
- 100% 외국인 투자가 아닐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 회사정관
- 이사회 구성현황 및 명단
- 이사회 이사 선임 증명서
- Notice of Address of Registered Office(회사 위치 통보서)

- CAC(Corporate Affairs Commission) 등록 수수료 영수증
- TAX Clearance Certificate
- 심사 후 제출서류
 - NIPC 소정 양식 기재 후 사본
 - NIPC 소정양식 구매 영수증 사본
 - 회사 설립 등록증 사본
 - TAX Clearance Certificate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회사지분 구성확인 서류 발급 시 Stamp Duty 지급 영수증 사본
 -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필요설비 목록 포함)
 - 회사위치 확인서(공장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로 대체가능) 사본
 - 이사 구성 현황 및 명단(성명, 주소, 국적, 직책)
 -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직위 현황표
 - 외국투자회사의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사본

상기 구비서류를 절차에 따라 NIPC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허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Business Permit and Expatriate Quota
- Pioneer Status and Other Incentives

이상의 절차를 통해 NIPC로부터 투자승인 및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해외로부터 자본금 송금 및 납입
-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송금관련 증명서(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 발급
- Work Permit(근로허가) 발급 및 체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는 1998.3.27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2.1일부터 발효되었다. 나이지리아는 22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1990), 프

랑스(1991), 네덜란드(1994) 등 4개 국가에 불과하다. 벨기에, 러시아 및 미국과는 투자보장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내국인 대우, 최혜국 조항 및 투자회수와 과실 송금이 보장되고 있다.

토지 취득상의 제한

1990년 제정된 토지이용법(Land Use Act)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occupancy)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부마다 외국인의 토지 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 위치한 주정부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라고스 주의 경우 3년 이하의 토지 점유의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으나, 점유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토지 취득이 금지된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과실송금 관련하여 송금액, 송금세, 재투자 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과실송금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다.

본국 또는 제 3국의 자금차입에 대한 한도나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 서비스의 범위 제한)은 없으며,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외환구좌의 보유제한 등도 없다.

환율은 변동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앙은행(CBN)의 외화경매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 공식 환율로 인정되며 암시장이 존재하지만 암시장과 공개시장의 환율차이는 크지 않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요구하는 등의 세제상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적자폭 축소를 위해 부가세 등의 과세 강화 및 국세청의 대기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세원 확대를 위해 1999.1.1일부터 25%를 환급해주던 관세 환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이행관세를 부활시켜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관행은 볼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주요 산업부흥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기업체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
-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한 투자 유치 강화(우리나라와는 2006. 11월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천연가스 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광물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2004년부터 국내 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계류, 플랜트,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및 한시적 면세 제도 시행

기타 장벽

외국인 쿼터 및 비자-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자 쿼터제도

NIPC가 현지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EQ, expatriate quota)를 내무부에서 결정한다. EQ에 대해서는 업종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해당직위에 외국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justify)하여야 한다. EQ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며, 입국 후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와 외국인 신분증(Aliens Card)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STR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현지 나이지리아에서는 불가능하며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나이지리아 금융시장 현황

(1) 나이지리아 시중은행 24개로 통폐합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 말까지 84개가 난립하던 은행을 25개의 대형은행으로 통합하고 14개 은행을 퇴출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 나이라(약 2억달러)로 확대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나이지리아 외환 블랙마켓은 수입금지 품목 수입업자들의 달러 수요와 상업은행을 통한 외환 확보의 복잡성으로 인해 번성을 하였으며, 나이지리아 금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불법 외환 시장인 블랙마켓을 없애고 외환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은행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블랙마켓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 세계금융위기와 나이지리아 금융시장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던 나이지리아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었다.

나이지리아는 상대적으로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 자본의 비율이 5% 미만에 불과하며 미국 및 유럽의 금융기관과 나이지리아 금융기관 간 거래 규모도 매우 미미하여 금융위기로부터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8.11월 말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방지하고 유동

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2009.9.18일 기준 이자율을 10.25%에서 9.75%로 인하하는 한편, 최소 유동성 비율과 현금 보유율도 각각 40%에서 30%, 4%에서 2%로 낮추는 등 85억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나이지리아 금융 시장에 투입한 바 있다. 2010년들어 평균 기준 이자율을 6%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나이라 가치하락 등을 고려하여 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3)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감사 시행

2009.8.14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Intercontinental Bank, Oceanic Bank, Afribank, FinBank, Union Bank 등 11개 은행이 악성부채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나이지리아 대형 은행에 약 42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긴급 투입하였으며, 이들 5개 은행장들을 전격 해임하였다.

24개 시중은행들의 재정 상태 및 관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여겨 이들 은행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

1차 감사결과 5개 주요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약 76억달러로 나타나 나이지리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부실채권 남발,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자산관리 부실, 부정확한 자산정보 제공 및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4개 은행장을 구속하였으며, 1명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자국민 및 외국 투자기업에 나이지리아 금융시장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며, 이들 24개 은행을 구제하는데 노력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외국기업들의 투자자금 회수를 우려해 어떠한 은행도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은 일반 기업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국제적인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나이지리아 경제가 호전되면서, 나이지리아 주요 은행들이 전국적으로 지점 확대를 통해 무분별한 금융서비스를 남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싱(Micro-financing)이 과열되면서 일반 서민들

의 대출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이할 만한 장벽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금융기관의 주 고객은 기업이며 개인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많은 은행들이 온라인·모바일 거래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사용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신뢰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국적 은행들은 기술우위에 있는 온라인 거래, 인터넷 뱅킹 등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현지 로컬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사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및 Ecobank International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있다.

개선실적 및 정책동향

One-Stop-Shop Investment Center

1995년 나이지리아의 기업진흥법 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자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로써 그전에 존재하던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 및 진출금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석유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은행, 운수업, 전력업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후진적인 행정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

2006년 나이지리아 투자 진흥위원회(NIPC)에 ‘원스톱 투자센터’를 설치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스톱 투자센터에는 외국인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26개 기관의 관계자가 근무하면서 즉각적인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동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2천5백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강력한 경제팀 구성, 각종 개혁정책 추진

조나단 대통령은 2011.4월 당선이후 초대 내각을 구성하면서 Ngozi Okonzo-Iwala 세계은행 사무총장을 재무부장관 겸 경제조정장관으로 스카우트하였고, Ngozi 장관을 수장으로 한 경제팀은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부펀드조성, 석유보조금 철폐 등의 각종 개혁조치를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국부펀드는 지방주지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낭비되는 단점이 있는 기존의 잉여원유계정을 대체하는 연방정부 주도 펀드로 국제유가가 나이지리아 정부가 책정한 기준유가보다 높게 형성된 부문만큼의 오일 수입을 별도의 펀드로 적립하여 연방정부가 목표로 하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해 장기 예치 등 다양한 정책적 목표달성에 활용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정유시설 관리운영이 부실하여 원유를 수출하는 대신 값비싼 정유를 수입하는 실정으로 수입 정유에는 국가가 석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총액은 2012년 기준으로 77억달러에 달하며 정부예산 총액의 25%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보조금을 철폐하여 이를 사회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당장의 물가상승, 서민 부담 과중이라는 여론에 밀려 번번히 실패하였다. 조나단 경제팀은 또다시 석유보조금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2012.1월초 조나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석유보조금을 철폐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노조의 전국적인 총파업사태에 직면,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보조금을 낮추는 수준에서 갈등사태를 마무리 함.

향후에도 조나단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 노조와 지방주지사 등 기득권 세력들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들 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조나단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Transformation Agenda)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의 자국화 조치를 강화하면서 외자유치노력도 병행

2010.4.22일 발효된 Local Content Bill은 현지 인력의 채용, 현지 원자재의 활용 등을 의무화 하고 있고,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석유산업법안(PIB, Petroleum Industry Bill)은 기존 생산물분배계약에 대한 재검토, 비용에 대한 감시 강화, 세율 및 로열티 인상 등 외국인 투자자의 미래투자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7월에는 4년 넘게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PIB법안에 대해 나이지리아에 난립하던 다수의 법안을 통합한 정부법안을 마련, 재차 국회로 송부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PIB 통합법안의 주요내용

가. NNPC 기능 변화

- NNPC는 정부 대행기능에서 순수한 NOC의 모습으로 대체
- 독자적으로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운용, 타 석유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로열티와 세금을 납부
- 3년 이내에 나이지리아 시장(NSE) 공개
- National Petroleum Asset Management Corporation(NPAMC)가 상류사업의 정부투자를 관장, 현재 NAPIMS 기능과 유사함, 석유장관이 Chairman 역할을 함

나. 주요 조직 및 기능

- 석유부: 석유산업 총괄, 석유관련기관 지도감독

- 국영석유자산관리회사(NPAMC): 상류부문 투자
- 국영석유회사(NOC): 법인 JV 등 기존 NNPC 오일 자산 관리
- 국영가스회사(NGC): 법인 JV 등 NNPC 가스 자산 관리

다. 광권부여 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각 라이선스의 권한과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대통령의 광권 부여를 인정함

라. 주요 Fiscal term(오일기준)


- 제세금: 심해의 경우 NHT 25%, CIT 30%로 총 55%(기존 PPT 50%)
- Royalty, fee, rental등을 석유부장관이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모든 석유산업 법인은 순이익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신설 (Petroleum Host Communities Fund)

우리나라의 한국석유공사가 2005.8월 분양받은 해상광구 탐사권을 일방적으로 무효화(2009.1.9)시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에 따른 신뢰를 보장받기 쉽지 않다.

이렇게 자원을 이용하여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와 병행하여 조나단 정부는 국정운영의 기초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내걸고 제조업 활성화, 전력부문 개혁,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수산업 및 광물부문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확충 위해 전력구조개편 추진

나이지리아의 전력사정은 심각한 상황으로 제조업의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전력시설용량은 7,000MW이나 실제 전력생산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취임한 야라두아 대통령은 전력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2009년 말까지 전력생산 6,000MW를 약속한 바 있으나 이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2010.5월 대통령 지위를 승계한 조나단 대통령도 2010.8월 ‘전력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40,000MW의 공급능력을 확충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오일메이저 등을 통한 독립발전소(IPP)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현재의 관료화되고 부패한 국영전력공사(PHCN)로는 전력부문 개혁조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2년 상반기를 목표로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6개의 발전소와 11개의 배전회사가 외국기업에 매각되어 민영화될 예정이며, 2012년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3년초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남아공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율과 수입쿼터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왔으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수입 상품의 95.1%에 대해 관세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1995년도에 15%에 달하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 평균 관세율은 2010년 7.5% 수준까지 인하되었다. 이와 함께 무관세 수입품목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5.5%, 비농산물 수입액의 63.4%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 남아공 관세율 현황

품 목	양허관세율(평균)	실행관세율(평균)
농산물	39.5%	9.0%
비농산물	15.8%	7.5%
전체	19.0%	7.7%

주: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관세)은 2010년 기준
 자료원: WTO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의 하나인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06년 32.2%, 2007년

30% 2008년 29%, 2010년 27%, 2012년에는 25.0%까지 인하되었다.

이러한 지속한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정산업에 따라서는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입규제

남아공 정부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 남아공 수입금지 품목

품 목	수 입 금 지 사 유
중고품(Used goods) 폐기물, 스크랩 등 기타 유해물질 안전기준 미달품목	국내산업 보호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몬트리올 의정서, UN 협약에 따른 조치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자료원: 美 무역대표부(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2010

통관절차상 장벽

남아공은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 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관세법의 의하면 원산지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5% 이상의 생산비용(재료비 및 노동비)이 해당 원산지에서 투입되어야 한다. 한편, 남아공은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강화한 新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남아공은 국제무역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취한다. 2012.10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남아공으로부터 총 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1), 화학(1) 제품이다.

2건의 수입규제 모두 반덤핑 규제이며, 특히, 2002년 반덤핑 원조사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우리 강연선 제품에 대해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2007년 들어 남아공이 레진(Lysine)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았으나, 동 규제는 2010.4월에 종료되었다.

■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반덤핑	'00.4 (조사개시)	'11.3.4 (일몰제심)	화학	-반덤핑관세율: 19.7% -5년간 관세부과
연선, 로프, 케이블	반덤핑	'00.10 (조사개시) '07.8 (일몰제심)	'09.2.19 (일몰제심 판정)	철강 및 금속	-강연선: 79.76% -로프: 50.33%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

남아공은 25% 이상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섬유산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를 중심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요구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수입쿼터

수입쿼터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관세쿼터(tariff quota)는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기존 수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수입자, 나머지 10%는 BEE(흑인경제우대정책) 관련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쿼터 하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오히려 높아 관세쿼터 사용률이 높지 않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검사

남아공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

부, 수자원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 각종 기술관련 규제가 포함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위생·검역

농축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이다.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였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생명공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벨링, 포장 등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품목별 장벽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좌측 핸들 자동차는 안전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육성계획(MIDP)’을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에 따르면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완성차 수입 시 관세혜택을 주고 있다. 동 정책은 2013년부터는 보다 시장 중립적인 신자동차산업육성계획(APDP)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는 남아공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MIDP 정책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남아공의 정부입찰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나 ‘흑인경제육성정책(BEE)’에 따라 흑인기업에게 가점을 주고 있으므로 흑인기업 이외에는 사실상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남아공은 2000년도에 정부입찰법을 제정해 정부입찰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 법은 2004년도에 개정되었는데 2003년도에 제정된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의 내용을 대폭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흑인기업에게는 더욱 많은 특혜가 부여되는 반면,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정부입찰법에 의하면 1백만랜드 이하의 입찰의 경우 입찰금액의 20%는 반드시 BEE 관련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한다. 그리고 1백만랜드를 초과하는 입찰의 경우 10%가 BEE관련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한다.

1996년에 제정된 National Industrial Participation Program(NIPP)에 따라 남아공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10백만달러 또는 그 이상을 수입을 통해 공급하는 기업은 수입물량의 3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량을 남아공 국내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남아공은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이 아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남아공은 모조품 단속법(Countrrfeit Goods Act)과 지식재산권 수정법(In-

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보호법은 선진국 수준에 와있지만 법집행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예로 남아공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아직 WIPO 저작권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 보호법은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적판 소프트웨어 구입자에 대한 처벌건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DVD 대여점이 전국 체인망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 저작물에 대한 유통망이 형성되어있지 않아 높은 인터넷 비용과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는 아직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장벽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GATS에 의한 구속력 있는 양허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통신 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국영전화회사(Telkom) 및 네오텔(Neotel)이 독점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남아공 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은 Voda Com, M-Net, Cell C 등 민간업체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못해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유통 서비스

유통서비스 시장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 (Makro, SPAR, Woolworth 등)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이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여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과점 구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유통 마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 장벽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흑인경제육성정책(BEE)은 기업별 흑인지분 할당, 흑인종업원 할당, 흑인기업으로부터의 부품구입 등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기업의 경영자율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특히, 남아공 정부입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진출 기업은 반드시 BEE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기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한데 이는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2012년에는 BEE 개정안을 발표, 기술인력, 유통망 개발에 대한 투자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BEE 관련 혜택을 축소토록 하였다.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 제한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투자 진출할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환관리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딜러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달러를 통해서만 외환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남아공 국적의 기업이

나 거주자는 외환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딜러에게 매각해야 하는 등 외환보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수입대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과실송금 보장제도

영업소득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송금에 있어 제한은 없다. 다만, 국내차입이 있을 경우 거래은행은 과실송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만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배당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투자자금 중 7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환관리상 허가를 획득한 후에 배당이익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 자회사의 이익 송금시 동 이익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획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Commercial Rand를 통해 획득한 외환에 의해 송금해야 한다. 로열티 및 기술제공에 따른 이득의 송금은 중앙은행(SARB)의 사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영 기술 관련 수당의 송금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전반적 남아공 투자환경 평가

남아공은 25% 이상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 해소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어서 외국계 투자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극도로 불안한 치안상황, 강성노조 및 경직적인 노동법, 숙련된 노동력 부족, 전력공급 불안정, BEE 정책 등은 우리기업 투자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제조업, 광물기공업 등 분야보다는 광업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쟁정책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

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공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공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이 남아공의 높은 물가상승률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기타 장벽

투명성 부족, 부패, 범죄

남아공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을 위해 법률제정, 사정기관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범죄율 해소에 모든 사법기관이 매달리고 있어 부패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부패나 정치스캔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며 남아공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남아공 경찰은 아직 경험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외국인의 경우 남아공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외국기업의 남아공 투자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2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매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건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취업비자 발급 쿼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숙련된 노동인력의 남아공 진출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 2011년에 新이민법을 개정하여 숙련인력을 위한 비자발급 절차를 완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 및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높은 실업률과 노조의 압력 등으로 인해 외국인 고용 인력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르완다

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26,338km²)에 약 1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언덕과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있고, 제조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이다.

최근 르완다경제는 1994년 학살 이후 사회기반시설 파괴 및 경제침체에서 회복하여 2000년 이후 2011년 까지 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무역수지 적자, 국제 가격에 취약한 시장 등 불안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또한 전기공급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출품목도 차, 커피, 그리고 몇 가지 광물에 한정되어 있다.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역시 산악지형과 낙후된 재배 및 생산방식 때문에 생산성이 극히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Vision 2020이라 불리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다. Vision2020에는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및 농경중심경제를 탈피하여 지식기반경제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으며, 또한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국가 성장목표를 밝히고 있다. 르완다는 국가 정책을 통한 개혁의 결과로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지수에서 2012년 사하라 이남국가 중 3위,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1위, 2011년 발표된 국가별 부패지수(CPI)에서 동아프리카 지역 중 1위, 세계은행의 세계 각국 사업환경평가에서 2010년 최고 개혁 국가1위, 2011년 최고 개혁 국가 2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르완다는 2007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가입하여 관세 동맹을 맺었고, 2010년부터 경제 통합을 시작하여 관세 및 무역 정책을 동아프리카공동체

의 정책과 조화 시키고 있다. 또한 2012.10월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 간 공동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The New Times, EAC to accelerate joint infrastructure projects, 2012.10.9일 또한 르완다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대호수경제공동체(CEPGL)의 회원국이기도 한데, 이 두 공동체에 대한 관세 동맹은 아직 출범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와 르완다의 교역 규모는 미미하지만, 2005년 양국은 경제, 과학, 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으며, 몇몇 한국 기업이 ICT 분야에 진출해 있다. 특히 동남아프리카 지역 통합은 르완다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시장 접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투자자들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르완다는 WTO(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며 2004년 GATT(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조항을 시행하였으며, 세관은 WCO(세계관세기구)의 개정된 도교 협정 기준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7.7월 EAC(동아프리카공동체)에 가입하였고, 2010.7월 공동 시장(Common Market)을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들과 면세무역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제 3국들로부터 수입품들에 대한 역외공통관세를 가지게 되었으며, East African Management Act 2005(동아프리카관리법)를 규제와 함께 이행하게 되었다.

❏ EAC 역외공통 관세율

품목	관세율
원자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5%

르완다는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앞의 표와 같이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완제품이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에 투입된다면 원자재로 구분될 수 있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또한 EAC 관세 동맹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CIF 가격은 케냐의 몸바사와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과 같은 동아프리카 개항에서 산출된다. 현재제품항공운송의 CIF에 대한 세금은 폐지되었고, EAC 회원국들로부터 발송된 제품들은 관세가 면제된다. 단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며 EAC 국가내에서 35%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긴 제품은 관세면제 적용을 받는다. WTO, Trade Policy Review Rwanda, 2004.

수입규제

르완다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입 규제는 르완다 표준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2012.10월 기준 르완다 규제 품목의 더 자세한 리스트는 다음의 르완다 표준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wanda-standards.org/~rbs/main-nav/quality-assurance/prohibited-and-restricted-goods.html>

수입 금지 품목: 수입 금지품은 절대 르완다로 수입될 수 없다. 주요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화학폐기물, 석면, 마약류 EAS 377-2:2005에 등재된 물질을 포함한 화장품, 프레온가스, 위조화폐, 음란물, FDA 지정 금지품, EAC 국가 군 당국의 허가 받지 않은 군수품 등이 있다.

수입 규제 품목: 수입 규제 품목은 통관시 특정기준(certain condition)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must meet) 수입할 수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cid) 처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물의 뼈, 뿔,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약류, 군함, 군수품, 역사

적인 유물, 유전자 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 및 그 개정에 등재 되어있는 멸종위기종 등이 있다.

수출규제 및 금지 품목: 르완다는 철을 함유한 폐기물, EAC국에서 자란 모든 목재, 가공되지 않은 어류, 목탄을 규제하며 EAC 회원국의 모든 국가법에 나와 있는 모든 수출금지품목의 수출을 규제 및 금지하고 있다.

운송 규제 품목: 소매품, 관세 환급 적용 물품은 250톤 이하로 등록된 선박으로 수출 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반덤핑

르완다는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의 사례를 갖고 있지 않다.

기타장벽

육상무역의 한계: 르완다는 바다에 접해있지 않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항구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약 40%의 수입품 가격이 운송비와 관련되어 있다. The East African, Rwanda launches electronic system to ease trade with EAC partners, 2012.8.3 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과 항구로부터의 운송의 행정 체계 그리고 행정 절차 상의 부정부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비용 및 통관 소요 시간, 총 매출량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교역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인프라 부족: 2005.11월, 무역통합진단연구(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가 통합 체제 프로그램(Integrated Framework program) 하에 실시되었고, 2009년 업데이트 된 연구에서는 에너지와 교통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인프라가 르완다의 무역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르완다는 에너지의 발전량 부족과 접근성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민간 사업, 투자, 통상에 대한 비용 상승의 요인 중 하나이다. 르완다의 국가 전기 발전량은 2012년 상반기 기준 96MW로 한국 발전용량인 79,432MW에 비

해 현저히 낮으며, 10.8%의 인구만이 전력 접근성을 갖고 있고 에너지 비용은 18.24USD로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르완다의 도로 밀도는 0.53km/km²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내 도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철도나 항구가 없어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른 교통 수요의 증가로 인해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키갈리 국제공항의 운송량 수용력을 초과한 상태이다. 따라서 르완다 정부는 항공 교통 발전을 위한 키갈리 국제공항 확장 사업과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철도를 항구에 접해있는 주변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수출과 수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르완다 표준국은 표준 및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낮은 정부 역량 때문에 르완다의 표준, 검사, 인증, 표시는 대체로 ISO, IEC, Codex, EAC, Agreem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WTO 협정)을 포함한 국제 및 지역 표준을 따르고 있다. 르완다는 국민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식품, 의약품, 건축 자재, 전자 제품 등의 표준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다. 르완다의 표준에 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wandastandards.org/~rbs/fileadmin/user_upload/files/RBS_catalogue_fina2.pdf

르완다 표준국은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의 분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국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rema.gov.rw/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179&Itemid=146&lang=en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와 관련 하여서는 르완다개발청에 문의하여 르완다 환경관리국과 르완다표준국의 자문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품 포장재의 경우는 르완다 환경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보호

르완다의 지적 재산권 정책과 법률은 지적 재산에 대한 국제협약, 특히 WIPO(세계 지적 소유권 기관) 및 TRIPs(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르완다는 2013년까지 특정 무역 관련 TRIPs를 준수하여야 한다.

르완다 무역산업부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의 중추기관이며, 문화체육부는 저작권과 관련한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르완다 개발청은 지적 재산권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보안거래 등과 관련한 사안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르완다에는 특허 심사 기관이 없으며, 르완다 개발청과 APIPO(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권 협회)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특허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투자 환경

투자매력도

2012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각국 사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Report)’에서는 르완다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그루지야의 뒤

를 이은 경제 개혁국가로 평가했다(RDB, Media Center-Press Release: Doing Business 2012 report: Rwanda 3rd easiest place to do business in Africa and 2nd five year top global reformer). 르완다 투자자 인식지수(Investor Perception Index)는 2009년 60.2%에서 2010년에는 71%로 증가했으며, 2012.9월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세계경쟁력지수에서 르완다를 사하라 이남 국가 중 남아공과 모리셔스의 뒤를 잇는 3위, 동아프리카에서는 1위에 선정하였다. 이처럼 르완다는 세계 여러 경제단체에서 경제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2.10월 기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한국과 르완다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은 아래와 같다

■ 한국, 르완다의 신용 평가 등급

	Moody's	Standard & poor's	Fitch Rating
한국	Aa3	A+	AA-
르완다	N/A	B	B

이 중 르완다의 국가 신용도를 B로 평가한 Fitch Rating은 르완다가 우수한 빈곤 감소 기록과 부정부패 관리 능력을 보임에 따라 르완다 정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central scenario)했다.

르완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및 수출환경의 조성과 해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종합투자법(Investment Code)을 2005년 이미 발표했다. 2012년도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Investment, UNCTAD)의 지원을 받아 종합투자법의 개정이 진행 중이다 Gertrude Majyambere, Review of investment code to spur FDI, The New Times, July 31, 2012. 새로운 종합투자법에서는 세금 혜택, 기타 이익, 이민 제한 및 노동 허가증 발급 등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2008년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이 설립되어 르완다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투자에 대한 제약

투자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르완다이지만 2012년 현재 르완다에는 여러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가 있다. 도로 및 전기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며, 연료와 전기의 가격은 운송비와 높은 수요로 인해 주변국인 탄자니아, 우간다 등 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높다.

또한 아직까지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접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

1994년 제노사이드의 여파로 아직까지 르완다는 숙련된 노동인구의 비율이 적은 편이다. 또한 르완다 로컬시장의 규모 역시 미미한 상태로, 농산물은 커피, 차, 제조제를 제외하면 전부 자급자족을 위한 물품이며, 서비스업에서도 호텔과 관광산업이 각광받고 있으나 관광 대국인 주변국(케냐, 탄자니아)에 비해 그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광업의 경우 주석, 콜탄, 텅스텐 등이 발굴되고 있다.

주요 투자제도

투자 관련 제도

르완다에서 일어나는 투자는 투자장려정책, 지적재산권보호법과 관련 정책, 지적재산권에 관한 3개의 협정(헤이그협정,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을 따라 시행된다. 이외 2011년에 세워진 르완다 국가 수출 정책, 르완다 종합투자법, 통합발전계획(Integrated Development Programme) 및 2006년 만들어진 과학, 기술 및 혁신 정책 등이 르완다 투자에 관련된 주요 제도이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르완다는 2001년부터 친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세계각국 사업환경 평가’에서 르완다의 기업관련 법령들이 사업 출범, 재산 취득, 국경을 통한 무역 및 재판을 통한 강제집행 등에 적합하도록 간소화되고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르완다개발청은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 정책, 인센티브와 투자 환경, 트렌드, 투자 기회 및 토지 확보 지원, 각 산업부문의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르완다개발청 내의 원스탑센터(One-stop center)에서는 노동 허가증과 비자, 세금 감면 및 납부, 환경 규제, 토지 이용 및 건축 허가, 공공시설이용과 공중 서비스가 가능하다. 르완다는 외국인의 경우 미화 \$250,000 이상의 자본 출자가 있는 경우, 르완다 인과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소속 국가의 국민인 경우 미화 \$100,000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야 투자자로 인정하며, 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Article 2:5 “foreign investor”, Law N26/2005 of 17/12/2005 Relating to investment and export promotion and facilitation.

투자관련 인센티브

해외직접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투자세액 공제는 운영 최초 1년에 한해 투자 금액의 30%를 공제한다. 지역적으로는 수도인 키갈리와 그 외 지역의 신규, 혹은 기존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준이 다르다(키갈리 40%, 기타지역 50%).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소액금융에 참여하는 회사의 경우 승인 받은 기간부터 5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한다.
- 훈련, 연구 및 제품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항목이 있으면 과세소득항목에서 추가 50%의 세금 감면을 한다.
- 투자자가 자유수출경제구(Free export economic zone) 외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지역까지의 인프라 제공 경비를 상쇄(offset)하고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 매겨진 관세를 환불한다.
- R&D 비용을 100% 제한다.

전략 산업 부문에는 부가가치 창출, 기술 이전 및 우선순위 산업 투자자들에게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유수출가공구에서 활동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세제혜택이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하는데, 고용 창출 인원에 따라 세금의 감면 혜택이 있다(고용인원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경우인 2% 부터 시작해 901명 이상 고용 시 7% 감면).고용 창출 인원 대상은 르완다 인으로, 최소 6개월 간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법적으로 소득세율이 0% 가 아닌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05년 제정된 종합투자법에서는 사업의 특수성과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르완다 정부 내각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Article 19, Law N26/2005 of 17/12/2005 Relating to investment and export promotion and facilitation.

Special Economic Zone(SEZ)

외국인직접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르완다는 2011년 중반 최초의 경제특구를 열었다. 경제특구 정책은 2012년 중반 실행 중이며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은 아직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경제특구에는 공장부지, 전기 및 광케이블, 기타 시설들과 수출가공공단을 갖추고 있다.

이 경제특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투자자는 기기, 장비, 원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해외에서 들어온 물품들은 르완다 국내 물품과 함께 가공되어 관세 징수지역에서 판매될 경우 면세물품으로 취급한다.

경제특구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생산 혹은 무역을 통해 80%이상의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혹은 수출과 관련된 전문 금융 혹은 기술 투자 기업이다.

투자 관련 분쟁 조정

르완다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아프리카 무역보험기구(ATI)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ICSID의 공식문서에

1978.4.21일 서명했으며 1979.11.14일 비준하였다. 르완다는 다른 회원국의 국가 및 국민들과의 투자 관련 분쟁해결의 틀에 관한 1965.3.18 협정의 서명국으로 1979.7.16일자 법령에 따른다.

키갈리 국제분쟁조정센터(Kigal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는 2012년 5월 설립되어 르완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책임진다. Kigal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ttp://kiac.org.rw>

기타 사항

국경 무역

르완다의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경무역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한다. 국경무역은 르완다 공식 수출입 전체의 20% 규모에 이른다. 르완다무역산업부, National Cross-border Trade Strategy(Draft for validation), 2012.8일 주 교역물품은 농작물과 동물로써 소규모 상인들이 주로 관여하며, 르완다 주변국인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부룬디, 탄자니아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르완다 정부에서는 교역 시장의 증진을 위해 국경 무역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모로코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모로코는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과 병행하여 최혜국 관세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입현장에서 가격조작(undervalue) 관행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모로코 대외교역은 2011년 적자폭이 확대되어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도 수출입 불균형이 심화되어, 모로코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대외개방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되며, 농산품에 대해서는 밀(73%), 설탕(60%)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진행 중인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관세를 2012년까지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2012년 이후 추가 관세인하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 공산품 실행관세 인하일정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5	2.5	2.5	2.5
7.5	5	2.5	2.5
10	5	2.5	2.5
20	17.5	10	10
27.5	27.5	25	17.5
35	35	30	25

모로코는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최혜국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특혜 및 최혜국 관세 간 격차가 커져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모로코는 캐나다를 비롯하여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모로코 정부 일각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교역과 산업 구조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산 주력수출품 실행관세 인하일정

단위: %

품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동차	27.5	27.5	25	17.5
타이어	35	35	30	25
냉장고	35	35	30	25
TV	10	5	2.5	2.5
에어컨	2.5	2.5	2.5	2.5
휴대전화기	2.5	2.5	2.5	2.5
폴리에틸렌	27.5	27.5	25	17.5
발전기, 변압기	35	35	30	25
플라스틱	27.5	27.5	25	17.5
건설기계	2.5	2.5	2.5	2.5
정밀화학	2.5	2.5	2.5	2.5

유럽연합(EU)은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2000.3.1일부터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되어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3월 1일자로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08.10월 모로코에 ‘진전된 지위(Advanced Status)’를 부여함에 따라, 모로코는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에 준하는 지위를 유럽연합(EU)에 대하여 향유하고 있다.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6.15일 타결되어 2006.1.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95% 이상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통신, 기계, 건설장비, 화학, 섬유의류 등이 이 협정 체결이후 모로코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2006.1.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터키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 철폐될 예정이다. 터키는 세계 2위 수준의 섬유산업 강국이어서 터키산 섬유 및 의류제품의 모로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 4개국 이 2004.2.25일 체결한 ‘아가달협정(Agardir Agreement)’은 2006.7.6일 발효되었다. 발효 즉시 모든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수량제한 등 비관세장벽도 제거되어, 지중해 아랍권 4개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다.

수입부과금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품에 대해 0.25%의 수입세(PIT: Parafiscal Import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내생산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일반제품에 대하여 20%)와 국내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투자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재와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상품의 통관은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납부, 그리고 물품반입 등의 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Engagement), 수입화물도착서류(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제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금감면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물품검사는 송장에 명기된 각 항목에 대해 수량, 품목, 규격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견본(Sample)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가격조작(Undervalue)에 대한 세관당국의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적발 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한 추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세관은 웹사이트(<http://badr.douane.gov.ma>)를 개설하여 수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수입규제

수입 수량제한 대상 품목은 폭발물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공중보

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치품 등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재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리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생산자, 수입업자, 산업협회, 관련 당국 및 소비자는 원산지 국가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동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외무역부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부는 이를 관할부처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부처가 덤핑, 보조금 지급,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재무부령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중국산 수입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 외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실제 취해진 적은 없었으나 최근(2012.8) 중국산 베니어합판에 대해 2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더불어 미국산 PVC에 대해 대외무역부가 반덤핑조사에 착수하는 등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로코 산업계에서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실행관세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지면서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무역구제 수단 적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엄격한 적용을 천명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국제표준기구(ISO),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의 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 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로는 산업표준청(SNMIA)과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산업표준청(SNMIA)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P/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TBT)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불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는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명, 내용물,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모로코에 할랄(Halal)을 의무화 하는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9.20일 메크네스에서 열린 국제 할랄 엑스포에서 당국은 모로코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하였다. 모로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할랄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수입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이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다.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2011.7월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제조업, 농업, 공예품, 수산업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영 수출진흥공사(Maroc Export)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을 수행하여 자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역자문위원회(CNCE)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모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조달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조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모로코는 정부조달관련 중앙행정기구가 없고, 각 부처, 국영기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각각 조달 업무를 이행하며, 경제재정부 및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은 정부조달 계약의 감시와 통제를 담당한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2007.10.19일 발효된 정부조달에 관한 Decree No.2-06-388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81조는 경쟁 입찰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에 비해

투찰가액의 15%를 우대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의 하청 계약금액의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로코가 정부조달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과거 거래 경력과 인맥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조달 담당 공무원이 심사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관행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공고와 제출서류가 프랑스어로만 진행되고 있어 영어권 서류작성에 익숙한 지역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경우에, 공고 후 입찰까지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로 촉박하다는 점과 사업성 검토 및 입찰서 작성을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하는 영어권 국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모로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지식재산권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관련업무는 모로코 특허청(OMPI; L'Office Marocain de la Propriete Industrielle)에서 주관하고 있다. 상공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OMPI는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등록) 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경제 주체에게 인식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특허의 경우 개인 혹은 법인체는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내의 OMPI에 특허 신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모로코 특허보다 유럽 특허의 신청 절차가 길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나 유럽 특허가 보호범위 측면에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뮌헨 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 이 특허가 적용돼 선호되는 편이다.

그러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적권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적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법복제품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의류, 가방 등 제품의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 위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주요기업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경제개발계획 등 국가 발전 전략의 틀에서 진입을 장려하거나 차단하는 정책을 혼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모로코는 지난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모든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중앙은행(Bank Al-Maghrib)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모로코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국가 금융당국의 의견을 중앙은행(BAM)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은행(BAM)은 해당국가 준거법에 따른 해당금융기관의 성격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모로코 재경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이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계 BNP Paribas가 BMCI 지분 66.74%, Société Générale이 SGMB 지분 56.94%, Crédit Agricole이 Crédit du Maroc 지분 77.03%를 차지하는 등 프랑스의 모로코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부문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있다. 스페인은 Santusa Holding이 Attijariwafa 지분 5.55%, OCP가 Banque Populaire 지분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CitiBank가 100%

단독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기간통신, ISDN(통합서비스디지털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Maroc Télécom의 유무선망 사용이 의무적이며,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는 모로코 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모로코 최대통신회사인 Maroc Télécom의 최대주주는 프랑스 Vivendi (53%)이며, France Telecom은 Meditel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세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Inwi의 지분 31%는 쿠웨이트 Zain Al Ajial이 2010년 매입한 바 있다.

관광서비스

관광산업은 인광석 수출에 이어 모로코에서 두 번째로 큰 외화 수입원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 1,000만명에 달했다. 국왕(모하메드 6세) 주재 하에 2010.11.30일 선포한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관광객 수를 현재의 두 배인 연간 2000만명까지 늘려서 세계 20대 관광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8개 신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20만 침상을 신설해 연간 관광 수입 17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모로코 정부는 관광개발기금(FMDT)을 조성하는 한편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20억달러를 관광산업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공항,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기와 항공사 취항이 늘어나는 등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활동이 촉진돼 모로코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 될 것이나, 외국 여행사가 모로코 지사 설치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 가이드 사업은 모로코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다.

유통서비스

모로코는 아직까지 ‘밀수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밀수가 성행하였으며 밀수품이 유통구조를 왜곡시켜왔다. 주로 알제리 국경과 스페인령인 세우타, 멜리야로 밀수품이 유통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활동 위축 및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런 왜곡적인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현대식 유통·물류 시스템을 도입·확산해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라와즈(Rawaj) 계획을 2007.6월 발표하여, 2020년까지 유통산업의 GDP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유통개발기금(Fonds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distribution) 1.2억달러를 조성했으며, 중소 유통업체,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소매유통의 현대화(대형-체인) 비율은 2010년 기준 14%에 불과하지만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모로코 ONA그룹계열 Marjane, Acima, INA 소속 Aswak Assalam, 프랑스 Carrefour가 투자한 Label`Vie(독일계 Metro합병) 및 터키 BIM 등이 체인 형 유통서비스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투자 장벽

1996년 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을 중심으로, 상법, 기업법, 노동법 등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규율하고 있다. 투자법은 과거 분리되어 있던 투자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 투명성 부족, 부패 및 관료주의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의지는 강하지만, 집행

기관은 유치활동은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모로코 투자를 위해서는 모로코의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하고 언어(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상 장애가 없는 유능한 현지 파트너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 제한

자국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자의 취득은 해당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의 보유인력이 모로코에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할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농경지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매각대금 해외 송금은 자유롭다.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가 제한되고 있으나 임차는 허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 프랑스인들로부터 몰수하여 국유화한 농업용지의 장기임대 공개입찰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모로코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단독(100% 지분 소유)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 또는 국내 모기업의 지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 본사의 위임장만으로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모로코 내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2) 유한회사(SARL)

2인 이상의 주주와 1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모로코에서 가장 흔한 회사 형태이다. 법인세는 설립 후 5년간 면제되며 법인세율은 35%이다.

(3) 프로젝트 수행목적의 한시적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입찰에의 참가 또는 수주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본사의 설립위임장과 해당 프로젝트의 모로코 발주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7인 이상의 주주와 1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세율은 35%가 부과된다. 큰 규모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회사이다.

노무

모로코의 노무관련 법규와 관행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피고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모로코는 지난 2004.6.7일 기존 노동법을 보완한 신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노동계약과 관련한 개별 분쟁은 사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서 관장한다.

모로코에서 고용은 정규직(상호계약이 파기될때까지 고용), 계약직(계약기간에 한해 고용, 계약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직(한시적으로 고용),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우 고용주가 횡령, 배임, 무단결근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크며 이는 생산성 증대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모로코 노동자연합(UMT), 모로코 노동연맹(UGTM) 등 전국적으로 3,4개가 존재하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다.

경쟁정책

모로코는 경쟁법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결정, 진입장벽 해소, 투명성,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 위원회를 설치하여 카르텔, 우월적 지위남용 등 반경쟁 행위와 동종 업종 기업 간 인수 및 합병 허가 등에 관해 총리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는 밀가루, 설탕, 석유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식수, 전기, 대중교통 등 기초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담배 등 독점상품 등에 대해서는 가격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실례로 국내 빵가격 급등으로 올 10.1일부터 밀가루에 대한 관세가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되었으며, 의약품도 올 12월부터 대부분 품목에 대해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타 장벽

모로코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자유지수가 전년(2011)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60.2를 획득하여 평가대상 179개국 중 87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도보다 6계단 상승한 순위이다. 금융자유화 39위, 비즈니스 환경 47위, 투자자유화 50위 등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지표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노동 자유화 174위), 재정 자유도(134위), 재산권보호(72위) 등은 개선해야할 취약점으로 지적

되었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품 대금의 계약과 지불이 유로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상당수 바이어들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해 왔으나 2011.8월부터 유로존 일부 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모로코와 한국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개선 실적

모로코 정부는 다자간 및 양자 협정체결을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정책투명성제고,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의 친 비즈니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자발적인 최혜국(MFN)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공산품 품목별로 관세율이 2.5~7.5% 포인트 인하되어 우리 상품의 對모로코 시장접근이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밀수품의 유입을 막아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더불어 전자거래의 확대, 유통 구조개선,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진행으로 승용차, 냉장고 등 품목에 따라 EU산 특혜관세율과 최혜국 관세율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정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레인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바레인은 2003년부터 여느 GCC국가들과 마찬가지로 426개의 아이템(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술과 담배는 제외) 5%의 관세를 부과하는 GCC 공동관세법을 채택, 적용하고 있다. 바레인은 건강과 종교적 이유로 술에는 1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담배에는 110%의 관세를 부과한다. 2008년 바레인 포함, GCC 보건부장관들은 담배에 '보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까지 세금을 인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관세	426개의 품목(주로 식료품과 의료품)
5% 수입관세	426개 외의 모든 품목(술, 담배 제외)
110% 수입관세	담배
125% 수입관세	술

바레인은 GCC의 회원국으로서 품목의 40%이상의 가치가 GCC내에서 부가된 상품은 국내생산품으로 인정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한다. GCC국가들은 GCC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은 관세를 부과하며, 통일된 수입관련 규칙들을 마련, GCC내에 수입되는 물품들에 한해 첫 진입국가에서만 수입 통관절차를 밟게 하고 그 후 다른 GCC국가로 이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single-point of entry계획을 발표, 시행단

계에 있다. GCC 사무처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만 GCC 내 무역량이 629억달러에서 786억달러로 25%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 서류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세관 신고서
- 화물인도 지시서
- 상업 송장(영어 혹은 아랍어)
- 포장 명세서
- 원산지 증명서
- 보험증명서(해당사항이 있을시)
- 견적송장(사본 4부 제출, 무게와 부피 표시)
- 은행지급 명세서 혹은 은행 영수증
- 통계관세 신고(statistical customs declaration)- 만일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최초 진입국이 아닌 다른 GCC 국가 중 하나일 경우, GCC 국가 내에 출입국을 표시하는 통계관세 신고를 작성해야한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수입자가 세관신고서를 완료하면 관세 지불, 통관담당자에게 수입 시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해당하는 하역금 지불, 수입품목 검열, 세관통과 등의 통관 수순을 거치게 된다. 2003년 GCC 관세동맹에 따라 수입 물품이 역내 최초로 진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지불하게 되고, 그 이후로 GCC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관세 지불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바레인온 온라인 통관수속도 허용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아랍대사관에서 인증된 아랍어 혹은 영어로 된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수입금지 및 규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바레인에 수입이 금지된다.

- 방사선조사식품(irradiated food product)
- 무기류(특별허가서가 있을 경우 제외)
- 음란물
- 야생동물
-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 염화메틸(methyl chloride)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장난감
-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그 나라의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증명서가 요구된다. 아랍연맹의 멤버로서 바레인은 이스라엘 제품의 일차적 보이콧에 참여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는 느슨한 편이며, 이차, 삼차적 보이콧은 강요하지 않는다.

표준, 검사, labelling 장벽

바레인은 다른 GCC국가들과 함께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States)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멤버이다. 대부분 바레인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나 국제적 표준화를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화로서 바레인이 따르는 표준은 1020개이고 이중 520은 강제적이며 500은 자율적이다. 2010.3월, GCC 재정부장관들이 모여 걸프 표준을 통합하려는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2011.11월 통합 걸프 표준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사 이름과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기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별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약간의 돼지고기라도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하지 않을시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관련 규제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 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제한된 화학품 수입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바레인은 2002년 투명하고 제도화된 정부조달 시스템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정립하는 새로운 정보조달법을 시행했다. 2003년 바레인 입찰청이 설립되어 모든 정부 입찰과 구입을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입찰절차가 투명하지 않았으며, 입찰가격, 기술적 장점에 의해 계약이 결정되지 않고 미리 내정된 기업들에게 프로젝트가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3년부터는 입찰청이 BD10,000 이상의 모든 입찰 결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BD10,000 미만의 입찰은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입찰이 공고되면, 관심있는 업체들은 입찰서류(tender document)와 입찰 제출증(Bid Submission Form TB02)을 사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관련 서류는 일요일 7시부터 수요일 13:30분까지만 받는다. 접수된 서류들은 입찰청, 프로젝트 담당 부처 대표, 입찰 참여업체, 계약업체 등이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개봉하며, 입찰서류 개봉의 결과는 바로 입찰 가격 리스트에 기록되고 입찰청 홈페이지에 전시되고, 입찰청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이러한 입찰 오프닝은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 서류구비 심사가 끝나면, 관련 부처로 넘겨져서 기술과 금융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 입찰 통과 업체들은 신문과 입찰청 홈페이지 등에 발표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바레인은 1955년 상표권, 특허, 산업디자인 관련 산업재산권법을 제정했다. 지식재산권은 상공부의 산업재산국(Industrial Property Directorate)에서 맡고 있다. 바레인의 산업재산국은 걸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재산 사무소이며, 국제적 인지도도 높다. 바레인은 1997년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강하게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비디오, 오디오, 소프트웨어 등을 상업적으로 복사 및 배포하는 행위를 근절했다.

바레인은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6.5월 바레인은 파리협약, 니스협약, 비엔나 협약, 특허협력 협약, 상표법 협약, 마드리드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 로마 협약 등에 상응하는 지적재산권법을 통과시켰다. 그 외 바레인정부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했으며 2005년 WIPO 저작권 협약과 WIPO 실연, 음반협약(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 서명했다.

서비스 장벽

중동의 보험관련 허브로서 바레인의 위치를 강화하고 보험 산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바레인 중앙은행은 보험회사의 소유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전에는 보험회사 설립 시 51% 바레인인 지분이 요구되었는데, 2004년 이후부터 보험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투자 장벽

투자여건·환경

바레인 정부는 외국투자관련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며 외국 투자기들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영어가 널리 통용되며, 오랫동안 무역통상의 중심지로서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사업 및 투자가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바레인은 GCC국가들 중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도 하며, 미국의 제5함대가 주둔해있는 미국의 주요 역내 동맹국이다. 바레인은 위치상으로 역내 가장 큰 시장인 사우디 동부에 인접해 있으며, 25km의 연륙교인 King Fahd Causeway로 사우디와 연결되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바레인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바레인은 Worldbank의 “Doing Business 2012”에서 183개국 중 38위를 기록했으며,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이 주관하는 경제자유지표에서는 183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바레인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교육, 연수 서비스, 관광, 금융서비스, 보건 서비스와 석유화학 분야에 새로운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에 자국민/외국인 통틀어 영업이 불가하다.

- 도박, 주류 제조, 담배 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조, 무기제조
-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 (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제한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용 도로의 사용
- 진주양식
- 제1종 우편(letter post)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된다.

-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 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 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 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 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 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 외국인 노동력 공급
- 상업홍신소(commercial agency)

다음과 같은 분야는 GCC국민들과 GCC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 된다

- 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
- 레이스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 화물 통관
- 어업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GCC기업이나 GCC국민들은 바레인 기업을 100%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외 외국인들은 바레인 기업의 49% 이내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새로 설립된 회사나 외국회사의 자회사 혹은 지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로컬 스폰서 없이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100% 외국인 소유 기업의 경우 역내 시장진출을 중점적으로 하며 바레인 내수시장만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석유추출 관련 투자의 경우에는 BAPCO와 생산·분배 합의 하에서 허용된다.

다음은 바레인인 파트너나 바레인인의 지분소유가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이다.

- 무역(판매, 구매, 수입, 수출 포함): 최소 바레인인의 51% 지분이 필요
- 관광, 여행사무소: 바레인인 파트너가 필요
- 의료 클리닉, 의료 센터: 의료사업 라이선스는 의사자격을 갖춘 바레인인이나 바레인 거주 GCC국민에게만 발급
- 약국: 자본의 50% 이상을 바레인인 약사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2001년 이후부터 외국기업과 GCC 국민들은 바레인 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2006년 이후부터는 비GCC 외국인의 경우 고층의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정해진 지역의 상업, 관광, 금융, 보건, 교육 및 연수 센터 등 용도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비GCC 외국인이 상업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Ahmed Al-Fateh(Juffair) 지역
- Hooraa 지역
- Bu Ghazal 지역
- Seef 지역
- Diplomatic Area를 포함한 북쪽 마나마지역

비GCC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Durrat Al Bahrain
- Dannat Hawar
- Riffa Views

- Villamar
- Amwaj Island
- Bahrain Financial Harbour
- Bahrain Bay
- Diyyar Al Muharraq
- Norana

Amwaj 섬 프로젝트 개발자인 Oasis Development Company는 Amwaj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거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Durrat Al Bahrain은 바레인에서 가장 큰 부동산 프로젝트로서 21km²가 넘는 지역을 커버하며 외국인들의 주거용, 상업용 소유를 허가하고, 관광부문 투자를 장려한다. 바레인 내 대부분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택과, 빌딩, 아울렛, 아파트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레인은 부동산 소유를 보호하고, 부동산 취득과 처분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모기지 개념이 존재하지만 모기지 관련 법에서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할 시에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기관이나 사람이 재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현재까지 없다.

바레인 내 부지 구입을 원하지 않는 외국기업은 정부로부터 임대 가능하다. 상업용 부지는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상업 임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에 정부소유 부지개발을 위탁해왔다.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가 개발한 히드 산업공단(Hidd Industrial Park)이나 Tameer가 설립한 Bahrain Industrial Wharf 등이 이러한 예이다. 2011년 1월에는 상공부 장관이 산업부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산업단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평균 상업용/공업용 부지 매입/건축가

2011년 기준

상업용 부지	년간 \$3.90/m ²
상업용 건축시공 가격(격납고식 구조)	\$352/m ²
창고(격납고식 구조)	월 \$5-\$80/m ²

❖ 사무실 임대료

2011년 기준

마나마중심가 혹은 Diplomatic Area의 고급 사무실	월 \$15-\$40/m ² 와 그 외 서비스 요금 추가
중급 사무실(80-120m ²)	월 \$450-\$950

❖ 주거 임대료

2011년 기준

빌라: 방 3-4개 semi-furnished	\$1000-\$3500
아파트: 방 2개 semi-furnished	\$800 이상
방 2개 가구완비	\$950 이상

금융상 제한

바레인은 자본금이나 이윤, 배당금 등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대해 외환관리 제한(exchange control restriction)이 전혀 없으며, 100% 이체를 보장한다. 환율도 미화에 고정되어있다(\$1=BD 0.377).

세제상 제한

세금과 수입법은 바레인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 투자자들도 현지 기업과 동일한 범규에 따라야 한다. World Economic Forum에 의하면 바레인은 세계에서 4번째로 경쟁력 있는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GCC국가들 중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바레인은 가스 및 석유관련 회사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도 없다. 또한 바레인인은 자본이익(capital gain), 배당금(dividends) 등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과 관련한 서류업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BHD 70,000까지는 부동산 매각 혹은 매입액의 1.5%, BHD 70,001에서 BHD 120,000까지는 2%, BHD 120,000 초과 시는 3%가 부과된다.

○ 지방세(municipal tax)

렌트에 10%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 사회보장세

연금 및 의료 보장, 실직보장을 위해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 바레인인 고용 시, 고용인이 12%, 피고용인이 7% 부담
- 외국인 고용 시, 고용인이 3%, 피고용인이 1% 부담

○ 외국인 노동자세

외국인 노동자세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 시, 한 명 당 매달 10BD의 기여금을 노동시장 규제기관(LMRA: Labour Marker Regulation Authority)에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현지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며, Tamkeen이라는 준정부기관에서 현지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1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2011.4월, 당분간 이를 집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12.7월 다시 집행 유예를 연장한 상태이다.

○ 우리나라는 2012.5월 바레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

■ 그 외 전기, 가스, 수도요금

종류	상업용	주거용
전기	BD 0.012/시간당 kw	첫 2000 유닛: BD 0.006/unit 그다음 3000 유닛까지: BD 0.012/unit 그 이상 추가 유닛: BD 0.016/unit
수도	450m ³ 까지: BD 0.300/m ³ 그 이상 추가: BD 0.400/m ³	450m ³ 까지: BD 0.300/m ³ 그 이상 추가: BD 0.400/m ³

경쟁 정책

살만 왕세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민영화와 경쟁을 바탕으로,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위한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였다. 준정부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민간분야 활성화와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2002년 왕의 칙령에 의거하여 관광, 정보통신, 교통, 전기, 수도, 항구와 공항 서비스, 석유와 가스, 우편 서비스 등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6년에 설립된 Mumtalakt Holding은 바레인 정부의 모든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바레인 기업들 내 정부 지분율을 50%이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타 장벽

노동관련

자국인화 정책(Bahrainization)

바레인에서는 기업이 전체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바레인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10명 미만의 회사일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는 Bahrainization 쿼터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될 경우에도 금융 및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10% 내외이다.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25~30%의 Bahrainization률이 적용된다.

주요산업 자국인화 고정비율: 석유관련 산업(20~30%), 화학약품 제조(10~30%), 알루미늄(15~30%), 건설(0~8%), 호텔관광(0~25%), 부동산(10~40%), 금융(30~50%)

최저임금제도

바레인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보장제도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바레인

은 학사학위 이상은 BD400, 그 이하는 BD250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어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바레인 노동조합은 바레인인 외에 외국인들에게도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적용하여 외국인 노동력 착취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바레인 노동부 장관은 현재 바레인인의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보장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향후 동 제도가 실시되면, 바레인인 GCC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노동법의 주요내용

-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라마단 기간 중에는 주당 30시간, 하루 6시간)
- 일하는 중간에 30분 정도의 휴식 없이 6시간 이상 일하지 않음
- 연간 21일(5년 이상 근무 시 28일 이상) 유급휴가와 15일 유급 병가 지급
- 출산 휴가는 45일

금융기관의 바레인 진출과 관련된 사항

1. 바레인 금융시장 현황 및 특성

중동의 금융허브

2012년 현재 바레인에는 415개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있다. 금융 분야는 전체 GDP의 약 25%를 차지하며, 2200억달러의 총 금융자산과 14,000명의 금융종사자(이중 2/3은 바레인인)를 보유하고 있다. 역외 도매은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카타르와 두바이도 금융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급 금융 전문인력과 걸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관리 및 조정 제도, 사우디와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바레인은 걸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바레인인 세계에서 이슬람은행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총 52개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27개의 이슬람은행이 있다. 27개의 은행 중 8개가 소액 거래 은행이다. 이슬람 금융은 바레인 총 금융자산의 11.5% 차지한다(2011).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AAIOIFI)와 같은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관리·감독기관이 바레인에 자리 잡고 있다. 바레인인 샤리아 기준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바레인의 금융기관

- 바레인 중앙은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
 중앙은행은 바레인 금융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6년, 바레인 통화기구가 바레인 중앙은행으로 바뀌면서 걸프지역의 주요 금융센터의 입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특별히 이슬람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독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이며 바레인을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바레인 중앙은행은 종속 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지불능력(solvency), 리스크 매니지먼트, 금융범죄(financial crime), 이슬람보험 등에 대한 개혁을 논의 중이다.
- 증권거래소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과거 100% 정부소유였으며 바레인 중앙은행에 의해 감독을 받다가, 국제적 지역적 투자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민영화되었으며, 2011년 Bahrain Bours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 했다.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등록된 기업들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국내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 바레인 주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종류	이름
소액거래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B(Ahli United Bank)-바레인에서 제일 큰 은행이며, 중동에서 제일 큰 은행중 하나 - BBK(Bank of Bahrain and Kuwait) - NBB(National Bank of Bahrain)
도매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Arab Banking Corporation) - GIB(Gulf International Bank)
이슬람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 Baraka Islamic Bank - Bahrain Islamic Bank - Ithmaar Bank - Gulf Finance House - Arcapita Bank
이슬람 금융조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IO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Market - Islamic International Rating Agency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사우디의 관세 제도는 HS기준에 따른 종가세 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쌀, 설탕 등 기본 생필품은 무관세,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는 5%, ▲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플라스틱제품, 목공제품, 세제등의 품목은 12~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기타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8.4.1일부터 물가안정을 위하여 식료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6~25%에서 0~5%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다.

한시적 관세율 인하 품목

구분	식료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인하 내역(%)	종전: 6~25 현행: 0~5	종전: 15~25 현행: 5	종전: 7~20 현행: 5
대상 품목	냉동소고기, 냉동양고기, 가금류, 유제품, 냉동감자, 밀, 밀가루, 식물성식용유, 소시지, 파스타, 땅콩버터, 과일쥬스, 생수 등	유기계면활성제(비누제외), 합성세제, 화장지, 플라스틱유아 수유병, 기저귀 등	석고, 산소, 페인트 및 바니쉬,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 및 연결기구, 전기스위치, 자동차단기, 조립식 건축물

자료원: 사우디 관세청(www.customs.gov.sa)

상기 품목에 대한 인하된 관세율은 2011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09. 6월 사우디 정부는 상기 180여 품목을 포함하여 총 85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한 바 있다. 또한, 2010.12.11 화학제품, 향수류, 샴푸, 치약, 면도크림, 살충제, 플라스틱 제품 등 총 1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7.6~25%에서 5.5~6%로 인하하였다.

사우디정부는 2011.4월에 수입관세 재검토 후 관세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 관세율 변경 또는 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2010.1.1일부로 지난 2년간 건축자재 수급난과 가격급등 완화를 위해 잠정 면제해오던 외국산 철근과 시멘트에 대해서 수입관세 5%를 재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사우디의 평균 관세율은 10%로서 개도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최저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 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는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국내가격 또는 국내제조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 최저수입가격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사우디에 수입된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환급되어야 하나, 이미 납부한 관세가 환급되지 않거나 환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그 절차도 복잡하다.

또한, 관세정책을 자국의 경제 및 산업보호, 밀수근절 등의 목적으로 위해 이용하고 있어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2010.9월부터 사우디는 면세로 통관되는 각종 공사용 기자재의 불법유통 등 밀수행위 방지 차원에서 외국계기업의 공사용 기자재를 통관할 경우 리

야드 소재 사우디 관세청 본청의 사전승인(Pre-Approval)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 시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담금은 없다. 사우디는 부가세 등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입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사우디의 경우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요구하는 서식이 많아 통관 시 어려움이 있다.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에이전트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어 주류, 돼지고기 및 그 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식품 등의 통관은 불가능하며, 이슬람이 금기시하는 디자인이 포함되는 소비재의 통관이 까다롭다.

○통관 시 필요서류

- 원산지 증명서,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 위생검사서(사우디식약청<SFDA> 인증서, 단, 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수입검사 인증서(사우디표준청<SASO> 적합 인증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GE 마크

○통관 시 유의사항

- 주류, 돈육 및 그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통관 불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한 확인 필요
- 라벨 부착은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서 특히 식품류, 개인 위생기류, 의약

품 라벨은 사우디표준청(SASO)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 요망

-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샘플이 많은 경우 통관이 어려움
-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될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 필요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사우디는 수입 상품의 통관 시 수출국 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를 포함한 GCC국가들은 현재까지 자체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WTO협정과 같이 국제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무역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에 수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발급하던 공증제도는 2006.5월 폐지되었다.

수입 규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는 수량 제한 등 일부국가에서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사례나 비관세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세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수입금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무기, 아스베스토 등 ▲ 관세부처 특별승인 요구: 식물의 종자, 가축, 책·잡지, 오디오 및 동영상물, 의약품, 화학품, 향료 등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무선장비 등 ▲ 수입 검열: 미디어제품.

2009.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

(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참고로 2010.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사우디는 2011.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과 자국내 제조를 2012.5.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사우디는 국민 건강, 국가 안전보장, 공중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 거래 방지를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국내 및 외국 상품 여부에 관계없이 동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상공부는 수입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국제인증제도(ICCP: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이다.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 절차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우리정부는 한-사우디 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사우디측은 동 인증제도가 수입규제보다는 국민 건강이나 국가 안전보장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규제가 아니

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WTO 가입이후 2006년에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COCP: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으로 개선하였다.

2008.6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기술표준원 및 사우디 표준청이 각각 지정한 시험 인증기관에서 상대국의 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품인증서는 추가절차 없이 상호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수출국 정부 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수입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을 통해 사우디 수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2010.4월부터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에 대하여 당해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라벨을 사전에 사우디표준청(SASO)의 확인을 받아 당해 전자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에너지효율표시제(Energy Efficiency Label, EEL)”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사우디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공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석유광물부(MOPM)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77백만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58백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최근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12월부터 중단하였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 제약

사우디는 2005.12월 WTO가입 시 1년 이내에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협상 개시를 약속하였다. 2007.12월 사우디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왕령(Royal Decree)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우디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액의 일정 비율의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보상투자 방법은 전체 Off-set 의무량의 25%는 현금 출자하고 통상 사우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Off-set Program의 장려를 위해 합작 기업 추천, 산업개발기금(SIDF) 장기 융자, 수입물품 관세 혜택,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조달이 가능한 공사용 자재 및 장비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 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사우디의 정부조달은 전문 입찰 주관기관이 없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필요시 입찰을 공고하고 있으며 조달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특정 분야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구매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회사의 정부입찰 직접 참가는 제한되어 있어 상공부에 현지회사로서 등록절차를 마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응찰이 가능하다.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사우디 석유공사), SABIC(사우디 기초산업공사), SEC(사우디 전력공사), STC(사우디 통신 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플랜트 입찰 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를 하며 입찰 참가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선정시 응찰가격을 제외한 평가기준으로는 사우디 자국인화정책(Sau-dization), 사우디 재투자, 외국인 고용비율 등과 참가업체의 국제적 신인도, 재정상태, 독특한 기술력, 동종 프로젝트 이행실적 등이 있다.

자국산 기초군수물자 구매

2010.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보호

사우디는 최근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등 관계법령을 제정·시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는 시장, 공항, 항구 등에 특별감시팀을 배치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품(CD, 비디오, 인쇄물)의 밀수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젯다에서 제1회 이랍소비자 및 브랜드 보호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위반에 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시하였다.

한편, 특허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특허담당 시험관을 15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여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특허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우디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감안하여 2010.2.25일 USTR은 미국의 수퍼 301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찰대상국에서 사우디를 제외하였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IPA)은 2011.2월 및 2012.2월 높은 저작권침해율, 정부의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낮은 제재율 등을 이유로 사우디를 관찰대상국에 재등재할 것을 USTR에 권고했으나 2012.10월 현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 장벽

사우디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미미하였으나 2005.12월 WTO 가입과 함께 서비스 부문 개방을 약속하였다.

보험 분야의 경우 2003.10월 보험업조정통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였다(외국인 지분은 60%까지 허용). 2008년 말 25개 외국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였다.

금융 분야의 경우 사우디 은행법은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상업은행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사우디 중앙은행(SAMA)은 10개 외국계 은행에게 면허를 발급하였다.

한편, 2004.2월 제정된 사우디 자본시장법은 외국인의 사우디 내 투자은행 및 중개회사의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한도를 60%까지로 제한하였다.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달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배포 및 내부거래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였다.

2008.8월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사우디 내 비거주자(GCC국가 국민 제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는 사우디의 주식을 스왑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졌다.

투자 장벽

사우디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탈석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자국의 WTO 가입(2005)을 전후하여 외국인투자법 등을 정비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는 2000.4월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우디 투자청(SAGIA)을 설립하여 투자허가 및 투자유치 관련조직을 일원화하였다. 종전의 외국

인투자법은 국가발전에 부합되는 기술이전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으나, 개정 외국인 투자법은 투자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환송금의 자유를 허용하고 합작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스폰서 역할을 허용하였다(사우디 내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거주를 위해서 법적인 스폰서가 필요함).

투자금지분야

사우디 최고경제위원회(The Supreme Economic Council, SEC)는 2007. 3월,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수송부문, 이슬람교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분야

- 석유탐사, 생산(광산업분야(국제산업코드 5115+883)에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
- 군사장비, 기기 및 유니폼 제조
- 민간 폭발물 제조

○서비스 분야

- 군사부문 Catering
- Security 및 탐정 서비스
- 메카 및 메디나지역 부동산 투자
- 성지순례(Hajj and Umrah) 관련 관광 안내 및 가이드 서비스
- 국내 고용사무소를 포함한 신규모집 및 고용서비스
- 부동산 중개업
-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 인쇄 및 출판(단, 일부는 예외적으로 허용)
- 일부 위탁업
- 육상 운송 서비스(단, 도시간 철도여행서비스 제외)

- 조산원, 간호원, 물리치료사, 진료보조원 서비스
- 어업 등

2007.3월부터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 의약소매 및 개인 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 유통 서비스, 상업 대리업, 통신 서비스, 도시간 열 철도 여객 및 항공운송 서비스가 금지분야에서 제외,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사우디는 그동안 보험, 금융,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05년 사우디의 WTO협정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완화하여 2010.9월 보험업은 60%, 금융·통신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75%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을 상한을 확대하였다.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억리얄, 재보험회사의 경우 2억리얄이며 양 보험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리얄이다.

한편, 모든 외국인 투자는 사우디 투자청(SAGIA) 산하 투자자지원센터 (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SAGI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필요한 경우, 합작 투자 당사자는 동 기관에 출석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해야 함).

합작 투자 심의에서 허가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사업성격과 심 의기관에 따라 다르나 약 4~6주가 소요되고 있다.

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부에 신설회사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합작당사자들은 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지체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서에 기재된 합작공장 설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연장 신청서를 사우디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는 영문 이외에 현지어인 아랍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서류작성 등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사소한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법인·지사 설립상의 제한

사우디에 진출하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출을 하는데, 하나는 유한책임회사(LLC)이며, 다른 하나는 지사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설립과 관리가 간단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진출 방법 중 하나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최소자본금은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50만리얄이며, 제조업의 경우 100만리얄이다.

다만,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특별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사우디투자청(SAGIA)의 결정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감액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최소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2개 이상 투자조직에서 최대 50인 미만의 개인 또는 50개 미만의 투자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투자자(조직)가 2개 미만이 줄어들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외국회사의 지사는 법인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주식회사로 진출도 가능하나 자본금이 크고 운영이 복잡해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업이 주식회사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기 법인형태 외에 사우디 기업의 스폰서쉽(Sponsorship)을 얻어 회사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각종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사우디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확실한 사우디 에이전트(스폰서)가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진출한다.

그러나, 이런 진출형태의 경우 진출기업의 법적지위가 사우디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의 고용인 형태인 관계로 그 활동 범위 역시 에이전트(스폰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만약 사우디 에이전트(스폰서)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국산품 의무구매 등

사우디 정부의 조달물품 구매 시에는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국산품에 대해서는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높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 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GCC국가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생산하고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사택이나 피고용인의 주거 제공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판매나 임대를 위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건물 및 건축을 위한 대지) 취득시 대지 및 건축 모두를 합친 프로젝트 비용은 최소 3,000만리얌을 초과해야하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을 실시해야한다.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비사우디 무슬림은 2년간 동지역 부동산 임대 및 2년 주기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신청 시 투자목적이 부동산 개발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이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자허가를 취소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인 주거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취득 가액의 하한선은 없으나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하며 합작선과의 합작계약이 종료

또는 파기될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세제상 제한

사우디인과 사우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Zakat라는 종교세 2.5%를 Zakat청에 자진 납부).

그러나 2004.7.30일부터 외국기업은 순이익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고, 합작기업은 외국인 합작투자 지분율에 상당하는 순이익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입, 보수, 이익이며 자본이익(Capital Gain)을 포함한 임시 수입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석유부문의 법인세율은 85%, 가스부문은 35%를 부과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사우디는 2007.4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하였다.

회계제도상 차이

사우디의 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다 ▲ 은행을 제외한 유한회사는 그 주주에게 대출할 수 없다 ▲ 유한회사의 손실이 그 자본금의 75%를 초과할 경우 출자자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의 해산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경쟁정책

사우디는 중동의 거점시장으로 제조업이 전체 GDP의 10%수준에 불과,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 세계 제품이 진출해 있어 경쟁이 매우 심하다. 또한 이슬람 중주국인 특성 때문에 사우디의 기후, 전통, 취향 등에 맞는 제품이 판매에 성공할 수 있다.

사우디는 각 분야에 자국민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 수주, 세제, 상사 분쟁 등에 있어서 사우디인과 외국인과의 차별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행정 처리에 있어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여 공사 수주, 투자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자국인화 정책 (Saudization)

사우디는 기업의 고용인중 일정 비율 이상의 사우디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국인 고용의무비율은 당초 1999년 44.2%, 2004년 53.2%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5.9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사우디 노동법을 개정하여 이를 75%로 확대하였다.

2006.4월 사우디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사우디 인력의 의무고용이 어려운 제빵업, 여성 재봉사, 남성 재단사, 목수, 알미늬 공장, 기계·자동차공장, 세탁소, 농장, 트럭운송, 주유소 등에 대한 사우디인 의무고용비율을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개별 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의무고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한 2009년의 경우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건설서비스업의 경우 당초 10%에서 5%, 일반제조업은 당초 30%에서 20%(단, 사업개시 2년 이내는 15%)로 각각 의무고용비율을 축소한 바 있다.

* 사우디인 의무고용 강화

이러한 사우디 정부의 자국인 고용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인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2011.6.11, 사우디 노동부는 종전 보다 강화된 사우디인 의무고용강화정책(Nitaqat, 범주라는 뜻의 아랍어)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Nitaqat 정책은 기업의 업종, 규모별로 사우디인 의무채용 비율을 부여하

며, 동 의무채용비율에 대한 기업의 준수 여부에 따라 기업에게 각종 제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Nitaqat정책에 따라 전체 기업의 20%는 레드의 범주에, 잔여 기업의 대부분은 그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 범주별 기업에 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레드 기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의 신규 및 갱신 신청이 불가하며 지점 개설도 금지되는 등 불가능하며 ▲ 옐로우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의 신규 및 갱신 신청이 제한되고 ▲ 그린기업의 경우 옐로우 및 레드 기업주의 동의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스카우트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블루기업은 상기 그린기업에게 주어지는 보상외에 각종 면허 갱신 유예 등 혜택이 부여된다.

■ 카테고리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구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블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옐로우, 레드 기업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 두 달에 한번이상 노동부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 및 채용 가능 ○ 두 달에 한번 외국인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가능 및 2년 미만 근무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 기업등록(CR) 등 각종 면허갱신 1년간 유예
그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옐로우, 레드 기업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 두 달에 한번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가능 ○ 외국인근로자 2명 귀국시, 새로운 취업 비자 1개 취득가능 ○ 외국인근로자 채용직종 변경 가능 ○ 외국인근로자 이카마(Iqama, 장기체류증)기한이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비자갱신 가능 ○ 수입증명 및 종교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옐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옐로우 기업 선정후 3개월 이후부터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 6년 이상 근무 외국인근로자 비자 갱신 금지 ○ 외국인근로자 2명 귀국시, 새로운 취업 비자 1개 취득가능 ○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불가, 외국인근로자 채용직종 변경불가
레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 외국인근로자 비자 갱신, 스카우트 및 채용직종 변경 불가 ○ CR갱신 금지 및 지점 개설 금지

2012.9.9일 사우디 정부는 다시 한 번 의무고용강화정책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은 사우디인 고용창출을 위한 Nitaqat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트타임 및 학생 근로자의 고용을 선호하는 기업들을 규제하여 정규근로자 비율을 증가시키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월 임금수준이 SR 3,000 이상의 사우디인은 고용쿼타 비율 산정시 1명으로 계산되며, SR 1,500~3,000인 경우, 1/2명으로 계산되며, SR 1,500 이하는 고용쿼타 비율 산정에서 제외

▲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수준 SR 1,500 이상의 경우에만 고용쿼타 비율 산정시 1/2명으로 계산하고, 고용쿼타 비율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를 2개 이상의 기업에서 중복해서 계산 금지

▲ 학생근로자의 경우, 학생근로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 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용쿼타비율 산정에 포함함. 단, 식당업의 경우에 한해, 전체 근로자 수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용쿼타비율 산정에 포함함. 아울러, 월 임금수준 SR 1,500 이상의 경우에만 고용쿼타비율 산정시 1/2명으로 계산되면, 동일 학생근로자를 2개 이상의 기업에서 중복해서 계산 금지

▲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수준 SR 3,000을 초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쿼타비율 산정시 4명으로 계산됨. 단,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전체 고용근로자 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됨. 장애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청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일 장애인은 1개 기업에서만 산정 가능

스폰서 제도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인 사우디의 자연인 및 법인 스폰서를 통해서 각종 법률행위(장기체류증, 운전면허증, 비자 취득 등), 영업행위, 은행거

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스폰서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 및 집행 시 국제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관례화된 상태이며 발주처와의 법적분쟁 시 회교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및 관습에 적합한 포장 필요


상품 포장지 또는 상자, 상품 설명서에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사진이나 그림 또는 비 이슬람 종교 그림이 있으면 이를 검은색으로 덧칠한 이후 세 관 통관을 허락하므로 별도의 포장지, 포장상자, 상품설명서를 제작·수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사우디는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남성의 경우에는 신청서, 사진(4매),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그 아랍어 번역문, 장기체류 증(Iqama, 이까마) 및 스폰서의 발급요청 서한, 수수료(200리얄)를 납부하면 사우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취득 신청시 병원에서 받은 혈액형 및 시력 검사 결과와 면허시험장에서 판매하는 청파일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해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선실적

사우디 운전면허 취득 개선

그동안 사우디는 우리나라 남성의 운전면허를 사우디 운전면허로 교환할 때 각 지방 교통국(Traffic Dept.)의 재량에 따라 그 교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한 결과, 일부 지방의 경우 운전면허 교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사우디 교통청과의 교섭을 통해 2011.3월부터 사우디 전국의 모든 지방 교통국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신청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세부규정을 마련·시행토록 하였다.

세네갈

경제 개관

북아프리카 서안 끝에 위치한 세네갈은 국토면적 196,000km²에 2012년 기준 인구가 약 1,300만명이다.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인구의 64%가 25세 미만(14세 이하는 43%이며 65세 이상은 2.9%)인 ‘젊은 국가’이나, UN이 지정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수년째 1인당 국민소득이 여전히 1천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2011)에 머무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외에도 세네갈의 경제와 개발여건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지수가 몇 가지 있다. UNDP가 집계한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세네갈은 세계 177개국 중 155위이며(2011), 세계은행이 집계한 기업환경여건 순위(the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183개국 중 154위에 그치고 있다. 영국 Ibrahim 재단이 2012년 발표한 정치·경제·사회개발 지표에 따르면 세네갈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2개국 중 16위(2012), 서아프리카 16개국 중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정치적 안정 및 정부의 효율성 등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도로 및 물류시설 등 필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또는 부족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곧 산업생산 기반의 미비를 의미한다. 세네갈의 제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며(22.8%, 2011), 생산품목도 단순 조립, 가공품에 한정되어 있다. 석유,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이 빈약한 세네갈의 광업 및 에너지 관련 산업생산은 총 GDP의 3% 수준에 불과하다. 농수산업은 GDP의 15% 수준이며(2011), 낙후된 재배 및 조업방식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낮아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네갈은 쌀, 밀, 여타 식품 등 식량(23%, 2012)과 석유, 광물 등 자원(25%, 2012) 수입이 총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식량과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전형적인 수입양태를 보여준다. [세네갈 통계청 홈페이지(www.ansd.sd) 자료 참조]

세네갈은 1995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 통신서비스 등 3차 산업 붐으로 인해 한때 연 평균 5~6%대 성장을 이루었으나, 2006년 이후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과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최근 3년간(2009~2011) 연평균 2%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회복 및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세네갈 정부는 다시 4%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물가안정과 인프라시설 구축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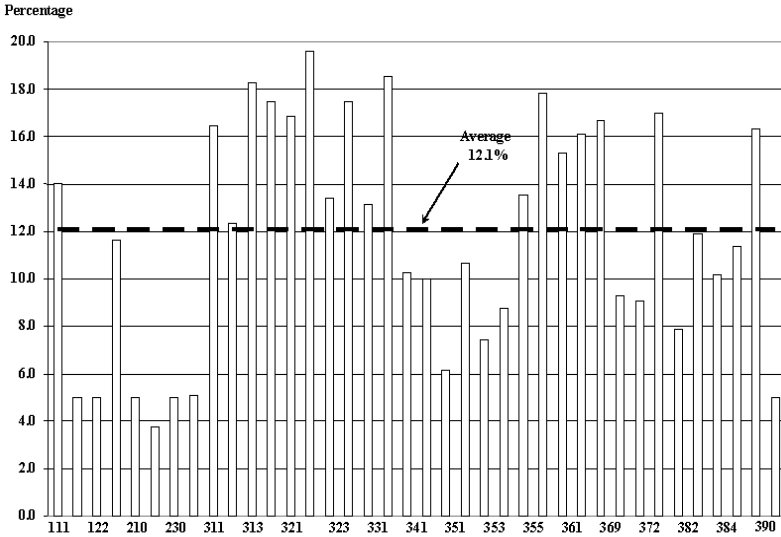
무역 환경

세네갈의 무역정책 및 일반관세

세네갈의 무역정책은 1999년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WAEMU) 가입과 역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적용을 계기로 한층 개방되었으며, 평균 관세율은 11.9%로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농업관세(13.1%)가 제조업관세(9.2%)보다 높아 취약한 국내농업생산을 보호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일부 제조업 제품에 대한 보호도 병행하고 있다. [세네갈 관세청 홈페이지(www.douanes.sd) 자료 참조]

역외공동관세는 품목별로 0%(특정기본재), 5%(생필품 및 기초재), 10%(중간재), 20%(완제품 및 기타 최종소비재) 및 30%(일부 민감품목)를 부과하는 5단계의 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WTO가 세네갈에 대한 무역정책검토(TPR)시 조사한 주요품목별 평균 실행관세는 아래와 같다.

Tariff protec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2009



ISIC major groups

Description	Description
111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ion	351 Industrial chemicals
121 Forestry	352 Other chemical products, including pharmaceuticals
122 Logging	353 Petroleum refineries
130 Fishing	354 Manufacture of products of petroleum and coal
210 Coal mining	355 Manufacture of rubber products n.e.c.
220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production	356 Manufacture of plastic products n.e.c.
230 Metal ore mining	361 Pottery, china and earthenware
290 Other mining	362 Manufacture of glass and glass products
311 Food manufacturing	369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312 Other food products and animal feed	371 Iron and steel basic industries
313 Beverages	372 Non-ferrous metal basic industries
314 Tobacco manufactures	381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equipment
321 Textiles	382 Non-electrical machinery, including computers
322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except footwear	383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appliances and supplies
323 Leather products, except footwear and wearing apparel	384 Transport equipment
324 Footwear, except vulcanized rubber and plastic footwear	385 Professional and scientific equipment
331 Wood and wood products, except furniture	390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332 Fabrication of furniture and fixtures, except primarily of metal	410 Electricity
341 Paper and paper products	
342 Printing, publishing and allied industries	

세네갈을 포함 WAEMU 회원국은 상기 역외공동관세에 추가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통계세, 역내연대원천징수세, 수입조절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세율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세네갈이 부과하는 관세 및 수입부과 조세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금명	상품명	관세 (DD)	통계세 (RS)	역내연대 원천 징수세(PCS)
DD,RS,PCS	특정기본재	0%	1%	1%
	기초재	5%	1%	1%
	중간재	10%	1%	1%
	최종소비재	20%	1%	1%
	특별민감품	30%	1%	1%
TCI	농산품, 가공식품, 낙농제품, 생선 및 생선 가공품을 제외한 수산품	10%		
PCC	CEDEAO 지역산 상품	0.5%		
COSEC	해상수송 상품	0.2%		
TVA	거의 모든 수입상품 대상	18%		
TIN	특정상품	1, 2.75, 3.8, 5, 12, 30%		
TE	수출입면허카드 없이 수입시 적용	5%		
ST	특정상품			
통관시 납부세율		상기 해당 세율의 합계		

수출입/통관 면허제도

수출 및 수입업자는 반드시 통상부로부터 수출입면허카드(carte d'importateur/exportateur)를 발급받아야 한다. FOB 가격기준 500만CFA(약 1만달러) 이상의 수입품 결제는 은행구좌를 통하여야 하며, 거래은행을 통하여 사전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면허와 관련하여, 세네갈은 제품별로 면허발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수입은 보건당국이 발급한 약사면허 소지자만이, 주류수입은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얻은 자, 해충제 수입은 환경부의 면허를 받은 자, 석유관련 제품 수입은 에너지부의 허가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다.

통관제도

세네갈은 통관지에서의 수입증명제도(PVI)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1년 이전까지 전수검사를 시행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약 10% 정도만을 검

사하고 있다. 이는 사전수입증명제도(DPI) 도입과 더불어 세네갈 세관당국의 통관 분석 장비 현대화에 기인한 것이다.

사전수입증명은 category C(최종소비재) 및 S(suspensive regimes)의 경우 f.o.b. 가격 100만CFA 이상인 경우 및 category에 관계없이 3백만CFA 이상의 수입시에는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제도가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의 통관절차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통관 전문 인력의 부족과 관계 당국의 부정부패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수의 수출입 업체들은 세네갈 세관,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운송·보관·하역·선적 등 수출입 관련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뇌물 없이는 원활한 수출입이 불가능함을 토로하고 있다.

2011년 World Bank 등이 조사한 세네갈의 청렴지수는 2.9점으로 전 세계에서 112위(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8개국 중에는 22위)를 기록하였다. 세네갈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감사청(Inspection Generale d'Etat)을 설치, 뇌물수수 등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뇌물을 중범죄로 취급하여 적발시 5~10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수준, 당국의 미약한 적발 의지, 불처벌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고 곳곳에 만연된 뇌물공여 관행의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허술한 통관절차 및 뇌물 관행은 심지어는 아예 정식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거나 낮은 관세 다른 품목으로 위장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가 횡행하는 것을 조장하기도 한다. 실제 상당수의 고가 수입품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세네갈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식 통관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수입품과 경쟁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장 및 라벨링 제도

세네갈의 포장 및 의무표시 제도는 Codex 기준에 따른 식품포장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신선 과일, 야채 및 식품의 포장에는 품명, 생산일, 유통기한, 성분, 중량, 생산자 정보 등이 붙어 표시되어야 한다.

특정 수입품의 경우, 밀수 또는 신고된 용도이외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Vente au Senegal”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관련 해당 품목으로는 성냥, 담배, 20도 이상의 주류, 설탕, 배터리, 가정용 양초, T셔츠 등이 있다.

시장가격 관찰/통제 제도

세네갈은 2002년부터 계절별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수급보장을 목적으로 특정 품목의 가격을 통제하거나, 수입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취해오고 있다. 해당품목은 쌀, 바나나, 옥수수, 감자, 양파, 토마토 등 농산물이며, 해당 농산물의 국내 생산자에게 적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 및 수입시기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 양파의 경우 국내생산이 출하되는 4~8월간에는 수입이 금지된다.

관세 및 세금 면제제도

예외적인 경우로서, 세네갈 정부는 특정 기간 중 쌀, 분유, 밀 등 기초 식량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제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시기도 한다. 이는 국제 식량수급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수입가격 상승으로 세네갈 국민들의 식량난이 가중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규정

세네갈은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대신 WAEMU 공동 원산지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회원국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기준으로 삼고 있다. WAEMU 원산지 기준은 4단위 세 번 변경기준 및 30% 이상 부가가치 기준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장벽

2008년 World Bank의 권고를 수용한 정부조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주류를 이루었던 비공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세네갈 정부기관의 수의계약 비율은 전체 조달의 19%에 불과하여 공개입찰 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공개 수의계약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용역 계약시 또는 공개입찰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개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저가격의 최대 10% 이상 가격을 제시한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세네갈 법에 따른 공급자, WAEMU 회원국 공급자, 세네갈 또는 WAEMU산 제품만을 공급하는 공급자에 한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사업자 및 WAEMU 사업자를 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세네갈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WAEMU 회원국 이외의 외국 공급자를 입찰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으나, 빈약한 국내 산업여건 및 높은 외자조달 비율로 인해 부득이 WAEMU 이외의 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권 보호

세네갈은 프랑스를 모델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WIPO 및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OAPI) 회원국이자 Bern 협약 당사국이다. 2008년 세네갈은 저작권, 예술품 등의 재산권 보호 및 TRIPs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던 저작권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세네갈 특허청(BSDA)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당시 세네갈에서 유통되던 DVD, CD의 60%가 불법복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7년 이후 당국의 단속 결과, 21,000장의 DVD 및 57,000장의 CD가 불법복제물로 압수되었다.

투자환경

세네갈의 투자유치 정책

세네갈은 인구 약 1,300만명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작지만, WAEMU, ECO-WAS의 회원국이며 미국 및 EU와도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서아프리

카 및 서방 선진국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다.

세네갈 정부는 높은 실업률문제 해결과 산업현대화 차원에서 2003년 대통령 직속 투자위원회(Presidential Investment Council, CPI)를 설립,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내외국인 기업 간 동등 대우 및 우편, 전력송신, 수도, 철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100% 지분보유 등 상당한 정도의 투자자유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세네갈은 1983년 투자관련 조치의 MFN대우, 자본 및 이윤의 송금 자유보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한 투자보장협정을 미국과 체결한 이래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일본, 호주 등과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프랑스 및 말리 등 구 프랑스령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하였다.

세네갈 정부는 2009~2012년간 인프라 및 광업개발 투자유치에 주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철광개발, 신공항, 신항만, 유료고속도로 건설, 통신 기간시설 확충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세네갈의 투자 유치 실적

UNCTAD가 집계한 세네갈의 2009년 말 누적 투자유치액은 13.8억달러로 앙골라(165억달러)·코트디부아르(62.2억달러)에 크게 뒤졌으며, 2011년에도 세네갈은 19.1억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같은 해 앙골라(62.7억달러)·코트디부아르(64억달러)에 절반도 되지 못하였다. 이는 세네갈이 정치적인 안정 및 비교적 우수한 인적자원 등 같은 지역 내 여타 국가들과 비교시 긍정적인 요소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 등 해외 자본 으로서는 앙골라와 같은 자원부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세네갈 투자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계 기업들은 세네갈 내에 총 235개 지상사를 설립하였으며, 전체 외국계 투자기업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계 기업은 세네갈 내에서 무역, 해운, 은행, 통신,

식품, 기계, 담배, 유류소매, 자동차, 의약, 관광, 보험업에 투자함으로써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영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네갈 통신업체의 민영화에 따라 France Telecom(Orange)이 SONATEL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Elyo사는 세네갈 발전소를 매입하였다.

프랑스 이외에도 모로코의 Royal Air Maroc가 세네갈 국영항공사 Air Senegal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매입을, Senbank는 세네갈 내 은행업진출을 기획하는 등 인근 국가인 모로코의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스위스 Nestlé는 식품가공업에, 대만계 기업은 수산가공업에 투자하였다. 미국의 對세네갈 투자는 현재까지 약 1.5억달러 수준이며 Colgate-Palmolive(치약, 화장품), Mobil(석유소매), CitiBank 등의 지상사가 진출해 있으며, 최근 GE가 6,800만달러 상당을 발전소에 투자한 바 있다.

사업허가

재정부 산하에 설립된 ‘Guichet Unique’(one-stop window)는 투자기업의 신청서 접수에서 허가 발급까지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통상 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에 이뤄지며, 그 기간 내에 당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조세 및 특혜

세네갈의 법인소득세는 25%이며, 자유수출기업 특혜를 받을 경우 15%가 적용된다. 수익이 3년이내에 재투자될 경우, 소득세 지분을 연기할 수 있다. 보유세는 16%이며, 법인세로부터 환급된다. 부가가치세는 10~34% 수준이다.

세네갈 내에 상주하는 외국기업은 세네갈 내에서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세네갈 상주 외국계 지점의 수익에 대해서는 10%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세네갈 상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 연간 500,000 CFA의 기업세가 부과된다.

생산에 필요한 기초재 및 중간재를 세네갈 산으로 65%이상 사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및 기업세가 감면된다. 정부 지정에 따른 저개발지역에 설립한 기업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세 3%를 면제한다.

투자 인센티브

2009년 새롭게 정비된 세네갈 투자관련 법안은 기업의 투자금액, 투자 업종을 기준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Category 1은 최소 1,500백만 CFA를 투자하여 농수산업, 식품업, 보건, 교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형 투자에 해당한다. 반면 Category 2는 최소 1억CFA 이상을 투자, 제조업, 광물, 관광, 호텔, 항만, 공항, 건설업에서 활동을 하는 대기업형 투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투자기업에 대해 정부는 중간재 수입시 관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의 3년간 유예, 법인소득세의 최대 5년간 3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對세네갈 투자시의 고려사항

(1) 열악한 기업환경 여건

상기와 같은 투자유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의 기업환경은 최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2012년 집계한 기업환경지수에 따르면, 세네갈은 2년 연속 183개국 가운데 154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2006년 127위, 2007년 136위에 비교할 때 기업여건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세계은행이 통관, 운송 등 측면에서 분석한 무역원활화 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는 5점 만점에 2.37점(150개국 중 101위)으로 사하라 이남지역 평균(2.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의 질, 물류관련 IT 인프라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카르 항만의 비합리적 운영에 대한 불만도 크다.

이와 더불어 세네갈의 도로, 항만, 전력 시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평균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잦은 단전과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다카르 이외 지방은 물론 다카르 인근 지역에서도 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낙후된 발전 및 송·배전 시설, 국영 전력회사(Senelec)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2010년부터 전력난이 악화되어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2011. 10월에는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에너지부 장관이 사퇴하기도 하였다.


현 세네갈 정부는 전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모리타니아 등 이웃 국가의 잉여 전력 수입 및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중 관련 계획이 확정된다 하여도 발전소 완공 및 실제 전력 생산까지는 빨라도 최소 3~4년이 지난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전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2) 정치적 안정

세네갈은 1962년 독립이후 단 한차례의 군부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은 국가로서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오랫동안 정치적 안정을 누려왔다. 남부 카자망스 지역에서 일부 반정부 세력이 아직 활동하고는 있으나, 2004년 세네갈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집권한 압둘라이 와드 前 대통령은 2007년 재선에 성공한데 이어 헌법상 3선 금지 규정 및 다수 국민들의 반대 표명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출마(3선)를 강행하였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혼란과 정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와드 前 대통령 측이 결선투표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고 권좌에서 순순히 물러남으로써 현 마키 살 대통령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12.4월 취임한 마키 살 대통령은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부정부패 척결과 민생안정,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임을 약속하여 세네갈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마키 살 대통령은 2012. 6월 총선에서도



여당의 승리를 이끌어 내어 자신에 대한 지지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세네갈 국내정세 안정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권의 정부 개혁 및 부패척결 등의 노력이 실제 성과를 나타낼 경우 해외투자 유치 확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 세네갈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할 것이다. 반면 정치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고용확대, 빈곤해소, 물가안정 등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사회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계속 상존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무역동향

WTO에 따르면 UAE의 2010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2,35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상승과 비석유부문의 수출 호조를 꼽을 수 있다. 한편, 수입은 1,700억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에 그쳐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UAE 연방관세청(Federal Customs Authority)의 비석유 부문 수출입 발표에 따르면, 2010년도 수입은 4,854억디르함(1,323억달러), 수출은 831억디르함(226억달러), 재수출은 1,859억디르함(507억달러)으로 나타났다.

■ UAE의 교역동향

단위: 억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1,786	22.7	2,390	33.8	1,850	-22.5	2,350	27.0
수입	1,325	32.4	1,770	33.6	1,504	-15.0	1,700	13.0
수지	461	1.3	620	34.5	350	-43.5	650	85.7

자료: WTO Statistics Database

2010년도 세계 교역에서 UAE는 수출 19위, 수입 25위를 기록하였다. 2010년 UAE의 수입 대상국은 1위가 인도이며, 이어서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33억달러를 UAE에 수출하여 9위를 기록하였다. 인도의 대UAE 수출은 귀금속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기계류,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출 비중이 높다.

2010년 UAE의 주요 수입국가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율(%)
1	인도	22,667	17.1%
2	중국	13,598	10.3%
3	미국	11,254	8.5%
4	독일	8,087	6.1%
5	일본	7,766	5.9%
6	영국	4,697	3.6%
7	이탈리아	4,128	3.1%
8	프랑스	3,482	2.6%
9	한국	3,308	2.5%
10	사우디아라비아	3,262	2.5%

자료: UAE 통계청(2011.5월), 1달러=3.67디르함 적용 환산치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에 있어 UAE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우리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수주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對UAE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5,749	55.2	4,978	-13.4	5,487	10.2	7,268	32.5
수입	19,248	52.1	9,310	-51.6	12,170	30.7	14,759	21.3
수지	-13,499	33.7	-4,332	-67.9	-6,683	54.2	-7,492	12.1

자료: KOTIS

무역제도

1996.4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UAE의 무역제도는 국제무역규범에 따르고 있다. UAE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대외무역부(Ministry of Foreign Trade)이다. 무역정책 입안을 위해 대외무역부는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각 에미리트 행정당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을 위해 상공회의소나 직종별 협회와도 교류하고 있다. 무역정책 수립절차는 관련 부처의 입법안이 연방평의회(FNC)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연방최고회의(Supreme Council)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프리 존(Free Zone)이 UAE의 수출 중심지로서, 수출 및 재수출 기업에게 물류, 행정,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프리 존의 기업들은 UAE 국내에서 적용되는 일부 라이선스, 스폰서 고용 등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한편, UAE의 인증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통용된다. 단, 자동차, 에어컨 등은 GCC 사양을 충족시켜야 하며, 식료품 및 의약품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유통 승인을 받아야 한다.

UAE를 포함하여 중동 이슬람국가에서 식품류에 적용되는 ‘할랄(Halal)’ 인증제도가 있다. 할랄 인증은 전 세계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할랄 인증은 공인된 이슬람협회에서 발행되며, 발행된 증명서는 세계 각국의 UAE대사관, GCC 또는 무슬림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에서의 할랄 인증 공인 이슬람협회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이다.

관세와 통관제도

관세와 관세 환급

UAE는 개방적 시장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며, 담배는 100%, 주류는 50%의 특별 고관세가 적용된다.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E(Bill of Entry)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일단 부과된 관세액을 납부한 후, 관세 환급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통관절차

UAE의 수입 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에 등록된 회사(UAE 국민이 최소한 51% 소유)만이 자격이 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수관 물품 보세구역 반입

2단계 Bill of Entry(BE) Form 작성 및 제출(아래 부속서류 첨부 요)

- Delivery Order(D.O.)
- Bill of Lading(B.L.)
- Packing List
- Certificate of Origin(C.O.)
- 수입상 Trade Licence 사본
- 수입상의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to Shipping Co.)

3단계 관세 납부 및 통관물품 보관장소 확인

- CIF 기준 5% 관세 부과
- 관세 납부 후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4단계 수입물품 검사 및 확인 스탬프 날인

- 수입품 검사소에 관련 서류를 제시, 검사일시를 지정받음

- 지정된 검사 날짜/시간에 하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수입물품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 BE에 'Cleared'라는 확인 스탬프를 날인

5단계 반출 확인서(Out Gate Pass) 및 운송차량 통과증(Vehicle Pass) 발급

6단계 반출

수입규제

UAE의 경우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국가나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약간의 규제가 있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은 성분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축 식품, 할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특별 부과료가 있으며, 매년 갱신료도 있다.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록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의 의약품 수출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한편, 주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다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에 따라 2009년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2011년에 유럽발 E. coli 박테리아 오염 파동에 따라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오이 수입을 금지한 바가 있다.

정부조달

일반적으로 UAE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방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예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에미리트별로 수행하는 다양한 산업 개발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구매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

UAE 정부는 정부조달에 있어 현지업체에 가점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UAE는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견적, 수의계약의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입찰은 국제입찰(International Tender)과 국내입찰(Local Tender)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인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UAE의 정부조달 관련 불공정한 관행으로는 UAE내 생산제품으로서 UAE 국적인의 자본이 51% 이상이고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경우 외국제품에 비해 응찰가격의 10%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점과, 입찰 참가 시 반드시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UAE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국제협약에의 서명국이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다.

국내적으로도 1992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방법(40/92)을 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상표도용,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특허출원이나 의장등록은 연방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다.

상표권(Trademark):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상표권 보호 기간: 10년

저작권(Copyrights):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자 생전 시 및 사후 50년. 단, 응용 미술(applied art) 및 방송용 저작물의 경우 인쇄 및 방송일로부터 각각 25년 및 20년

특허/의장/실용실안권(Patents, Design & Models):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보호 기간: 특허 20년, 실용실안 10년, 의장 10년

상표권 침해의 경우 경찰 상업범죄 담당 부서(Commercial Crime Department)에서 원본과 위조 상표의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상표권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또는 소송 기간 중 동 위조 제품에 대한 사전 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이 가능하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 제품 폐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은 위조 상품 제조자에게 위조품 생산 중지 명령과 함께 지역 신문에 동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다. 또한, 위조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일에서 6개월간 거래면허(Trade License)가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UAE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된다.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서 법원은 관련 저작물의 생산·발간·게시 등을 규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며, 침해 내역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실용실안 등 공업소유권 침해 적발 시 당해 물품은 압수되며, 구속 또는 5천 디르함 이상 10만 디르함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업소유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가 실시된다.

투자환경

투자여건

UAE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고정된 디르함(AED)의 안정성과 투자 후 과실 획득 시 외환 송금의 편리성 등 UAE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투자진출 지역 중 하나이다.

또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한 관세제도, 세금제도 및 무역장벽의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도 매력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환경 하에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을 받으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UAE는 프리 존이 매우 발달해 있어 비석유 수출의 약 80%가 프리 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프리 존은 면허, 외국인 소유조건, 스폰서 지정, 자국민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동안 두바이를 중심으로 프리 존이 크게 발달해 왔으나 최근에는 아부다비 등 다른 에미리트들도 프리 존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UAE는 또한 2011년 들어 투자유치를 본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서 Investment Map Project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IMP는 UAE의 투자매력과 투자인센티브, 그리고 7개 에미리트별 투자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으로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기반을 둔 큰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을 12개 최우선 투자유치 협력대상국 중 하나로 선정하는 내용이 이 프로젝트에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외환경

UAE는 민간부문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제·개정, 카르텔 방지 등에 관한 경쟁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최근 두바이 경제위기로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해지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소유지분을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UAE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조정 대상은 첨단기술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될 것이며 석유, 가스과 같은 국가 전략산업 분야는 소유지분을 상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UAE는 1994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1996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UAE와의 양자간 무역협정(Bilateral Preferential Agreements)은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시리아(2000.11월), 요르단(2001.3월), 레바논(2002.3월), 모로코(2002.3월) 및 이라크(2002.4월)와 체결했으나, UAE는 모든 FTA 협정을 GCC 차원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현재 GCC 차원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범아랍자유무역협정(1998.1월 발효, PAFTA), 싱가포르(2008.12월 서명), EFTA(2009.6월 서명), 뉴질랜드(2009.10월 서명)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일본·호주·EU·인도·터키·파키스탄·MERCOSUR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GCC측 내부입장 정리를 위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회사설립 및 사업 시작

가. 사업면허와 스폰서 제도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각 에미리트의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또

는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사업면허(Business Licensing)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면허의 종류	사업 내용 및 요건
상업면허 (Commercial License)	- 수출입, 판매, 유통, 저장 / 은행, 보험 / 호텔, 운송 등 활동 기업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산업면허 (Industrial License)	- 제조업 등 산업 활동 기업 - 최소자본금: 25만 디르함
전문면허 (Professional License)	- 회계·법률 등 전문직서비스 및 예능서비스 활동 기업 - 전체 직원의 수가 제한될 것임
관광면허 (Tourism License)	- 호텔, 숙박, 여행사 등 관광활동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프리 존 밖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로컬 스폰서(Silent Partner)/파트너 또는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를 선임할지는 사업면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가끔 스폰서를 잘못 지정하여 영업기밀 누설, 사업지체 등 투자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스폰서(회사 또는 개인)의 경험, 인지도 및 보수 등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010년 들어 UAE는 인접한 바레인, 쿠웨이트의 스폰서 폐지 결정에 영향을 받아 동 스폰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당분간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로컬 스폰서/파트너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구 면허	- 모든 상업면허	- 모든 전문면허 -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 사무소
지분 소유	- 회사 자본금의 51% 이상 지분 소유	- 없음(단, 토목회사의 경우 1%라도 지분을 소유해야 함)
역할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카드 취득, 기타 회사경영 활동 지원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 발급 등 지원
급여	- 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 총액 또는 이익 또는 판매액의 일정비율

나. 회사의 형태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소유권
 - 최소 2명, 최대 50명의 유한책임을 가진 주주로 구성
 -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외국인의 지분은 최대 49%까지로 제한
 - 일반 국민으로부터 주식청약을 받는 행위 불가
- 경영진
 - 5명 이하의 매니저(외국인매니저 가능)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② 지점(Branch Office) /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소유권
 - 100% 외국인 소유 허용(단, 로컬서비스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함)
 - 모기업의 일부이며,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음(UAE내에서 별도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UAE 로컬 스폰서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이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음
- 최소 자본금 요건: 250,000디르함(아부다비)

③ Public Joint Stock Companies (PJSC)

- 소유권
 - 정부가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0명 이상의 창립주주(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이상 소유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1,000만디르함

- 자본금의 25~45%는 상장될 수 있음

④ Private Joint Stock Companies

○ 소유권

- 최소 3명 이상의 창립주주(회사 자본금 전액을 분할 소유, 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이상 소유
- 주식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될 수 없음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200만디르함 이상

⑤ Partnership Limited with Shares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공동 무한책임) + 1명 이상의 참여 파트너(유한책임)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50만디르함

- 자본금은 주식 형태로 분할되어야 함

⑥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 + 1명의 이상의 유한책임 파트너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 ⑦ Joint Venture
 - 소유권
 - 2명 이상의 외국인 및 국내 파트너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기로 계약 합의
 - 1명 이상의 파트너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다른 파트너는 나서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은 경영자가 될 수 없음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 ⑧ Sole Proprietorship / Individual Establishment
 - 소유권
 - 1명의 소유자(무한책임)에 의해 100% 소유
 - 전문 면허이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100% 소유 가능
 - 경영진
 - 외국인도 경영자가 될 수 있음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 ⑨ Civil Company / Civil Works Company
 - 상법에 따르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독립된 법인체인 Civil Company를 설립할 것을 요구

하고 있음

○ 소유권

- 많은 수의 파트너(무한책임)
-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경영진

- 경영진이 모두 외국인이어도 무방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⑩ General Partnership

○ 소유권

- 2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로 구성

○ UAE 국민들만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장일치에 따라 의결하는 구조를 가짐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다. 프리 존 안에서의 회사 설립

프리 존은 독립된 Free Zone Authority가 관할하고 있으며, 각각의 프리 존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은 차이점이 그리 많지 않다. 프리 존에서는 UAE의 회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 존에서의 회사형태는 아래의 네 가지 회사구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Free Zone Establishment(FZE)

- 주주 1명으로 구성
- 무역, 유통, 저장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 Zone Company(FZCo)

- 2~5명의 주주
- 원재료 수입, 가공, 수출 사업활동 영위 회사
- 외국회사의 지점
 -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모회사의 활동을 다름
 - 프리 존 내에서 사업경영, 마케팅, 컨설팅, IT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lance Permit
 - 모든 프리 존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스 전문직 활동만 수행 가능
 - GCC 소유 지분이 최소 50%이상이고, UAE내에서 부가가치가 최소 40%이상 창출될 때 허용

프리 존에서 발급하는 사업면허(License)는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의 성격에 좌우되며, 그 형태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Trading License
 - 이 License는 증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Trad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만약 프리 존 내 회사가 UAE로의 판매를 원한다면 UAE의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야만 가능함
- Industrial License
 - 상품의 생산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프리 존 내에서 제조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License임
- Service License
 -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필요한 License임

라. 제3기관의 각종 인·허가

UAE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정된 제3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받

이야 한다.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은행, 한전, 금융 컨설턴트	The Central Bank of the UAE
보험	UAE Insurance Authority
산업 활동	Ministry of Economy The Environment Department(에미리트)
병원, 사립클리닉, 의료실험, 약품	Ministry Of Health
자동차 렌탈	Traffic & Transportation Department(에미리트)
미디어 관련 활동(광고, 온라인 거래, 홈쇼핑, 인쇄, 방송 등)	National Media Council
회계감사, 외국기업 지사	Ministry of Economy
육아, 간호	Ministry of Social Affairs
노동 서비스	Ministry of Labor
식물재배, 농장, 가축 거래, 종자 거래, 검역, 수의	Ministry of Environment & Water Agriculture or Environment Department(에미리트)
종교 관련 활동	Islamic Affairs and Awqaf
법률 회사	Ministry of Justice
사립학교, 유치원, 체육관	Ministry of Education
항공운송, 항공화물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General Civil Aviation Authority
통신장비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엔지니어링, 건설	Relevant Municipality(에미리트)

마. 회사설립 절차와 소요시간

UAE 내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각 절차마다 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서류 확인 보완, 설명 등의 부가절차를 거치면서 설립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회사 설립 후 실제 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후 2달 이내에 경제부에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을 하여야 한다.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LLC를 설립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은행에서 받은 불입자본 증명서, 납입자본금 등을 증명하는 UAE등록 회계 법인의 증명서, 기타 회사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② 지사 및 연락사무소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설립을 위하여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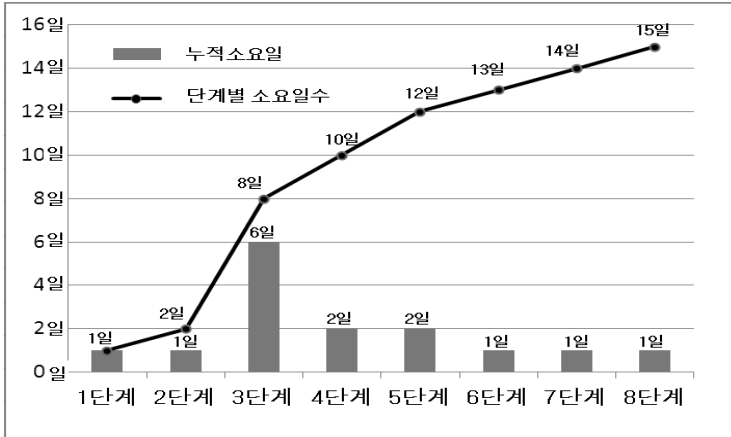
회사(본사)의 정관, 회사(본사)의 과거 2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위임장(Power of Attorney),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사업자 등록증, 회사 사업목적 등 내용이 담긴 소개서(Company Profile), UAE에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에이전트의 동의서(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위의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번역)하여 국내에서 공증을 받은 후 상공회의소 및 주한 UAE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인증에 약 3일 소요)

참고로, 두바이에서 중견규모의 LLC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DIFC에서 작성한 Doing Business 2011에 따른 회사설립 절차별 소요시간이다.

단계	추진내용	소요기간	소요금액
1단계	회사명에 대한 승인_DED	1일	AED 100
2단계	정관의 공증_DED	1일	자본의 0.25% 페이지당 AED5
3단계	경제개발부(DED)에 신청서 제출 및 Trade License 획득	6일	부동산 계약금액의 5%+AED 1,000~3,000의 Waste Fee+ AED 480 회사등록비+ AED500 회사명패 승인비
4단계	상공회의소에 등록	2일	AED 1,200
5단계	회사명패 제작	2일	AED 1,000
6단계	노동부 등록	1일	AED 2,000
7단계	현지인 인력 노동부 등록	1일	-
8단계	현지인 인력 General Authority for Pension and Social Security에 등록	1일	-

■ LLC 설립시 단계별 소요시간



회계제도

가. 회계기준

UAE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IA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IFRS))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감독기관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UAE의 공개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는 DFM 및 ADX의 상장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증권거래소의 감독기관인 DFSA 또는 ESCA을 통해서 상장회사들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등 회계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UAE는 자체의 회계기준이 없는 데다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외부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있어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들 들어, UAE의 주력업종인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의 경우에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장기간임에 비추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에 따라 회사전체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회사의 가치산정 및 계속기업의 판단 등에 있어 실질과 다른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다.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된 회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는 제출의무가 없다. 단지 실무적으로 회사는 Trade License를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한 프로젝트의 입찰참여 등의 경우 입찰 서류의 일부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고, 본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번역 후 간단한 Review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프리 존 내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프리 존 당국이 자체적인 규정 및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의무는 프리 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Jebel Ali Free Zone 과 Dubai Air Port Free Zone의 경우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Dubai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의 경우는 제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

가. 일반 환경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세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각 에미리트별로 별도의 세법 또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서 이를 통해 법인 및

개인소득의 수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실제 개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소득세는 오일관련 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소득세

■ 개인소득세

UAE에서는 소득의 형태를 불문하고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아래의 오일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법인소득세—오일회사

UAE에서 생산되는 오일, 오일에 대한 권리 및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거래하는 회사에는 법인소득세가 부과됨

세율은 일반적으로 5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실제적인 납부세액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회사와 해당 에미리트와의 사업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법인소득세—외국은행의 지점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은 대체적으로 20%이며, 이 세율은 에미리트마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

두바이, 샤자, 후자이라는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한 세칙을 가지고 있으나, 아부다비를 비롯한 기타 에미리트에는 외국은행의 지점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기타 조세

■ 관세

2003.1.1일부터 발효된 GCC 회원국 간의 관세동맹에 따라 UAE 및 GCC

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그러나 프리 존은 관세동맹에서 지정한 무관세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음

- Social security and pension payments

연금 및 사회보장법인 연방법 No.7(1996)에 따라 UAE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 및 해당 피고인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General Pension and Social Security Authority에 납부하여야 함

고용인: 12.5%, 피고용인: 5%

외국인을 위한 규정은 없음

- 부동산 관련 세금 Stamp Duty and Transfer Taxes

Stamp Duty and Transfer Taxes: 부동산 취득 시 권리의 이전 및 등록과 관련하여 매매가액의 2% 세금을 부과함(매수자: 1.5%, 매도자 0.5%)

주거 및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각각 5% 및 10%의 Municipality Tax를 부과함(현재까지는 두바이에서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천징수세

UAE에서는 이자, 배당, 로열티, 사업소득 등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없음

- 자본이득세

UAE에서는 자본이득세가 없음

- 부가가치세(VAT)

UAE에서는 최근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외국인투자 유치 장애, 인프라 구축 미비 및 최근의 글로벌 금융혼란 등으로 구체적인 도입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세율의 안은 3% 또는 5%의 비교적 낮은 단일 세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음

예외규정: 매출 US\$ 1백만 미만, Health and Education Sector 등이 논의되고 있음

UAE의 VAT제도는 GCC에서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UAE에 도입되면 곧 바로 GCC 국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큼

■ 호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

호텔 및 호텔아파트(Serviced Apartment)의 객실수입 및 부대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준조세임

Tourism Fee(Municipality Tax) 5~10%(아부다비 6%, 두바이 10%, 라스알카이마 10%, 후자이라 10% 등)에 추가하여 Service charge 10%를 부과함

라.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Treaty)

UAE는 수입 및 자본의 투자 또는 흐름으로 발생하는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등 현재까지 약 49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3년 9월에 체결하였다.

한-UAE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내용은 한국 및 UAE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10%의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한국기업이 UAE에 제공하는 기술, 산업장비 등의 사용료 소득은 한국에서 일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노무관리

가. 노무환경

UAE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자국인의 비율은 약 10~15%에 불과하다. 최근 Dubai Municipality 전망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2020년까지 갈 경우 민간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9%, 공공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

은 91%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에서 점차 자국민 고용우선 원칙(Emiratization)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임금 격차도 커 민간부문에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향후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이 향후 UAE 정부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인력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UAE 자국민 고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일정 인원의 UAE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노동관계법을 일부 직종에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AE 은행부문에서는 1998년도부터 매년 4%씩의 UAE 자국민 고용증대를 통해 10년 내 은행업종에서는 UAE 자국민 비율이 40%를 점하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산업 내에서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국민의 부족으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관계 기본법인 연방노동법은 Federal Act No.8(1980) 및 No.12(1986)이며 관할 정부기관으로는 Ministry of Labour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무시간, 휴가, 의료혜택 등 기본적인 노무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노동법의 규정은 고용계약서상의 어떠한 내용도 노동법의 규정보다 피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이것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계약은 크게 고용기간이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UAE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둘 수 없으며, 노사 간의 분쟁이 있거나 노동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UAE 노동부가 1차적인 중재자로서 분쟁해소를 위해 간섭하게 된다.

노동부의 중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사 공히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노사중재를 위한 행정적 장치는 단계적으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와 노사중재원(Supreme Arbitration)이 있으며 각각 14일 및 30일 이내에 검토 및 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UAE의 주택 임차비가 매우 비싼 현실에서, 저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례 등이 인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인력 알선 전문업체와 인력 공급 사업자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나. 노동법의 주요내용

- 고용 계약서: 고용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 계약(limited period)과 만료기간이 없는 무한 계약(unlimited period)으로 나눌 수 있다. 무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허용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기간의 통지(Notice)를 주고 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1) 임금과 보수, 2) 계약 체결일, 3) 근무 시작일, 4) 계약의 성격 및 고용 기간(유한 혹은 무한), 5) 업무 내용, 6) 근무 장소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노동청에서 준비한 아랍어와 영어의 기본 양식이 있으나, 반드시 이 노동청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경우 두 언어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 아랍어 해석이 우선한다.
- 노동조합: 현행 UAE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임금: 임금은 기본임금(Basic Wage)과 각종 보조금 등을 포함한 전체임금(Total Wage)으로 나누어진다. 중요한 차이는 퇴직금 계산 시 전체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 근로자에게 지불된 기본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법정근무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1주일에 48시간을 넘지 못한다(라마단 기간 중 1일 2시간 감소)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저녁 9시~새벽 4시) 중에 근무한 경우 정상 근무시간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한다.
-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발생한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보험 및 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하다. 유의할 점은 현재 노동법원은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 계약 종료(Termination): 고용 계약은 언제든지 상호 합의하에 또는 당사자 중 한편이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통지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이 통지기간 동안에도 고용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무통지 즉결해고(Termination without notice): 근로자가 노동법 120조에 열거된 행동을 하여 고용주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공한 경우 사전 통지(30일 기간)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고용 상황이 법 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예: 임금의 미지불 혹은 고용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 또한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통지 절차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은 근로자의 최종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3개월분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퇴직금(Gratuity) 지급: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고용 기간 처음 5년 동안 매년 21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2) 근무 6년째부터는 매년 30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단, 퇴직금 총액은 2년 동안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 해고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예: 30일간의) 임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예: 최대 3개월간의) 임금, 또한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추가 수당 등의 잔액 등을 받을 수 있다. UAE 법원의 판례법에 의하면 생활 보조금 및 특별 보너스 등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고용 계약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임금의 한 부분으로 합의된 영업성과 보너스나 커미션 등은 퇴직금액 산정 시 임금으로 간주된다.

- 노동계약 기간 연장: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한 일의 종료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은 그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근로자 연금 제도(Pension & Social Security): 국민연금법(The Pensions & Social Securities Law Federal Law No.7 of 1999)에 의하여 근로자가 UAE 국민인 경우 월급의 특정 비율을 연금공사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민간 기업인 경우 고용주 부담액은 15%이나 국가가 이중 2.5%를 보조함). 아부다비의 경우 조금 더 수월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분쟁 조정(Dispute Settlement): 고용 관계에 있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등록된 에미리트에 있는 노동부(Ministry of Labour)로 분쟁 해결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민원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분쟁에 대한 민원이 노동청에 접수되면 당사자는 노동청으로 참석이 요청되어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고, 대략 2주 이내에 노동청의 권고안을 제시 받게 된다. 당사자들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분쟁안은 노동법원(Court)으로 접수되며, 법원의 분쟁 조정일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고용 분쟁과 관련된 민원/소송 신청은 분쟁의 원인인 해당 금액이 지불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만기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노동법 비적용: 5인 미만 사업장과 Maid, 공무원 등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급여수준

일반적으로 UAE 자국민의 임금은 외국인 대졸자 임금의 2~3배 수준이며, 대학졸업 후 금융 및 Engineering 등 전문 직업에 대한 경험 또는 자격이 있는 자국민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제63조에서는 근로자의 직종, 작업장 등에 따라 자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단, 2006.4월 노동부는 Ministerial Resolution No.286에 의거하여 UAE 자국민에 대해 최저 임금제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 초등학교 졸업: 월 3,000디르함
- 중학교 졸업: 월 4,000디르함
- 고등학교 졸업: 월 5,000디르함

두바이의 경우 Dubai Governm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Law No.27(2006)에 의거하여 두바이정부 소속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월 4,250 디르함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두바이 정부 공무원이면 UAE의 자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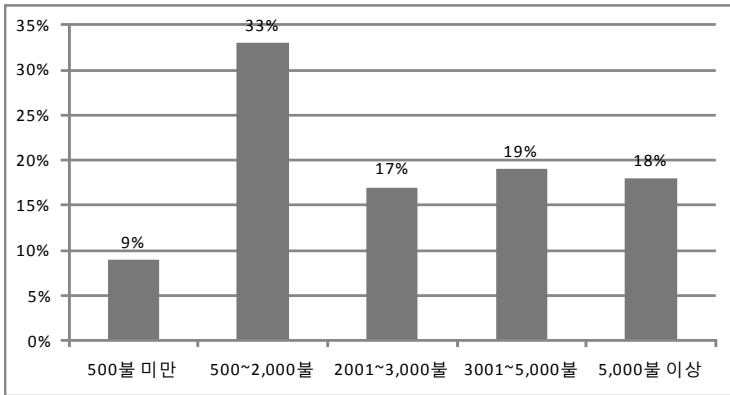
참고로, 월급이 4,000디르함 미만인 근로자는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노동법의 규제라기보다는 이민법상의 규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부(Maid)를 고용(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월급이 6,000디르함 이상이어야 한다.

■ 정기급여 이외의 보상

정기급여 이외에 통상적으로 연간 100~200%의 상여금(마케팅 분야 종사자의 경우 연간 약 200~400%) 및 2년에 1회 피고용자의 본국까지의 왕복 항공권을 지급하고 있다.

UAE의 급여수준은 아래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전체 근로자의 약 9%가 월 500달러 미만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UAE의 급여분포



자료: BAYT.COM(2011년 2월 기준)

건설사의 경우 대부분 전문 인력 공급회사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노동자 평균 급여는 아래와 같다.

■ UAE 건설 노동자 급여

단위: US \$

연번	직종	급여	비고
1	콘크리트공	31	1일 급여
2	철근공	31	1일 급여
3	목수	31	1일 급여
4	석공	31	1일 급여
5	일반 노동자	26	1일 급여
6	크레인 운전기사	48	1일 급여
7	중장비 기능사	61	1일 급여
8	덤프트럭 운전사	54	1일 급여
9	배관공	39	1일 급여
10	전기공	48	1일 급여
11	현장주임	77	1일 급여
12	현장 엔지니어	5,400	월급여
13	총괄 매니저	11,200	월급여

자료: Davis Langdon(2011년 9월)

중재와 청산 제도

가. 중재(Arbitration)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파트너들이 지불을 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최후의 해결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다. UAE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제1심 법원에서 시작하는데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랍어이고, 이러한 소송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쉽고 간편한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UAE에서도 중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계약의 쌍방이 중재에 동의를 하면 계약 관련 분쟁은 중재 법원에서 해결하게 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은 중재에 사용될 언어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의 쌍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재자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중재자가 복수일 경우에 쌍방은 서로 같은 수의 중재자를 둘 수 있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1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그 중재자를 지명한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3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쌍방은 그 중 각자의 중재자를 1명씩 지명하고 그 중재자들이 상호간에 합의하여 제3의 중재자를 지명해 의장의 역할을 맡게 한다. 또한, 최대한의 공정함을 위해 중재 법원은 단독 중재자나 중재 의장의 국적이 쌍방의 어느 국적과도 같지 않게 한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 유리하려면 명확하고 잘 계획된 중재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 조항에는 중재자의 수, 중재의 언어, 중재의 장소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 조항에는 패소인이 중재 비용과 승소인의 변호인 수임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불한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승소인은 중재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UAE 정부는 사법시스템 외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분쟁해결 과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중재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UAE 경제부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중재법(Arbitration Law)의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제정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UAE의 중재제도는 1992년의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CPL)에 의해 규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UAE는 1982년부터 국가간투자분쟁해결협약(ICSID)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바, 그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해 오고 있다.

UAE내에서 발생하는 중재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재 센터의 개설도 크게 늘었는데, 현재 UAE내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 The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The DIFC-LCIA Arbitration Centre
- The Abu Dhabi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 The Sharja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Ras Al-Khaimah Commercial and Arbitration Centre

참고로, UAE 정부가 제정중인 새로운 중재법안은 국제상업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의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 법안에는 중재재판관의 구성과 법원의 관여 정도, 중재 절차,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등의 규정을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나. 청산(Exit)

연방법 No.8(1984)에 의하면 UAE에 설립된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존속기간의 만료, 회사 사업목적의 소멸, 회사의 자산이 소멸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불가능, 합병 등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정관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로, 또는 의결 정족수 조항이 없는 경우 주주 또는 파트너(Partner)들의 만장일치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의결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제도가 잘 정립되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회사들의 청산작업이 수년에 걸쳐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 인적 물적 자산의 재배치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부도 관련 법령 및 회사 청산에 관한 행정절차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해당회사의 채권자들은 감히 부도 또는 회생절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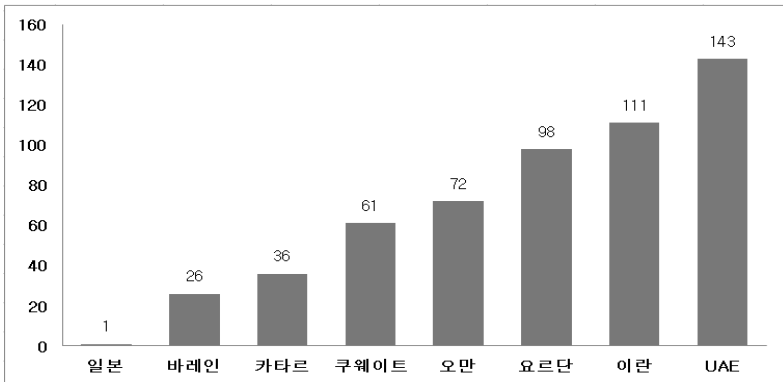
시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UAE의 경우 산업 및 경제구조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않아 회사의 청산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채권자동의 절차, 청산 사실 공개 절차, 노동부·경제부 등 관련부서로부터의 허가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UAE의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UAE의 청산 관련 절차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고지하고, 채권을 등록하도록 한다.
- 국내 채권자들은 파산 공지 후 1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 채권자들은 파산 공지 후 1달 내에 등록하면 된다.
- 파산법원 판사는 채무자들이 제출한 기록들을 검토한 후 법원 결정으로 채무변제금액과 기일을 다시 정하여 그에 따라 정리한다.
- 파산기업인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알리지 않고는 UAE를 떠날 수 없다.

■ Closing a Business—순위



자료: DIFC, Doing Business 2011

알제리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p)
경상GDP(십억\$)	138.1	162.0	206.0	224.9
실질GDP성장률(%)	2.4	3.3	2.5	2.6
일인당GDP(\$/인)	7,937	8,133	8,443	8,614
물가상승률(CPI,%)	5.7	3.9	4.5	8.5
실업률(평균,%)	10.2	10.0	10.0	10.8
이자율(여신,%)	8.0	8.0	8.0	8.0
인구(백만명)	35.3	36.0	36.3	37.1
경상수지(백만\$)	410	12,160	21,080	22,921
무역수지(백만\$,FOB)	7,780	18,200	28,470	30,890
상품수출(백만\$,FOB)	45,180	57,090	72,660	76,526
상품수입(백만\$,FOB)	37,400	38,890	44,190	45,636
서비스수지(백만\$)	△8,690	△8,330	△7,800	△8,322
순이전거래(백만\$)	2,630	2,650	2,400	2,106
외환보유고(백만\$)	149,347	162,915	183,122	199,459
대외채무(백만\$)	5,424	5,276	4,708	4,488
GDP대비順공부채비율(%)	8.1	9.3	8.1	8.2
통화증가율(%)				
통화(M1)	1.1	14.6	24.1	16.9
총통화(M2)	4.8	13.5	19.9	15.6

자료: EIU, 『Country Report(Algeria)』, 2012 October

일반 현황

알제리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해왔으며, 1995년에는 교역의 다변화, 개방을 통한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WTO

가입을 신청하였다. 동 가입 협상은 당초 2000년대 중반까지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2012년 현재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신청, 2005.9월 알제리-EU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발효, 2009.1월 아랍존 FTA 발효 등 대외교역 환경은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간의 고유가 추세로 인한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을 발주하는 등 알제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그 간의 개방적 통상정책 기조에서 2009년 추가재정법(LFC 2009) 제정 이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쟁력은 계속 침체된 반면,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라 하겠다.

알제리 국제기구 가입 및 협정 동향

알제리의 WTO 가입 추진 동향

알제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에는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상무부의 현 장관인 Mustapha Benbada의 이러한 발언은 전 장관인 El Hachemi Djaâboub가 WTO 가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과 완전히 정반대를 취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보호주의 움직임이 알제리의 WTO 가입유보 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관측되고 알제리 역시 국내 유치산업 보호 및 생산 장려를 위하여 보류를 결정하였다.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WTO회원국이 질의한 96개 항목 중 19개가 알제리의 현황과 WTO의 요구수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로 언급된 수입허가, 가스에 관한 이중 세율, 수출보조금, 특히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정책, 그리고 무역에 관한 주요 장애물(규범문제), 중고자동차수입 등이며 알제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제리-EU 제휴협정 재검토

EL Hachemi Djaâboub 전 상무부 장관에 따르면, 알제리는 2010.6.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알제리-EU간 제휴협정 이사회에서 양자간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불균형의 심화 및 알제리내 EU 직접투자의 부진 등의 동 제휴협정 체결 이후 양자간 발전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관세를 위한 일정계획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 실무협의 중이다. 알제리에 불리한 협정 결과 중 몇 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다.

-
- 알제리 수입품에서 EU산 물품은 전체의 55%를 차지함.
 - 2005년 112억달러에서 2008년 209억달러로 수입액이 증가함.
 - 협력합의서가 발효되기 시작한 2005.9월부터, 알제리의 대EU 수입은 80% 증가함.
 - 알제리가 EU에 1달러를 수출하면, 20달러를 수입함.
 - 농업부문에서 알제리의 대 유로존 수입은 2005년 12억달러 수준에서, 2008년 28억달러를 기록함.
 - 공산품 수입은 2005년 98억달러였던 것에 반해 2008년 177억달러를 기록함.
-

또한, 협력합의서 하에 맺어진 알제리가 부여한 특혜관세는 EU국가들이 100% 활용하지만, 알제리는 EU가 부여한 특혜관세 41개의 물품 중 단지 6개만 활용하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는 투자부문에서 특히 석유가스 이외 부분에서 알제리에서 유럽인들의 투자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은 알제리의 법적 불안정성과 기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상기 무역 불균형은 협정의 문제가 아닌 표준 문제이며, EU의 대 알제리 직접투자의 부진은 알제리의 외국인 투자 환경 특히, 기업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주의적인 것이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제리에 상주하는 Laura Baeza EU 대변인은 알제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대해 '알제리 기업이 유럽 표준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EU와 알제리 간에 합의된

특혜관세가 알제리 기업에 의해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자간 협력을 제의하였다.

수입 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현재 대부분의 상품수입은 자유화되었으며, 수입규제는 공공질서 유지,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등의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관세부과를 통한 수입규제는 2005.9월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발효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상품 분류는 국제기준(HS CODE)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재 5%, 반가공제품 15%, 완제품 30% 등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외국자본을 생산 활동과 투자에 유도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단가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2.1월 이후 알제리 세관당국은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 공정에 사용할 품목이면 5% 또는 15%를 적용, 알제리내 조립·생산을 유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관세인하와 Valeur Administrative(세관 당국이 책정하는 과세표준가 적용세율) 및 추가 특별세(TSA)의 폐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00개 품목에 도입한 추가임시세(droit additionnel provisoire)는 2001년도부터 매년 12%씩 세율을 낮추어 왔으며, 2006년 재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對알제리 수출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세세목은 관세 특소세 등이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다. 각 품목별 세율 등 자세한 정보는 알제리 세관 홈페이지(www.douane.gov.dz)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입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알제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법인은 2,000만 디나르(약 28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 관세 등 수입시 부과되는 조세

세 목	세 율	비 고
관세(tarif douanier)	0%, 5%, 15%, 30%	원자재 5%, 반제품 15%, 완제품 30%
특별소비세(TIC)	10~100%	추가특별세(TSA) 폐지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목적
부가가치세(TVA)	7%, 17%	식량 7%, 차량·전자제품 등 17%

주: 세관수수료(RD) 및 세관서류양식세(RFD)는 2004년부터 폐지

통관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으며, 2003.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의 부족 및 관료주의로 통관에 애로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시 수입품은 세관창고에 보관되고 보관기간 중에는 일단위로 보관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관절차가 종료되고 제반비용 납부 후 15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입품은 세관당국에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진다.

세관당국은 공공의 안녕질서, 사회관습, 공중보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물, 기타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폐기된다. 즉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수입금지 사례》

- 수입금지 품목: 돼지고기류 및 중고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 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식물 수입 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경우
- 서적·영화 수입 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하역 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

휴대품	통관기준
주류	○포도주 2리터 또는 증류주 1리터 이하
담배	○담배 200개피 또는 작은 여승연 100개피 또는 여승연 50개피 또는 담배 총합계가 250g 이하일 것
향수	○향수 50g 또는 화장품 1/4리터 이하
면세한도금액	○휴대품 환산금액이 총50,000DA(디나르) 이하 ○휴대품 외관 및 수량이 판매용 특성을 지니지 아니할 것 ○휴대품의 내용물이 반입금지품목, 국제적 보호품목 및 신고의무화품목이 아닐 것 ○알제리내 반입 가능한 지불수단 및 여행자 수표 ○100mg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 보석류
외국환신고	○모든 외화는 입출국시 신고의무화
의약품	○처방전에 언급된 품목 및 수량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식품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반입불허품목	○마약류, 무기·전쟁용 물품 또는 위조 물품 ○중고 부품(부품별로 1개만 허용) ○중고 물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가전제품, 가구 및 의류) * 자동차는 3개월 범위내 사용조건으로 통관허가를 취득한 경우 한시적으로 반입 가능 ○미풍양속 저해 물품 ○알제리 화폐(디나르, Dinar)의 수출입 ○동반자가 없는 가방 또는 허가증 미동반 품목
기타 유의사항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초과시 세금 부과 물품 - 의류 및 약세서리, 화장품, 보석류, 빗·모자 및 유사물품, 사진필름,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양탄자, 식료품, 가축사료, 과일(통조림 포함), 도자기 ○알제리 정부로부터 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

휴대품	통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류·필름·녹음테이프(문화부), 위생시설·살충제 및 동물약품(농업부·보건부), 방송기자재(정통부) ○ 국제협약상 보호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 위기 동물, 보호 동식물, 고고예술품 ○ 레저용 선박 및 제트 스키의 경우 여행목적 및 3개월내 사용조건으로 통관허가증을 취득하고 세관에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반입 가능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등

모든 국가에 대해 원산지 증명 제출(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 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아랍어) 하였다.

- 동·식물 수입: 검역관계 확인 서류, 보건당국의 수입허가증
- 의약품 수입: 보건당국의 허가
- 화학약품 수입: 관련당국의 수입허가, 안전하여 방안
- 정기간행물·특별간행물: 관련당국의 허가
- 영화: 관련당국의 허가(필요시 검열)
- 측량단위 수입: 관련당국의 사전 검토
- 전쟁물자가 아닌 무든 무기류 수입: 관련당국의 허가
- 폭발물 수입: 관련당국의 허가
- 식품 수입: 품질보증서, 균질보증서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2009.10.26일 상무부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은 11.2일부로 알제리에 수입이 금지된다(원산지 직수입 자동차 부품만 수입 가능). 이러한 규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이다.

그러나 원산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은 예외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원산지로부터 라이선스를 득한 후 제3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규제내용에 부합하

지 않는 부품들은 통관 시 검열에서 반입이 금지된다.

현재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81%는 중국, 프랑스, 이태리, 대한민국, 독일에서 수출 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이 가장 많다. 자동차부품 복제품에 대한 법안은 2002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이 의도한대로 통관 시 검열이 정상적으로 될 지 예의주시 할 부분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알제리 세관법 제8조는 덤핑 수입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을 수혜한 모든 상품과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수입품 등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업 규제

2009.7.26일 대통령 칙령(Ordonnance 09-01)을 통해 공포한 ‘2009 수정재정법(2009.7.26 공포, Loi de Finances Complémentaire pour 2009)’은 알제리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에 대해 보유 지분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중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동 상품에 대한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알제리 국내 시장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상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알제리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제3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등 상품수입 및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검사·Labeling

현재 표준·검사·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만 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통과 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 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이며 비자 획득에는 1~2년이 소요된다(관련법령: Regulation No. 92-284 of July 6, 1992 Article 12).

이외 가축용 의약품도 알제리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관련 법령 Décret Exécutif No.90-240 du 4/08/90). 식품류도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일부 화학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투자촉진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그동안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1994년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시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02년 재정법으로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당 2.50디나르) 또

는 신설(휘발유 1리터당 1디나르)하고, 환경오염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소각 장치 등 환경보호설비를 갖출 것을 의무화 했다.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 선진국 수준의 세부적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식료품 등은 수입허가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물품의 가격, 판매자의 계약상 책임한계 및 판매의 제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법적의무는 없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 의약품의 안전성, 축산품의 위생문제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정부,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호(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등이 보호된다.

산업발명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특허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관련법령: Ordinance No.03-07 of July 19, 2003 및 Decree No.05-275 of August 2, 2005).

특허대상 품목은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특허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등을 통해 보호된다.

산업특허는 Alger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Institut

National Algérie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API)에 출원하고, 특허 공식게시판(Bulletin Officiel des Brevets)를 통해 공표된다.

상표(Trademarks)는 Ordinance No.03-06 of July 19, 2003 및 Executive Decree No.05-227 of August 2, 2005에 의해 규정되며, INAPI에 등록해야 한다.

상표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개월~2년의 징역과 250만~1,000만디나르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거나,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학적·예술적 재산권 (literary or artistic property rights)

문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적·예술적 재산권은 Ordinance No.03-06 of July 19, 2003에 의해 보호된다. 경제적 권리는 작가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 관련 사항은 저작권 국가사무소(ONDA)에서 관리한다(www.onda.dz).

투자 장벽

투자 여건

투자관련 법령은 'Ordinance No.01-03 of August 20, 2001'이며, 투자의 정의는 제4조에 그리고 내국민대우 조항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제14조에는 내국민대우 조항을 규정한 외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투자국과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따른 대우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제 금융 위기 이후 2009년 추가재정법의 제정을 통해 수입시 L/C 제출 의무화 및 원산지 규정 강화,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외국인 투자시 합작투자 의무화(자국 기업 51% 지분 보장), 공공사업 입찰시 자국 기업 인센티브를 15%에서 25%로 상향 조정 등 자국 기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투자 보호

상기 투자법령 제15조에 따르면, 투자가 이루어진 후 발생한 법의 개정 및 폐지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제16조는 징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의한 징발은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당하고 공평한 보상(fair and equitable compensation)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중재 재판

투자자와 알제리 정부와의 분쟁발생시 재판 관할권은 알제리 법원에 있으나, Legislative Decree No.93-09 of April 25, 1993에 의해 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알제리 정부는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다음 협약에 가입하였다.

- Convention of June 18, 1965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pertaining to investments between countries and nationals of other countries (Ordinance No.95-04 of January 21, 1995)
- Convention of September 1986 pertaining to the creation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Ordinance No.95-05 of January 21, 1995)

과실 송금

Ordinance No.01-03 of August 20, 2001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 유입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투자된 자본과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 송금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산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며, 투자를 위해 알제리로 유입된 자본만이 송금 가능한 자본과 수익 산출의 근거가 된다.

알제리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알제리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이 이윤배분 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알제리 국내생산 장려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몇몇 분야에서 포착된다. 부테플리카 현 대통령 취임 이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 시장 개방, 폭넓은 투자유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왔으나 Djezzy사의 제3국 매각 등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사 이익 선점 등으로 인하여 알제리 국내 산업발전이 저조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지나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알제리 내 산업생산을 장려하고자 2009년에 이어 2010년 추가재정법(LFC)에서 보호주의적인 정책 다수가 입안되었으며, 아래 몇몇 조치들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1) 대외송금 절차

대외송금의 경우 송금 30일전에 송금검증신청서를 제출해 송금 검증을 발부받아야 대외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검증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송금액의 25%를 벌금으로 징수가능하다. LFC2009가 배당금 송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LFC2010에 명시된 조항은 자재구입, 서비스 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송금에 대하여 알제리 당국의 관리수단 및 직권 조정 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 동 비용에 대한 공제는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2) 수입건설기기에 대한 특별 종량세 부과

2010.9.1일자로 알제리로 수입되는 건설기기에 대해 품목별로 4,054~9,459달러의 특별 소비 종량세가 부과된다.

* 특별소비 종량세

- 건설기기를 알제리로 수출 시 관세를 납부하고 VAT 17%까지 완납 후 최종소비가 품목별로 약 4,000~9,000달러의 특별소비세를 부담을 규정
-

- 과세액 30만디나르(약 4,054달러)

품 목	HS CODE	기 타
원심펌프, 모터펌프 등	841370	
기타펌프	841380	관세 30%
수지식취관	846810	
가스용접기, 가스자동절단기	846820	
납땀용, 용접용의 기기	846880	
납땀용, 용접용의 부분품	846890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8504	
전기식 레이저 또는 광선식 납땀 또는 용접용의 기기	8515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870540	

- 과세액 50만디나르(약 6,757달러)

품 목	HS CODE	기 타
증기, 모래취사부 제트분사기	842430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원치	842531, 842539	
타워 크레인	84262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842630	
기타 크레인	842641, 842649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84281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20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31~9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842840	
텔레페릭, 의자 양하기, 스키용 드래그 라인, 퓨니쿨러 용 견인장치	842860	
광산용 왜건푸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화차 경사기 및 철도화차 취급 장비 등 기타의 기계	842890	
항타기와 항발기	84301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러어	843020	
시추기	843049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 조괴기, 형입기, 성형기 등	8474	
섀매	871680	관세 30%

- 과세액 70만디나르(약 9,459달러)

품 목	HS CODE	기 타
불도저와 앵글도저	842911, 842919	
그레이더와 레벨러	842920	
스크레이퍼	842930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2940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842951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 기계	842952	
기타 메커니컬 셔블	842959	
탬핑용, 콤팩팅용 기계	843061	

* 상기 리스트는 가이드라인으로 더 세부적인 사항은 HS Code 자릿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리스트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관세율 5%, VAT 17%

(3) 일부 식료품 수입 금지 규제 강화

2010년 하반기부터 알제리 국내 식료품 제조기업을 보호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 식료품들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미 지난 7월 각료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수십개의 제품 수입 금지품목을 선정, 국무총리령을 준비 중이다.

(4) 수입의약품 규제 강화(국내 생산 의무화 등)

2011.1월부로 알제리 내 의약품 수입 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 수입업자들은 통관 시 수입품목 유사성 및 거래물품을 무역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알제리 국내에서 재정활동을 정당화하는 이전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수입비용 지불을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동 규제안은 알제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의 일환이다. 의약 관련 공기업인 SAIDAL의 생산능력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그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의약품의 알제리 국내생산을 70% 까지 높여려는 계획의 초안이다. 실제로 2009년에 알제리 국내 생산이 27%

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4억5365만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동 규제는 대통령령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몇몇 조치들을 신설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약품 기구를 설립하고 의약품 전문가와의 면담 강화를 통한 실제 의약품 시장상황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알제리 의약품시장을 보다 더 잘 조직화하기 위한 보건부 산하 의약품 총괄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곧 국내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의약품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국내 생산 및 조달을 목표로 한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금융혜택 마련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수입금지 품목 다변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투자진출 제한분야(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알제리 정부는 고유가의 지속 등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석유 자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05.4.28일에 제정된 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내용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에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하고 의무화하여 외국회사와의 합자회사 설립 시, Sonatrach의 지분을 최소한 5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5년도 법은 Sonatrach이 20~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개정법령은 고유가의 지속에 기인한 예외적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생산량에 따라 5~50%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수익의 기준은 Brent 유가의 월평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세부 적용절차와 조건은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작투자 의무화

정부발주 공공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알제리 기업과 합작투자가 요구된다. 컨소시엄은 투자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알제리 파트너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알제리 국적의 기업이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51:49). 규제의 구체적인 적용 절차 등 이행규정은 재무부와 상무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동 투자 방식과 관련하여, 당해 입찰 사업 수주 후 시공과정에서 조인트 벤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나, 수주 사업과 별개의 투자 사업을 동일 분야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댐 입찰의 경우,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댐 공사 일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포함되지 않는 댐 관련 자재 생산 등을 위한 투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주 시 투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응찰서에 적시하여야 하며, 향후 현지 파트너와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여 투자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 투자목적으로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
-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TVA)를 면제
-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다음의 혜택들은 알제리 정부가 관여하는 투자사업과 항만, 공항, 도로, 수자원관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사업에 부여되며, 투자이행 단계와 투자이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1) 투자 이행 단계

-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 회사 물품과 자본금 증액의 등기비용에 낮은 세율 적용
- 투자의 이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의 이행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 적용

(2) 투자 이후 단계

- 법인세, 종합소득세, 급여세, 직업세, 부동산세 등을 10년간 면제
- 결손금 이월(loss carry-over), 감가상각 연장(depreciation extension)을 통한 추가 혜택도 가능

공공 입찰시 자국 제품 인센티브 확대

2010.10.7일 관보 58호에 게재된 13조, 23조에는 “건축, 타당성조사 등의 공공입찰 시 알제리산 제품 및/또는 알제리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알제리 법인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특혜 마진이 부여됨” 조항이 신설되었다.

투자촉진 기관

(1) 국가투자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 Investissement)

총리가 주재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전략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 투자에 부여되는 혜택에 대한 제안
- 투자지원과 촉진을 위한 결정 및 조치를 제안

국가투자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구는 아니며,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투자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는 투자개발청(ANDI)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위원회의 구성·조직·임무는 Decree No.01-281 September 21, 2001에 규정되어 있다.

(2) 투자개발청(ANDI)

ANDI는 법인격과 독립재정을 가진 기관으로 총리 산하기관이었으나 최근 산업 및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투자촉진부(Ministère de l'Industrie et de la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었다.

ANDI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촉진·개발·후속조치를 담당한다.
-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투자의 투자약속의 이행을 확보한다.
- 투자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한다(one stop service).

2008.9월 말 수도 Algiers를 비롯하여, Blida·Oran·Constantine·Anaba·Ouargla 등 6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단일 창구(Le guichet unique; One-stop shop)

기업의 등기 절차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율리야(‘주’에 해당하는 행정구역)를 중심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설치하였다. 이것은 ANDI, CNRC, 국유 재산 관리국, 세관, 세금, 도시화, 토지 개조, 노동 환경의 각 지방 대표자와 단일 창구가 위치한 지역의 APC 대표자가 담당한다. 법령 06-356에 의하여, 각 대표자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게 된다.

비거주 투자자는 입법자의 특정 대상이 된다. 첫 번째로, 지방의 단일 창구(GUD) 대표는 비거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교섭 상대를 구성한다. 두 번째, GUD 대표는 투자자를 책임져야하며, 투자 신고금과 이익 부여권을 만들고 지급하며 보증해야한다. 세 번째, GUD 대표는 GUD에서 조사한 서류에 책임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종료까지 보장해야한다.

GUD가 발급한 모든 서류와 행정 절차를 따라야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투자법이 정정됨에 따라 GUD는 CNI 및 ANDI를 통해서만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GUD는 현재 알제리 내에 총 14개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된 지역으로는 Adrar, Alger, Annaba, Batna, Bejaia, Blida, Constantine, Laghouat, Oran, Ouargla, Saida, Setif, Tlemcen, Tiaret가 있다.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Ordinance No.95-22 of August 26, 1995가 제정된 이후 6년 만에 공기업의 조직, 경영 및 민영화에 관한 과감한 정책(Ordinance No.01-04 of August 20, 2001)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민영화에 있어서 전략분야의 기업과 경쟁분야의 기업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두 가지 분야의 공기업이 공히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개선, 신기술도입 및 부채축소를 들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자원 마련을 위해 지주회사(Société de gestion des participations)를 통해 심도 있는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제리 경제에 기여하는 민영화(beneficial privatization)를 선호한다. Ordinance No.01-04 of August 20, 2001의 제17조는 ‘공기업을 인수한 자가 이윤을 내고, 기업을 근대화하고 종업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영화에 앞서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평가(evaluating enterprises)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평가는 주로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현재가치에 기초한 자산기초평가(asset-based valuation)
-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discounted future cash flow)
- 주식시장에 기초한 평가

이 중 민영화의 약 90%가 자산기초평가에 의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영화가 항상 이러한 가치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의에서 채택된 민영화 계획의 이행은 산업투자촉진부장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민영화 절차

공기업의 민영화는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주식 시장을 통한 민영화

주식 시장에서의 상장 혹은 상장된 주식의 거래를 통한 민영화 방법이다. 주식이 이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주식을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알제리의 경우 현재까지 Hotel El Aurassi, 제약회사인 Sidal Enterprise, 밀가루 제조회사인 Eriad de Sétif 등 3개 기업만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상장 주식도 전체주식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민영화 대상기업의 주식관련 정보가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알제리 주식거래위원회(Algerian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COSOB)가 양도할 주식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2) 입찰

대부분의 민영화의 경우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후 해당 기업을 입찰에 부치고 잠재적 구매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종업원 500명 미만의 기업의 민영화는 지주회사(SGP)의 감독하에 민영화 협상이 진행되고, 500명이 넘는 기업의 경우는 산업투자촉진부장관의 감독하에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을 통해 민영화 조건이 합의되면 동 합의는 투자위원회에 제출되고 위원회에서 제안의 수락여부가 결정된다. 알제리 정부는 2007.9월에 ENIEM, EVSM, ALFON 등 6개 지주회사 소관 13개 기업에 대한 민영화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입찰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 동 사이트들은 유료로 운영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가입 관련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http://www.algeriatenders.com>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국제입찰정보 검색 가능)

<http://www.baosem.com>

(에너지·자원 분야의 입찰정보 검색 가능)

<http://www.anep.com.dz/bomop/bomop/bomopp.html>

(에너지·자원 분야를 제외한 해외입찰정보 검색 가능)

(3) 투자자와의 계약

국가가 투자자와 직접 협상하여 기업 가치를 결정하고 민영화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4) 공모주

사전에 결정된 가격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토지의 조차 및 양도

과거에는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에 대해 22년 간 조차를 허용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실현한 후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8.9.1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토지 조차기간은 늘리되 소유권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를 1회 33년(갱신가능), 총 99년 간 조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아래 토지에 대해서는 조차를 금지하고 있다.

- 농업용 토지, 광물 탐사·개발 지역,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지역, 전기·가스 시설물 보호구역,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건설 및 토지개발 진흥구역, 문화·고고학적 보호구역

또한, 추가재정법 2010에 따라 기존의 2001~2003 행정명령 조항을 보충하

여 양도 계약 시 국가의 선매권 행사토록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국 기업이 소유 지분 양도시 국가가 선매권을 행사를 결정하면, 기업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실행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행해진 양도계약의 경우도 국가 선매권에 따른 권리 포기증명서 발급의무를 제정하였다. 동 증명서는 제출요구 기한 한 달 내에 공증인을 중개로 교부받아야 한다. 양도 총액 한계 초과 시, 이 거래는 해당 기업의 지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선매권 행사는 국가가 취득자를 대신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동 선매권에 따른 매입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유권 양도와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 조항 10조에 따르면 소유물 양도세의 1/2를 법무사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기존에 소유주와 법무사 사이에 거래된 총 양도세가 1/5에 불과하는 등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국가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이 밖에도 회사 지분의 양도, 설립과 변경, 무상교부, 외자에 의한 설립, 자본 증가 등에 있어서도 양도세 납입 의무를 확장하였다.

고용

2001.8월 시행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투자자는 어떠한 제한규정 없이 내·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단 수출자유단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총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도급세를 내야하며 사회보장세를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장벽

비자 발급

알제리 입국을 위한 비자 취득은 양국 주재대사관의 긴밀한 협조로 1주일 내에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알제리 사업 파트너나 초청기

관이 없는 경우에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알제리한국대사관 또는 KOTRA 알제리 무역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처리

알제리에서 영업활동에는 행정처리 업무가 많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치안상의 문제

199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소로 대외적으로는 이미지 손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2005.9월 ‘평화 및 국민화합 현장’을 통한 화합정책을 통해 테러위협이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테러잔당들이 주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만큼 지방 이동시에는 사전에 대사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 문제

알제리의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상업 활동에는 불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만큼, 시장조사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불어통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불 통역의 경우 알제리 현지에서 우수한 통역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통역은 가급적 한국 또는 프랑스에서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부 입찰의 경우 영어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어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실정이다.

교역관련 국가기관

알제리 수출의 98%를 석유·가스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일반상품의 교역비중이 낮아서 교역관련 국가기관 중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부서는 알제리 에너지광물부이며 국영석유공사인 Sonatrach이 알제리 경제

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알제리 통상부 산하 공기관인 알제리 수출진흥기관(PROMEX)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기능을 확대 개편 중에 있다.

■ 무역·투자 관련 주요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주요기능
알제리통상부 (Ministère du Commerce)	www.mincommerce.gov.dz	대외무역진흥 정부부서
알제리수출진흥기관 (PROMEX)	www.algexport.com www.promex.dz	수출진흥지원, 해외시장정보전파 등
알제리투자개발청(ANDI)	www.andi.dz	투자정보제공
관세청(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www.douane.gov.dz	관세율, 수입제도 변경 등
에너지광물부(Ministère de l'Énergie et des Mines)	www.mem-algeria.org	원유가스 산업정책 국제입찰
국영석유회사(SONATRACH)	www.sonatrach-dz.com	원유·가스생산 판매 유통
지식재산권보호기관(INAPI)	http://www.inapi.org	지식재산권보호 특허등록

알제리의 주요 법령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www.lexalgeria.net/>

<http://www.joradp.dz/HFR/Index.htm>

앙골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앙골라의 수입상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부(Ministério do Comércio)의 수입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수출입업의 대행업자 또는 사무소는 무역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입상은 수입면허 및 납세자 ID 카드를 받기 위해 무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면허는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입상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앙골라는 2002년 내전 종식 이후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2002~2004년 동안 평균 17%에 이르던 수입관세를 14%까지 인하하였으며 수출관세도 대부분 폐지했다. 이와 함께 2005.1월 시행된 신관세법을 통해 관세장벽 제거를 가속화하고 있다.

앙골라는 HS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앙골라 정부는 2005.1월 신규 관세제도를 발표(같은 해 4월부터 발효)했다. 앙골라 수입관세는 2%, 5%, 10%, 15%, 20%, 30% 등 6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부과금으로는 소비세(2~30%), 수입인지세(0.5%)와 함께 세관인건비,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등이 있다.

통관절차상 장벽

(1) 수입 절차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무역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2) 통관

그동안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으나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 처분 하는 등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앙골라 정부의 선적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는 상품 운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식품, 의약품, 오일, 중고장비 등의 경우 선적전 검사(PSI)가 요구되며, 선적전 검사서가 없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최대 상품가격의 100%까지 부과 가능)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수출지 컨테이너 선적 전 검사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중 1) 동물, 식물, 채소, 과일, 의약품 및

각종 음식류 2) 중고장비 및 부품 3) 기타 양골라 관세청에서 지정한 품목은 반드시 수출지에서 양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과 함께 컨테이너 도착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절차

수입업자는 양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는 이 번호를 가지고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기관은 검사 상태를 양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 하게 되며, 양골라검사소에서 통관에 필요한 CRF라는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양골라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공개 부족, 입찰과정의 불투명성 및 국제기준 미준수로 인해 기업들의 입찰 참여비용이 크다.

지적재산권 보호

양골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가맹국이다. 양골라는 최빈국으로서 2013년까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완전 이행에 대한 시한 연장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특허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양골라는 아프리카지역지적재산권기구(ARIPO)에는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는 않았다. 양골라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산업부(상표, 특허, 디자인)와 문화부(저작권, 지식 및 예술권)에서 관할하며 지적재

산권은 '산업재산권법(3/93)'에 의해 보호된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앙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포르노관련제품, 도박장비, 유독성제품, 의약품 등이다.

앙골라 정부는 유전자 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된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 외국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암묵적 제한

외국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앙골라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 앙골라 정부는 종종 비공식적으로 앙골라 국내기업과 합작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2) 신속하지 못한 외국기업 등록절차

앙골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2003.8월에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면허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앙골라 법률은 외국기업 등록절차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3) 관료주의

유관부서 또는 파트너와 사업 추진 시 관료주의 또는 현지 관행상 일정이 자주 변경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현지법인 설립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국산화의무 부과

앙골라 정부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앙골라 제조업이 음료,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선박구조물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부품 등 제조 산업이 부재 또는 미미해 국산화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앙골라 투자법상의 투자승인가간은 10만~5백만달러 투자의 경우 15일내, 5백만달러 이상의 경우 30일 이내에 투자승인이 나와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10만달러 미만 자본 투자의 경우 ANIP(앙골라투자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소유권관련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1975년에 독립하면서 포르투갈인들이 포르투갈로 귀국하거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소유권 귀속 관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한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한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초기 투자금을 한국 본사로 반환하기 위한 송금을 현지 은행에 요청하였으나 송금이 제한된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2009년 들어 앙골라의 외환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이루어진 정책적인 제한으로 보여 진다.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대상인지를 현지 거래 은행에 문의해 확인을 받아야 추후 발송할 송금 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2)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현지 기업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수도 루안다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금융시장 접근이 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애로사항은 주로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담보물 불인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자체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자금의 경우 대기업은 은행을 통하여 25%를 조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기타 장벽

(1) 비자발급

앙골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앙골라 파트너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통상 비자유효기간은 1~3개월이며 추후 1년짜리 노동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 인프라 미비

앙골라는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가 황폐화되어

전력 및 식수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바, 외국기업들의 경우 자체 발전기 및 식수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기업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3) 부품 등 중간재 부재

앙골라 국내 제조업은 음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부품 및 중간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4) 세계 최고수준의 물가

앙골라의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이 거주하기 편리한 지역의 주택임차료가 월 9,000달러 이상 수준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및 사무실 유지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개선실적

앙골라 정부는 내전종식 후 국가재건 및 국내 자체 제조업 발전을 위해 건설, 농업개선, 자동차, 섬유, 신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및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멘

상품교역 관련 무역장벽

외국인의 무역업 종사 권리

외국인도 예멘 내 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를 통해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예멘 정부는 외국인이 예멘 내 무역회사 설립시 투자지분 상한(45%)을 철폐하여 외국인은 예멘인과의 합작 없이 예멘 내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예멘에 수입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인보이스 및 위생검역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관세

2010년에 제정된 새로운 관세법은 관세면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유연성을 개선하였으며 밀수 및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산업투자와 관련된 수입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의 관세 인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예멘의 2012년 말 WTO 가입에 따라 관세의 안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멘의 상세 관세 정보는 웹사이트(www.customs.gov.y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개인물품, 기증품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수출국 상공 회의소가 확인한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 적시 상업송장)가 첨부되어야 한다.

예멘은 원산지 판정시 '상당한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

teria)을 적용, 생산품 가격의 40% 이상이 투입된 지역을 원산지국으로 하고, 이를 사우디 및 이라크와의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고 있어 사우디에 생산기지를 두고 예멘에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평가

수입업자는 예멘 당국의 관세평가(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가격 결정)에 대해 서면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부여된다.

수입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예멘 관세청 및 수입업자를 각각 대리하는 2인 전문가 위원회에 회부되며, 동 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정부, 관세청, 예멘 상공회의소가 임명하는 3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법인세

2010년 제정된 새로운 법인세법(Law No.17)은 기본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 세율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 적용된다.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업에 대해서는 50%, 국제통화 서비스 공급업, 담배제조 및 수입업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며, 석유 및 가스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탐사단계에서 3%의 고정세율이 부과된다.

종업원 3~9명을 고용하는 연매출 150만 리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10~20%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연매출 150만 리얄 미만의 소규모 기업(종업원 3명 미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수입품(서비스 포함)은 예멘 국산품과 동일하게 일부 품목(서비스)을 제외하고 5%의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과된다.

- 담배(90%), 카트(20%), 총기 및 탄환(20%), 금가공품(2~3%), 이동통신 서비스(10%), 국제전화서비스(10%)의 경우 별도의 세율이 적용

- 밀 및 밀가루, 쌀, 의약품, 금원광, 여행객 소지품, 지폐 및 동전, 수출품은 판매세가 면제
- 금융, 보험, 의료, 교육, NGO, 내륙육상운송, 부동산 임대, 상하수도, 전력, 역사유적지 복구, 청소·환경미화, 순례, 하급 숙박업 및 수출 서비스도 판매세가 면제
- 예멘은 부가가치세제를 갖고 있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음.

예멘 상공회의소는 판매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판매세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멘 정부는 역사유적 보전 및 문화발전, 청소년 체육, 장애인 및 재활, 도시 관리 등의 기금조성 목적으로 국산 및 수입품에 구별 없이 우유, 과즙, 생수, 음료수, 담배, 시멘트, 기초식료품 등에 국내세를 부과한다.(예멘 국제청: www.tax.gov.ye)

기술 및 위생 장벽

예멘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정합성 여부는, IFIA 인증 BIVAC 및 Cotecna 사가 예멘 정부와의 계약 하에 검사 및 인증서 발급을 대행하며, 수입업자들은 대체로 ISO, IEC, ISO/IE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및 Yemen 정부의 환경, 보건, 소비자 안전 관련 기준 및 표준을 따를 것이 요구되며, 예멘 표준계량 기구(YSMO: Yemen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는 정합성검사 대상품목을 웹사이트(www.ysmo-ye.org)에 게시하게 된다.

위생검역 조치 관련, 예멘내 주요부서는 농업관개부, 보건인구부, YSMO로 농업관개부는 식물 및 동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며, YSMO는 동물 및 식품 관련 기술표준 정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서비스 분야 규정

법률서비스의 경우, 소송의 제기는 예멘인 변호사만이 가능하며, 외국인 변호사는 예멘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연 2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법무부의 허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이 또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국가의 변호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예멘에는 대규모 법무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규모의 법률사무소들만이 영업하고 있다.

회계감사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회계·감사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나 1인 이상의 예멘인 회계사와 공동(파트너)설립해야 하고 모든 파트너는 예멘당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임원 중 1명 이상이 예멘인이어야 하고 기타 직원의 3분의 2가 예멘인이어야 하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유명 외국계 회계법인들이 예멘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영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이 허용된다.

전화통신서비스 관련, 국제전화서비스는 정부(TeleYemen)가 독점 공급자이며 유선통신망(Public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 및 국제·국내 위성통신망도 정부(TeleYemen, Public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가 독점 공급하나, 외국인은 이동통신서비스(국제위성개인이동통신서비스를 포함)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입법규제가 없다.

은행·보험 서비스의 경우,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를 상업은행의 경우 4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은행이 예멘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고, 60억리얌을 지점 및 사무소에 송금하고 및 중기 운영계획을 예멘중앙은행에 제출, 중앙은행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예멘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고용허가서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체류비자는 고용허가서가 있어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나 매년

12,000리얄(6만원 상당)의 수수료 지불로 5년 간 갱신이 가능하다.(2.5만원 상당의 기술훈련기금 지불도 필요)

예멘은 WTO 가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비스 분야 양허안에서 총 155개 하위 분야 중 57개 분야에서만 양허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허수준이 낮는데, 특히 건설과 유통 분야는 전혀 양허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서비스 및 운송서비스에서도 양허수준이 낮다.

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2010년 투자법 (Law No.15)

예멘은 2010년 투자법(Law No.15)을 통해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투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예멘 투자청(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이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무기 및 폭발물 제조업을 제외한 국가경제의 모든 분야에 자유롭게 투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석유, 가스, 광물, 은행, 외환, 수출입 및 소매업은 해당 분야 개별법의 규제를 받으며 기타 일반 산업 및 상업 분야의 투자에 적용된다.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분야의 투자 또는 영업 활동이 금지됨은 당연하다.

예멘은 외국 투자자에 대해 투자분야 선정, 합작투자 규제 등에 있어서 내국 민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투자법에 의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의 매매, 임대차 등이 허용되며, 외환송금의 자유도도 폭넓게 인정한다. 외국국적의 피고용자도 송금의 자유가 인정된다.

또한, 이 법은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법은 원칙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또는 그 자산의 국유화 또는 몰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해 국유화가 필요한 경우 비차별

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한다.

국유화시 보상액은 예멘 정부와 투자자간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멘상업법원을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보상액은 국유화 발표시점에 투자 프로젝트 및 자산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액은 18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투자자는 자산가치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예멘 정부는 외국투자자가 지급받은 보상액의 외환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법은 투자분쟁 해결 조항도 갖추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법에 따른 투자분쟁은 예멘 상업법원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중재에 회부될 수도 있다. 중재 시에는 여타 국가 또는 지역 중재센터의 절차규칙을 원용할 수도 있으며, UNCITRAL의 중재규칙을 채택할 수도 있다.

투자절차

투자자는 투자청에 투자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투자허가를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의 영업허가 서류도 필요하다. 투자청은 신청서 등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투자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국산화의무 및 수출의무

예멘은 자재, 장비 및 인력사용 등에 있어서 국산품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의무 사항은 없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예멘 투자청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고 있으며, 투자신청이 이루어지면 15일 이내 심사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허가를 신속히 받기 위해서는 투자 절차와 관련된 경험이 많은 현지 전문가와 협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상의 혜택

예멘은 투자에 따른 과실 송금 상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수산물, 가축 및 농업 생산과 관련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관세 및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그 이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관세를 50% 감축해 주고 있다.

면세기간은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 예멘인의 지분 보유 정도 및 국산화 비율에 따라 7~16년으로 상이하하며 국산화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2년의 추가적인 면세 기간이 부여된다.

자유무역지대 특례

남부의 대표적 전략항구인 아덴에는 자유무역지대(Aden Free zone)가 있다. 이곳으로 수입되거나, 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이 지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입세, 수출세, 생산세 및 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유지역에서 활동한 기업과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15년 동안 면제되며 이러한 면세 혜택은 정부 각료회의 승인 시 10년간 연장된다.

자유지역 근무 외국인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되고 자유지역에서는 외환통제가 없으며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우며, 자유지역에서는 국산품 사용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예멘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관세와 세금 부과 등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같은 제반 세관 절차가 진행된다.

외국인의 회사 및 지점 설립 등록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은행업, 항만·공항·공공시설 및 주거단지 건설사업, 석유·광물·산업·농축산 및 어업 투자, 관광 및 숙박업, 기술자문 서비스, 기타 내각에 의해 승인된 영역 등이다.

영업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상업등록부, 법인설립 증명서류, 전년도 회사재무상태 입증서류, 외국소재 본사 경영자의 대리권 위임 서류, 예멘 내 관련 부서의 승인서류, 예멘 내 은행에 3만달러 이상의 예치금 입금서류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여 정확한 구비서류는 정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업허가 절차

우선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서에는 회사명칭, 주요 영업분야, 자본금 및 예멘 내 사무소 주소, 관리자 성명 및 직함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된다. 통상산업부의 외국기업 등록 담당자는 동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련 부처에 이송하여 검토토록 한다.

관련 부처의 검토가 완료되면 통상산업부는 내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신청서의 규정합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신청서가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업허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적 검토의견과 함께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영업허가가 발급되면 등록비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법제부(Ministry of Legal Affairs)에 영업허가 사본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하여 법제부 발간 관보에 영업허가 사실을 등재토록 한다. 아울러, 영업허가가 발급된 회사 지점에 대한 정보를 내부 등록하고 관련 등재기록부에 등재한다.

외국인이 예멘에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멘 상공부에 등록(비용이 약 35만원 소요되며 5년간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매년 등록 갱신에 약 10만원 소요), 상공회의소 회원가입(연간회비 약 55만원), 사무소 소재 지방청에 등록(약 25만원 소요),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예멘 정부 부처에 등록(약 25만원 소요)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예멘은 2009년 외국인 부동산소유법(Law No.23)을 통해 외국인의 토지와 건물 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은 동 법에 따라 예멘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부동산으로서는 외교공관,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 및 주거지, 문화 및 교육 시설 등이며, 이렇게 허용된 부동산에 근거하는 일정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고학적 유적지 또는 종교적 장소, 국경지역, 무인도, 또는 기타 예멘국민들의 토지소유가 금지된 역사적, 자연적 유산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주요 도시에 한정되며 일정한 건축 및 투자, 관광, 주거 프로젝트의 요건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소유될 수 없다. 특정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관청의 허가를 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해당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동 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특정 허용활동이나 주거용도 부동산이 아닌 투자 또는 자유지대 관련 부동산은 해당 투자법률 또는 자유지대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된다. 국유지는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수 없다. 공공복리, 국가경제적 이유, 또는 기타 대통령이 허가한 경우에는 무상이전이 가능하다.

5천만리얄(약 2억5천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은 예멘 입국허가 및 2년의 거주허가가 발부된다. 이 거주허가는 갱신가능하며 부동산 소유 등 원사유가 소멸할 경우 거주허가도 함께 소멸한다.

WTO 가입

예멘은 2012년 말 WTO에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WTO 가입을 위해 예멘은 투자, 세제, 관세, 교역, 지적권, 기술표준 등의 분야에 대한 법령을 지속 정비하여왔다.

예멘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예멘에 대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산업기계 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실행관세(5~10%)가 예멘 경제여건에 따라 양허관세(20~25%) 이상으로 인상되지 못하는 국제무역규범상 안정성이 확보되며,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수입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등 무역장벽이 가입 즉시 또는 일정기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철폐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수입부과금

각종 기금 조성 명목으로 건별 또는 박스별로 부과되던 수입부과금도 수입 가격의 0.25%로 단일 부과되다가 일정 이행 기간을 거쳐 철폐될 예정이며, 국내 생산품에 비해 높게 부과되고 있던 수입 관련 수수료도 국내 생산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수입금지 조치 철폐 및 수입제한조치 완화

커피, 망고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토마토, 감자, 상추, 당근, 오렌지, 레몬, 포도, 메론 등에 대한 계절별 수입금지 조치도 가입과 함께 철폐될 예정이다.

종자 및 비료수입, 의료장비 및 의약품, 화약류 등에 대한 수입허가서 발급 수수료도 기존의 수입가격에 비례되어 부과되던 것을 검역,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고정 요금을 부과하고, 살충제 수출허가에 대한 종가세도 고정요금으로 변경, WTO 규정에 합치해나갈 예정이다.

무역관련 국내정책

해외투자자와 관련 국내산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세금 및 관세감면 정책도 2010.9월 신 투자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조금도 가입과 함께 철폐토록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예멘은 1994년 일반지재권법을 대체, 저작권,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실용실안, 컴퓨터 직접회로,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분야별로 WTO/TRIPS 등 국제 지적재산권 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체법을 입법 준비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및 민·형사 집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영기업

유선전화, 국제전화, 상하수도, 석유천연가스 관련 국영기업은 WTO 국영기업 관련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회사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요르단

요르단 경제 개관

경제 성장 과정

- 1970년대: 급격한 유가상승 속에서도 아랍 국가들의 원조 및 걸프지역 근로자 송금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
- 1980년대: 대외 여건 악화와 국내 경제조정 실패 등으로 1989년 IMF의 관리체제 경험
- 1990년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악화, 이라크 전쟁 등 지역정세 불안 등의 악재 속에 경제성장 폭이 크지는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국가
- 2000년대: 강력한 경제개혁·개방정책, 세제·투자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 10% 이상의 수출신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연 5% 이상의 고속성장
-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성장률이 하락한 후, 2010년 3.1%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중등소요 및 1차 상품가 상승 등으로 다시 성장률 둔화
- 2011년 초반부터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 불안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
- 2012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20억달러 수혜

경제 구조적 특징

(1) 서비스 산업에의 의존

요르단 경제는 협소한 시장 및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서비스 산업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제조업 등 2차 산업은 20%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 2010년 분야별 GDP 기여도(* 중앙은행 연례보고서)

- 제조업: 19.7%, 농수산업: 4.2%, 광업: 2.7%, 금융·부동산: 21.1%, 운송·통신: 18.1%, 호텔·도소매: 11.9%, 정부 및 기타 서비스: 14.5%, 건설 5.5%, 전기·용수 2.1%

(2) 만성적 적자재정 운영

요르단은 여타 중동국가와는 달리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거의 없어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요르단은 세계 3위의 인산염(phosphate) 생산국이며, 가성칼리(potash) 매장량도 풍부하다.

반면, 기초 식료품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인건비, 국방·치안 및 국공채 이자 비용 등으로 정부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재정적자 규모는 2003~2005 기간 중 평균 GDP의 7%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4.4%를 기록하였다. 2007년의 경우 재정적자를 GDP의 3.4%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고유가로 인해 5.5%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요르단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2010년 재정적자는 1,046.4백만 JD를 기록, 2009년 1,509.3백만 JD에 비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지속된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2012년 재정적자는 5,000백만 JD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 대외 의존

요르단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①해외 거주 요르단인의 국내송금액(연 평균 40억달러), ②관광수입(연 평균 10억달러), ③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연 평균 7억달러 내

외)로 경상수지 균형 유지하고 있다.

- 관광수입은 GDP의 7~10% 점유
-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grant)는 연 평균 6~7억달러를 기록

최근 경제 동향

(1) 성장 및 산업 생산

요르단 경제는 2006년 실질 GDP 성장률 8.2%를 정점으로 매년 하향세로 돌아서다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는 2.3%까지 성장률이 하락한 후 회복세를 보여 2010년에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 중동소요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해외송금액 감소 및 1차 상품이 상승 등으로 다시 성장률이 둔화되어 2011년 성장률은 2.5%(IMF) - 3.0%(재무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전망)
실질GDP성장률	7.6	5.5	2.3	2.6	2.8

자료원: 요르단 재무부

(2) 소비자 물가

2006년 4차례의 유가인상 조치와 부동산 가격 급등, 주식 자산 가치의 상승 등이 겹치면서 전년 비 6.3%가 상승, 2007년 중 정부의 강력한 긴축조치로 인해 5.4%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8년 국제 유가 급등과 유가 보조금 전면 철폐,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문별로는 음식료와 주택 부문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다.

유가 보조금 철폐와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가 상승, 달러화 가치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 2008년 말까지 전년 동기대비 15% 가량 폭등했던 소비자 물가는 4/4분기 이후 물가 인상 요인이 점차 진정 되면서 하향 안정기조로 반전 되었으며 2009년에는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과 미달러화 강세에 따라 전년에 비해 0.7% 물가가 하락하였다.

2010년에는 경기 회복과 유가, 식료품 가격 급등 및 달러화 약세에 따라 다시 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소비자물가는 5%로 상승하였으며, 2011년에는 5.4%로 전망된다.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비 증감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예상)
6.3	4.7	13.9	-0.7	5.0	4.4	3.6

자료: 요르단 재무부, General Government Finance Bulletin

(3) 고용

2004년 12.5%로 최저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이후 13~14%의 고실업률 기조를 유지하다 2008년에 12%대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높은 인구 증가율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취약 등으로 인해 지표 개선 속도는 매우 더딘 편이다. 이에 따라 실업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현 내각의 제일의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 실업률 추이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예상)
13.9	13.1	12.7	12.9	12.5	12.9	12.9

자료: Ministry of Finance of Jordan

수출입

❖ 요르단의 수출입 및 수지 동향

단위: JD백만,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순수출	2570.2	2929.3	3183.7	4431.1	3579.2	4216.9	4805.9
재수출	479.3	760.5	879.9	1201.9	947.2	773.2	878.7
총수출	3049.7	3689.9	4063.6	5633.0	4526.3	4990.1	5684.6
수입	7442.9	8187.7	9722.2	12060.9	10107.7	10840.0	13440.2
무역수지	-4393.4	-4497.8	-5658.6	-6427.9	-5581.4	-5849.9	-7755.6

참고: US\$ 1=JD 0.708 / 자료: 요르단 통계청 Website

❖ 2010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가성칼리, 의약품, 야채, 비료, 인산염
- 수입: 원유, 교통장비·부품(자동차 등), 석유제품, 철강, 직물, 의약품

❖ 우리나라 대 요르단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423.84	581.16	555.48	652.39	615.69
수입	20.51	27.57	15.64	24.48	31.62
수지	403.33	553.59	539.84	627.91	584.07

투자 동향

(1) 총 투자

2007년도 요르단 투자 규모는 총 31억4천만달러를 기록, 2005년 중 10억달러를 돌파한 이래 3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이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내는 전년비 증감률

연도	외국인투자	국내 투자	총 투자
2003	118	250	368(-13.2%)
2004	192	398	590(+60.3%)
2005	389	668	1,057(+79.2%)
2006	1,191	1,393	2,584(+144.5%)
2007	1,946	1,191	3,137(+21.4%)
2008	1,118	2,085	3,203(+2.1%)
2009	1,025	1,600	2,625(-18.0%)
2010.1-9월	299.6	1,229.2	1,628.8

자료: 요르단 투자청(JIB)

한편, 요르단 투자청이 2011년 상반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산업이 79%로 가장 높고 호텔(12%), 농업(4%), 병원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006-2009년 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US\$백만)

구분	2006	2007	2008	2009	소계	비중(%)
사우디	792	146	128	228	1,294	26.9
바레인	0	414	21	303	738	15.3
영국	0	19	333	175	527	10.9
이라크	126	97	94	33	350	7.3
UAE	53	8	165	85	311	6.5
미국	30	118	6	34	188	3.9
쿠웨이트	94	9	2	72	177	3.7
카타르	0	71	2	0	73	1.5
인도	0	44	0	24	68	1.4
중국	0	44	0	0	44	0.9
팔레스타인	0	20	16	5	41	0.9
프랑스	0	0	12	0	12	0.2
한국	0	0	0	7	7	0.1
기타	96	492	339	59	986	20.5
소계	1,191	1,482	1,118	1,025	4,816	100.0

자료원: 요르단 투자청

(2) 우리나라 對요르단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對요르단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지만 투자 금액 기준 0.22%, 2006년부터 투자 건수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요르단은 2004년 양국간 투자보증협약 및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연도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6	2	1	52	1	52
2007	1	1	1,000	3	212
2008	2	1	5,007	1	5,000
2009	5	1	651	1	320
2010	6	2	1,846	2	78
요르단 전체	39	17	28,079	33	15,677
우리나라 전체	4,312	1,475	11,651,483	6,887	6,970,853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형태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달러)

구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현지법인	17	11	24,623	27	12,835
지점	4	0	82	0	0
지사	18	6	3,374	6	2,842
총계	39	17	28,079	33	15,677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업종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달러)

연도	업종	신고건수	신고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34	15	27,892	31	15,556
1980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1981	건설업	1	0	0	0	0
1991	제조업	1	1	1,054	1	1,054
	사업시설관리	2	1	0	1	0
1992	제조업	1	1	1,415	1	1,415
1993	운수업	1	1	2,200	1	288
1996	제조업	1	0	6,000	0	0
1997	제조업	0	0	0	0	0
1998	제조업	1	1	271	1	271
1999	운수업	1	1	70	1	63
2000	제조업	1	1	2,000	1	990
2001	제조업	1	0	1,000	5	2,000
2002	제조업	2	0	3,000	5	2,919

연도	업종	신고건수	신고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3	제조업	2	1	1,746	5	314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2004	도매 및 소매업	1	1	580	1	580
2006	제조업	2	1	52	1	52
	도매 및 소매업	0	0	0	0	0
2007	도매 및 소매업	1	1	1,000	3	212
2008	제조업	0	0	0	0	0
	건설업	1	0	7	0	0
	도매 및 소매업	1	1	5,000	1	5,000
	운수업	0	0	0	0	0
2009	제조업	2	0	256	0	0
	전기,가스,증기,수도	1	1	320	1	320
	시설관리	2	0	75	0	0
2010	제조업	1	0	120	0	0
	건설업	3	2	1,635	2	78
	도매 및 소매업	1	0	91	0	0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수입 규제 제도

개관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규정에 따라 재정비,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요르단에 수출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수출입공고 제도가 없으며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이 발표되거나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수입규제 품목으로는 ①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폐플라스틱, 디젤류 승용차 등의 보건 및 환경관련 제품, ②원유 및 정제유, 시멘트, 화약 및 폭발물, 중고 타이어,

무기 등 방산제품 등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에 국한된다. 지속적인 대외개방 및 무역·투자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분야에서는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되며 EU와의 제휴협정(1998), 아랍자유무역지대협정(1998), WTO 가입(2000), 요르단-미국 FTA 체결(2001), 아랍자유무역지대 가입(2005) 등으로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수입관련 제도

(1) 원산지 규정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주한요르단명예영사관(현대해상화재) 또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내 주재 걸프국가 대사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 2010.10월 주한요르단대사관 설치)

(2) 세이프 가드

2002년 National Production Protection Law No.50 발동 이후 세이프 가드 발동실적은 카세트테이프, 파스타, 위생복 등 3회로 발동실적이 미미하다.

(3) 반덤핑, 상계관세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발동실적은 없다.

(4) 환경관련 규제

2007.1.1일부터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제도

1997.3.2일부터 통합 관세법을 발효하여 관세를 단일화하고 관세율을 인하는 수입 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품목별로 0%, 5%, 10%, 15%, 20%, 25%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7월 전 품목의 가중평균 세율은 13% 수준이다. 2000.4월 WTO 가입에 따라 최고 수입관세율을 35%에서 30%로, 2005년에는 25%로 재인하 하였고 WTO와의 관세양허 일정에 의해 2010년까지 담배, 술 등 특별 소비용품을 제외하고 관세율을 2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수출용 원자재, 생산요소인 원부자재, 의료용품, 긴급 생필품의 경우 면세되며, 일반 소비 용품에는 보통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부과된 후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된다.

- 부과방식은 (CIF 수입가+수입관세)×일반판매세율
- 과거 일반판매세율은 10%였으나 99년부터 관세인하로 인해 야기될 재정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16%로 인상
- 다만, 일부 농산품 등은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음

극히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고 50%, 주류는 85%, 담배는 10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특별한 통관절차가 없으며 국제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된다.

영사인증제도

(1) 개요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Invoice)과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 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제도 도입 배경

1940년대 초반, 본격적인 무역활동이 시작되면서 요르단 수입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작성된 서류와 다른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 수입 전에 상업 송장이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와 함께 송장에 기재된 서명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1947년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3) 제도 운영 주체

재무부 관세국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실제 수수료 징수 업무는 해외 소재 요르단 대사관(영사관)에서 집행한다.

(4)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전체 수입품

(5) 수수료 부과 기준

법령 제20호(관세법) 제31조 및 영사 수수료 징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WTO 회원국: 송장 건별로 수수료 부과(일반 상업송장의 경우 JD 21 수준)
- WTO 비회원국: 송장 금액별로 수수료 부과

인증 서류 없이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재량으로 물건 가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 현금이나, 4% 범위 내 유가증권 예약을 통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 서류 제출 시에는 60일 이내에 예탁금을 환불 조치 할 수 있다.

(6) 기타 조항

2005.1.1일부 범아랍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협정가입 1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영사인증은 수출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요르단대사관(영사관)에서 받아야 하며, 한국에서는 주한요르단명예영사(현대화재해상보험)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아랍국가 대사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 검사제도

(1) 개요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8.1일부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운영 목적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표준규정 혹은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4) 검사 방법

요르단 수입 세관에서의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진행 방법은 수입품 샘플 채취→소정의 검사소에서 검사→수입허가 혹은 불허 판정, 통보 등의 순서

(5) 운영 주체

- JISM(Jordan Institution Standard and Metrology)

- Call center: 962-6-550-6060
- E-Mali: jism@jism.gov.jo

(6) 검사 절차

- 요르단 자체 검사기준이 없을 때
 - 라벨링 기준을 적용
-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기준이 있을 때
 -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구비 시: 라벨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등이 없을 경우 수입 허가
 -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미 구비 시: 샘플 테스트 후 수입 승인여부 결정
 - 요르단 내에서 검사 불가능 시: 샘플과 라벨링 정보 상호 비교 후 수입 승인 여부 결정

지식재산권 보호

개관

요르단은 국제지식재산보호기구(WIPO)에 가입하여 지식재산권 법령은 구비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많은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대부분 복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관련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인 집행은 국제기준에 미달한다. 특허 및 디자인법(Patents and Design Law)에 의해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출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인정된 특허는 ①특허인정과 함께 등록비를 납부하고, ②매 4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조건하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은 관보에 게재되어

제3자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할 수 있다.

상표권

상표법(Trademark Law)에 의해 규정되며, 출원주의, 관보게재, 이해관계자 이의제기 및 의장권 인정 등은 특허권 관련제도와 동일하다. 단,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1992년 발효된 Copyright Law No.22가 운영의 기초로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기간 인정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저자 중 마지막까지 생존한 자가 사망한 이후 50년간 인정된다.

문화부의 저작물 발간 혹은 재발간 권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발간 또는 재발간이 없을 경우 문화부에서 소정 액을 보상한 후 관련 저작물을 발간 또는 재발간 가능 할 수 있다.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개요

요르단 정부는 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걸프 지역국가들로부터 중동의 안전지대로 특히 각광받고 있다.

❖ 투자 환경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투자촉진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따라 최고 20년간 법인세 면제 ○ 투자 규제 분야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 보험, 은행, 통신, 농업부문 투자에 대해 50% 실링(제한) 해제 - 최소 투자금액 한도 인하: JD 100,000 → JD 50,000 ○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관문 - 홍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연결 ○ 정치적 안정과 뛰어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IZ, Free zone ○ 양질의 노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문맹률(9%), 전 인구의 17%가 고등 교육 이수, 낮은 임금수준 ○ 개방, 자유시장 주의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등 20여 개국과 FTA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 red tape, 제도 및 법 집행과 정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Hidden Cost” 가 곳곳에 상존 ○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5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로 인한 자체 시장 규모 미미 ○ 전문 분야에서의 숙련공 확보 미흡 ○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휴가, 병가, 소송 등 ○ 라마단(1달간), 종교휴일(이드 등) 비근로 공휴일과 종교 휴일 다수 ○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정주의, 부족국가 전통으로 인한 낮은 근로 의욕 - 여성 노동 이용의 한계 (결혼 후 직장 생활 계속 애로) ○ 세계 5위의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될 정도의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1인당 물소비량 90리터(세계 평균의 1/15) - 제한 급수로 제조업 투자 활동 제약 ○ 산업 기반 미흡으로 연관 산업 인프라 취약

주요 투자법 내용

투자촉진법 개요

1995년 제정 후 2000년 일부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00년 상반기 IT산업, 은행, 보험, 통신 등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100% 허용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촉진법을 계속 손질 중이며, 곧 선진국 형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관련 대표기구로는 투자촉진 최고회의(The Higher Council for Investment)와 투자청(Jordan Investment Board) 등 2개 기관이 있다.

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

- 외국인도 법에 따라 요르단 내 투자회사의 완전소유, 동업 및 지분참여가 가능
- 법적으로 하자 없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계속 보장
- 경영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당국에 필요사항 요청 가능
- 공공이익을 제외하고는 투자가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도 투자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
-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자금의 원금회수나 과실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봉급도 송금보장

○외국인 투자가의 의무

- 투자목적으로 고정자산을 확정하고 장비를 갖추면 “투자진흥공사”에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 개시 일을 서면으로 제출
- 투자목적에 투입된 고정자산 목록의 상세한 기록과 요르단 공인회계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수감
- 투자에 투입된 자산 및 인원 등에 대한 정보나 서류에 대한 투자진흥공사 요청 시 제공의무

○투자자산의 권리변동

-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도 후임자가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바, 면세기간은 잔여기간까지 적용
- 투자가는 구매가의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투자진흥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면세 장비의 판매나 이전 및 재수출이 가능
- 아울러 면세장비의 제세부담 후 투자진흥위원회에 통보하고 타인에게 매각 가능
- 은행대출을 위해 면세자산의 담보가 가능하나 투자진흥공사가 동 사실

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장부열람 요청시 응할 의무

○분쟁해결

- 투자자와 요르단 정부기관과의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
- 분쟁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르단 사법당국이나 “국제 투자분쟁 중재위원회(The Int'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해결 의뢰 가능

투자진출 절차

- 투자등록 신청: 소정 양식에 의거 투자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투자자금의 은행 송금증명서 또는 현물 출자 시 통관서류 등을 첨부
- 변호사의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에 의하여 투자등록 신청으로 부터 3개월간 변호사를 고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 변호사를 통해 투자 진출절차 완료
- 투자등록 승인: 산업통상부가 투자자금의 적정성, 투자분야의 적합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 상호 등록: 산업통상부
- 회원등록: 공업회의소 회원 등록
- 지방행정기관에의 등록: 공장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회사설립 등록
- 거주증 취득: 외교부
- 노동허가서 취득: 노동부

투자시 세제 혜택

- 신규투자 시 법인세의 감면
 - 요르단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 투자를 시행할 경우 공장이 설립된 위치의 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가 차등 감면
 - A급지: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25%

- B급지: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50%
- C급지: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75%

○추가투자 시 법인세 감면

- 기존 사업 확장 시에는 25%의 법인세를 A급지의 경우 2년, B급지의 경우 3년, C급지의 경우 4년간 감면

○기타 법인세 감면

- 직원주택 건립: 제조업, 광산업의 경우, 직원주택의 건립 시 소요 비용은 납부대상 법인세의 10%까지 감면
- 교육비 및 연구비: 제조업, 광산업의 경우, 직원 교육비 및 연구 조사비는 연간 JD25,000(약 35,000달러)의 범위 이내에서 납부대상 법인세 감면

○수입 관세특혜

- 고정자산 취득 시: 공장 건립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수입 시 투자승인 이후 3년간은 관세가 면제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의 준비가 반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로 2년간 면세
- 부품 수입 시: 기 수입한 고정자산의 부품 수입 시엔 당해 고정자산 가액의 15%까지 수입 관세 면제

투자 장려/제한/금지분야

■ 장려분야

분야	산업 상황
전자 및 가정용기기	- 1998-2005년간 200% 수출신장(2005년 수출액 6억달러) - 이라크, 시리아가 주요 타깃 시장 - 2005.8월, IEC(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표준 규정 채택
자동차 및 부품	- 2개의 자동차 조립공장 운영 중(버스와 군용 사륜구동 차량) - 8개의 부품공장(라디에이터, 배터리, 유리, 필터 등) 운영 중
섬유 및 의류	- 최근 요르단 내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산업 분야 - 고용인력 5만명, 수출 13억달러 - 최근 수년간 수출 200%, 고용 20% 신장, 주요시장에 무관세 수출 - 요르단에서 소싱 중인 주요 바이어: JC Penney, Levi's, Liz Claiborne, Gap, Gloria, Vanderbilt, Victoria's Secret 등

분야	산업 상황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관광객 708만명, 관광수익 28.9억달러 - 기독교 성지, 와디르, 사해, Petra 등 세계적인 관광지 다수 - 의료 및 국제회의와의 연계 관광 확대 전망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투자규모 4억달러 - 아랍 최고의 수출규모(2005년 3억달러, 2010년 10억달러 수출 전망) - 16개 제약회사에서 5,200명의 우수인력 고용 - 훌륭한 인프라(약학 전문학교 8개, 연구소 4개, 병원 96개) - 연구개발 투자 장려(Clinical Trial Law)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국가 중 최고의 의료 경쟁력(Arab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5) - 최우수 분야: 심장외과, 콩팥이식, 안과 등 -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22.4명 - 연간 의료 관광객 수 10만명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개의 기업에서 1만6천명 고용 - 최고 투자신장률 기록 분야(2000년 이후 총 15억달러 투자) - 2008년 수출 2.26억달러 - IT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2004년 통신업종 완전 자유화 - 투자유망 분야: Call Center, Education platforms, e-learning, Arabic language content, Animation

○ 제한 및 금지 분야

- 100% 허용업종: IT산업, 리스, 은행금융서비스, 병원, 호텔, 통신, 보험, 환경, 케이터링, 선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분야
- 50% 허용업종: 건설, 도소매, 운송, 폐기물 처리, 수출입서비스, 환전, 식당, 광고 서비스 등
-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보안 및 사설탐정, 건축용 석재 및 골재 채취,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을 포함한 여객 및 화물의 육상 운송 서비스

주요 투자 장애요인

○ 물품대금 회수불능 문제

- 대금결제를 수표로 하는 경우, 수표하단 등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차기 물품 도착 시 대금 지불” 등 이해가 안 되는 아랍어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으며, 동 수표를 받고 물품을 인계해 주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도 대부분 무시

- 또한 상당기간 대금을 잘 지불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생
- 계약 시 또는 대금 결제 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거나 공관 및 KOTRA 등에 확인하는 절차 필요

○노무관리의 어려움

- 요르단의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로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

외국인의 요르단 내 시설 및 자산 취득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자산 취득 이외에는 내국인 대우를 부여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의 자국내 법률이 요르단 인들의 현지 자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한 비 아랍계 외국인들도 요르단 내에서 자산 취득 및 리스 행위를 가능하도록 허용

○원칙적으로 비 아랍계 외국인도 농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외국인이 농업부분에 투자하여 요르단 회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농지소유 등 모든 면에서 내국인 대우를 부여

경쟁정책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통신회사의 경우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최대 2010년 까지 민영화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 상실 예정이다. 현재 국영통신회사 및 전력통신회사 민영화 등 총 16개의 민영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외환관리 및 조달

개관

외환의 거래와 송금, 외국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 등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금융관련 제도

요르단 내 은행 수는 총 25개로서 국내 상업은행(9), 이슬람계 은행(2), 투자은행(5), 외국계 은행(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농업과 주택, 도시개발 등을 전담하는 5개의 특수은행이 존재한다.

자본금 규모에서 최대 은행은 Arab Bank(5억달러),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3.5억달러), Jordan National Bank이며, 이들 3개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212억달러로 요르단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73%를 차지한다.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지금융 및 과실송금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며 중앙은행에 통보 없이 투자관련 자금 이체 및 이관 가능하다.

노무관리

개관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

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하다.

노동법의 주요내용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 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전체근로자의 30%(QIZ의 경우 50%)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불법고용기업은 일 50JD(약 7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150JD(약 210달러)이며, 인상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장세(기본급여의 16.5%로서 고용주 11%, 근로자 5.5% 분납), 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유망 분야 시장동향

건설 플랜트

2007년 말 요르단의 전체 건설 및 기계 플랜트 총 시장 규모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쳐 약 6억달러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장 규모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현재 발주 중인 건물 모두 포함하고, 또한 요르단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아카바 자유무역지대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총 시장규모는 10억달러로 추정된다.

요르단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은 자체 자금 보다는 외부자금에 의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 플랜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는 중동 내에서 흔치 않는 비산유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건설 및 플랜트 발주 예산의 대부분이 국제기구 혹은 외국 정부의 차관, 원조 자금, BOT발주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소형 규모의 제조업 플랜트 시장은 극히 미미하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GDP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극히 미미하여 제조업 플랜트 시장 형성이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주되는 제조업 플랜트의 경우, 요르단의 주요산업의 하나인 인광과 가성칼리, 시멘트, 비료 등 광업과 화학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설 현대화 및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전력과 유류 저장용 탱크, 공항 및 항만시설 확충공사 등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석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생산 공장의자동화 설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붐을 반영하여 시멘트 프로젝트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자원·광물 개발

요르단은 전 국토의 75%가 사막 또는 준사막 지역으로서 중동의 대표적인 비산유국이다. 원유는 이라크 국경에 면한 Azraq Shishan 인근의 Hamza 유전에서 일일 600배럴 규모를 생산 중이나 국내 소비에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천연가스는 이라크 국경지역인 Rishah District 3개 공구에서 연 21백만큐빅피트를 생산 중이나 이 또한 국내 소비 비해 크게 부족하다.

주요 광물자원은 인광(Phosphate; 세계 3위)과 가성칼리(Potash)이며, 최근에는 오일셀(암반유 약 600~700억톤) 및 우라늄도 다량 매장(약 18만톤)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에너지부 추계에 따르면, 2006년말 전 세계에서 오일셀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서, 총 1.2조 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어 브라질과 요르단, 모로코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의 오일셀 추정 매장량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 원유 매장량의 3배에 이르며, 미국의 현행 원유 소비량을 감안할 때 향후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매장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리들의 경우, 요르단 정부는 국내에 약 18만톤(확인+잠재 매장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규모는 2006년 말 전 세계 우리나라 확인 매장량(393만톤)의 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국별 비중 면에서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 국별 우리나라 매장량: 호주(30%), 카자흐스탄(17%), 남아공(12%) 나미비아(8%), 러시아 및 브라질(각 3%)

한편, 세계은행이 발간한 International Water Poverty Index(IWPI)에 따르면, 요르단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 West Bank와 가자지구 등과 함께 세계 5대 물부족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연간 물 소비량은 1,376백만 큐빅미터인데 비해 생산량은 815백만큐빅미터에 불과, 연 561백만큐빅미터가 부족하고 인구 증가, 관광 개발 등으로 향후 2020년까지 연간 물 소비량은 1,665백만큐빅미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공급은 1,276백만큐빅미터에 그칠 것으로 전망, 향후 요르단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협력 사업(세계은행 주관) 으로서 홍해-사해간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디시-암만간 Water Conveyer 건설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

홍해-사해간 운하 건설 프로젝트는 총 5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수로 관로 건설, 원자력 발전소 및 담수시설,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 개발 프로젝트로서 요르단이 전략적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주사업자(Master Developer)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시-암만 수자원 운송 프로젝트는 총 6.3억달러 규모의 대형 공사이나 유찰을 거듭해 오다, 지난 2007.10월 터키의 Gama Energy에 낙찰되었다.(BOT; 2008.8월초 공사 개시, 2013.7월 완공 예정)

이외에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에너지 전략계획’에서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180억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분별 투자예상 금액

2007~2020년, 단위: 백만달러

부문	투자 예상금액	부문	투자예상 금액
Power Sector	4,800~5,800	Oil Shale Exploration	1,400~3,800
Oil Sector	3,400	Renewable Energy	1,400~2,100
Natural Gas	2,400	Improving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80~150

2010년 말 요르단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7%이며, 에너지 수입액의 GDP 대비 비중은 21%로서 에너지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주요 한국 업체 진출 동향

개요

우리나라의 對요르단 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은 1974년 한보건설의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건설 진출 붐을 이루었으나 중반이후 급격히 감소, 매년 1건 정도를 수주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래 이라크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요르단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걸프자국의 요르단 유입으로 건설·플랜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2007년부터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진출 현황

발전분야

- 알 카트라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한전)
 - 2008.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2009.9월 정식 계약 서명
 - 4.5억달러가 투입되는 373메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 발전분야의 최대 규모 사업으로 완공 후 25년간 전력 판매
- 삼라발전소 3단계 프로젝트(한화)

- 2억달러가 투입되는 285메가와트 규모의 2개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업 체로 선정, 정식 계약 서명(2009.10.21)

- Amman East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두산중공업, 약 2억달러)

- 2008.7월, 2억달러 규모의 1단계 공사 완료
- 조만간 발주 예정인 2단계 공사 참여 준비 중

-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대우건설, 1.5억달러)

- 우리나라 최초 연구용 원자로 수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 5메가와트급, 2015년 완공 예정

건설·플랜트 분야

- 알카트라나 시멘트 공장 건설 프로젝트(STX, 2천만달러 규모)

- STX 중공업이 수주하여, 2008.10월 현장 사무소 설치

- 요르단 정유공장 LPG 저장탱크 건설(롯데, 4천만달러 규모)

- 롯데건설이 수주하여, 2008.10월 현장 사무소 설치

- MEC 가전제품 공장건설 프로젝트(대우전자, 8천만달러 규모)

- 대우전자 및 협력업체들이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공급 예정

하수처리 분야

- 암만 남부 하수처리 시설 건설(코오롱, 4,800만달러 규모)

- 코오롱이 2008.5월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건설 중

■ 2010.9월, 요르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현황

기업명	형태	진출연도	기타
LG전자	법인	2008	가전 판매
삼성전자	법인	2009	가전 판매
한전	법인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영
LG 인터네셔널	지사	2009	종합품목

기업명	형태	진출연도	기타
대우일렉트릭	지사	2007	가전 생산 및 판매
LG 생명과학	지사	2010	의약품
비츠로시스	지사	2009	전력기자재
코오롱건설	사무소	2007	하수처리시설 건설
롯데건설	사무소	2007	발전소 건설
한화건설	사무소	2007	발전소 건설
대우건설	사무소	2010	연구용 원자로 건설
STX중공업	사무소	2007	시멘트 공장 건설
LS 전선	지사	2007	전선 시공
(주)이산	사무소	2007	하수처리시설 감리

이란

수입정책상의 장벽

개요

이란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란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정책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4%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를 적용하는 반면 완제품 및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100% 이상까지의 고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산업화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 산업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중 일부 품목은 광공업부 사전 수입허가 면제 품목으로 고시, 수입 완화

비관세 정책으로는 주로 산광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등 수입허가 관청에서 사전 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수입을 촉진시키며, 이란 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의 경우 국산제품의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수입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2010.

6월) 및 미국, EU 제재 등을 통해 이란의 금융, 에너지, 운송, 교역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바, 우리 업체의 대이란 교역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업체들은 이란 업체와의 거래에 앞서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은행연합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입품목

Positive system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산광무역부 등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

-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 제출 및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이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 해당 부서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 업체의 생산여부 및 생산량이 고려됨.

○ 금지품목(Prohibited)

- 무기류, 마약, 술, 도색출판물 등

수입절차

① 산광무역부 수입 신청서 제출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는 필요 없음.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나머지 약 2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함.

② 광공업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 수입허가

- 가장 까다로우며 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
- 해당부서에서는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

③ 상업은행을 통해 L/C를 개설

-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0~60% 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

비공식 수입경로

이란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높은 시장 수요로 이란 수입상은 두바이, 터키, 이란 남부의 Kish 자유 무역 지대 등을 통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공식적인 수입이 이란 총 수입물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안경테, 직물류, 가전제품 등도 정식 수입 이외에 상기 경로를 통해 상당량이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은 두바이의 제1의 재수출시장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섬유, 직물류 등이며 상당수 이란 수입업체가 두바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장 개설 등 외환업무를 보고 있다.

관세정책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분류 방식을 채택(관세법령: Export and Import Regulation Law(1993))하고 있다. 이란은 양자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9개 ECO 회원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과거 수입된 수입가격과 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의 투명성이 낮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란 관세 규정에 의하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어의 탈세 조장 또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가능하다.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관세면제 대상 품목은 산광무역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 × 현지화 환율(이란 중앙은행, 2011.10월 기준 10,531R/\$) × 해당수입 관세율이다.

이란 회계연도 2004년까지는 상업이윤세가 있었으나, 지금은 기본관세로 통합되었다.

기본관세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에 대해 저율(통상 4%)이 적용되고 완제품 및 소비재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란 정부는 수입 규제 시 주로 동 세율을 활용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기본 수입부과금으로 징수하였던, 수출보증기금, 도시세, 적신월사세, 특별세, 은행세 등은 2004년 이후 기본관세로 통합되었다.

통관절차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허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하에 수입상은 CFR 가격의 5~25%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다.

수입품 검사는 P/I 체크, 원산지 증명서 및 인스펙션 증명서 체크, 상업송장 체크 및 관련 여타 서류 체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의할 사항은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Green Paper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져야만 완전무결한 통관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타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 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도 걸린다.

수입 통관 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Pipe 등 제품의 경우 제품 무게를 측정하여 Invoice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 데 이란세관은 국제적 관례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치 않고 있다. 이란은행은 이란세관에서 측정된 중량이 Invoice에 명기된 중량에 미달할 경우 통관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수입검사

이란으로의 수출 시에 선적전 검사와 영사인증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2001년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자체 산정한 금액 이상 수입 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한국에서 수출 시는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동 서류 필요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선적전 검사의 경우 수입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점수를 받고 있고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에

등록 허가된 외국검사기관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하며, 한국 내에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도 운영 중이다.

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는 최근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에서 주한이란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영사 인증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면 우리 수출업체는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위생, 안전 허용기준은 보건부에서 정하며 동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

샘플 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 시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현지에서는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도로, 한국 수출업체에서는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시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우리업체의 이란 시장 개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공항 입국 시 소지하는 샘플도 공항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샘플 정식 통관 시 절차가 복잡하며 영어를 모르는 세관원이 많아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통관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식 통관 시 요구하는 예치금의 반환은 출국시점이 아니라 출국 후 약 6개월 후에나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많은 업체에서 예치금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표준 인증관련 장벽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필요에 따라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하는데 결정된 규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필수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시 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주요 품목별 수입 장벽

철강

물품의 특성상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특정 물량에 대하여 실제중량(Actual Weight)을 측정하지 못하고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으로 대신하여 중량을 책정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실제 물량을 측정하고 있어 중량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빈번하다(특정품목: 관재류, 종이, 철강, 철근, 파이프 등)

이론중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Proforma Invoice 상에 명시된 대로 이론중량을 수용하여 분쟁을 방지(대부분 수입자는 이론중량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음)하고 있으며, 통상 이론중량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Proforma Invoice 발행 시 반드시 명기하고 있다.

전기전자 제품

제품 생산을 위해 CKD 형태로 부품을 수입 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품의 30%를 현지화하지 않을 경우 완제품으로 간주, 완제품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부품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의 수입금지로 공급의 부족 현상이 초래 되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었던 완성차 수입이 2004년부터 허가되었다. 그 당시 완성차 수입에는 배기량에 따라 130~168%의 고관세가 부과되어 2004년의 실 수입량은 크지 않았으나, 2005년에 관세가 100%로 인하됐고, 현재는 90%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완성차종이 수입되고 있다. 한편 현재 CKD 부품은 해당 차종의 현지화 비율에 따라 관세를 2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섬유·직물류

이란 정부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완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섬유직물류 및 기타 완제품 의류 등의 對이란 수출에 제약이 있다. 또한, 이란 내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고급원단 직물류의 경우도 사치재라는 이유로 이란 정부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대부분의 물량이 공식 수입보다는 두바이 등을 통한 비공식 경로로 수입이 대부분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100만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입찰에 의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성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 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장벽

이란 국영선사 이용 요구

이란은 수입 시 500mt 이상 화물의 경우, 외국 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주가 화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 광무역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란 국적선 우대제도는 정부(국영기업 포함)화물, 민간화물간 구별 없이 적용되며 육상, 항공화물의 경우에도 적용기준 중량은 상이하나 동일한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란 국영선사(IRISL)는 비정기 노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선적이 쉽지 않고 또한 사전에 Container 확보가 어려워 이로 인한 수출기업의 공장화물적체, 적기 생산 애로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수출업자들은 이러한 이란 국적선 우대제도의 적용을 피하고자 신용장 개설, 선적 서류작성 등에 있어 서류상으로 화물을 500mt 미만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편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적선 우대제도에 불구하고, 이란 국영선사의 수송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이란의 전체 해상 물동량 중 대다수가 외국선사에 의해 운송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란 정부 일각에서는 동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서 수년 후에는 동 제도가 폐지 될 가능성도 있다.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매년 약 8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게 제공할 고용의 창출을 위해서도 절대적으

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조치 일환으로 2002.5월 기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호법(1955.11월 제정)을 47년 만에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분야 및 지분한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1996년 Kish, Qeshm, Chabahar 등 지역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설치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업별로 16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지분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으나 1996년 이후 Buy-Back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다양한 Project를 국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2.5월 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는 전체 산업부문의 25%, 개별 분야 당 3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출 목적의 외국인 투자는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동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법 개정 이후 공포된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에는 투자방식과 범위, 승인 방식,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업무범위, 외국인 자본 유입, 과실송금 등에 관련된 세부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일반 감면제도
 - 내국인과 동일한 조세 감면제 적용
 - 공장설립 지역별 감면: 테헤란 중심지에서 120km 이상, 이스파한에서

50km 이상 등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5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 투자 장려업종 감면: 테헤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과세 소득의 15% 공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면세

-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경우 20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석유화학 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자유 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Incentive

○Qeshm섬, Kish섬, Chabahar 항구 등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수입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외국기업에 대해 20년간 내국세 면제, 투자 지분 100% 소유 보장
- FIZ에서 이란 본토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면제(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율 한도 내에서 60% 이상)
- 자본 및 임금에 대한 송장 보장, 100년간 장기 부지 임대 허용, 노동법 적용 완화
-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외국은행 설립 허용

외국인 합작투자 승인절차

○산광무역부 및 품목별 관련 부처에 투자 의향서 제출

○재정부 산하 투자지원청(OIETAI: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에 합작 투자 승인 신청(총 심의 기간 45일)

○구비서류

- 합작투자 승인신청서

- 계약서(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
 - 사업개요(Project Summary)
 - 기타(신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자료도 무방)
-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Board: 경제관련 차관으로 구성) 심의 및 재경부 장관의 허가 승인

현지법인 승인절차

법인설립은 상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

①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필요서류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외투법에 의한 설립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음
- 단점: 이란인 주주가 반드시 필요(지분 51% 이상)하며, 과실송금은 가능하나, 전쟁 등 국가파산 시 투자금에 대한 보증이 없음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투자허가신청(투자청) → 투자위원회 심의 → 투자허가 초안 수령 및 검토 → 투자허가서 발급(투자청) → 필요서류 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지분 100% 확보 가능하며, 투자허가서에 투자금 보장, 기타 인허가(노동허가 취득 등) 업무를 투자청 협조 하에 진행가능
- 단점: 소요기간 및 필요서류가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
- 참고사항: 각종 인허가 취득 및 등기업무 등 행정절차 시 민을 수 있는 이란인 업무대행자 필수(범무법인 등 대행시 소요기간 및 비용 증가)

노동법규

○ 고용계약

-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현지인 3명 이상 고용 원칙
- 수습기간: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3개월
- 계약 종료: 피고용인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 기간 만료
- 계약에 의한 작업완료
- 퇴직금: 일반적인 경우 근무연수 × 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 급여, 피고용인 사망 시 근무연수 × 3개월분 급여 × 근무 연수

○ 노동세

- 외국인 근로자 연소득 30%에 상당하는 노동세(Labor Surcharge) 납부 의무(2008년부터 유예 상태)

○ 사회보장제도

-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사회 보장세 납부
- 세율 30%(근로자 7% 부담, 고용주 23% 부담)

○ 노조 관계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및 계약 체결 가능
-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하여 파업 및 조업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재 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아예 불응 시 중재 법정에서 최종 판결

국산화 의무

국내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정책 일환으로 현 외국인 투자허가시 과도한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연계 의무

유전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Buy-Back 또는 BOT 방식으로 계약

하고 있으며 현지 투자법인의 기자재 수입 시 필요한 외환을 수출을 통해 확보토록 요구하고 있다.

투자 허가 지연

투자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절차 개선 등 조치를 취하려 한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송금

- 외국인 투자보호 및 촉진법(FIPPA)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에 대한 행정규제(대차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통지 및 재정부장관 승인 등)가 일부 상존하고 있다. 최근 이란정부는 자유무역지대 내의 외국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현지 금융조달의 제한

- 기본적으로 이란은행은 외국계 업체에게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정부조달에는 수주자 측에 Buy-Back 또는 Financing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 은행의 상호 보증협약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통화의 태환성 결여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의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지사는 사무소 형태와 무관하게 영업상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고용자 23%, 피고용자 7%, 계 30%).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시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무조사는 없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 지사·사무소 설치 허가 취득 의무화
 - 외국 회사가 이란 내 지점(Branch)이나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999.3.31일 공포 시행된 관련 법령(Executive By-Law of the Law Authorizing Registration of Branch or Representative Office of Foreign Companies in Iran)에 의거, 재경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서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설립 허가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기업은 이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제재를 받게 된다.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절차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신청서(재경부 산하 회사 등록청)
 - 설치 예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본사의 정관
 - 본사의 재무제표
 - 지사·사무소 설치 타당성 조사보고서(회사 영업의 Scope 및 내용, 설치이유, 인력, 운영자금 조달 등 포함)
- 이란 내 지사·사무소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 검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출입국 제한

외국 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주며 매년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제3국 출입국 시에는 세금 미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허가를 발급한다.

신용장 거래 및 송금

달러-리얄화의 급격한 환율변동, 對이란 UN안보리, 미국, EU 등의 제재에 따라, 신용장 개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란은행에서 발급한 L/C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급은행이 제재 대상 은행인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 관련 사항

외국계 은행은 현재까지 이란 내에서 지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유럽계 은행 등 주요 외국은행들은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이란내 사무소 보유 은행은 HSCB, Calyon, Sumitomo Mitsui Banking 등 40여개가 있다.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만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어 Kish 자유무역지대에 3개의 외국계 지점이 영업 중이다.

2009.3월 이란정부는 외국은행의 이란은행 지분 취득, 이란 내 지점 설치 및 합작은행 설립 등 외국은행의 이란 내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란은 2006년 이후 부의 분배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국영은행의 민영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對이란 유엔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조치

우리 정부는 2010.9.8일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결정 및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대이란 구체조치를 취하였다.

금융 부문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Mellat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하였다.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 및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 및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을 불허하였다.

무역 부문

정부는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대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불허하였다.

에너지 부문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였으며, 국내 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자제와 주의가 요망된다.

원화 결제계좌 신설

정부는 우리 국내기업의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2010.10월 우리 국내은행(우리 및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였다.

가이드라인 시행

對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각각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은행의 對이란 대금결제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기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對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을 위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이하 '교역 및 투자'라 한다)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한국기업 및 개인은 거래품목 또는 거래상대방이 대량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SDGT)와 관련된 경우 교역 및 투자를 하지 않는다.

② 한국기업 및 개인은 거래품목 등이 제3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역 및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절 교역 및 투자 금지품목 및 행위 등

제3조(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물품과 기술(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의 이란수출은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4조(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등)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1.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의 이란 수출
2. 제1호와 관련된 행위를 명백하게 촉진하는 상품, 기술, 서비스, 인력 등의 이란 수출
3. 2010.6.30일 이전에 수출 또는 용역 제공 계약 등이 체결되었으나, 제1호 및 제2호의 수출 금지 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란 수출

제5조(석유자원개발 관련 행위) 이란 석유자원(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

가스,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건설·유지관련 제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또는 용역 제공 등의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1. 2010.7.1일 이후 체결된 계약
2. 직접적이며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재화·용역·기술 판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수행·자금 조달 포함)
3. 개별 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의 투자행위 또는 미화 5백만달러 이상 투자행위의 12개월 합계가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계약

제6조(정유제품 생산·수입 관련 행위) ① 이란내 정유제품(디젤, 가솔린, 제트연료, 항공기 가솔린을 포함) 생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또는 용역 제공 등의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1. 2010.7.1일 이후 체결된 계약
2. 직접적이며 중요한 정도로 이란 국내의 정유제품 생산 확대 또는 유지에 기여하는 재화, 용역, 기술, 정보, 원조를 판매, 임대, 제공하는 행위(석유시설 건설, 현대화, 수리와 관련한 조력행위 일체를 포함)
3. 시장공정가격 미화 1백만달러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의 행위

② 이란이 수입하는 정유제품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또는 용역 제공 등의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1. 2010.7.1일 이후 체결된 계약
2. 직접적이며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정유제품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재화, 용역, 기술, 정보, 원조를 판매, 임대, 제공하는 행위(보험 및 재보험, 자금조달, 중개, 정유제품 운송을 위한 선박 또는 해운서비스 제공 등 포함)
3. 시장공정가격 미화 1백만달러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의 행위

③ 시장공정가격 미화 1백만달러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정유제품의 이란 수출은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제7조(비금지행위) 이 가이드라인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6.30일 이전에 체결된 수출 또는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본래 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이 변경 또는 추가되거나, 본래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사항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추가하는 등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지대상행위로 보지 않는다.

제3절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 절차

제8조(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① 한국기업 및 개인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금지되지 않는 물품 등을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한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발급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 및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한국무역협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의 책임이 아닌 다른 환거래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금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관련업계에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하여금 확인서 발급 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란 관련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요지

기본 원칙

은행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SDGT)와 관련된 경우 또는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제제품 생산 및 이란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

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거래 절차

은행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인 경우, 동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은행은 상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 또는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 확인서 발급기관

- 해외 공사 관련: 해외건설협회
- 기타 품목 및 거래: 전략물자관리원

대책반 설치운영 등

각 은행은 이란거래 관련 상담을 위하여 본점에 기업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이란 대금결제와 관련한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반을 설치, 운영 중

이스라엘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 MFN 관세와 FTA 관세

이스라엘의 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세제(MFN 관세)와 FTA 체결국에 대한 세제의 이중체제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는 MFN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관세분류방식으로 HS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 이스라엘의 평균관세율

단위: %

		합계		자본재		소비재		중간재		원자재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이스 라엘	1993	7.81	4.93	4.91	4.65	14.70	10.38	5.63	4.48	2.11	0.31
	2004	5.38	2.71	3.49	2.40	8.63	6.82	2.92	1.11	9.09	0.80
	2005	5.33	2.60	3.46	2.28	8.52	6.58	2.88	1.13	9.12	0.65
	2006	5.28	2.64	3.45	2.29	8.49	6.59	2.87	1.18	8.75	0.68
	2007	5.14	2.52	3.47	2.20	8.26	5.84	2.73	1.15	9.31	0.92
	2008	5.15	2.61	3.47	2.31	8.32	5.96	2.64	1.15	8.87	0.81
	OECD 평균	1993	7.19	5.11	5.92	3.70	10.55	7.15	6.37	4.54	3.28
	2004	6.57	4.15	3.92	2.48	9.13	5.15	5.65	3.18	7.34	9.28
	2005	5.70	3.53	2.95	2.15	8.31	5.06	4.57	2.77	7.17	3.67
	2006	5.50	3.63	2.74	2.22	7.75	5.03	4.33	2.74	8.16	4.76
	2007	4.65	2.84	2.03	1.28	6.50	4.02	3.56	2.01	8.00	4.70
	2008	3.96	3.02	2.15	1.81	6.67	4.58	2.90	2.18	3.63	2.47

출처: UN TRAINS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12.7%)이 높은 편이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9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관세 및 구매세는 재화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된 수단이다. 재화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적용할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한 허가, 특히, 면허,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 관세 당국은 요청할 경우 3가지 품목까지 무료로 분류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해당 재화에 대한 정확한 설명, 기술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카탈로그를 포함해야 한다. 그밖에 관세 당국은 원료나 제품의 샘플, 실험실 분석결과, 연구기관 또는 공인된 대행기관의 허가, 수입 면허 및 특정 관세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 분류, 관세와 기타 세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ozar.mof.gov.il/customs/eng/mainpage.htm>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1년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였던 대중 시위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는 급격한 물가 인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edmi 위원회'가 설립되고 동 위원회는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백 개의 식품 리스트를 2012.4.2일 발표하였는바, 이스라엘 내 경쟁자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40% 내지 100% 감면하고 현재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신선 소고기육과 같은 농산품 및 참치, 과일주스 같은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를 토대로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Yuval Steinitz)이 2012.7.11일 식품 등을 포함한 수백 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와 구매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는 부령에 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수출업자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포된 재무부령에 따르면, 먼저 국내 생산제품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양고기, 신선 및 냉동 가금류, 소시지, 주스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줄이기로 했다.(아래 표 점진적 관세 감면 품목 참조)

■ 점진적 관세 감면 품목

품목	현행 MFN	개정 MFN	기한
신선/냉동 소고기	190%	90%	4년
양고기	50%	30%	2년
신선 가금류	kg당 5~9NIS	kg당 3.75~6NIS	1년
냉동 가금류	kg당 5~9NIS	kg당 2.5~4.5NIS	1년
소시지	50%	22%	4년
주스	12%~45%	12%	4년

다음으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신선식품인 특정한 생선, 꽃, 허브 및 견과, 말린 과일, 씨앗, 버섯, 특정한 잼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세를 감면하였다.(아래 표 즉시 관세 감면 품목 참조)

■ 즉시 관세 감면 품목

품목	현행 MFN	개정 MFN	기한
생선	kg당 5NIS	kg당 3 NIS	즉시
꽃	30%	20%	즉시
향신료	8~15%	4%	즉시
견과류	12~16%	4%	즉시
견과일	25%	8%	즉시
라즈베리	30%	20%	즉시
기타 딸기류	94%	75%	즉시
씨앗	8~25%	4%	즉시
버섯	12%	8%	즉시
잼	12%	4~8%	즉시
코코넛	12%	4%	즉시

마지막으로 내국 산업에서 사용하는 천연 자원 중 일부, 소비자가 사용하는 완성품 중 일부, 일정 범위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3년간 차별적 관세 감면

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녹말(전분), 생선 통조림, 할바, 설탕류(sweets) 비스킷, 아이스크림, 베이킹파우더, 불거(bulger), 메밀 등이다.(아래 표 차별 관세 감면 품목 참조)

❖ 차별 관세 감면 품목

품목	현행 MFN	2012	2013	2013
전분 프레이크	14%	0	0	0
감자 전분	8%	8%	6%	0
생선 통조림	12%	0	0	0
할바	12%	8%	8%	4%
설탕류(sweets)	NIS 0.11/kg+10%	8%	5%	5%
메밀	8%	8%	4%	0
비스킷	12~18%	8%	8%	4%
아이스크림	NIS 0.7/kg+12%	NIS 0.58/kg+10%	NIS 0.7/kg+6%	4%
베이킹파우더	12%	10%	6%	0%

TAMA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추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예컨대 CIF 가격이 100달러이고 이에 대한 TAMA가 50%, 구매세가 10% 일 경우, 구매세는 CIF 가격에 TAMA를 가산한 150달러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최종적으로 가격은 165달러가 된다.

수입부과금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하여 1.1%를 부과하던 부두 사용료를 2003.1월부터 1.02%로 인하하였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2004.7월

부터 수입품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수입증명 1건당 78세켤을 징수하고 있다.

수입규제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Tariff-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와 같은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금지품목>

- Wine, spirits products and grape juice with incorrect geographical indications
 - Matches made from white or yellow phosphorus
 - Licentious or indecent films
 - Currency note, bank notes or coins which ar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or which have been at some tim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whether counterfeit or imitation
 - Tickets or publicity items for lottery or gambling
 - Sales invoice from that is a form or other paper which purports to be a form which is possible to fill in blank spaces so as to use it as a sales invoice for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 Used bags for packaging vegetable material
 - Knives, cutlasses, spears and swords having a serrated point or sharp blade, except for knives which are of a kind for professional work or domestic use
 - Disruptive instruments of laser special measuring meters
 - Firearm resembling a pen, starting pistols, items activated by gas etc
 - Nerve gas container resembling a gun
 - Games of chance or part of them as defined in the Penal Code
 - Goods of all types which carry a false commercial description as defined in the Consumer Protection Law of 1981
 - Postal package containing live creatures such as vipers, explosives, inflammable materials and other dangerous packages.
 - Used equipment for bee farming
 - Goods that can be used as tools for preparing or consuming dangerous drugs as defined in the Dangerous Drug Order
 - Goods that can be used to incite violence, terror or racism as defined in Chapter H of the Penal Code
-

또한,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산업통상노동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수출통제

수출금지품목은 없으나, 일부 식품, 신선농산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유대교 문헌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령(Free export Order of 2008)의 제1부속서와 제3부속서에 수출통제가 되는 35개의 품목이 적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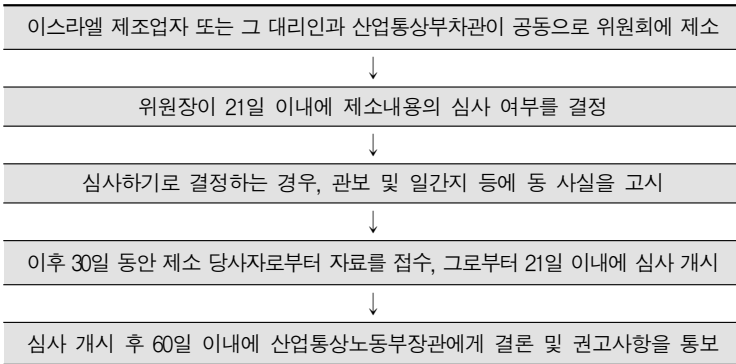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가입국은 아니나, 2006.8월 정부령으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dual-use item)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노동부가 발행하는 특별수출허가를 취득해야만 하게 되었다. 특별수출허가 취득 대상품목은 바세나르 협약에 바탕하여 산업통상노동부가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적성국 교역령(Ordinance on Trade with Enemy State)에 따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교역이 금지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스라엘은 1991년 제정된 무역과세법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산업통상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하며, 위원회 심사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절차〉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라벨링 관련 장벽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에 적극적인 라벨링을 요구하는 규제를 마련 중이기는 하지만 GMO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공표하고 있지 않은 나라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된 식품 수출 시장

이 GMO에 대한 관심이 큰 유럽이므로 많은 이스라엘 원자재 수입업자는 당해 제품이 GMO와 무관한지에 대해 수출업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마킹은 제품에 직접 또는 제품의 포장 위에 인쇄(printing), 각인(engraving), 날인(stamping)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벨을 제품에 직접 또는 제품의 포장 위에 봉합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마킹은 배경색과 다른 색깔로 하고 읽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해야 한다. 인쇄 염료 또는 기타 마킹 물질이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다중 포장 제품의 경우, 가장 바깥 쪽 포장에 마킹을 해야 하며, 가장 바깥 쪽 포장이 투명하여 그 안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포장에 마킹을 해야 한다.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하위 포장물(sub-packages)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하위 포장물 개수, 하위 포장물 내용, 전체 포장의 순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통상적인 마케팅 조건에서 무게가 감소하는 제품의 경우, 예상 최대감실량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품 중 포장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재, 종이제품, 핸드백, 음악 기록, 비료, 살충제, 화학약품, 제약, 일부 음식, 씨앗, 주류에는 특별한 라벨링 규제가 적용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표준, 검사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이었던 수입품은 2005.6.1일 이후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게 되었다. 동 개정에 의하여 규격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 약 400개 품목의 절반 정도의 품목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 규격 충족 여부 검사대상 품목 그룹

1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높은 수준의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완구, 가전제품, 압력용기, 휴대용소화기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모든 해당 화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함
2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중간 수준의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선글라스, 각종 밸브, 관 이음쇠(pipe fitting), 카펫, 지붕방수시트 등 한 번 검사를 받은 후에는 수입업자가 그 후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신고하면 검사가 면제됨
3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낮은 수준의 내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도제벽 타일 등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신고할 필요가 있음
4그룹	일반소비자용이 아닌 산업용 품목
	전기산업용 부품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 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Law of 1953)은 이스라엘 표준원이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모두 임의표준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이행이 의무화되는 강제표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은 약 3,000여개의 표준을 공포하였는데 이중 600여개는 강제표준이다.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코셔 인증서 취득문제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코셔(kosher) 인증서는 별도로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

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에서 코셔 인증서가 없는 육류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산 육류에 대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육류 및 육류 제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이스라엘로 수입할 때 코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들이 코셔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절충교역

경쟁입찰법(Mandatory Tenders Law, 1992)에 의거하여 공공기업이나 정부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공개입찰은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2종의 신문에 입찰공고 시 게재되고, 정부조달 협정상의 입찰의 경우는 영자신문에도 관련 정보도 게재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counter-trade)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전선, 전기자동차 등 특별 예외품목의 경우 35%)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산업통상노동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

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 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의 방식으로 상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 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나,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한국기업의 경우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국기업 우대

이스라엘 국회는 1995년 정부의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Preference for Israeli Products and Mandatory Business Cooperation Regulation)을 승인한바, 동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응찰가격이 15% 이내 범위에서 높더라도 이스라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상의 우선지역(Priority Area)에 소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의 경우, 5~15%의 추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 적용요건>

-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닐 것
 - 이스라엘산 부품 사용비율이 최소 35%일 것
 - 가격이 355,000SDR(2009.11.23 약 56.9만달러) 이하일 것
-

다수의 정부조달 입찰사업에서 이스라엘 발주처가 무한책임조항(unlimited liability clause)을 삽입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Patent)은 특허법(Patent Law of 1967)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의약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특허의 출원상황은 매월 발행되는 'Patents and Designs Journal'에 게재되며,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파리조약 가맹국이며, 1996.6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의장권(Design Right)은 특허의장권령(Patent and Designs Ordinance)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물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5년 단위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Trademarks)은 상표권령(Trademarks Ordinance of 1972) 및 상표권규칙(Trademarks Rules of 1983)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며,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한 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Copyright)은 영국통치시대의 저작권령(Copyright Ordinance of 1924) 외에 저작권명령(Copyright Order of 1953)에 따라 보호되었으나, 2007년에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2007)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보호기간은 음악의 경우 50년, 여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사망일로부터 70년까지다.

투자 장벽

투자 환경

이스라엘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국가 안보 영역의 산업과 일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특히 기업의 인수, 합병, 강제매수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나 여과장치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규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특정 부문은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한편, 통상 국가 간 조약에 기초하여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장려책

이스라엘 정부는 1959년 제정된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5719-1959)에 따라 인가한 투자안건에 대하여 산업통상노동부 투자센터가 제공하는 투자보조금 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세감면의 투자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촉진과 외자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우대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통상노동부 투자센터 (Israel Investment Center)를 통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동 센터는 이스라엘의 발전된 인프라, 고학력이 근로인력, 개방 경제, 미국 및 유럽과의 유대 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안건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고부가가치 여부, 최소투자액 충족 여부, 이스라엘에서의 회사등록 등이다.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이 된 투자기업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투자보조금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투자센터로부터 인가기업(Approved Enterprise) 자격을 받고, 제세감면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선호기업(PREFERRED Enterprise) 자격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투자우대조치 내용은 투자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을 A, B, C의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투자 및 개발 촉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투자우대조치 내용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A 지역의 제조업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개발 비용 및 건축비용의 20~24%를 보조받을 수 있다.

세금혜택은 보조금 수령 여부,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소 30만세켈을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수령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투자지역구분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비율 높을수록 세금 감면 비율이 크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비율이 90% 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 7년간 23.5%의 세금만 부담한다(일반 비인가기업의 경우 50.5% 부담).

■ 투자우대지역 구분

A지역	B지역	C지역 (이스라엘 중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릴리 지역 · 요르단 계곡 · 네게브 지역 · 예루살렘(하이테크 기업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릴리 지역 남서부 · 네게브 지역 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B 지역 이외의 지역

투자 분쟁 조정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수정된 영국 회사법(1948년)에 기초하여 문서화되고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은 기업의 파산이나 청산을 규율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 파산은 별도의 파산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화폐와 관련된 재판은 항상 현지화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중재의 구속력을 존중한다. 이스라엘은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와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회원국이다.

이스라엘에는 투자성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나 국가와의 구매계약에는 투자요건을 포함한 성과요건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부문

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국민이 기업의 일정 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비자와 거주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를 따른다.

외국인 토지거래

이스라엘 토지의 10%만 사유지이며 나머지 90%는 이스라엘 토지청 (Israeli Land Administration)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토지의 경우 매매가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외국인 회사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스라엘 토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스라엘 은행법 5741-1981에 따르면 국내외 은행을 불문하고 은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불입자본(paid-up capital)이 최소 1천만 NIS(약 270만달러)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은행허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①허가신청자의 사업계획, ②주주와 이사회적 적절성, ③이스라엘 정부의 경제정책, ④공익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이스라엘 진출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 母銀行이 설립할 은행의 업무 및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출 것
 - 母銀行이 거래액, 안정도, 경영, 평가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을 것
 - 母銀行이 있는 국가가 자국 내에 이스라엘 은행의 지점 설립을 인정하고 있을 것
-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은행 소유자의 국적은 불문하나, 경영 현지화에 관한 기준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일 것 등이다.

2011.10월 외국계 은행으로는 Barclays, BNP Paribas, Citibank, HSBC, State Bank of India 등 5개 은행이 지점을 개설하고 있다. 이스라엘계 상업은행은 Bank Hapoalim, Bank Leumi 등 16개가 영업중이다.

보험업

이스라엘은 1981년에 제정한 보험법(Insurance Law)으로 외국기업의 보험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자본을 해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1998년에 제정된 보험거래규제(Insurance Transaction Regulation)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을 생명보험 3,500만세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세켈, 생명·손해보험 6,000만세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업

이스라엘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호텔이나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또한,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만 한다.

출자비율 제한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신분야에서는 국제전화 74%, 휴대전화 80%, 케이블TV 74%로 외국인 지분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자본 거래

이스라엘은 1993년 외화교환규제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에는 준비기금, 보험 및 연금기금에 의한 외화자본거래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자본거래규제를 철폐하였다. 나아가 2000.10월에는 보험회사나 연금기금도 외화나 외국자산(외국 부동산 및 증권 포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이스라엘에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제도 철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에 따라 외화자본거래는 이스라엘 기관투자자들이 해외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부과되었던 마지막 규제가 폐지되었던 2003년 1월 1일에 완료되었다. 이로서 외환 통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스라엘 Shekel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가 되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기업이나 증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Shekel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이 Shekel 계좌를 외환으로 교환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거래는 승인받은 외환달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받은 외환달러란 고객을 위해 외환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승인받은 외환달러는 대규모 외환거래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윤, 부채 서비스 및 자본이득의 송금에 특별한 제한이나 심각한 지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0.6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금융활동작업반(FATA: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 이스라엘을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8월 돈세탁방지법(Prohibition on Money Laundering Law, 5760-2000)을 국회에서 가결시켜 돈세탁 및 부정 방지를 위한 국제협조체제에 협력하게 되었다. 동법에 따라 2002.2.17일부터 출입국자는 출입국시의 자금이동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세관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2002.6월 이스라엘은 OECD의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신고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스라엘 출입국시 자금이동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자>

- 총 9만 세켈을 초과하는 자금(현금, 은행수표, 여행자수표)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총 112만5천 세켈을 초과하는 자금을 소지하고 있는 신규 이민자

또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법무 산하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Israel Money Laundering and Terror Financing Prohibition Authority)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에 대한 의무적 신고대상

- 5만세켈을 초과하는 외화교환
- 해외로부터 이스라엘로의 100만세켈을 초과하는 송금
- 이스라엘에서 해외로의 100만세켈을 초과하는 송금
- 기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기타 장벽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규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노동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우수한 기술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나 농업, 건설 등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하여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노동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단, 은행에서 기밀사항을 취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임원급 인력은 그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노동자세 및 신청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2006년부터 외국인노동자의 소득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었다.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전문가에게 최소한 5천 세켈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규정은 대학 또는 연구

기관 관계자, 보건부가 지정하는 의료 관계자, 예술가, 운동선수, 이스라엘 평균 월급의 2배 이상을 받는 급여 취득자, 이스라엘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전문분야 종사자, 외국기업의 매니저 또는 대표자, 언론 관계자, 외국정부기관 관계자, 외국항공사 관계자, 3개월 미만 체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서양요리 이외의 요리점 및 제조업 등 산업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 평균월급(2011.3.8, 996세켈)의 2배에 상당하는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분야를 위하여 정부가 인정한 외국인고용 쿼터는 2008년 500명이었다. 2009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쿼터는 설정하지 않고, 고용하면서 평균월급의 2배에 상당하는 임금을 보증하면 외국인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체류허가

이스라엘에서 노동을 하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통상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 추천서를 받은 후 이를 내무부에 취업사증(B-1)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취업사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 부여되며, 최장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 체류허가 발급절차

산업통상노동부로부터 신청서식을 입수함. 일반적으로 서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 신청서식에 생년월일, 여권번호, 기업정보(재무내용 포함), 급여, 이력서, 사무소 개요 등의 정보를 기재 또는 첨부한 후 번호사 또는 공증인의 서명을 받음. 작성한 신청서를 수수료 수표와 함께 우편으로 산업통상노동부에 제출함.



산업통상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증이 발급됨.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약 2개월 소요됨.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 내무부에 취업사증(B-1)을 신청함. 취업사증을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노동자세(업종에 따라 금액에 차이) 및 사증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취업사증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3~7개월 소요됨.

취업사증 신청절차는 신규 및 갱신 모두 관련 서류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절차가 번잡하면서 장시간(3~7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시 수수료로 1인당 1,140세켈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9,060세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당한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높은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7.2.15일부로 이스라엘 정부는 매니저급 직원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취업사증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집트

이집트 정세

2011.1월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에서도 시민혁명이 발발, 약 30년에 걸친 무바라크 대통령의 장기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약 17개월간의 과도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화 이행의 기반을 다진 이집트는 2012.5월 및 6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Mohamed Morsy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52년 왕정 체제 종식 이후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과도기간 동안 극도로 악화된 치안과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앞두고 2012.6.30일 출범한 Mohamed Morsy 대통령은, **치안, 식량, 에너지, 교통, 환경 등** 5대 긴급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재건 지원 확보를 위한 활발한 방문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총36개 부처의 Hesham Kandil 총리 내각을 발족(8.2)시키고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전격적인 경질 조치(8.12) 등 대통령의 권한 강화 및 국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11월 현재 이집트의 치안은 비교적 순조롭게 호전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이집트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혁명 이후 계속하여 감소해 왔던 외환보유고도 주변국들의 재정 지원 및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집트 신정부는 2012년 말까지 약 48억달러의 차관을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IMF와 교섭 중에 있으며, IMF의 차관 지원이 성사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도 향상에 따른 투자 유치 증가 등 이집트의 경제재건에 새로운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슬람 정권의 출범에 대한 당초의 우려감을 불식시키며 이집트 신정부는

관광산업 육성, 투자 유치 및 각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경제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등 개발 선진국을 발전 모델로 삼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슬람 정치세력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 또는 거부감도 확산되고 있는데, 2012년 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신헌법 제정 문제가 이슬람세력과 반이슬람 세력간 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신헌법 제정 이후인 2013년초 실시될 예정인 의회선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정국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자동차,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992년 최고 관세율이 100%였으나 1993년에는 80%로, 1994.2월에는 70%, 1996.10월에는 55%, 1997.7월에는 50%로 인하했고, 1998년에는 43%로 인하하였으며 2002년에는 의류 수입 금지를 전면 해제하면서 의약품, 산업용원부자재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였다. 또한, 2003.3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해 2~30% 범위로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위성방송수신기의 경우 43%에서 5%로 대폭 인하하였다.

특히, 2004.7월 출범한 Nazif 총리 내각은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2004.9월에는 6,500개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파격적으로 평균 40%나 인하한데 이어 2007.2월에 1,114개 품목의 관세를 25% 인하하였으며, 2008.4월에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약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성장 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 2009.1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5~10%에서 0~5%대로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비슷한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구조를 가진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관세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완성의류 30%, 승용차의 경우 엔진 용량에 따라 40~135%, 화장품, 포도주, 위스키의 경우 최고 3,000%까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WTO로부터 수입시장 자유화와 더불어 관세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수입부과금

1991년 판매세(법제11호/1991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도입하여 수입업체, 도매 및 제조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해 왔으며, 2001.7월 부터는 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 확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율은 최고 20%(화장품 등 사치성 내구소비재)에서 최저 5%(빵 등 생활필수품 및 중간재)이며 보통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수입품의 경우 통관 시 관세와 함께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판매세는 평균세율보다 높아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1600cc 이하가 15%, 1600~2000cc가 30%, 2000cc 이상은 45%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관 검사 시 통일된 규정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바이어 평가, 상담용,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사원 이삿짐 반입시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2009.6월부터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의 변화는 없으나 규정의 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및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이집트 관계 당국(Central Customs Authority 및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은 중국 공산품의 이집트 수출 시 Pre-shipment Inspection을 규정한 이집트-중국 간 협정 외에는 통관 관련 변경된 규정은 없고, 원산지 관련 규정도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러시아산 밀의 ship back 사건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 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중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

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중계 무역의 경우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 동안 Double Origin을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협상을 통해 큰 문제없이 물건이 통관되고 있는 실정이다(물건 중 일부부품에 표기된 타국 원산지 표기를 수작업으로 삭제하고 통관한 사례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고 ship back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인증이 들어간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나 그간 사본으로도 통관에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원본 및 대사관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 보류 및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집트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분실로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비용으로 몇 부를 더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 개설 통제

현재로서는 신용장 개설에 관해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각 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자의 신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 상당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규제

이집트는 1986.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를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가금류 등 아래 9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 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아래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

1.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2. 닭고기 내장 및 다리
3. 가금류의 간
4.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5. 모든 종류의 석면
6.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7.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8. DDT 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 장관 허가를 받은 후 수입 가능
 - 수입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9. 중고 제품
 - 수입가능 중고제품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3개 품목군은 수입 가능

수입가능 중고 품목

1.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 가정용 중고 전자제품 및 부품은 수입 불가
 - 컴퓨터 및 부품은 제조한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제품만 수입 가능
 - 환자용 침대를 포함한 의료용 기계, 장비, 기구는 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 가능
 - 제조과정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함.
2. 차량 및 부품
 - 중고 오토바이는 수입금지

- 차량 부품은 특정품목만 제한적 수입가능: Fenders, doors, engines, gearboxes, body parts, damper, differentials, rims, dashboard, springs
 - 승용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이하 화물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초과 화물차: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특수목적용 차량: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Road Tractor: 제조 후 7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차량, 크레인 차량, 콘크리트 펌프 차량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 항공기 및 부품은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어업용 선박은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관광·화물용 선박은 교통부 등 주무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
3. Machines, equipment and sport gears
 4. Containers
 5. 무기류
 - 내무부 장관 허가 필요
 6.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 이집트 공군이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
 7.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 철도 차량용 부품에 포함 불가능
 - 통관 전에 사용할 예정인 철로가 철거되어야 함.
 - 수출 당국으로부터 내용물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인증이 있어야 함.
 8.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 환경부로부터 허가 얻어야 함.
 9.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의 허가를 얻어야 함.

10. 폐지 및 폐잡지

- Ministry of Information의 허가를 얻어야 함.

11.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 Industrial Control Authority의 허가를 얻어야 함.

12. 예술품

- 문화부 허가를 얻어야 함.

13.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품질 검사 대상 품목 현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과 더불어 까다로운 성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제품의 경우에도 국제공인 인증 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품질 검사 대상 품목은 총 101개 품목으로 수출입관리기관인 GOEIC의 검사와 더불어 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CE 마크가 없는 경우 판매가 어려우므로 이집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E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집트 정부는 WTO 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1998.6.11일 발효)을 시행 중이다. 동 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저가의 덤핑 상품 및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Foreign Trade)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국을 두고 있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 개시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피제소업체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불공정 경쟁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장관의 재가를

거처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중국, 브라질(설탕 수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제재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업체 제품이 제소를 당해 1999.10월 업체별로 덤핑마진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일본산 및 EU산 타이어도 우리나라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1999.10월부터 현재까지 규제품목으로 분류된데 이어 2008.3.6일 인도 및 중국산 버스 및 트럭 타이어 대해서서도 반덤핑 부과가 결정되었다. 2007년에는 한국산 DOP 제품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부터 무차별적인 중국 상품의 유입을 겨냥하여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함께 동유럽,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8.6월부터 2011년까지 이집트의 반덤핑 총 발동 건수는 총 35건으로 철강, 타이어, 램프, 문구, 섬유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는 타이어와 DOP(Dioctyl Phthalate) 등 2건이었으나, 2010.10월 한국타이어 및 우성 타이어(현 넥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고 2012.7.3(화)부로 DO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종결되어, 2012.11월 현재 반덤핑 건은 없는 상황이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검사 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애로사항이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검사제도의 운영 강화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 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 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배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 시 견품의 수량을 최소로 축소하고, 검사기간의 단축 및 검사기준의 사전공고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JIS, ISO, DIN 등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그 규격 및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생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밖에, 1996.11월 수출입 통제청이 타이어의 품질실험관련 Drum Tester의 미비치를 이유로 외국산 타이어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여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의 수출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 후 이집트 관계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1997.2월 수입타이어 테스트 재개로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12.10월부터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관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통관 서류와 L/C 개설 및 은행 송금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세수 확대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샘플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 Sample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Sample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Sample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샘플링

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관당국에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원과의 부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다.

소포우편

소포로 수입된 화물도 동일한 수입절차를 밟으며, 관세 및 기타 제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인쇄물, 전자제품, CD, 서적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라벨 규정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업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통관·보세 장치

통관은 하주, 하주의 대리점, 통관사 등에 의해 수속이 이루어지며, 일반화물의 경우 7일간 무료장치가 허용되고 보세창고 또는 냉장시설로 이송도 가능하다. 화물장치 최장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에는 경매처분이 가능하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는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나일강 오염방지법은 배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 배수시설과 사유재산 배수시설간의 연계설치 관련 기본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폐수 방류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 금지 및 자체정화 시설 설치 규정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 World Bank의 도움으로 환경보존계획을 만든 이래 1994.1월에는 새로운 환경보존법(법제4호/1994)을 제정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한 바, 특히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승용차 수입관세는 배기량 1600cc 미만은 40%, 1600cc 이상은 135%이며 관세 외에도 승용차 구입 및 소유에 다양한 세금을 부과한다. 판매세는 1600cc 미만에 15%, 1600cc 이상에 30%, 2000cc이상에는 45%가 부과되며 또한 2000cc 이상의 승용차는 연간 차량가격의 2.5%가 보유세로 부과된다(차량가격은 세법에 따라 매년 10% 감가상각). 또 승용차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면허세를 차등 부과한다(수입차량에 높은 세율 적용). 이러한 이

유로 우리나라 현대·기아 등은 소나타급 고급차량의 對이집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협정에 따라 이집트정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수입관세의 점진적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U와의 AA*(Association Agreement)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야 됨에 따라 해마다 10%씩 관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1600cc 이하 유럽산 승용차의 관세율(2012년 기준): 28%).

*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Other Part

자동차 타이어

1999.10월부터 반덤핑 판정을 받아 오다, 2010.10월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다. 서류심사만 거친 우성(현 넥센)의 타격이 가장 심한 반면, 금호타이어는 전체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한국타이어는 경트럭용만 6.5% 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철강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 생산비용의 일부(re-rolling, coating 관련 비용의 최대 15%)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제입찰

이집트에는 우리나라의 조달청 같은 별도 입찰 전담기관이 없으며 각 정부 부서 및 기관별로 입찰 전담부서를 두고 사안 발생 시 입찰 및 구매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부문에 관여하고 있는 국영기업은 117개사로서 제조업 총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찰제도

대부분의 대규모 입찰 시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공고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회사가 공급키 어려운 편이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응찰하기도 하는데 이태리,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이러한 컨소시엄 형성에 능숙한 편이다.

공공기업은 통상 비중이 큰 자본재 뿐 만 아니라 일반상품 구매에서도 신용 제공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동 신용제공 요구조건을 보면 계약 시 10% 지불, 선적서류를 받을 때 10%, 나머지 80%는 반년 단위로 납기에 따라 분할 지불을 고집하여 구매액이 큰 경우 3년에서 5년간의 분할 상환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공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 차후 응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응찰 시 가격, 품질, 인도기일,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낙찰 후에 2~3개 업체와 재협상을 하여 보다 값싼 가격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에서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 제품으로 제한하거나 원산지에 따른 차등을 크게 두는 경우가 있어 우리업체로부터 불만

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2011년 중 주이집트대사관의 노력으로 이러한 원산지 규정에 따른 차별은 해소되었으며, 삼성 메디슨은 현지 에이전트사인 Al-Redwan을 통해 진출 중이다.

입찰전략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이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시 외국회사는 Project Manager, Cost/Schedule Manager 및 QA/QC Manager 등 일부 기술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문에만 인력을 충당하고 실제적인 현장시공과 관련된 인력은 현지 회사를 통해 충당해야 하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기지연 등의 위험성이 높아 현지 회사의 능력에 맞게 공정을 조정해 준다거나 공사수행 중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현지 회사와 협력하여 참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원조제공, 공급자 신용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집트 내에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기업의 경우에는 낙찰을 위해 관련기관에 회사홍보(신뢰성 공사 실적 등)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응찰 가격 제시 시에도 과거 유사 입찰 실시결과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 입찰

이집트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25억달러이나 미국의 군사원조가 매

년 13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 국방비 지출 규모는 3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병력규모면에서는 상시 병력이 약 45만 명이며, 군수산업 종사자가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어 방산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M1A1 탱크, F-16 전투기 등 최신에 장비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FMS 형식을 통해 도입되거나 합작생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시장 진입의 틈새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2001년 이후 한국 업체들은 중구경탄 생산 기술 이전 플랜트 사업, 이집트 공군의 활주로 조명 시스템, 활주로 청소차, 항공기 급유차, 굴삭기 등 1억3천만달러 이상을 수주하였다.

향후 주목할 점은 항공기, 전차, 함정 등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발주 기회가 희박할 것이나, 이집트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작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육상무기인 화포 및 탄약, 사막지형에 적합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차륜형 장갑차, 최신화 된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컴퓨터 및 커넥터 부품, 야간 감시장비 등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군복이나 군화 등 방산물자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공군 및 방공분야에서는 대부분 미 군원을 통해 전투기, 헬기, 미사일 등을 현대화하는 중이며, 해군분야에서도 잠수함, 함정탑재 헬기 및 미사일 등을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합작하여 현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입찰 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요구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Armament Authority)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 순이다. 따라서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제도 개황

이집트는 특허, 상표, 저작권관련 국제 협약(TRIPs)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나 국내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상표 도용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저작물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기업의 일부 상표권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해결보다는 설득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2년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제38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3월 동법 개정이 이루어져 불법 복제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다. 2002년에는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법규를 개정(Law No.82, 2002)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관할권을 문화부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다.

2003년까지 의약품 특허가 보호되었으나, 2004년부터 이집트 제약회사가 복제 의약품을 생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국인 미국 측으로부터 강력한 침해방지 대책을 요구받은 바 있으나 국내 영세민에 대한 저가 의약품 공급을 이유로 이집트 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집트를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지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상표권

상표권의 인정기간은 신청 후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보호기간이 10년 연장된다. 등록 후 소유권이 인정되며 상표권 획득 5년 이내에 이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지속된다. 만약 등록 후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등록 무효신청을 제기할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등록비는 각 상표 신청서 50이집

트파운드, 등록 수수료 60파운드, 출판 50파운드이며 연장의 경우도 비용이 동일하다.

산업디자인

2002년 법률 개정으로 반도체 설계 디자인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호기간은 등록요구일로부터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5년간 추가 연장된다. 등록비용은 건당 신청서 30이집트파운드(LE)*에 관련 부속디자인이 있으면 건당 15이집트파운드가 추가되며 등록 수수료가 75이집트파운드이다. 연장 신청의 경우 75~100이집트파운드가 소요된다. 이외에 출판비 30파운드가 추가로 소요된다.

* 2012.11.5 1\$=6.10LE

저작권

예술,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물, 음향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적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자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영상 및 음향물은 제작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되며 예술품은 창작일로부터 25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5,000~10,000파운드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저작권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적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3%, 게임 소프트웨어는 90%가 해적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기간은 15년에서 법규 개정으로 2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허침해가 심했던 의약품의 경우 특허 보유업체의 정보 및 마케팅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연간 특허 등록비 미납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 특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은 자동 소멸된다.

이집트 특허청

○Cairo Egyptian Patent Office, 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

Technology(ASRT)

- 주소: 101 Kasr Al Ainy st., Cairo, Egypt P.O. Box 11516
- Tel: (202)2792-1291/2792-1274/2792-1272
- Fax: (202)2792-1273
- 이메일: patinfo@egypo.gov.eg 또는 esmat aly@hotmail.com
- 홈페이지: <http://www.egypo.gov.eg>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이집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 투자 문호를 개방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는바, 1997년에는 통합투자촉진법(법제8호/1997)을 시행, 투자 허용분야를 16개로 명확히 하는 등 종전의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에는 동법 개정을 통해 투자대상 분야를 24개 부분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3월부터는 ‘투자 및 자유구역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2012.6.30일 취임한 Morsy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부장관 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집트는 투자허용분야를 법규상 명시하는 방법(Positive list)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 투자금지품목(Negative list)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투자 허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한다.

국가기간산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스라엘과 근접한 시나이 반도에 투자할 경우 이집트 보안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진출 허용 분야

1. 에너지집약 프로젝트
 2. 알루미늄 원료
 3. 메탈합금 프로젝트
 4. 담배산업
 5. 군수부문(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능)
 6. 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 * 시나이반도에서 사업 추진시, 총리실 산하 시나이개발청장 승인 요망

2000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통합투자촉진법상 24개 투자허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24개 투자허용 분야

1. Reclamation and Cultivation of Barren and Desert Lands or either of them
2. Animal, Poultry and Fish Production
3. Industry and Mining
4. Hotels, Motels, Boarding Houses, Tourist Villages, Tourist Travel and Transport
5. Transport of Goods in Cooling Vans, Cold Stores for Preser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dustrial Products, Food Stuffs, Containers Stations, Grain Silos
6. Aviation Transportation and the Services directly connected therewith
7. Overseas Maritime Transport
8. Oil Services for Digging and Exploration Operations, Transport and Delivery of Gas
9. Housing Projects, the Units of which are leased wholly empty for Non-Administrative Housing Purposes
10. The Infrastructure comprising drinking Water, Drainage Water Electricity, Roads and Communications

11. Hospitals and Medical Treatment Centers which offer 10% of their Capacity Free of Charge
12. Financial Leasing
13. Guaranteeing Subscription to Securities
14. Risk Capital
15. Production of Computer S/W and Systems
16. Projects funded by the Social Funds for Development
17. Developing New Urban Areas
18. S/W designing and Producing the Electronic Content
19. Establishing and Managing Technological Zones
20. Credit Classification
21. Factoring
22. Establishing, Managing and Operating or maintaining means of river group transport means within and between the New Towns, Cities and Urban Communities
23. Prosecuting Department for Industrial Projects and Utilities Projects
24. Collection of Garbage and Wastes of productive and service activities and their treatment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사는 이집트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집트 회사법규를 따르며, 납세, 사회보장, 노동법 적용 등 지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가 현지법에 따라 규율된다. 지사는 이집트 회계사가 감리한 재무제표를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사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32%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주한이집트대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은 회사정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책임자 임명에 관한 서류 등과 등록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록한다.

국산품 사용 규정상의 제약

2000.3월 이집트정부는 부품국산화율을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1.10월말 60%로서 이집트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인기업들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에게는 40~45%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국산원료사용 비율을 심사한다. 대이집트 직접 투자 시 이집트산 부품 의무 사용 비율에 대해서 이집트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요구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의무조항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특별 허가 시 재투자 및 수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처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3월부터는 ‘투자 및 자유구역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등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허가업무에도 많은 관리들의 서명확인, 처리 지연 등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투자계획서 제출 시 공장부지 위치를 명시, 투자청에 제출하면 투자청에서 건설 구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한 승인된다. 이집트 문화유적을 피하거

나 군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장 건설지역에 대한 커다란 제한은 없으나 시나이반도나 국경지역에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들어 공장건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현재 공장부지 불허 승인의 경우는 산업통상부산하 산업개발청(IDA) 소관사항이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동 인허가권을 투자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금융상의 제한

이집트는 그동안 별다른 외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3.6월 통합금융법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을 마련, 외환관리 규제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25,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자금 결재시에는 거래은행의 신분확인을 거쳐, 중앙은행에 통보된다. 기업의 경우 L/C, L/G를 개설할 시 현재로서는 송금에 제한이 없으나 이집트의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 조만간 송금한도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국외송금시 연10만달러로 제한되며, 1회 송금제한액은 1만달러이다.

이집트 정부는 외환 보유하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기업의 해외본사 과실 송금 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이집트의 주요 세제로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적 성격의 판매세, 사회보험적 성격의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 이집트는 2005.6월 전면적 세제개혁을 통해 32~40%에 이르던 법인세를 20%로 통일하여 대폭 인하하는 대신 기존 투자법에 명시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철폐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 세제 감면폭을 넓히고 최대 세율도 32%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이집트의 세제 인하 배경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탈세 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탈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집트 세무당국의 증빙서 보관 및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중으로 발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법(Law No.91/2005)에 의거하여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합자회사(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등은 물론 공공기업, 은행,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Branch) 등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업종인 원유 및 가스개발 생산기업의 세율은 40.55%, 수에즈 운하 수익, 이집트 석유청, 이집트 중앙은행의 세율은 40%이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경우 창고업은 CIF 가격의 1%, 제조업은 FOB 가격의 1%, 서비스업은 이윤의 1%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이윤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2005.6.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급여, 보너스, 주택수당, 의료보조비, 초과 근무수당 및 이와 관련된 수혜에 적용되며 과거 세율 32%를 20%로 인하하는 대신 소득대별 세율 적용을 다양화하였다. 이집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로 이집트인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다.

연간 소득(이집트 파운드)	세율(%)
0~5,000	0%
5,001~20,000	10%
20,001~40,000	15%
40,001 이상	20%

한국과 이집트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집트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집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183일 미만 체류 시에는 공제 혜택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며 판매세라고 하며 모든 국내 및 해외수입 재화나 용역에 적용되며,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25%이며 일반 제품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자동차에 대한 판매세는 엔진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다. 판매세 부과기준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거나 차(Tea), 설탕, 담배, 석유화학, 철강 등 부피가 큰 13개 제품에 대해서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생활필수품 및 중간재는 5%, 일반제품은 10%, 사치품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용역(service)의 경우 5~10%의 세율(단, 전화요금은 유일하게 15%)이 적용되고 자동차는 1,600cc 미만은 15%, 1,600~2,000cc는 30%, 2,000cc 초과는 45%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한다.

사회보장세

의료보험,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 보장세(Social Insurance)를 통합운영하고 있다. 종업원의 정년퇴직, 사망, 실업, 부상, 질병시 보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보험 성격으로 고용자가 원천 징수 후 납부해야한다. 이 규정은 이집트인 전일 근무자에게 해당된다. 단, 건설회사에 고용되는 임시직은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사회 보장세 요율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 부담: (기본급 × 26%) + (가변소득 × 24%)
- 근로자 부담: (기본급 × 14%) + (가변소득 × 11%)
- 기본급은 700이집트파운드까지 인정되며 그 이상은 가변 소득으로 간주

- 기본급 한도액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표

단, 건설회사에 고용되는 임시직은 전체계약가액 중 인건비의 18%를 사회 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으로 할당해야 한다.

로열티

로열티는 원천징수 되며 세율은 통상 20%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우선하므로 협정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제조업 활동에 기여하는 로열티는 면제 대상이며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은 15%이다.

이자소득세

일반 이자 소득세율은 20%이나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부과 세율이 15%이다.

재산세

이집트 정부는 부동산 부분 외자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2008.6.15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이집트 부동산 관련 세제는 소득세와 보유세로 구분되고 있는데 소득세는 부동산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각 대금의 2.5%를 과세하고 있으며 보유세는 기존의 46%에서 10%로 변경됐다.

2010.1.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세(Property tax) 세율을 기존 46%에서 10%로 인하하며 500,000이집트파운드 이하의 주택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집트는 세금 납부 의식이 희박하고 세무행정의 낙후로 증빙서 보관이 안 돼 종종 납부고지서 재발부로 이중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세금 납부 시에는 반드시 커버 레터와 함께 수표로 납부하도록 하며 은행 명세서 보관

증빙서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시장

임금수준

이집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850이집트파운드 이하의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숙련공과 비숙련공 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격차가 현지 기준으로 볼 때는 큰 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월 사회보장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능력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생산 라인에서 근로자 간 월 급여가 무려 4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임금 인상률은 매년 5~10%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2011년 들어 시민 혁명 이후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높은 임금을 주는 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임금수준

- 월 150~200달러(비숙련공)
- 월 200~350달러(숙련공)

○ 일반기업체 임금 평균

- 월 150~300달러(일반근로자)
- 월 400~1,500달러(초급 관리자)
- 월 1,500~5,000달러(고급 관리자, 경영진)

대형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월급여가 높은 편으로 이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이집트의 대형기업, 외국계 기업 근로자 월 급여

직종	월 급여
Sales and Marketing Director	L.E 35,000~40,000
Financial Director	L.E 30,000~35,000
Human-resources Director	L.E 30,000
Manager	L.E 15,000~20,000
Production manager	L.E 10,000~12,000
Accountant	L.E 5,000~10,000
Personal assistant to director	L.E 7,000
Secretary	L.E 4,000

주: 1달러 ≒ 6.10L.E(이집트파운드)

임금 규정

최저임금 규정이 없는 대신 매년 기본임금을 7% 인상해야 하는데 기본임금은 고용주와 종업원 간 근로계약 시점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데 통상 기본임금은 전체 임금의 70~80%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 강제규정은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근로자 연봉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라마단 종료 후 월 급여의 50%를, 연말에 월 급여의 50%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세 미납부자의 경우 근무 최초 5년은 월급여의 50%, 5년 초과 시 월급여의 100%에 근무 연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의 월급여여야 한다.

노동조건

이집트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나 고급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성과 노동의욕이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과학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투자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향

상방법은 목표 부여제, 철저한 성과급제, 팀 단위 공동연대책임제 등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고용조건

시보기간은 3개월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용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기 계약으로 간주된다. 기간제 고용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며 다시 갱신이 가능하다.

(2) 노동시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1주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일 9시간, 주당 5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 근무일 낮 시간 35%, 밤 시간 70%, 휴일 100%이며 법정 공휴일은 200%이다.

(3) 휴가

1년 이상 근무 근로자는 연 21일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는 근속 기간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 또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병가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유급으로 주어지며 급여 비율은 75~100%로 결정된다. 출산 휴가의 경우 10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성지 순례휴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100% 유급 조건으로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성지순례 또는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으며 근무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해고

이집트 노동법은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나 휴업, 폐업 사유 이외의 자의적 해고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부적절한 근무자세를 보이거나 실책을 저지른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증빙 서류를 작성

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이 축적된 이후에야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법 제69조에 명기된 9가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 지방 조정 위원회에 해고 결정을 요청하면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는데 실제 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관례이다. 근로자 해고 결정시 10년 이상 근속자는 최소 90일 전에, 10년 미만 근속자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사분규

이집트는 그간 집권층의 정권유지를 위해 노동쟁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편이었다. 2003년 이집트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화적인 노동 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조합과 이집트 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과격한 노동 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1.25일 시민혁명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기업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버스·철도 등 운송분야 노동자, 의사, 교사, 하급경찰 등 각계각층에서 파업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에는 23개의 산업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모두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ETUF: 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 소속이다. ETUF의 노조원 수는 약 48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이 공기업 근로자다. 1998~2003년 사이 총 노동쟁의 건수는 743건이며 2005년의 경우 시위 16건, 파업 43건, 태업 53건이 있었다. 2011년 이후, 파업이나 노동쟁의 건수는 대폭 늘어났다.

대형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 소속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집트 정부의 민영화 정책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이 노동쟁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와의 분쟁 해결 방안

이집트는 법규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보장되어 있지만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노동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세부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의 월급 일부 삭감, 보직의 이동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 투자기업 근무 종업원 중 고용자와의 분쟁으로 기업 회계 서류를 정부 관공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준 사례가 있는 만큼 간접적 방법 또는 일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이직을 권유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경쟁정책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04.7월에 출범한 Nazif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 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현 Morsy 정부도 향후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민영화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주한이집트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취득하거나 관광비자(유효기간 1개월)로 입국 후 1년 유효의 체류비자를 1년마다 갱신 신청할 수 있다.

※ 이집트에서 신청 시 절차: National Security의 신원확인서 발급→GAFI (Work Permission Office)의 Work Permit 발급→Ministry of Interior (Passport & Visa Section)에 비자신청

운전면허 취득

한국-이집트 정부 간에는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시험을 통하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민의 경우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국제도로표지판의 의미와 차량 부품의 기능에 관해 시험관에게 구두로 설명(영어 가능)하는 이론 시험과, 주차방법 및 시험장내에서의 간단한 주행시험을 통과하면 10년 유효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하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집트에 올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2003년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한 통합 금융법안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되었고, Nazif 총리 내각은 2004.7월 출범 후 세계은행, IMF,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후원아래 금융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영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

진한 바 있다.

통합 금융법안에 따르면 이집트계 은행은 최소 자본금을 5억 이집트파운드(8700만달러), 외국계 은행은 5000만달러로 법정 자본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아울러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각 은행들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2005.7.14일까지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 강제합병이나 폐업 등 강경 조치함으로써 67개에 달하던 은행이 2012.11월 현재 39개로 대폭 축소되어 5개의 국영은행, 27개의 민간은행 또는 합작은행, 7개의 외국은행 지점이 있다.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당분간 은행 설립에 대해 인허가를 내줄 계획이 없다.

외국계은행 중 우리나라 외환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이 현지 은행과 합작 설립한 극동은행은 Audi 은행에 지분을 매각하여 2006년 이집트에서 철수하였다.

또한, 국영은행의 민영화정책으로 정부는 2006.10월 4대 국영은행 중의 하나인 Bank of Alexandria의 80%의 지분을 이태리계 은행(SanPaola IMI)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개혁에 가속이 붙었다. 대형 국영은행인 Banque du Cairo도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국회, 민간단체, 노조가 대량해고 및 금융의 자주권 수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적절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8.7월로 연기되었다가 세계경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로 미뤄졌으며 그 후 동 은행의 민영화 추진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은행개혁과 국영은행의 민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소형화, 비효율적인 은행 운영시스템과 간섭과 규제를 일삼는 금융행정, 고객이나 수익성을 무시한 은행영업 태도 등이 수익성 추구와 고객서비스를 본질로 하는 금융 산업의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비로소 이집트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이집트 중앙은행은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신규 금융 기관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이 이집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은행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이집트 은행을 합병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7.7월 Abu Dahbi Islamic Bank 컨소시엄이 National Bank for Development의 지분 51.3%를 인수한 바 있고, 2008.4월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Al-Watany Bank을 10억달러에 인수하여 이집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자본이 풍부한 아랍계 은행들이 이집트 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슬람 금융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금을 투자 운영하는 이슬람 금융(Islamic banking)의 성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물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한데, 이슬람 금융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업부분(주류·돼지고기·도박 등)을 제외한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슬람권의 오일 머니가 급증하면서 급성장하다가 세계금융위기로 급속히 위축된 바 있으나 유가가 회복되면서 중동 지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에는 Banque Misr을 통해 이슬람 금융 상품이 처음 소개됐으며 Faisal Islamic Bank와 Egyptian Saudi Finance Bank 2개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기타 은행들도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3개 국영 은행의 이슬람 금융 비중은 약 10% 정도로 타 이슬람권에 비해 덜 활발한 편이다. 이슬람 금융 상품은 샤리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상품 판매 이전에 이슬람법 판결기관의 감독을 수시로 받는다.

투자 환경

투자의 장점

(1) 거대시장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이집트는 거대 시장인 EU, 오일달러가 넘치는 아랍권,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시장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EU, 아랍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과 대서양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등 물류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집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명 칭	발효일	주요 내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공동시장 (인구3.8억명) ○ 회원국: 동남아프리카 21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공은 옵저버 ○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범아랍자유무역 협정(PAFTA)	199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아랍연맹 17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는 걸프 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 국가별 관세수와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EU회원국과 이집트간 FTA ○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EU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 (예) 자동차 관세는 2010~2019간 매년 10%씩 인하 ○ 농산품 일부 쿼터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간 협약 ○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11.7%에서 2008.1.1부로 10.5%로 변경)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이상 사용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 이집트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개, 2011년 이집트 QIZ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TR은 이집트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하였고, 2005.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지역을 지정한 바 있음.

명 칭	발 효 일	주요 내용
Agadir 협정	2006.7.1	○ 회원국: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FTA내에서 남남협력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터키 FTA	2007.3.1	○ 대터키 수출: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 대이집트 수출: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2007.8.1	○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 대EFTA 수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 대이집트 수출: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남미공동 시장(MERCOUR)	2010.8.2 서명 (2012.9.8 현재 미발효)	○ MERCO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육류, 밀, 옥수수 등: 대해 즉시 관세면제 ○ 우유, 산업제품: 4년내 관세 면제 ○ 기타 협상 품목: 8~10년후 관세 면제
아프리카 대자유 무역협정(African Grand FTA)	2011.6.12 26개국 정상간 창설합의	○ COMESA,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EAC (동아프리카공동체)간 FTA ○ 인구 5.5억명으로 아프리카전체인구의 57% - 아프리카 전체 GDP의 58%(8,300억달러)
아프리카 FTA	논의중	○ 2011.12월 가나 아크라개최 아프리카 통상 장관회의시 20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2019년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이집트는 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적

(2) 잠재력 있는 내수 시장

인구 약 8,300만에 그 중 약 10%(800~1,000만)는 연 소득 1만달러 이상의 탄탄한 소득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63%가 30세 미만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미래 시장이다.

(3)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사회간접 시설

실질 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대졸 실업률은 40% 가까이 되어 인력 채

용이 용이하며, 인건비가 저렴하다.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 요건이 양호하고 에너지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의 단점

(1) 세계 최하위의 노동 생산성 및 까다로운 노동법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의 조사에 따르면 이집트의 노동 생산성은 인근 튀니지의 61%, 터키의 34%보다 극히 저조하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발표에 의하면, 이집트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중국 노동자들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기본임금 7% 인상 강제규정 및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한 법체제와 관행이 존재하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제외한 주식회사, 지사는 회사 순이익의 10% 이상을 연봉 이하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해야 의무 규정이 있는 등 노동법규가 까다롭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전체 종업원의 1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집트 노동자 9명 고용시 지상사 주재원 1명 허용)하고, 취업비자 신청 시 외국인 종업원 수 비율에 따라 한국주재원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 관료적 행정절차

세관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적용 규정이 상이하며, 각종 행정 절차에 관료주의(Red Tape)가 만연하며 담당 기관별 법적 해석이 상이하고 동일 문제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하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설립 등 행정절차에서 개선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직 개선이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이집트 도시별 회사설립 절차 및 기간

행정 소요비용	절차 수	기간
260 \$	6개	7일

출처: 세계은행

(3) 투자 인센티브 미흡

2005년 세법 개정으로 특정 분야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 외국인만을 위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없고, 모든 투자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 취급하며 투자 인센티브가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많은 자유무역지대의 경우도 2008.5.5일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 이집트 투자환경 SWOT분석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미국 2대 거대시장 무관세 수출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증가 ○ 지속적 시장개방으로 효율성 증가 ○ 젊은층의 높은 인구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효율적 대학교육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수요에 비해 고급인력의 수준 낮음. ○ 치안불안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아프리카를 잇고 지중해, 홍해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 외국인 회사에 호의적인 이집트 정부정책과 법규 ○ 적극적 정부 민영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정부 투명성(163개국 중 70위) ○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법규 ○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비즈니스 운영 환경

(1) 포스트 브릭스 특징

이집트는 향후 포스트 브릭스로 평가 받을 만큼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LG 경제연구소는 포스트 브릭스의 특징을 아래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다양한 사업 기회

저가 생필품 시장에서 중저가 보급형 시장 및 고급형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국 특성에 맞는 제조업 발굴 육성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한다.

○ 경쟁 격화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에너지, 건축, 이동통신 분야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경제 민족주의 확산

자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자원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서비스 등도 패키지 딜 투자 방식이 유행한다.

○ 투자 리스크 존재

투자환경이 개선 중이나 단기간 경제성장으로 열악한 경제기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많으며 인프라 부족 등 투자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쳐야 할 직간접적 장애요인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투자환경 개선 노력 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이집트는 최근 사업개시 소요기간이 7일로 여타 중동 국가 평균 23일에 비해 대폭 단축되었다. 건축허가 취득비용도 국민소득대비 174%에서 135%로 감소되었고, 재산등록 소요기간도 72일 수준이다(여타 중동 국가 평균은 33일).

그러나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이집트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평가한 이집트의 투자 환경 지수는 조사 대상국 185개국 중 109위로 나타나 순위가 전년의 110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편이다. 이집트 정부가 외자유입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 정부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비즈니스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적도기니

경제 개관

서 아프리카 기니 만에 위치한 적도기니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29,543.66km²)과 유사한 28,051km²인 국토에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3%에 상당하는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적도기니의 인구는 2001년 적도기니 통계청에서 예상한 바로는 2012년 현재 100만 명이 넘어야 하지만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2011등에 따르면 약 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수명은 길지 않아 약 50세이고 전체 인구의 40%가 15세 이하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3%에 불과할 정도로 젊다 못해 ‘어린 국가’이다.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는 달리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부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UNDP가 집계한 인적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169개 국 중 117 위에 머물렀고 2001년 최종 집계 당시 실업률 또한 19.7%에 달하였으며 세계은행이 집계한 기업환경여건 순위(the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는 183개국 중 155위(2012)에 그치고 있다.

1995년 석유 발견 이후 그 생산량의 극적인 증가와 고유가로 인해 최근 10년 간 평균 10%에 이르는 고성장을 이어왔지만 동 기간 6.5%가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고 경제 개발 또한 탄화수소 분야에만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을 가져왔다.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인 1994년 총 GDP의 46%를 차지하였던 농업 분야는

2009년 2.2% 수준으로 떨어졌고 목축업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며 수산업은 0.1%, 임업은 0.8%에 불과하지만 탄화수소 분야는 국내 총 생산의 73.4%, 총 수출의 98.7%, 재정 수입의 80.6%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왔고 화란 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이에 적도기니 정부는 탄화수소 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경제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Horizonte 2020”라는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2007년 말에 발표하였고 실행 중에 있다.

무역 환경

관세 장벽

a) 수입 관세

원칙적으로 적도기니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omunidad Económica y Monetaria de Africa Central-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 세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동 규정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의 불투명성과 제도적 역량 부족이 적도기니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

관세 적용 기준에 다음과 같은 관세를 납부한다.

1. 관세: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에 따라 납부
 - 1 제1 카테고리: 생활필수품 5%
 - 1 제2 카테고리: 장비 및 원자재 10%
 - 1 제3 카테고리: 중간재(준 가공품) 20%
 - 1 제4 카테고리: 소비자재(최종 생산품) 30%
2. 국고에 입금되는 세금(Impuesto)¹

¹ 세금(Impuesto): 서반아어에서는 세금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하는데 ‘Impuesto’란

1 부가가치세: 15%(경감세율 6%와 0%)²

1 상업세: 1%

1 특별세: 최대 50%(특정 품목에 한정: 주류, 담배, 개인위생 물품)³

3. CEMAC 세금(Tasa)⁴

1 공동체 통합 세금(TCI) 1%

1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Contribución)⁵ (CCI) 0.4%

세금은 수표나 현금으로 세관에 납부한다. 세관은 CEMAC에 해당하는 세금도 징수하고 중부아프리카 은행(BEAC)에 납입한다.

b) 면세 제도

CEMAC 회원국인 카메룬, 차드,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가봉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 면제를 받는다.

적도기니 투자법에 의거한 특별 제도로 인해 관세를 면제받는 회사의 장비는 세금의 면제를 받는다. 보편적으로 정부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 관세와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탄화수소 분야 회사의 장비도 세금 면제를 받는다.

비관세 장벽

a) 수출입 면허제도

수입 수량 제한, 비관세 보호 및 수출입 면허 제도는 적도기니 정부가 1992년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도입하면서 해제하였다. 적도기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2_ 경감세율 및 면세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1, 1-1, 2를 참조할 것

3_ 특별세 부과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3을 참조할 것.

4_ 세금(Tasa): 'Tasa'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용역의 대가로 납세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5_ 세금(Contribución): 'Contribución'이란 정부의 특별한 활동이나 공공 지출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이득을 얻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한다.

니 정부는 몇몇 공영기업을 매각 하는 등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투자법 또한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비전통 수출품의 수출 장려,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을 보장 하고 있다.

무역 규정은 중부 아프리카의 세금 및 관세 개혁법에 맞춰, 수입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세 적용범위와 금액을 낮추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b) 임시 수입 제도

적도기니 수입 세법은 물품의 임시 수입을 허가하는데 관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편적으로 정부 사업 수주를 한 회사들에게 임시 수입 허가를 허용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 수입된 물품들은 관세를 면제 받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 목적을 이룬 후에는 수출 국가로 반송하여야 한다.

c) 라벨링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서 반아어와 불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d) 수입 규제

특정 위생 물품, 화학, 독성 폐기물, 특정 화장품 및 식용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제외될 새로운 상품이 확인될 때마다 수정될 수 있다.

e) 수출 통제

적도기니에서의 수출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5만세파프랑 이상의 수출은 허가 받은 은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입금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해외로부터 적도기니로의 수입은 표준 컨테이너 당 7가지의 서류와 평균 USD 1411의 비용이 들어, 서류 작성에 있어서는 사하라 이남 국가의 평균인 8가지 보다 적고, 그 비용도 사하라 이남 국가 평균 2502달러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소요 기간은 48일로 사하라 이남 국가 평균인 37일보다 훨씬 길다. 적도기니는 무역 환경 편의성에 있어서 183개 조사국가 중 134위에 머물렀지만 중부 아프리카 통화 경제 공동체의 회원국인 카메룬(156위), 콩고 공화국(181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182)위보다는 높고 사하라 이남 국가 평균(134위)과 동일하다.

적도기니의 실질적인 통관절차를 살펴보면 고질적인 악습 관행이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데 장기간의 통관 기간(48일, 사하라 이남 국가 평균 37일)로 인해 실질적인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그 규정 또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 산정 기준 액으로 인정하나 동 기준 액 설정에 있어서 적도기니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고 하역 이후에도 군부 측 검열 등 규정된 절차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규정 외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된다.

■ 수출 기간과 비용

수출 절차	기간	비용(미화)
서류 작성 및 준비	14	295
통관 절차 및 기술 관리	10	97
하역 및 화물 취급	2	660
내륙 운송 및 취급	4	359
총계	30	1411

■ 수입: 기간과 비용

수입 절차	기간	비용(미화)
서류 절차	24	295
통관 절차 및 기술 관리	14	97
하역 및 화물 취급	8	660
내륙 운송 및 취급	3	359
총계	49	1411

투자 환경

a) 투자 유치 정책 및 규제

적도기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고 그 인구 또한 7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매우 협소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어 내수시장에 대한 매력은 매우 떨어지나 CEMAC, ECOWAS의 회원국이며 “아프리카의 싱가포르”이라고 불리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는 등 중·서부 아프리카의 경제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류 기지로서의 매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적도기니 정부는 석유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개발을 다양화 하고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Horizonte 2020”라는 기관 및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제 개발의 중심축을 이루는 광업, 산업 에너지부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PEGI 2020이라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국가 재건이라는 선행과제를 수행한 적도기니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다양화를 촉구하는 국내외 전문 기관들의 조언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에 석유뿐 아니라 농업, 수산업, 관광업, 금융 분야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였고 내외국인 기업 간 동등 대우를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 투자 사업에 있어서 내국인의 지분 참여가 최소 35%를

보장해야 하는 등 투자자유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다.

b) 투자 사업 허가

특정한 사업을 제외하고, 적도기니 투자법이 보호하는 모든 투자 사업에 대해서 경제재정부는 투자 기업이 경제재정부의 조건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신청한지 60일안에 자동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업과 발기인을 서술하고 투자자들의 신용보고, 상업 전력 및 도덕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사업에 관여된 해외 투자자의 전력 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사업의 승인 증명서 혹은 기각 증명서를 발행하며, 승인증명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주어질 혜택과 이익을 명시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를 묘사하고 확정하며 수입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c) 조세 및 특혜

적도기니의 법인세는 35%이며, 농업 관련법인,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법인세는 면제 받는다

d) 투자 인센티브

1. 신규 고용 창출 시 소득 과세 기준 산정에 있어서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회사 월급 계획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액수만큼의 추가 절감 혜택
2. 국내 인력의 직업 훈련 시 소득 과세 기준 산정에 있어서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회사가 내국인 근로자 직업 훈련에 배정한 임금 외적 비용으로 지원한 금액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의 절감 혜택
3. 비 전통 수출 품목의 수출 대금으로 수령한 외화금액의 15%에 상응하는 신용 증명서-재정과 또는 관세 책무를 변제하는데 유효.
4. 대 도시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승인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시행된 과세 년도의 공제 가능 비용과 같은 모든 항목의 감가상각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교량, 도로, 학교, 무료진료소 혹은 유사 공사 등 공적 혹은 사회적 이용 목적인 공사라면 회사가 지불한 모든 사회 기반 시설비용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소득세, 판매세, 관세 및 그 외 지방지역에서의 활동에 적용 가능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과세 책무의 지불에 대한 면제.

5. 한 해 동안 내국인 투자자가 유지한 최소 회사 자본 소유 수준이 5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만큼 소득 과세율의 백분율 공제 혜택을 받는다.
6. 수입 혹은 수출을 위한 사전 허가의 모든 필요조건 면제
7. 수입 법률의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써 공표된 수입 혹은 수입에 관한 모든 특별 세금 면제
8. 허가를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내, 외국인 직원들에게 필요한 허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부조달 장벽

원칙적으로 정부 사업은 공식 신문에 기재 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도기니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기업이 인프라 부나 국가의 건설 사업을 책임지는 GE Proyectos 위원회에 제안하고 협상, 수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정부 사업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최고 실력자의 의향에 따라 성사된 계약이 해약되기도 하고 절차와 상관없이 발주가 되는 등의 사례도 있다.

제한적 경쟁 입찰이던 수위 계약이던 현지법인설립을 한 후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공공사업에 단발성으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내국인과 5%~10%의 이익 참여계약을 맺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a) 관련 협약 가입 현황

적도기니는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와 조약 및 아프리카 지역 기구와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산업 재산권에 관련한 국내 법(법 5/2000) 등을 제정하는 등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외관상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 회원 기구 및 조약

- 베른 협약
-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 Organization)
- PCT Union(국제 특허 협력 연합)
- OAPI(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
- Bangui 협약
-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c) Bangui 협약을 통해 OAPI의 보호를 받는 10개 분야

1. 특허
2. 실용신안권
3. 상표와 서비스 표
4. 산업 디자인
5. 표장권
6. 원산지 표시
7. 저작권
8. 부정 경쟁 방지
9. 반도체 제품의 기술적 지식 보호
10. 식물 신품종 등록 보호

d) 지식 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협약 및 기구 가입과 제도는 준비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적도기니에서는 해당 분야 산업이 개발되고 있지 않았고 담당 기관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에서 유입 되는 불법제품에 대한 통제도 이뤄 지지 않고 있으며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등 불법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고 서적의 경우 출판사의 부재와 수급의 어려움으로 불법적인 복사가 만연하다.

기타 장벽

a) 지사 설치상의 제약

법령 제127/2004는 적도기니에 설립되는 외국인 회사에 최소 내국인 지분 참여를 35%로 규정하여 적도기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의 지사 설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회사는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지사는 적도기니의 법의 적용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무역을 담당하는 장관의 훈령에 의해 그 의무가 면제 되지 않은 경우 Uniform Act 120조에 의해 외국인 소유의 지사는 이미 설립된 회사에 부속되거나 2년 이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b) 법인 설립 절차상의 제약⁶

적도기니의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증인이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소재하는데 부재중일 경우가 많아 예상 소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증 비용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가장 중요한 총리실로부터의 회사 설립 허가는 최소 기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되는바 법인 설립이 적도기니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 중에

6. 별첨 4, 5 참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 그룹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83개 국 중 법인 설립의 편의성에 있어서 2011년 181위, 2012년 178위로 조사되었고 21개의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소요 기간은 평균 137일, 비용은 1인당 국민소득의 101.4%(미화 약 30,000)가 소요된다.

c) 비자 및 거주 증

적도기니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비자 혹은 입국 허가(Autorización de Entrada)를 소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적도기니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 중국 적도기니 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적도기니는 노동비자의 개념이 없고 근래 들어 복수 비자의 발급은 하지 않으며 1개월 단수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대행 및 발급 비용이 매우 높다(USD 500~800).

노동 비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적도기니 진출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거주증을 신청하고 노동부에 등록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2.8월부터 적도기니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신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과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자에게는 위에 계약된 근로자 1인당 최소 오천만(50,000,000)세파프랑의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는 발표를 하였기에 아국 진출 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

d) Expat Quota

적도기니 노동법은 민간 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전체 근로자의 10%까지 채용할 수 있고 석유 분야 기업의 경우 30%까지 그 제한이 늘어난다.

별첨1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

1	인슐린과 그 결정성 분말
2	키니네와 그 결정성 분말
3	항생제
4	제약(의약품)
5	비용
6	치과용 왁스
7	방사선 판 및 테이프
8	방사선 필름
9	살충제
10	고무 재질 위생 및 의약 제품
11	(외과)수술용 장갑
12	해당 번역 없음
13	유리 잔(안경 렌즈)
14	실험실(연구소)의료-외과용 소독기
15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
16	장애인용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의 부품
16	보정 렌즈
17	의료-외과용 기구
18	치과용 의자
19	기타 의학·수술용 기구들
20	기타 농업 소비재

별첨 1-1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 목록

7308	주탑, 교각, 교량 등 철골 구조물과 그 자재
84021100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200	시간당 45톤을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900	혼합식 보일러를 포함한 기타 증기 보일러
84022000	“온수 보일러”로 칭하는(알려진) 기타 보일러
84031000	기타 보일러
84051000	가스 발전기

84061100	선박 추진을 위한 증기 터빈
84061900	기타 증기 터빈
84071000	항공기용 모터
84072910	10.000kg 혹은 그 미만의 선박의 피스톤(연소) 엔진(선외 엔진제외)
84072920	10.000kg 이상 선박의 피스톤(연소) 엔진
84081091	10.000kg 혹은 그 미만 선박의 디젤 엔진(선외 엔진 제외)
84081092	10.000kg 이상 선박의 디젤 엔진
84091000	항공기용 양수기
84101200	1000에서 10.000kw의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01300	10.000kw를 상회하는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11100	25kn를 넘지 않는 터보제트엔진
84111200	25kn를 초과하는 터보제트엔진
84112100	1.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터보 추진기
84112200	1.100kw의 동력을 상회하는 터보 추진기
841181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기타 가스 터빈
841182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는 기타 가스 터빈
84122100	터보제트엔진 이외에 반동추진엔진
84122900	수평 운동 유압 엔진
84122900	기타 유압 엔진
84123100	수평 운동 공압 엔진
84123900	기타 공압 엔진
84128000	기타 엔진과 원동 기계
84131100	주유소와 수리공장(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 공급을 위한 펌프
84131900	주유 측정 펌프
84132000	841311 혹은 841319외에 레버 핸들 펌프
84133000	스파크 혹은 압축 점화 엔진에 필요한 연료, 오일 혹은 냉각수 펌프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84135000	기타 왕복식 펌프
84136000	기타 다른 회전식 펌프
84137000	기타 원심 펌프
84138100	기타 액체 펌프
84138200	해당 번역 없음
84141000	진공 펌프
84143000	냉동 장비에 사용되는 컴프레서
84144000	이동식 에어컴프레서
84161000	액체 연료 연소기(소각기)
84132000	혼합을 포함한 기타 연소기
84136000	자동 전구

84171000	광물과 금속 제련 전기로
84172000	제빵과 제과용 비 전기 오븐
84178000	기타 비 전기오븐
84191100 부터 84198900 까지	조리(요리)나 볶음과 같이 온도의 변화가 필요한 작업용 기구와 장치
84201000	압착 인쇄기와 박판기
84211100	원심 분리기; 액체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
84213900	혹은 가스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상동)
84223000	병, 용기, 자루(saco)에 내용물을 채우고, 봉하고 대조하거나 라벨을 붙이기 위한 기계나 기구, 음료 탄산가스 혼합기
84221000	상품 포장 기계나 기구
84241000 부터 84248990 까지	기타 방출, 분산, 분쇄기 류
84251100	전기 모터 기구
84251900	기타 기구
84252000	궤도 내의 이동 칸(jaula)과 광차의 상하 이동을 위한 핸드원치
84253100	핸드 원치 와 전기 원치
84253900	기타 핸드원치와 원치
84254100	정비소용 차량 리프트
84254200	기타 잭과 유압잭
84254910	기타 잭과 기압 잭
84261100 부터 84269900 까지	견인기(견인차)와 기중기
84271000 부터 84279000 까지	지게차와 운반차
84281000 부터 84289000 까지	적재, 선적 혹은 운반을 위한 기계와 기구
84291000 부터 84295900 까지	굴착기, 그레이더, 불도저, 로드 롤러차
84031000 부터 84306900 까지	기타 토지의 절성토 및 운반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84331900 부터 84336000 까지	농산물을 수확 혹은 탈곡 기계
84341000 부터 84342000 까지	착유기 및 착유장의 기계 및 기구
84351000	인쇄
84361000 부터 84368000 까지	농업, 원예 조림과 양계에 필요한 기타 기계와 기구
84371010 부터	밀가루 제조 혹은 곡물 가공 기

84378000	까지	
84381000	부터	음료 및 식품 제조기
84388000	까지	
84391000	부터	섬유 재질 펄프나 종이나 판지 생산기계 와 기구
84399100	까지	
84401000		제본기
8441140	부터	기타 종이나 판지의 펄프 작업과 관련된 기계
84418000	까지	
84421000	부터	인쇄판 생산기
84423000	까지	
84431100	부터	인쇄기
84433600	까지	
84440000		섬유 방직기
84451100	부터	직물기(섬유추출, 방적, 직물)
84459000	까지	
84471100	부터	니트 기계
84479000	까지	
84490000		펠트 또는 비 직물의 생산기나 재봉기
84514000		세탁, 표백, 드라이 클리닝을 위한 기계
84515000		직물을 되감고 절단하고 부수기(뺑기?) 위한 기계
84518000		기타 방직기
84522100	부터	가정용 이외의 재봉기(84521000제외)
84522900	까지	
84531000	부터	가죽의 생산나 무두질 혹은 작업을 위한 기계
84538000	까지	
84541000	부터	금속가공과 제강 및 정련에 필요한 기계, 변환기
84543000	까지	
84551000	부터	금속 압연기
84553000	까지	
84561000	부터	레이저 혹은 초음파로 작동되는 기계나 도구
94569000	까지	
84571000	부터	금속 가공을 위한 복합 공작 기계
84573000	까지	
84581100	부터	고철 처리 크레인
84589900	까지	
84591000	부터	금속 천공, 신축, 가공기 등
84597000	까지	
84601100	부터	금속 마무리 작업 기계
84609000	까지	
94611000	부터	금속 광택, 절단 기계

84619000 까지	
84621000 부터 84629900 까지	기계(금속을 단련하거나 모양을 가하기 위한 것을 포함)
84631000 부터 84639000 까지	기타 금속 가공기계
84641000 부터 84649000 까지	요업 제품의 석재 가공을 위한 기계
84651000 부터 84659000 까지	목재, 경질 고무, 플라스틱 재질 작업 기계
84681000 부터 84688000 까지	용접기계
84702100	프린터 전자회로기
84741000 부터 84748000 까지	선별, 구별, 분쇄 및 분말기 혹은 기구
84751000	형광등 조립기
84752000	유리 제조 혹은 가열기
84771000 부터 84778000 까지	플라스틱 원자재 고무 작업 기계
84781000	담배 조제 기계
84791000	공공사업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계
84792000	오일을 추출하거나 조제하는 기계나 기구
84793000	입자 패널 생산 압착기
84794000	전선 기계
84798100	기타 금속 가공 기계(권선기 포함)
84798200	기타 혼합, 분쇄 기계
8480	거푸집

별첨 2

6%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품목

1	육류 및 식용가금류
2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 첨가 되지 않은 크림
3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 된 크림
4	빵
5	쌀
6	어린 아이들의 영양 섭취를 위한 것들
7	책 혹은 교과서

별첨3

특별법 적용 상품

의사 기록 제 5/93-UDEAC-SE1과 CEMAC의 공동세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도기니 공화국이 규정한 동 의사기록의 별첨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에 관한 특별법

CAPITULO PARTIDA Y SUBPARTIDA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DERECHOS ESPECIALES	C/CEMAC
2203.00.00	품목 20.90의 주스류를 제외한 기타 무알콜 음료	IV	20%	15%
2203.00.00	6.5%이상의 알콜량을 포함한 맥주와 품목 2203.00.90의 맥이음료	IV	25%	15%
2204.10.10 2204.10.90 2204.21.10 2204.21.20 2204.21.30 2204.29.10	스파클링 와인과 기타 와인. 그 용기의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는 2204.29.20과 22.04.29.330항목의 경작 포도주 및 다양한 포도주	IV	40%	30%
2205.90.00 2207.10.90 2208.00.00	베르무트와 다른 포도주 및 기타 주류, 발효주(사이다); 에틸 알코올 혹은 변성 알코올, 그 함유량이80%나 그 이상인 약용 주류 생산용(식수, 포도 독주, 위스키, 럼주, 비 변성 에틸 알코올 함유량 80%, 아니스 증류주와 기타 15% 알코올 함량의 주류)	IV	50%	35%
2401.00.00	가공되지 않거나 제조되지 않은 담배, 담배 잔재	II	50%	25%
2402.00.00	시가, 담배/ 큰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	IV	50%	25%
2403.00.00	기타 담배와 담배 대용품	II, III, IV	50%	25%
3301.00.00	정유, 합성수지,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II	20%	10%
3202.00.00	향 물질 혼합물과 이 물질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하위 생산품	II	20%	10%
3303.00.00	향수 및 화장수	IV	32%	25%
3304.00.00	미용 제품 혹은 화장품, 의약품이 아닌 피부 미용 제품, 태양열 차단 제품과 태닝제품, 매니큐어 혹은 페디큐어 제품(모든 하위 품목)	IV	32%	25%

CAPITULO PARTIDA Y SUBPARTIDA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DERECHOS ESPECIALES	C/CEMAC
3305.00.00	모발 제품(샴푸, 파마제품, 헤어 스프레이 및 기타)	IV	32%	25%
3306.00.00	구강과 치아 위생 관련 상품과 치아 청결을 위한 크림(모든 하위 품목)	IV	32%	25%
3307.00.00	면도제품 또는 아프트셰이브, 방취용 화장품, 제모용품, 크림, 바디로션과 기타 향수 제품 혹은 살균제 포함 여부에 상관없는 화장품 및 기타(모든 하위 품목)	IV	32%	25%
7101.00.00				
7116.00.00	진주, 장신구, 보석 혹은 준보석, 귀금속과 그 세공품 모조 보석, 경화(모든 하위 품목)	IV	20%	
8521.10.00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혹은 자기 테이프	IV	20%	
8521.90.00	기타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8525.30.00	텔레비전 카메라	II	20%	
8528.10.10	컬러 모니터 및 비디오 영사기	IV	20%	
9006.40.00	플래시 장착카메라	IV	20%	
9006.51.00	35mm를 넘지 않는 영화용 카메라	IV	25%	
9006.52.00	35mm미만 영화용 카메라	IV	25%	
9006.53.00	35mm 영화용 카메라	IV	25%	
9006.59.00	기타 카메라	IV	25%	
9007.11.00	길이 16mm 혹은 더블 8mm 미만 영화용 카메라	IV	25%	
9007.19.00	기타 카메라	IV	25%	
9007.21.00	장편영화 영사기	IV	25%	
9007.29.00	기타 영화 영사기	IV	25%	
9008.10.00	영사기	IV	25%	
9008.30.00	기타 고정 영사기	IV	25%	
9008.40.00	확대 및 축소 카메라	IV	26%	
9301.a9307	무기, 탄약 및 부속품	IV	27%	

별첨 4

적도기니 법인 등록 구비 서류

1. 모회사의 정관 공증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2. 모회사 이사회회의 적도기니 내 지사 설립 결정 관한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3. 적도기니 내 지사장 선임에 관한 모회사 이사회의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 주의: 본 지사장은 현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필요 서류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한다.
4. 변호사 혹은 법률 회사를 회사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 한다는 스페인어 위임장(모회사가 변호사/법률회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회사에서 1차적으로 지사장에게 위임장을 주고 지사장이 변호사/법률회사에게 재차 위임 가능함.
5. 적도기니에서 제공할 용역 목록
6. 회사의 기술이나 집행 능력에 대한 기술 서류(전년도 Financial Report 등
7. 현지 지사장 및 이사들의 여권 복사본
8. 현지 은행 계좌 번호
9. 적도기니에서의 투자 기획 안(간략하게 작성 가능)
10. 회사에서 고용할 삼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및 내국인 수(남녀 구분)
11. 내국인 고용안과 양성계획안
12. 지사장의 여권사진 8매
13. 분할하여 지급 할 자본금(> FCFA 10,000,000)

별첨 5

적도기니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및 예상 소요 시간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1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3~14일
2	상업 등기소에 회사 정관을 등록	2~3일
3	법인 계좌 개설 및 은행 증명서 발급	1일
4	지급 능력 증명서 발급	2일
5	재정 지급 능력 증명서 발급	2일
6	총리실로부터 회사 설립 허가 신청	1~12개월
7	*세금 등록 신청	1일
8	*노동부에 운영 개시 신고	1일
9	*사회 보장 제도에 등록(INSESO)	1일
10	*경제상무 부 중소기업과에 등록 신청	1일
11	*경제상무 부 상무 과에 등록 신청	1일
12	*기획 개발부에 등록 신청	1일
13	*재무부 계좌로 수수료 지불	1일
14	*재무부로부터 수수료 지불 확인 취득	3~5일
15	*조세 증명 번호 획득(NIF)	2일
16	*노동부로부터 등록 번호 획득	1일
17	*사회 보장 번호 획득	1일
18	*중소기업과로부터 면허 획득	14일
19	*상무과로부터 면허 획득	14일
20	*기획개발부로부터 면허 획득	14일

* 표는 동시에 진행 가능

카타르

무역동향

카타르의 주요 산업은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이며, 두칸은 원유, 라스라 판은 천연가스를 활용한 LNG, GTL 등의 생산을 맡고 있고, 메사이드는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분야를 맡고 있다. 다른 GCC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타르도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식기반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2002년 이후 매년 15~20% 성장을 지속하여 2008년에 1,152억달러를 달성하였고, 2009년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983억달러로 줄었으나, 에너지 분야의 생산증가 및 가격 상승에 따라 2010년 1,273억달러, 2011년 1,73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카타르 교역규모는 2010년 123억달러, 2011년 212억달러이며, 한국에서 주 수입 품목은 철강재용기, 승용차, 전선 등이며, 수출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LPG 등이다.

■ 우리나라의 對카타르 교역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
총교역	9,616 (24.2)	16,275 (69.2)	9,696 (-40.4)	12,388 (27.8)	21,218 (71.3)	17,281
수출	1,163 (53.1)	1,901 (63.4)	1,310 (-31.1)	473 (-63.9)	469 (-0.8)	380 (33.2)
수입	8,454 (21.0)	14,374 (70.0)	8,386 (-41.7)	11,915 (42.1)	20,749 (74.1)	16,901 (33.1)
무역수지	△7,290	△12,473	△7,076	△11,443	△20,280	△16,521

자료: 무역협회

수출입 일반 및 수입정책 상의 장벽

관세 및 절차

카타르는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터 채택, 적용(Law No.41/2002)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카타르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 수입업은 카타르 국적자만이 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도 아래를 제외하고는 카타르 국민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만이 할 수 있다.

- 수입업자가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업으로서 카타르 국적자가 최소한 51%의 자본을 소유하며 법에 허가된 물품 수입 시
- 외국인투자법 No.13/2000에 명시된 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으로서 카타르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계약분야에 종사하고 카타르 상무부장관령에 따라 카타르에 지사를 등록,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

공통관세율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통관세율을 2003.1월부터 채택, 적용하고 있다. 기준관세율은 CIF 가격의 5%이다. 철근, 철봉, 시멘트 20%, 요소는 30%, 약기류는 15%, 술과 담배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단, 카타르산업개발은행이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계류, 원자재 및 기타 산업자재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관세 감면

카타르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감면품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식료품

- 외교관 및 영사 소요 물품
- 군대 및 국토안보 필요 물품
- 민간인용 항공기 및 헬리콥터 수입
- 개인소유물 및 가재도구
- 승객 화물 및 선물
- 자선단체 필요품
- 승객운송에 필요한 선박 및 부양 플랫폼
- 산업용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장 및 설비, 부품, 원료, 반제품, 포장재 등

관세장벽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장벽은 없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증명서를 우리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카타르에서 원산지증명은 통관 시 원산지를 신고하거나 상업송장 상에 명시된 The Country of Origin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은 없다. 다만 국영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도 세관은 동 국영기업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 사례: 2008년 카타르 D건설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 한 특정규격 철근 (BS4449 2005 Grade 500C)이 카타르 철근 독점생산 기업인 카타르철강회사(QASCO)가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인바, 이의 수입 추진과정에서 세관에서는 먼저 QASCO의 수입동의서를 취득하라고 요청

개인소유물 및 수입제한

카타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관세로 개인 소유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주류, 무기류, 마약 및 유독화학품, 폭발물, 방사능물질, 오존파괴물, 약품, 압호기기, 돼지고기 등은 수입이 제한된다.

애완동물은 수입할 수 있으나 한국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수의사가 발행한 보건증이 필요하며, 동물들은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서류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세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서류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상업송장은 주한카타르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상업송장
- 세관송장(상업송장이 없을 경우, 견적송장(세관신고 시 상업송장 사본이 없을 경우)
 - 견적송장 제출 시 90일 이내 원 송장 제공 공약
- 원산지 증명서
- 포장명세서 및 상품명세서
-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또는 여타 운송서류
- 계약서(구매, 리스, 대리인 협정서 등)
- 본·지사 간 계약서 미비 시 내부 각서 또는 주문서
- 비 아랍국가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경우 아랍환적신고서
-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의 수입시 반출신청서
- 보건 및 품질증명서(요청 시)

관세부과

관세는 CIF 가격에 부과하는데 FOB 가격일 경우는 FOB 가격에 15%를 더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임시수입

설비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수입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기간은 보통 6개월이지만 6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때 정규 수입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 또는 현금예치가 필요하다.

수출관세

수출시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수입업자 제한

개인 또는 법인이 수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적법하게 카타르에 등록된 경우 수입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세관에 수입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매, 리스, 대리인 협정서, 또는 수입업자와 외국 공급업자 간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업자(하주) 또는 관세사만이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면장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면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세사 및 운송대리인

수출입 및 환적 시 세관신고와 절차 완료는 물품의 소유주 또는 세관장이 명시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가된 대리인, 세관에서 허가한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의 형태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 세관 허용 시 일부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팩스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세관은 기업 또는 관세사가 통관 후 9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서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수입물품 결재수단

결제 통화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나 카타르리얄 이외의 통화로 결제할 경우 관세사에게 이를 공지하여 세관신고 가격결정 시 정확한 환율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타르는 통화, 자금의 국내외 이동, 신용장 이용 등에 어떤 제한도 없다.

품목분류

카타르는 GCC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카타르는 GCC 관세협약에 따라 8단위의 품목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분류는 97 Chapters, 21 Sections로 이루어져 있다.

Labeling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 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정부보조금

카타르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은 없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주요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은 Law No.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규정이 대동소이하나,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리얄(274,725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경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경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리얄(13.7백만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Emir(국왕)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대규모 구매 프로젝트의 경우, CTC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자격 심사(PQ: Pre-Qualification) 서류를 받는다. 입찰자격을 통과한 업체는 주어진 입찰일에 기술입찰서 및 상업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며, 기술입찰서를 우선 개봉하여 심사한 결과 통과된 업체만 상업입찰서를 개봉하여 심사하며 상업입찰서에서 최저가 입찰을 제출한 회사에 일반적으로 낙찰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시키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 입찰 시 은행보증서 혹은 신용장(L/C) 형태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수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보증서 금액은 입찰조건에 금액으로 명시되며, 수행보증서 금액은 10%선이 일반

적이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비율이 이보다 높다.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현지 에이전트 이용 의무는 없으나 현지 경험이 없어 실정에 어두운 경우 현지 에이전트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경우, 입찰을 취소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여러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타 업체들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단독 입찰 효과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재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충분한 이유를 첨부하여 단독 입찰자가 추천되는 것도 가능
- 기술적으로 최고점수의 입찰자 금액이 시장가격을 초과 할 경우
- 모든 입찰자 혹은 대부분 입찰자가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서에 별다른 규정이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서상의 모든 분쟁은 카타르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회사(시공업자)는 프로젝트 수행대금으로 은행의 무조건부 보증서 제출조건 하에 우선 계약금의 일정비율(입찰조건에 주어짐)의 선수금을 지불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에 기초하여 표준 지불계획표에 따라 추가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표준 지불계획표는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까지 대금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측에 허용하며, 대금지불이 연기되면서도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경우 최고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회사(시공업자)와의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Variation Order하여 임의로 추가 발주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특허권은 등록 후 10년 동안 보호되고 5년 간 연장 등록할 수 있다.

상표권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의 권리이다. 최초 10년간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1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법원에 취소신청 할 수 있다.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

1997.5월 발효된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문학작품, 예술품, 컴퓨터소프트웨어, 비디오 및 오디오테잎 원본 등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법 위반 시 3만~10만리알의 벌금 부과와 최소 6개월 최장 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투자장벽

투자 및 영업환경

2010년에 개정된 외국인자본투자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농업, 제조업, 보건, 교육, 관광, 천연자원 개발 및 이용 프로젝트, 발전, 광업, 컨설팅·기술·IT·문화·스포츠·여가·유통 서비스분야에 단독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정

부는 보건, 통신, 전기 및 수도, 석유화학 및 철강사업 분야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상업대리점업 등에는 외국인투자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에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Law No.8(2002)에 의거,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은 상업대리점업에 종사할 수 없다. 외국인 무역업자는 카타르에서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카타르인 관계자에게 물품을 판매해야 하며 오직 이러한 공급행위를 통해서만 이익이 발생된다.

외국인은 상기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나, 카타르 기업(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농업, 제조업, 보건, 교육, 관광, 천연자원 개발 및 이용 프로젝트, 발전, 광업, 컨설팅·기술·IT·문화·스포츠·여가·유통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100%까지 외국인 투자가 인정된다. 이때 상무부 장관은 아래 프로젝트를 고려한다.

-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 아래 프로젝트
 - 카타르 원자재 사용
 - 수출목적 제조품
 - 신제품 또는 선진기술 제품 생산
 - 카타르에 기술 및 노하우 이전
 - 카타르 인적자원 개발 기여

외국인투자자의 조직설립 제한

외국인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조직설립만 가능하며 인정된 형태 이외의 조직 운영 시 법 No.25(2004)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

는다.

- 장관령을 얻고,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사 설치
- 카타르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이때,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함.
- 100% 외국인 자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에서 회사 설립. 이때, 투자프로젝트는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업개발 및 마케팅 수행 대표사무소 설치. 대표사무소는 무역이나 계약을 할 수 없음.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Law No.13(2000)에 의거, 외국 기업은 상무부 장관령에 따라 카타르에 지사를 설립, 지정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원자재(비슷한 품목이 카타르 시장에 없을 경우)를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젝트는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상무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하청기업도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보통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만 설치, 운영될 수 있다.

- 지사운영을 위해 카타르 국적의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의 임무는 비자 및 인허가 취득 지원과 노동력 및 숙박시설 제공 등에 한정된다.
- 지사 설립 시 프로젝트 계약서, 법인등록증, 회사정관, 본사 위임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적법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위임장, 주계약자의 편지 등을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아랍어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등록증, 정관, 위임장 등은 주한카타르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Pearl of the Gulf Island, West Bay Lagoon, Al Khor Resort 등 특정개

발 지구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카타르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된 토지는 장기임대차계약에 의거, 최초 50년 동안(추후 갱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최장 99년 동안 상기 개발지구중 거주구역의 아파트를 구입, 사용할 수 있다.

GCC 시민권자는 Lusail, Al Kharaij, Jebel Thiyab 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국영 부동산회사(Qatari DIAR)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은 하기 18개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99년 동안 임차 가능하며, 상업 및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임대, 또는 권리를 넘길 수 있다.

○ 18개 지정지역: Musheireb, Rrij Abdul Aziz, Doha Jadeed, Ghanem Al Qadeem, Al Rifa Al Hitmi, Al Salata, Bin Mahmoud, Rawdat Al Khail, Mansoura and Bin Dirham, Najma, Umm Ghuwailina, Al Khulaifat North and South, Al Sadd, New Mirqab and Al Nasser, Areas around the Doha International Airport, Dafna and Onaiza, Lusail, Al Kharaij and Jebel Thiyab.

금융상의 제한

외환규제가 없으며 카타르에서 발생한 지분, 대부금 및 모든 소득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매년 발생된 이익금의 10%씩을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자금으로 영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 부족 시 카타르 또는 GCC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카타르의 소득세 제도와 세금 신고 절차는 법 No.11(1993)에 명시되어 있다. 동 법에 의하면 카타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활동(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직업, 서비스, 무역 및 계약의 실행 등)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개인, 파트너십 및 외국인

업에만 부과된다.

외국인 소유 기업은 과세하고 카타르인 소유 기업은 과세하지 않는 등 과세 제도는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을 둔다. 법 No.9(1989)에 의거, 걸프협력위원회(GCC) 국민들은 소득세에 있어 자국민 대우를 받고 있어 걸프국 국민 소유 외국기업들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카타르에서 지급되는 임금에는 대인세, 사회 보험료 또는 기타 법적 공제액이 없다. 1995.4월에 발표된 소득세 실무지침에 따라 법무, 컨설턴트 및 자영업 영위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순수익의 1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20,000QR까지다.

(1) 법인세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된다.

- a) 카타르에서 수행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실현된 수익
- b) 회사 자산의 판매로부터 실현된 수익
- c) 대행약정 또는 중개에서 비롯된 수수료
- d) 컨설턴트, 중재 또는 전문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지불된 요금
- e) 부동산 임대
- f) 판매, 임대, 양허 및 상표권, 디자인, 노하우 또는 저작권 사용으로 받은 금액
- g) 채무로부터 받은 금액
- h) 청산으로 실현된 수익

이외에도, 카타르 국외에서 수령한 이자와 은행 수입이 납세자가 카타르의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 카타르 세금이 부과된다.

(2) 세율

카타르 정부는 2009.11월 신소득세법(Income Tax Law, Law No.21/2009)을 공포하였다. 신소득세법의 핵심은 종전의 누진세제(0~35%)를 10% 단

일 소득세로 조정,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0.1월에 발효되었다.

(3) 세금면제

법은 특정한 조건하의 특별 프로젝트에 대하여 세금면제를 허용하고 있고, 세금면제 적용 여부는 세금면제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금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공업, 농업, 무역, 석유, 광업, 관광, 통신, 또는 토지 개간의 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또는 카타르에서 필요로 하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계약
- 국가개발 계획 및 경제 목표에 부합하고 관련 정부의 승인을 득한 프로젝트
- 아래 사항을 고려한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
 - (a) 상업적 수익성
 - (b) 타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범위
 - (c) 국내생산 자재 활용 정도
 - (d) 무역수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첨단기술 사용 프로젝트
- 자국민 고용창출 프로젝트

세금면제 기간은 재정부 장관 단독 승인 시 5년부터 내각 승인 시 10년까지이다.

(4) 과세 조약

카타르는 한국, 알제리, 아르메니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요르단, 파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스리랑카, 시리아, 튀니지, 터키, 불가리아, 파나마, 세이셸,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예멘, 터키,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등 59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발효 중이다.

(5) 자유무역지대

2005.9월 제정된 카타르 자유무역지대설치법에 따르면 자유무역지대 내에 기업 설립 시 스폰서, 또는 서비스 에이전트가 필요 없으며, 100% 소유권 및 0% 세율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카타르에 자유무역지대는 없으나, 향후 도하항 또는 공항에 설치될 예정이다.

(6) 카타르 과학기술단지

동 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0% 세율이 적용된다.

(7) 카타르 금융센터

2005년 제정된 카타르 금융센터법(No.7)에 의거, 금융센터의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은 2008.5.1일까지 3년간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신 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2010.1.1일부터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경쟁 정책

카타르 정부는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 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7.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또한 최근 수년 동안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QTEL, QAFCO, QAPCO, QCHEM 등을 민영화 하는등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 부문 민간 투자에 대한 장려금도 도입하였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 기업이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입국

카타르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도하국제공항, 육로로 입국할 경우 카타르와 사우디의 경계에 있는 아부 삼라(Abu Samra), 항구로 입국할 경우는 도하항, 메사이드항, 라스라판항, 루와이스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비자

한국인은 공항에 도착하여 30일 간 유효한 도착방문비자(수수료 100리얄)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취업 또는 초청의 경우 사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카타르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카타르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인은 6개월 이상 유효한 복수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비자는 스폰서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 비자(방문(visiting), 취업(working), 상용(business))와 스폰서 없이 취득이 가능한 관광비자(tourist)가 있다.

관광비자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100리얄(약 28달러)를 지급 후 취득하며(30일 유효), 1회 갱신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33개국(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유럽 연합 국가들, 온두라스, 홍콩, 아일랜드, 일본,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싱가포르, 스위스,

바티칸, 미국 등) 외국인인 카타르 입국 시 현지에서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상용비자(2주 유효, 2주간 연장가능)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카타르 방문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은 유효한 여권과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동방문이 비즈니스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카타르 스폰서가 서명한 진술서를 도착 48시간 전에 공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까지 유효한 방문비자는 카타르에 거주하는 스폰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스폰서가 반드시 카타르인일 필요는 없다. 방문비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유효한 GCC 국가 거주허가증을 지닌 사업 또는 전문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인 방문비자가 필요 없으며 카타르에 도착하면 2주 동안 유효한 입국비자를 교부 받게 된다.

1~5년간 유효한 거주비자는 카타르 고용 계약 소지자에게 허가되며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회사가 스폰서가 된다.

거주 및 가족 방문비자 발급을 위하여 한국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또는 공문서(가족관계등록증명서, 혼인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대학졸업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영문 번역하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서 영사 확인 후 주한카타르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친 다음, 카타르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 확인 후 카타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소유지에 대한 재산을 보유한 외국인과 그들의 직계 가족은 해당 소유지에 대한 소유권 기간 동안 스폰서 없이 갱신이 가능한 조건으로, 5년간의 거주 허가 자격을 갖는다. 또한, 외국자본투자법 No.13(2000)에 규정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투자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년간 입국비자와 거주허가 자격을 갖는다.

거주노동허가(Residence Work Permit)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아야 하며,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타르 국적의 스폰서가 필요하다. 노동허가는 스폰서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카타르 도착 후 거주허가증은 현지 스폰서가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동반 가족 역시 카타르에서 취업한 가족 구성원의 스폰서 하에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방문 및 거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 및 지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 근로자는 스폰서의 서명 동의하에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Law No.4/2009에 따르면 기존 스폰서와 향후 스폰서가 동의하고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당국이 스폰서십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 고용주의 허가서가 없이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 카타르를 떠나 있어야 하며, 스폰서가 근로자의 비자기한 만료 이후에 계속해서 여권 및 여행관련 서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갱신해야 하며 가족의 거주허가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가족거주허가는 여권, ID, 사진 1장과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갱신 발급된다.

스폰서십 아래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출국을 위해서는 스폰서에게 출국비자를 요청해야 한다. 가족은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신분증명서

카타르에서 거주노동허가 또는 가족거주허가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는 이민국에서 ID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ID 카드에는 이름, 국적, 생년월일, 혈액형, 서명, ID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운전면허증

카타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거주자들은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거주비자 취득 후 운전면허신청서, 사진3매, 여권원본 및 사본,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면허증의

영어번역을 대사관 공증)을 도로국(Traffic Department)에 제출하고, 시력 검사 및 사진촬영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된 신 스폰서십 법(Law No.4, 2009)

2009년 개정된 신 스폰서십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 카타르인의 출국 시 의무 출국허가(서)제는 유지하지만, 스폰서와 고용주가 피고용자(근로자)의 거주허가서가 발행된 이후 그들의 여권 및 여행서류 보유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외국인이 해고 또는 자의로 직업을 그만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입국이 불허되나, 내무부 장관(또는 장관 대리인)의 허가 시 재입국이 가능하다.

스폰서와 외국인 근로자간 법률적 분쟁발생시 내무부장관(대리인)에 잠정적 스폰서십 이전 권한이 부여되며, 장관은 고용주가 타협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스폰서십 이전을 승인할 수 있다.

외국인과 결혼한 카타르 여성은 배우자와 자녀의 스폰서를 할 수 있다. 또한 카타르 취업비자를 보유한 외국 여성은 배우자 스폰서가 가능하다.

고용주에게 재정적 손실을 끼치거나 허위 신원 및 국적 위장, 노동법 제61조에 명기되어 있는 허위 증명서 제공 등에 의해 해고될 경우에는 5년간 입국이 불가능하다. 외국인이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및 국가경제를 위협한다고 간주 시 추방이 가능하다. 법률, 행정적 사유로 추방된 외국인은 장관의 결정 없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외국 수반, 그들의 가족 및 수행원, 외교단 대표 및 수행원, 공식 대표단, 선장에게는 동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법 위반으로 고소된 외국인은 벌금 지불 전 또는 법정의 최종 무죄 판결 전에는 출국이 불가능하나, 벌금 지급 보증인이 있을 경우 출국이 가능하다.

진료카드

외국인 거주자들이 진료소(보건소)와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진료카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진료소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설병원의 경우는 최초 진료 시 진료카드를 받게 되며, 모든 진료소와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진료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카타르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 시스템

(1) 카타르 중앙은행

카타르 중앙은행(QCB)은 카타르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상업 금융시스템을 감시하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을 상대하며, 정부의 은행으로서 화폐를 인쇄, 발행한다. QCB는 개별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준수 여부의 감독 등, 카타르의 국내외 은행 활동을 감독한다. 카타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들은 QCB가 공포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준칙들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일치한다.

(2) 상업 은행

카타르에는 15개의 상업은행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중 2개가 이슬람은행(Islamic Bank)이다. 상업은행들은 카타르 국민은행(QNB)이 지배하고 있는데, QNB는 국가가 50%를 소유하고 있고 모든 카타르 은행 자산의 약 54%를 소유하고 있다.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사가 전 범위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소유이면서 카타르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카타르 산업개발은행(QIDB)은 1997.8월 영업을 시작하였다. QIDB는 프로젝트 초기자금 대여 및 맞춤형 프로젝트 거래조건 등을 제공한다.

(3) 이슬람 금융

카타르의 이슬람 금융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다. 카타르 기업들은 이슬람 법률 샤리아(Sharia)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나 상거래에 투자한다. 샤리아는 이자를 금지하고, 상거래에서는 이윤을 분배(또는 손실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카타르에는 2개의 이슬람 은행과 다수의 이슬람 용자거래소가 있다. 여러 전통 상업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법상 특별 제한이 있으며, 동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권시장

1997.5월에 개장한 도하 증권 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고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카타르 금융센터

2005.2.16일 법 No.7에 따라 설립된 카타르 금융센터(QFC)는 외국계 금융 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국제금융,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본사기능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FC는 각각 독립적 활동을 하는 QFC 금융청과 QFC 규제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QFC의 허가를 받은 기업 및 기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국유화, 몰수, 또는 개인 소유 제한으로 부터의 보호
- 이윤 본국송금 자유
- 자유로운 직원 고용
- 100% 외국인 소유

케냐

개관

케냐는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채택한 주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1963년 독립 이래 친 서방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 1980년대 말까지 매우 안정된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엘니뇨에 따른 농작물 피해, 제조업 분야 위축, 나이로비 미국대사관 폭발 사건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00년에는 독립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성장(-0.3%)을 기록하였다.

2004년 이후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호조,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으로 2007년에는 7.0%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7.12.27일 대선 이후 2개월여 간 계속된 종족 간 폭력사태로 인한 교통·수송망 등의 인프라 파괴, 관광산업 부진, 고유가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며, 2008년 1.7%, 2009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 경제성장률은 4.2%로(전년대비 1.4% 하락), 이는 장기화된 가뭄으로 인한 식량부족, 주요 1차 산업 생산물의 수출통로인 유럽 부채 위기와 케냐실링의 약세로 인한 원유값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케냐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진입을 골자로 하는 케냐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인 'Kenya Vision 2030'을 발표('08.6월)하여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석유화학 제품, 기계류, 고무제품 및 가전 등을 중심으로 2.32억달러 규모를 케냐에 수출하였으며, 동/알루미늄 스크랩, 커피,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923만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는 등 현재 양국 간

교역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1년 對케냐 수출은 2.15억달러 규모이며, 케냐로 부터의 수입은 1,765만달러 규모로 약 91%가 증가하였다.

최근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거점으로서 케냐의 전략적 이점과 2012년 6월 대한항공의 인천-나이로비 직항 개설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및 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참여 동향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이 중심이 되어 식민지 독립 후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를 창설(1967년)하였다가 이후 각국의 국내사정 등으로 폐쇄(1977년)되었으며, 3국이 중심이 되어 2000.7월 EAC가 재창설 되었다. 2007.7월에는 브룬디, 르완다가 EAC에 가입하였으며, 사무국은 탄자니아 Arusha에 소재한다. EAC는 2006.1.1일자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2010.7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출범하였으며, 2012년 화폐통합(Monetary Union)을, 2015년 정치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AC는 소비인구 1억 3000만 명, 총 GDP 790억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그 경제적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7월 독립한 남수단과 콩고민주화공화국(DRC), 소말리아 등이 EAC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EAC 관세동맹은 역 내외 국가를 구분하여 관세를 적용하는데, 역내 국가 간 거래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원자재는 0%,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케냐의 산업발전단계가 우간다, 탄자니아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5년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간다 및 탄자니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케냐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다가 2010.7월 이후 무관세로 전환되었다.

케냐는 또한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지난 2000.10.31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서 35%로 인하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기준 유지). 2009.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 3년간의 경과 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수입관세와 16%의 VAT를 부과하나, 국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설탕류의 경우는 최대 100%의 관세와 200%의 VAT를 부과하며, 농업용 자재 및 철강, 섬유 원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관세(%)	VAT(%)
식품류	일반식품류	25	0
	유제품	60	16
	쌀	35	200
	종자류(씨)	10	0
	식용류	10	0
	설탕류	100	200
화학제품	원자재	0	0
	페인트류	25	16
	필름류	10	16
기계류 (전자제품)	공기청소기	15	16
	냉장고	25	16
	음식, 음료 제조	0	0
섬유 및 의류	카펫 등 내장재	25	16
	일반의류	25	16
	가정용 린넨	25	16
	가발용 원사	0	16
교통·수송	기차	5	16
	승용차	25	16
	자동차 부품류	15	16

대분류	소분류	관세(%)	VAT(%)
건축자재	타일류	15	16
	세라믹 제품	25	16
	유리제품	15	16
	제지류	25	16
	철강제품	0	16
	아연판	10	16

대통령, 군대, 외교관, 신체부자유자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어류·갑각류(새우, 게 등) 및 연체동물, 원양어선 어획물(동아프리카 3국에 등록된 어선에 한함),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류, 모기장 및 모기장 생산원료, 종자,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케냐에는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제도는 없다.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의 케냐시장 점유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케냐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반덤핑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품목별로 상이하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

수입품 통관은 케냐 관세청에 등록된 Agent를 거쳐야 하며,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를 작성해야 한다. IDF 비용은 최소 5,000케냐실링(미화 약 71달러 수준) 또는 CIF 가격의 2.75%를 적용한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 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있다.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케냐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다. 가령 2010년도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좌측핸들 차량도 수입은 가능하나, 정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수입 시에는 25%의 관세(CIF 기준), 20% 물품세(CIF + 관세 기준), 16% 부가세(CIF + 관세 + 물품세 기준), 2.25% 또는 5,000 케냐실링

상당의 IDF 비용 등 차량가격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CIF 가격은 케냐 수입가격이 아닌 케냐 현지 소매가격으로부터 유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케냐 시장에 유통되는 중고차 매매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일본과 두바이를 제외하고는 중고 자동차 수입 시 선적지에서 검증을 마쳐야 한다. 일본과 두바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일본 또는 두바이에 있는 일본자동차평가원(Japan Auto Appraisal Institute)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케냐는 2005.7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시토록 수출입법을 개정, 2005년 11월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선적전 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국제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의 기준도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적용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사례는 없으나, 최근 들어 케냐 표준청(KEBS)에서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케냐 표준청에서 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이 있고, ②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가 있으며, ③최근 사례로는 2003년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

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 젤이 기준 미만이며 품질표증 마크가 없다고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서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bs.org>)를 참조하면 케냐내의 품질인증 관련 기본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본 법률 체계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지식재산권 보호

케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다. 2001년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보호 관련법은 상표권(Trade Mark), 특허권(Patents), 실용신안(Utility Models),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합리화모델(Rationalisation Models), 저작권(Copyrights), 식물육종가권(Plant Breeders Rights)등 7가지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지적재산권은 기술연구훈련성(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케냐산업재산권 사무소(Kenya Industrial Pro-

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케냐 경찰국 산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지재권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케냐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대 800,000케냐실링(약 1만1천달러)의 벌금 및 10년 기간의 징역, 제품 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해 2006년 케냐산업재산권기구(KIPI) 산하에 집행담당부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냐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당국의 법률 집행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현지 시장에는 불법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약 4.96억달러에 달하고, 세금 징수 피해액도 약 83백만달러에 달한다. 케냐정부는 최근 들어 불법 복제품, 모조제품 및 기준미달 상품의 자국시장 진입을 단속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12월에는 3백만 개의 모조 Bic 펜을 몰수하여 폐기한 사례가 있다.

투자장벽

개관

케냐는 1963.12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농공병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동안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내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해 왔다.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업 기반과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 케냐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케냐를 통해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부 에티오피아 및 남부수단, 동부 콩고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동남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시장이 관세 인하 및 경제 공동시장으로 성숙되

고, 회원국별 역내산과 역외산 수입관세 차이는 있으나 평균 60~80% 정도이다.

케냐는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MIGA 및 ICSID 회원국으로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다만, 총 연장 64,000km에 달하는 정규 도로망은 국토의 대부분 지역을 연결하지만, 현재 전체 정규 도로중 약 20~30%만이 포장된 상태이며, 비정규 도로의 총 연장이 133,800km에 달하고 있어 도로 정비가 필수적이다. 인도양상에 위치한 몸바사항은 케냐뿐만 아니라 중·동부 아프리카의 수송 거점이지만, 부족한 화물 처리 시설, 부정부패로 인해 보통 2~3개월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무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케냐는 항만, 철도, 도로, 정유소, 송유관, 리조트 건설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LAPSSSET: Lamu Port-Southern Sudan-Ethiopia Transport Project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력사정이 매우 열악한데, 케냐의 전력 단가는 0.15달러/Kwh로서 이는 멕시코(0.075달러), 중국(0.07달러), 한국(0.05달러), 남아공(0.04달러)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 해외투자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현재 도로건설, 전력 및 항구개발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는 Doing Business 2010 순위에서 케냐는 183개 조사대상국 중 98위에 랭크되어 인근국인 우간다(122위), 탄자니아(128위)에 비해서는 높으나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신뢰지수(Africa Business Confidence Index: 네덜란드에 소재한 African Business Panel에서 30개국 이상 아프리카 국가 800명이상 기업가 및 전문가 대상 조사)조사에서 남아공, 나이지리아와 함께 최상위 국가로 선정된바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케냐는 1964년 외국인투자 보호법(1981, 1988년 소폭 개정)을 제정하고, 헌법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침해 금지조항을 두는 등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다. 케냐 정부가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분야는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관광), 외화절약을 도모하는 수입 대체 산업(식품가공업, 농산품, 화공제품 제조업) 등이며, 규제분야 업종은 전력, 통신, 철도, 항만, 공항, 국가방위산업 등 공공산업과 식품의 유통업 정도에 국한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허가는 1986년까지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관장하여 투자절차가 번거로웠으나 1987년 IPC(Investment Promotion Center)가 설립되어 (2005년부터 Kenya Investment Authority로 변경)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특히 2002년부터 IPC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의 50만달러 이상이던 투자인정 최소금액을 약 10만달러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2004년 말부터 종전의 23여 가지 서류 처리가 필요하던 투자승인절차를 단 1개의 서류로 일괄 처리하도록 간소화시켜 해외 투자유치에 참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케냐는 1986년 보세가공무역(MUB: Manufacturing Under-Bond)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세가공 생산품은 100% 수출의 경우에만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세가공제도는 케냐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1990년 수출가공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EPZ 입주기업은 최초 10년간 세금이 면제(Tax Holiday)되며, 다음 10년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초 10년간은 외국인 고용자에 대하여 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며, 기계류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외환송금에 대한 규제

도 없다. 케냐는 “Vision 2030”에 의거하여 2008~2012년 중 EPZ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EPZ내 제조업체들에게 적용하던 20%의 국내 판매의 허용기준이 일반 제조업의 경우 50%, 의약품, 기계류, 섬유류, 농업 기기류 등 특별 장려품목에 대하여는 70%까지 허용될 예정이며, 내수시장 판매 시 해외에서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현지 부가된 가치(현지에서 조성된 원자재, 노동력, 서비스 등)에 대한 세금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41개의 EPZ가 있는데, 나이로비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티리버(Athi River) EPZ가 가장 크며, 그밖에도 나이로비, 케리초(Kericho), 몸바사(Mombasa) 등에 EPZ가 있다.

법인세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이익의 30%, 외국계 지사에 대해서는 37.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현지법인, 외국계 지사 공히 16%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 분야를 제외하면 자국민의 일정 지분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한다.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지용도 외 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 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 판매만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1995.6월 외환에 대한 완전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원금의 본국송금,

이익금 및 배당금 송금 등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 구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수용 및 허가 철회

케냐법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자산을 보호하며, 수용은 공공이익 및 국가안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한다. 케냐는 국제투자보장기구(MIGA) 회원국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회원국이며, 1963년 독립 이래 외국인 소유 자산을 수용한 사례가 없다.

2004년 제정된 케냐투자증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은 투자 라이선스 신청 시 거짓 정보 및 진술을 제공하였거나 투자증진법 규정에 위배될 경우, 또는 케냐투자청(Kenya Investment Authority)에 허위로 대표를 등록할 경우 투자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민·노동법 관계

케냐는 영주권 제도가 없으며, 케냐에서 사업을 하거나 현지법인 및 지점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취업사증(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장기취업사증에는 12종류가 있으며 보통 2년 단위로 발급된다. 이중 회사 취직에 필요한 Class D(A에서 명칭 변경) 취득비용은 200,000Ksh(약 3,000달러)이며, 개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Class G(H에서 명칭 변경)는 100,000Ksh(약 1,500달러)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의 부정부패로 상기 공식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비공식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장기취업사증 취득에 평균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된다. 케냐정부는 중간관리자 및 기술직을 케냐 현지인으로 채우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자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기취업사증 취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케냐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6개월 기간 동안 수습생(pro-

bationary)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 노동자 해고 시에는 7일의 통지기간이 있으며, 동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상당의 보수, 연가 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하거나, 산업법정(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단 분쟁이 중재 등에 회부되면 파업은 불법이다.

케냐정부는 2007년 말 ‘고용법(Employment Act)’, ‘노동관계법(Labor Relations Act)’, ‘산업재해보상법(Work Injury Benefits Bill)’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노동법은 여성들에 대한 의무적인 3개월 출산휴가, 남성들의 육아 휴가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은 영구불구의 경우 당초 60개월에서 96개월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보상액을 인상하였으며, 3일 이상 업무능력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는 임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기 임금 보전은 12개월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교통수단,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부양가족들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대 32%를 청구할 수 있다.

임금 관련,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임금이 동남아보다도 더 높다. 최저임금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일반산업과 농업부문으로 매년 5.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직장별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2011.6월부터 정부가 책정한 도시 노동자 최저임금은 7,586케냐실링(미화 약 91달러, 주거비용 제외한 임금)이며, 시골지역의 비숙련 노동자 최저임금은 3,765케냐실링(미화 약 45달러)이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노동자 기본임금의 5%, 금액으로는 200KSh 범위 내의 금액 50%씩을 국가사회안정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월평균 1,000KSh 이상을 받는 경우 30~320KSh을 국민의료보험기금(NHIF)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간제 및 임시직은 복지혜택이 없는 대신 법정 최저일당이 정식 고용된 경우보다 더 높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1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52시간이나 실제로는 37~45시간 수준이며, 2주당 최대노동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120시간(야간근무자 144시간)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케냐의 토지는 정부(전체의 약 20%), 신탁(trust land, 전체의 60%로 county council 소유), 개인소유 3가지로 분류되며, 소유권의 종류에는 소유(freehold), 임차(leasehold, 99년 한도), 전통적 보유(customary tenure, 지역 및 종족에 따라 다름) 3가지가 나누어진다. 정부소유 토지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권은 공공경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나, 법률 남용 등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추첨방식이 사용되기도 했다. 토지법에 따르면 케냐인 및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없다.

단, 원칙적으로 케냐법은 모든 재산권(토지, 건물, 모기지 등)의 취득 및 처분을 보호하고 촉진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케냐의 토지등록부 대장 관리 상태는 매우 열악하여 투자자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정당한 거래를 했더라도 관리대장이 전산화 되지 않아 토지대장 등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행요건 등 국산화의무 부과

케냐에는 현지조달률 규정(local content)이 있지만, 이는 단지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의 특혜관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케냐 경제개황

구 분	내 용
위 치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동북부는 소말리아, 서북부는 에티오피아 및 수단, 서부는 우간다와 접경)
면 적	582,650km ² (한반도의 약 2.6배)
인 구	41백만(2011년)
수 도	나이로비(Nairobi, 인구: 약 400만, 해발고도: 약 1700 m)
언 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통용어)
GDP	328억달러(2011년)
1인당 GDP	789달러(2011년)
GDP 성장률	4.2%(2011년)
물가상승률	9.3%(2011년)
수출입 (2011년)	수출: 57.7억달러(차, 원예작물, 커피 등) 수입: 134.9억달러(기계류, 석유제품, 차량 등)
외환보유고	52.9백만달러(2011년)
외채	89.4억달러(2011년)
환율	USD 1 = 83케냐실링(2012.10월)
외국인직접투자(FDI)	994백만달러(2011.6월)

코트디부아르

투자 환경 일반

2011.5월 와타라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는 국내 정세를 기반으로 「국가개발전략 2012~2015」를 수립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12.6월말 IMF와 World Bank로부터 과다채무 최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양자간 혹은 다자간 채무 탕감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간산업 투자를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채를 발행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가시적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전으로 인해 많은 무기가 유폐되어 있고, 치안부문 개혁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 2012.8월부터 군부대 습격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여파로 군인에 의한 민간인 구타와 고문이 일어나는 등 공안 정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와타라 정부가 향후 치안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켜나갈 지의 여부가 경제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정책 상의 장벽

관세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세계무역기구), UEMOA(서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1997.6.13일 토고 로메에서 개최된 서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총회에서 회원국 간의

공동외부관세(CET)제도를 1998.1.1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도를 통해 UEMOA 관세연합의 일원으로 여타 7개 UEMOA 회원국 간 생산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며 공산품 및 수공업 제품 거래에 공동특혜제도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타 국가로부터 수입품은 UEMOA 공동외부관세(CET) 스케줄에 따라 △면세품(약품)에 대해 0% △원자재와 지역생산물 자재에 대해 5%, △중간재 10%, △완제품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2007년 이래 공산품에 대한 단순 평균관세율은 11.6%이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douanes.ci

수입부과금

(1) 부과금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의 별도의 부과금이 징수된다. 먼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 기준으로 “1% 세금”(PCS; prelevement communautaire de solidarite, 공동체연대세)이 UEMOA(서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기금 조성을 위해 부과된다. 다만, △재수출용 물품, △통과용(transit) 물품, △국제협약에 따른 인도목적의 원조용 수입품은 면제된다.

또한 “0.5% 공동체 세금”(PCC; prelevement communautaire de CEDEAO)이 부과되는데, 이는 ECOWAS 회원국 중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 CET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내륙국에 대한 보상기금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1% 통계 비용(RSTA; redevance statistique)”이 부과되는데 수출입에 따른 자료를 정보화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된다.

(2) 특별 관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관세가 부과된다.

즉, △수산물은 5~20%, △쌀 5~20%, △주류 7~35%, △담배 23~35%, △시가 30~35%, △일부 식물 20%, △ 유류제품에는 5~20%의 특별관세가 부과된다.

(3) 부가가치세

세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8%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는 CIF 금액과 관세 등 기타 세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최소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 MIPs)는 식용류, 시가, 설탕, 현웃, 농축 토마토 페이스트, 파쇄미곡, 성냥, 복사 서적, 티슈, 폴리프로필렌 가방, 주류, 우유 등의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수입 규제

상품 수입에 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 금지·제한 또는 사전허가 품목은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s), 동물 부산물(animal products), 식물 상품(live plants), 씨앗, 무기, 플라스틱 가방, 증류 기구, 포르노 상품, 사카린, 마약류, 폭약, 불법 약품, 독성 폐기물 등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제도는 대체적으로 프랑스식 또는 유럽식 기준을 따른다.

모든 수입업자는 관세통과를 위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개의 유럽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회사들로 하여금 150만프랑세파(약 3,000달러) 이상의 수입품에 대한 모든 품질·수량 인증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 식품(manufactured food products)의 라벨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만료일자가 명시

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서명국은 아니나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2009.4월 정부조달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공개입찰 방식 의무화, △계약서명기간 명시 등 관련 절차명확화, △‘국가규제청’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관련 통제 및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대체로 분권화된 정부조달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현지 언론을 통해 정부 조달 입찰을 공고하거나 국제적인 신문과 잡지를 통해 입찰 공고하기도 한다.

국가기술연구개발청(BNETD)은 국제기구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정부부처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시장국’은 국제적 입찰 관행과 부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국가기술연구개발청 홈페이지: www.bnetd.ci

조달 과정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일부 외국 기업들이 정부부처 담당자들과의 인맥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프리카지역 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이다.

산업부 산하 지적재산청(OIPI)은 특허, 등록상표, 산업디자인, 상호 등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청(BURIDA)은 음악, 영상물, 서적,

예술 재산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 저작권보호청 홈페이지: www.burida.ci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조품의 범람, △북부 국경을 통한 위조 식물, 약품, 차량 부품의 유입, △정부기관의 조직·예산 부족, △국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서비스 장벽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일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분야에서 외국인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소유권 확보(majority foreign ownership)는 허용되지 않으나,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코트디부아르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외의 분야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제한은 없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한다. 즉,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고는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요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되거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장벽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투자법에 따르면 운송업·무역업·건설업·공기업 및 금융계를 제외한 백만달러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처음 3년 동안의 세금 면제 및 감세 인센티브, 장비수입 시 부가세 면제, 토지 불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진흥센터(CEPICI)가 1993.9월에 설립되었다. 투자진흥청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권

설팅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 구조 및 기술 혁신, 국내외 투자성향 등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단일 창구서비스 역할로 회사 설립부터 변경, 파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필요 시 투자자들이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 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 투자법을 채택하였으나 현재 추가 검토를 위해 법안을 최종 공포하지는 않았다. 신 투자법에는 지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 지방에서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시키고, 규모가 큰 투자에 대해서는 토지세 감면 등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타 장벽

외국계 기업들은 부패 문제를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투자 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부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산하에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012.6월 기준 코트디부아르의 부패지수는 세계 183개국 중 154위, 기업 경영 환경 기준으로는 167위에 있다. 와타라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1년 안에 기업 경영 환경 지수를 30위 상승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한편, 코트디부아르 고용법은 민간 기업이 자국민을 우대하여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 노동자들은 코트디부아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기 위해 한 달 봉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매년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서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UEMOA)는 동 규정이 공동체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 이동과 취업을 허용하는 공동체 조약에 위반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쿠웨이트

수입정책상의 장벽

쿠웨이트로의 상품 수출은,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수입상을 통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반면, 의료장비 등은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쿠웨이트에서의 수입면허는 쿠웨이트 기업 및 개인에게 발급되며 합작투자 기업을 제외한 외국회사와 외국인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쿠웨이트 시장수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조달시장에는 쿠웨이트 기업과 개인을 에이전트로 내세워야만 참여가 가능하며, Oil & Gas 분야 프로젝트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한 벤더등록을 선행하거나 또는 PQ에 통과하여야 한다.

관세장벽

대부분 수입상품은 CIF 가격(cost, insurance, freight 포함 가격)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이 부과되나,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무관세로 통관되고 있다.

농산물 및 기본생활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되고, 쿠웨이트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적 서류 도착 후 통관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를 하며, 미국 및 유럽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구류형과 벌과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웨이트 현지의 수입업체는 통관 시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및 제반 통관 필수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쿠웨이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 수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 증명서 등 3가지 법적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부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중동국가들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당사국에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쿠웨이트대사관에서의 공증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상공회의소 등의 실사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의 대사관 또는 기타 아랍 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 수입업체에 송부되어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이 불가하다.

쿠웨이트의 개인 회사들은 보통 쿠웨이트의 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받아 대금을 지불하나,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를 제외한 쿠웨

이트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쿠웨이트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Kuwait)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수출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
- 총가격과 단위량
- 실중량과 총중량(미터법 사용)
- 포장 방식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주소와 성명
- 적하 목록에 표시된 상품의 상표와 개수
- 운송수단, 선적인의 항구와 원산국
- 정식인가기관에 의한 송장의 증명

수입규제

수입 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고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회교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제품 및 주류 반입이 금지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아래 5개 제품군에 대하여서는 쿠웨이트 적합성 인

중 프로그램(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 1) 가전제품 2) 자동차 3) 모터오일과 페인트를 포함한 화학제품 4) 벽돌, 시멘트 등 건축기자재, 5) 종이 및 플라스틱 제품

아울러,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환경관련 규제

쿠웨이트 내 환경관련 주요 규제들은 다음과 같다.

- 석면(Asbestos) 제품 생산 및 수입 금지
 -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 Nylon Fishing Net 사용 전면 금지
 -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 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
- 중고 중장비 수입규제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된 지 10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별 장벽

- 담배 생산 금지 및 수입 엄격 제한
 -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쿠웨이트 내에서의 잎담배(Tobacco) 및 제조담배(Cigarettes)의 생산과 담배 종자 및 묘목의 수입 금지

- 제조담배, 잎담배, 담배 종이, 기타 담배 제조 관련 원·부자재는 보건부가 명시한 조건 충족 필요
- 21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및 담배 판촉을 위한 광고나 출판물 인쇄도 금지
- 인공감미료(Cyclamate) 사용 식품 수입금지
 - 쿠웨이트 상공부는 Cyclamate 및 파생품을 사용한 식품의 수입 전면 금지
- 플랜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
 - 사전 벤더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정부조달 관련 장벽편 참조)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국산품 특혜 제도)

입찰법에는 국내산이 수입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산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높지만 10% 이내 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산은 동일 현지 제조 물품에 비해 가격이 1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외국기업에 대한 Off-set 프로그램 적용

외국회사가 1,000만 KD(3,500만달러 수준) 이상의 정부조달 공사나 300만 KD(1,050만달러 수준) 이상의 방산물품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다(실제 투자액은 계약금액 대비 평균 5~7% 수준). 그러나 쿠웨이트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입찰시 외국기업들에 불리하며, 특히 수전력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보증 등 요구

외국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발주처는 입찰 보증(bid bond)으로 5~10%(계약금액 대비, 이하 같다)를 시작으로 이행 보증(performance bond) 10% 및 하자 보증(retention bond) 10% 정도를 발주처가 지정한 은행의 보증서와 함께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복보증 요구가 일반화되어 있다. 현지 보증 수수료는 대략 1~2%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벤더 등록제도 운영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 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 분야는 국방·보안·안전·위생·식품·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하고 있다(단순 무역업체 등록 불가).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쿠웨이트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동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나 KOC는 1년에 2회(1월, 6월)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최근 쿠웨이트가 2010/2014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으므로, New Refinery Project, Clean Fuel Project 등 대규모의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의 추진과 연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쿠웨이트화(Kuwaitisation)정책에 따라 쿠웨이트 업체의 공사가 가능한 주택 및 도로건설 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조달관련 법규 개요 및 특징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TC: Central Tenders Committee)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조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8,500달러 상당, 1KD=3.7USD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TC관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이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물품과 용역의 제반 입찰 절차는 동일하나 입찰 참가자격 부여 및 컨설팅 용역 입찰 소관 부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CTC는 단독입찰의 경우 CTC 규정상 동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하게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단독입찰을 내각의 결정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KNPC, KOC 등 석유화학 시설의 경우, 고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품 공급자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 벤더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CTC를 통해 소관 정부 부처 혹은 공공기관의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해야 한다.

건설링 용역의 경우, CTC 관할에서 벗어나 기획부 산하의 건설터트 선정 위원회를 통해 입찰이 실시되며, 사전에 등록된 건설터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사업부 및 주택성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은 용역업체가 건설전문 지인 ENR지에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보건부 입찰의 경우에도 의료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은 2.5~5%, 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서 건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시에도 적용된다(반드시 쿠웨이트 현지에 진출한 은행 보증서만 효력 있음).

건설업 허가 및 등록상 제약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는 바,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인(기업) Partner 또는 Agent, Sponsor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 통과 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여된다. 현지 건설업체는 CTC에 업종별로 1~4등급까지 업체별 등록이 되어 있다.

매 건설공사 입찰 시마다 사전 자격심사(PQ: pre-qualification)를 통과하고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소개서, 재무보고서, 건설경력 특히 중동지역 건설참여 경력서류 등 해당 입찰 참여 적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하며, 응찰 시 5~10%의 입찰보증서(bid bond), 계약체결 후 10%의 사업수행보증서(performance bonds)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유보금의 지불 불이행 또는 지연사례가 종종 있으며, 공공발주 사업 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과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KAC)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쿠웨이트는 WTO회원국으로서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에 1998.4월 가입하였으나, 산업소유권(특허 및 상표)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Patent and Trademark)과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Copyrigh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99.5월 국왕칙령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이 제정/발효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등의 보호되고 있다. 현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등록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건설분야

건설공사는 현지 Agent를 통하여야만 영업(P/Q, 입찰, 시공 등)이 가능하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입등도 모두 Agent를 통하여야 한다.

주요 건설자재의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된다. 현지(혹은 GCC 국가) 생산가능 제품의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20%(혹은 10%)보다 비쌀 경우에만 외국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인력의 자국인력 대체, 민간부문 자국인력 고용촉진을 위해 업종별, 규모별로 각 회사의 쿠웨이트 자국인 인력 고용 최소비율을 정하여 위반 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2003.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아래 사항은 현지인(기업)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GCC 국적인(기업)에
게만 허용된다.

- 정부조달 계약 참여(단, 국제입찰 계약은 제외)
- 부동산소유(단, 제한적이거나 외국인에게 어떤 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한
예외적 경우가 있음)
- 쿠웨이트에 등록된 회사로서 자국인 또는 GCC 국가의 국민이 100% 소
유한 회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면제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2000년부터 쿠웨이트는 은행을 제외한 쿠웨이트 주식시장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간접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쿠
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2004년에 철폐되어 외국인도 쿠
웨이트 은행의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쿠웨이트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프
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
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
여는 불허하고 있다.

지사(Branches)설립의 제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의 등록된 지사 사무소(registered
branch offices) 설립을 불허하며 Commercial Agent나 Service Agent를
통해서만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에이전트나 스폰서십 계약은 상공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공부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증은 신청서류가 아랍어로 되어 있고 완성된 시기로부터 2주 내에 발급되며 에이전트 명단은 관보에 게재된다. 에이전트와 고객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에이전트에 대한 보수지불은 상호간의 합의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다.

노동법규

2010.2월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민간부문 노동법(Law No.2010-6호)이 개정 공포되었다. 동 민간부문 노동법은 고용조건, 노동시간, 휴가, 고용해지, 근로 장소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기존 노동법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 노동법에 의한 일반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및 조건: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으며, 라마다 기간 동안에는 주당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금요일은 휴무일이며, 한 시간 이상의 휴식 없이 연속 5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휴식시간은 작업시간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
- 초과근무: 초과 근무는 하루 두 시간, 1년 총 180시간 또는 주당 3일, 1년 총 90일을 넘을 수 없음.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본 보수에 25%를 추가 지급하여야 함. 6근무일 후 2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유급 휴일을 보장 받으며, 고용주가 유급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최소 50%이상의 초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대체 휴일을 제공하여야 함
- 보너스: 고용주들은 보너스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일부 회사들은 1개월분의 연말 보너스를 지급
- 휴가: 총 3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음. 그러나, 최초 9개월을 근무하지 않고서는 첫해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며, 정기휴가를 나눠서 활용할 수 있음. 동일 고용주를 위하여 2년 연속 근무한 무슬림 근로자는 21일간의 Al-Haji(pilgrimage) 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보장 받음
- 고용해지: 적절한 통고가 이루어질 경우 합당한 사유로 해고 가능. 적절한 통고기간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해당 근로자 주위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되어야 함. 고용해지

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통보일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주당 1일 또는 8시간의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유급결근이 가능

또한, 근로자는 다음의 상황에서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 고용주가 계약을 종료한 경우
- 계약의 갱신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여성근로자가 결혼일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퇴직 수당은 시급, 주급 노동자의 경우, 첫 5년간은 각각 10일간의 보수액, 이후 매년 15일간의 보수액을 산정하며, 총 퇴직수당은 1년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월급 노동자의 경우, 첫 5년간은 각각 15일간의 보수액, 이후 매년 1개월간의 보수액을 산정하며, 총 퇴직 수당은 1년 반의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노조관계

헌법상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1967년에 최초의 근로자노조가 결성된 바 있다. 쿠웨이트 내 최대 노조는 “쿠웨이트 근로자 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Kuwaiti Workers)”이며 대부분 정부부문과 석유산업 부문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회원수는 12,000명 정도이다.

2011년 들어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임금인상 및 복지혜택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쿠웨이트 고용주는 월 보수의 11%, 피고용인으로서 월 보수 2,250쿠웨이트 디나르(7,325달러 상당) 이하 보수를 받는 쿠웨이트 자국민에 대하여만 월 보수의 7%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정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치료비, 약값 및 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부상당한 근로자는 치료기간 중에도 통상 임금을 받으며 치료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완치 또는 사망 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는다. 요양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건부의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사회노동부는 직업병의 종류를 공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걸렸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의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고용주가 변경된 이후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전고용주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정부발주 공사 현지 재투자제도 (오프셋 프로그램)

정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부분(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동 오프셋 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시행해오다 2004.8월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5.8월부터 재시행하고 있고, 담당하는 기관은 NOC(National Offset Company)이다.

동 프로그램은 정부가 발주하는 1천만 쿠웨이트 디나르(약 3천5백만달러)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되나, 방산계약의 경우에는 300만 쿠웨이트 디나르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데, 국영석유회사(KOC) 및 국영정유회사(KNPC) 등이 발주하는 Oil & Gas 관련 플랜트 공사는 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제외된다.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 재 시행된 이래 주로 쿠웨이트 수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가 발주한 발전담수공장, 송배전·변전소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왔으나, 2012년부터는 병원, 대학교 건물, 공항시설 등에까지 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동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금액 대비 약 5~7%의 비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입찰 참가 전 오프셋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NOC의 홈페이지(www.kuwaitnoc.com))를 참고)

금융상의 제한

쿠웨이트 금융당국의 외환통제는 거의 없으며, 지분이나 주식매각대금, 대여 자본(loan capital), 이자, 배당,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지사의 이윤(branch profits), 로얄티, 경영 및 기술서비스료, 개인예금 등은 제한 없이 자유로이 환전,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과실 송금의 경우에도 아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은 연간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적립 필요(납입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 주식회사인 경우, 매년 연간 영업이익의 5%를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Kuwait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에 기부
- 순자산이 50만 쿠웨이트 디나르(165만달러 상당)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상기 기부금 외에 매년 연간 순익의 2.5%를 자국인 고용촉진기금(National Labour Force Fund)에 기부
- 사회보장기금 출연

세제상의 제한

쿠웨이트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기업)와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쿠웨이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회사(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만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상기 적립금, 기부금,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이윤 중 외국투자자에게 해당되는 배당금, 이자, Rent, Royalty등)에 대해 일정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외국 기업 소득세 이외에 일체의 국내 조세는 없으며 동 세금은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배당이윤, 이자, Rent, Royalty 등) 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 징수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당초 55% 까지였으나, 2008.2.9일 쿠웨이트 국회는 15% 단일 세율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우리업체들의 기업소득세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아래에서 예시한 것처럼 외국 법인의 장부상 비용을 부당하게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관행이다(인정과세 시도).

○ 해외 수입 기자재: 수입 기자재 비용의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손실은 불인정)

- 관계사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0~93.5% 인정
- 본사 제작: 관련 공사 수입의 85~90% 인정
- 제3자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3.5~96.5% 인정

○ 국외 발생 설계비

- 본사 발생: 관련 공사 수입의 75~80% 인정
- 관계사: 80~85% 인정
- 제3자 외부: 85~90% 인정

우리 건설업체가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해외 기자재 구입, 본사에서 엔지니어링 설계 등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해 쿠웨이트 세무당국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세로 인한 세금부담 및 행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우리 업체가 건설공사 입찰시 향후 세금 부담액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입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업체의 플랜트 공사 시 해외발생 비용은 전체 비용의 5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이태리, 독일, 프랑스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의정서를 체결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한 부당과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그간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 협정 의정서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7.10.2 양국이 동 개정안에 대해 정식 서명하였고,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2010.12.27 동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로

써 2011.1.1부터는 동 협정에 따라 이중과세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금관련 리스크도 감소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경쟁 정책

에이전트 제도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수주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에이전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인 최소 고용의무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 국무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트 국적자 고용 의무가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발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건설사 직원들의 애로가 되어 왔으나, 쿠웨이트 교통당국과의 오랜 협의를 거쳐 2006.1.1일 이후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운전면허 상호 전환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비용은 약 40~45KD 소요된다.

- 운전면허 전환 신청서
- 한국대사관이 번역 공증하고 쿠웨이트외교부가 승인한 한국 면허증의 아랍어 번역문
- 유효한 거주 비자
- 여권 및 Civil ID사본
- 신체검사 통과 증명서(시력검사)
- 대학졸업증명서(외교통상부 및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사진(4매) 및 수수료

동 면허증 상호 인정은 쿠웨이트 거주비자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므로, 긴급적 국제면허증을 국내에서 발급받아 올 필요가 있으며, 거주비자가 발급되면 국제면허증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쿠웨이트에 새로이 파견되는 건설사 직원 또는 가족은 대학졸업 증명서 등을 외교통상부 및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의 공증을 거쳐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편리하다.

거주비자 발급

일반적인 방문이나 상용비자(business visas)의 경우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 쿠웨이트 현지의 스폰서(보통 숙박대상 호텔 이용)나 사업파트너, 에이전트 등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며, 건설사 주재원 등 취업활동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가 필요하다. 거주허가에는 지문채취와 신체검사(혈액검사, 결핵여부 등) 과정이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제3국 인력수입에 따른 입국 및 거주비자 처리지연 또는 불허 등 관료주의 및 행정지연에 따른 적기 인력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거주비자 발급 절차

- ① 쿠웨이트 내 지사나 스폰서 측이 노동부에 WP(Work Permit ; 취업허가서) 발급신청
- ②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상기 취업허가서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 (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을 신청
- ③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은 NOC를 국내 해당인에게 송부

- ④ 해당인은 동 NOC를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제시하고 비자신청
- ⑤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 ⑥ 동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증을 제출, 동 대사관으로부터 임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쿠웨이트에 입국
- ⑦ 쿠웨이트에 입국한 후 노동부에 스폰서십 증명서 발급신청(동시에 의료보험 가입)
- ⑧ 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쿠웨이트 내 현지병원에서 신체검사(재검) 및 지문채취 후에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여권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의 거주비자) 발급신청
- ⑨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 발급 신청

통상 NOC 발급에는 3~4주, 거주허가는 신청 후 3~4일이 소요되며 거주허가는 도착 후 2개월 내 발급 받아야 하고 Civil ID는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동 기간 경과 시 벌과금 부과).

일반 방문비자로 우선 입국하고 난 뒤에 취업허가 및 거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상기 ④, ⑤과정을 마친 후 쿠웨이트에 입국하는 것이 좋다. 보통 취업 및 거주허가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허가는 다른 고용주(sponsor)에게 이전(transfer)될 수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건설공사 수행 시 한국으로부터 각종 자재 반입을 위해 쿠웨이트 국적의 항공 및 해상 운송편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대부분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함, 쿠웨이트인은 전무) 고용 시 외국인은 스폰서 제도에 의해 쿠웨이트 국적자를 스폰서로 내세워야 한다. 이 경우 스폰서에게 스폰서 fee를 제공하여야 하며,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의 쿠웨이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쿠웨이트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쿠웨이트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수입과 효율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 이슬람계 은행, 외국계 지사 등을 합쳐서 총 16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구 3백만명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Kuwait Finance House와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계 은행이 그동안 우위를 선점해 왔으나 점차 일반은행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 은행들도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투자, 자산관리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쿠웨이트 은행이 외국계은행과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국 은행의 쿠웨이트 진입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2004.8월 외국은행으로서 최초로 BNP Parisbas의 지점이 쿠웨이트에 개설되었다. 외국은행의 설립 관련 최소자본금 1,500만디나르(5,150만달러)가 있어야 하고, 50%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단 1개 지점만이 허용된다는 제한이 있다. 현재 BNP Parisbas, National Bank of Abu Dhabi, Citibank, HSBC, Qatar National Bank, Bank of Bahrain and Kuwait, Doha Bank, Mashreq Bank 등의 8개 외국은행 지점이 쿠웨이트에서 영업 중이다.

개선실적

쿠웨이트의 통상환경은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비록 쿠웨이트가 포브스지가 2011.10월 시행한 “Best Country for Business”에서 조사대상 총 134개국 중 58번째를 기록하였고, 아랍지역에서는 6번째로 랭크되었다고 보도된 바는 있으나,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지난 2010.5월 제정된 ‘전력 및 담수생산을 위한 Public Joint Stock Com-



pany 설립법안'에 따라 아주르 북부 발전소 등의 건설 프로젝트가 동 법안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와 같은 BOT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외국기업들에게 차별요소로 작용해 온 Offset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바, 아국기업에게 새로운 가능성 또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튀니지

수입 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튀니지는 WTO 회원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부여하며 국제표준인 HS 97개 목록을 관세분류 체계로 채택하고 있다.

튀니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면세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2011.1.1일부터 1차 원료, 반제품, 장비 등 수입 시 최고 관세율을 기존 36%에서 30%로,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최고 관세율을 10%로 인하한바 있다. 2012.1.1일부터는 관광차, 버스, 트럭 등 특정 차량에 필요한 타이어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1.1.1일부터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장비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에 대해 면세조치를 취한바, 2012.1.1일부터는 농업원료로 취급되는 특정 종자 및 식물에 대해서도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주류, 자동차,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거나 높은 소비세가 부과되어 또 다른 수입 장벽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1년 수입쿼터를 45,000대(2011년 및 2012년 기준)로 정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할당하고 있다. 또한, 휘발유엔진의 경우에는 실린더 용량 1300cc 이하의 경우 16%, 1300cc 초과 1500cc 이하의 경우 30%, 1500cc 초과 1700cc 이하의 경우 38%, 1700cc 초과 2000cc 이하인 경우 52%, 2000cc 초과인 경우 67%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디젤엔진의

경우에는 1700cc 이하의 경우 38%, 1700cc 초과 1900cc 이하의 경우 40%, 1900cc 초과 2100cc 이하의 경우 55%, 2100cc 초과 2300cc 이하인 경우 63%, 23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경우 70%, 2500cc초과의 경우 8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18%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튀니지와 아래 통상협정을 맺은 EU 및 다른 아랍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가 적용된다.

(1) 다자간 협정

- EU와의 제후협정(Association Agreement): 1995.7월 체결된 EU와의 제후협정에 자유무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1.1일 동 협정이 전면 발효됨에 따라 농산물 및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對아랍자유무역협정(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1981.2월 체결, 1998.1.1일 발효됨. 위생, 종교, 환경, 안전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외 GAFTA 17개국산 모든 제품의 관세를 6년 동안(1998~2003) 1년에 10%씩, 2004년과 2005년에는 20%씩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2005.1.1일부터 무관세 적용됨.
-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 2004.12월 체결, HS code 25~97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무관세이며 농식품 및 수산물에는 특혜관세가 적용됨. 서비스, 투자, 공공시장 분야에서는 직접 투자관련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 보장됨.
- 지중해아랍국가자유무역협정(Agadir협정): 2004.2.28일 체결, 2006.7.6일 발효됨. 튀니지와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간의 협정으로 위생, 종교, 환경, 안전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 외 모든 수입제품의 관세가 철폐됨.

(2) 양자협정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2004.11.25일 체결, 2005.7월 발효됨. HS code 25~97류에 해당하는 산업재의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터키산 섬유 및 의

류제품에 대해서는 7~9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됨. 농산품과 수산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함.

- 이집트와의 자유무역 협정: 1998.3월 체결, 2007.12.31부터 전면 발효됨. HS code 1~24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
- 모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 1998.3월 체결, 1999년 발효됨. 2008.1.1일부터 HS code 1~24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
- 그 외 알제리(1981), 쿠웨이트(1988), 요르단(1998), 리비아(2001), 이라크(2001), 시리아(2003) 등과의 양자 간 경제협정으로 타국가산 상품에 비해 특혜관세가 적용됨.

통관절차상의 장벽

튀니지에서는 통관 시 일상소비재 수입에 대한 엄격한 기술검사(control technique)가 실행되고 있다. 이는 현재 실행 중인 기술규제에 부합하는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공정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제품은 총 관세품목의 약 30%(양탄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약간의 조리공정품)이다. 동 해당 품목은 기술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수입품의 유통이 금지된다. 기술검사와 관련된 제품목록은 2005.9월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법에 의하면 생산 시 이미 품질검사를 거친 1차 원료와 반제품에 대한 기술검사는 제외되었고 일상 소비재의 기술검사는 다소 완화되었다.

수입 시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다.

- List A: 체계적인 기술검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2500여 개의 관세품목을 포함(총 관세품목의 15%)하며 검사는 3일 이상 초과할 수 없음. 주로 농산물 가공제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며 농업환경부, 산업기술부, 통상관광부 및 보건부 산하 검증기관에서 검사 실시함.
- List B: 주로 의류, 직물, 종이, 판지, 철강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현지생

산품도 포함) 등으로 규격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임. 세관에서 검증 실시함.

○List C: 수입규정서에 제시된 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주로 농·식품 및 광물 등으로 일정량의 저장고 확보(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연간 수입량의 1/6을 저장·유지)가 필요하고 운송자재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이행이 필요함.

튀니지에서는 2001년 자동관세시스템(SINDA)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기술검사와 서류 및 제품 검토에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통관절차의 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5년에는 통관 소요시간이 항구/공항 도착일로부터 유통까지 7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3일에서 7일정도 소요된다.

※ SINDA(Système d'Information Douanier Automatisé):

수입신고, 대외무역 증서, 물품목록(manifeste), 기술검사, 보건, 식물병충해 방제, 세액특권신고(demande de privilege fiscal) 과정을 통합한 자동관세시스템이며 세관에 도착한 제품들은 SINDA에 의해 아래와 같이 자동분류됨.

- couloir vert: 위험성 없는 상품(약식의 문서 확인)
- couloir orange: 일반적인 위험성 있는 상품(보통검사)
- couloir rouge: 극도의 위험성 있는 상품(전체검사)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1) 원산지 일반규정

다른 나라에서 가공을 거친 제품의 수입 시 제품의 원산지는 초기 제조국이다. 그러나 타국에서 완전가공을 거친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가공이 불완전할지라도 가공 후 제품의 관세가 가공 전 제품의 관세보다 높을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2) 원산지 특별규정

튀니지와 양자협정을 맺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쿠웨이트와 對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가공 제품 최종생산가치의 40% 이상을 동 체결국에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경우, 동 국가들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EU, EFTA,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PAN-EURO-MED 모델에 따른다.

수입규제

1994년부터 튀니지는 수입 수량제한 품목 및 통제 대상 품목 수를 감축해 왔으며 현재 전체 품목의 97%가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되고 있다.

수입보호조치(1998.12월 제정)는 일시적이며 대량수입에 의해 국내 생산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재에 적용된다. 동 조치는 통상관광부나 관계 기관에 대상 제품이 신청된 뒤 통상관광부가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입보호 조치는 수량제한이나 관세인상의 형태를 띠며 일시적 조치를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1년 튀니지는 수입자동차 수량제한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각 자동차 생산기업별 수입할당제는 존재한다. 한편,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폭약, 마약, 모조품, 현우, 야자수, 공격/위협건, 미풍양속/보건/공공안전에 유해한 제품, 국가안전을 해치는 제품 등이다. 이외에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동식물, 사냥총, 측량 및 측정기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신청 시 pro forma와 같은 무역 계약서를 공인증개자를 통해 통상관광부에 전달해야 한다. 수입 허가결정기간은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허가는 12개월간 유효하다. 단, 민감 품목은 2~10개월간 유효하다.

한편, 농산품, 자동차, 섬유제품 등 전체 수입의 약 3%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면장(Import license)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수입면장에 필요

한 서류로는 무역 계약서와 계약당사자, 상품, 원산지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 면장은 통상관광부의 수입 결정 이후 12개월간 유효하며 양도는 불가능하다.

2004.8월에는 수입보호조치법과 관련하여 수입 사전감시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이는 철물, 인쇄용지, 수송기계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면장을 첨부한 '정보카드'를 통상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국의 덤핑이나 보조금으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측정되어 튀니지 시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조사는 통상관광부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조사는 18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일시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조사 착수 60일 전 부과되며 조사 후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면 최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수출업자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덤핑이나 보조금을 수정, 재검토 하고 통상관광부가 덤핑의 유해효과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경우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는 철폐되며 관련 조사도 종결된다. 반덤핑 조치는 덤핑이나 상계관세로 인정되었을 경우 덤핑이나 다른 보조금이 지속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간 지속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튀니지 정부는 2004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수입품의 기술검증 효과 증진 및 통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에 착수하였다.

튀니지의 유일한 표준 담당 기관은 1982년 설립된 산업기술부 산하기관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 튀니지표준(NT, Normes Tunisiennes)을 등록하고 공포한다.

표준 분야 튀니지 국제협약 비준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표준협회(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아랍표준기구(Arabe Standardization Organisation)
- 아프리카표준기구(African Reg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법정계량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 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예를 들어 공업제품의 경우, 공업부)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표준 승인이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표준 관련 법규 내에서 기준 및 참조 조항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경우
-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 공공이익, 보건, 의학, 안전, 시민보호 및 환경 분야
-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튀니지표준의 생성과정은 국제표준의 생성과정과 거의 흡사하다. 국제표준화 절차는 표준안 제안, 서류 작성, 위원회 심의, 관련기관 의견조회, 승인, 발표수이며 반론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며 표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튀니지 표준화 절차는 제시된 일반 표준프로그램

에서 튀니지표준 초안을 작성, 튀니지표준기술위원회(총 128개)의 심사를 거치고 MUWASSAFAT 연구소의 정기관보에 튀니지표준으로 발표된다. 이어, 2개월의 관련기관 의견조화와 투표 과정을 거치며 결과에 따라 튀니지표준으로 등록되지만 반론이 제기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튀니지표준 기술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고 표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Normes tunisiennes)은 10,430개로 경제 전 분야에 해당되며 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농·식료품: 12%
- 화학: 22%
- 전자기술: 13%
- 환경: 1%
- 공업(건축자재, 도자기 및 유리 제조): 15%
- 기계: 14%
- 보건·의학: 5%
- 안전: 3%
- 정보기술: 9%
- 계량: 3%
- 기타: 3%

검사 및 인증

총 관세품목의 약 30%(양탄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약간의 조리공정품)는 수입 시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2005년 수입품목 기술검증법 개정 이전 기술검증이 필요한 수입 품목은 절반이상이 1차 원료나 재수출품목이었으나 동 기술검증법의 개정 이후에는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된 품목으로 검증대상의 폭을 감소하고 생산 시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1차 원료는 기술검증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수입 시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다.

- List A: 철저한 기술검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2500여개의 관세품목을 포함(총 관세품목의 15%)하며 주로 농경재, 화장품, 가전제품 등임. 농업환경부, 산업기술부, 통상관광부 및 보건부 산하 검증기관에서 검사 실시함.
- List B: 규격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주로 의류, 직물, 종이, 판지, 철강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현지생산품도 포함) 등임. 세관에서 검증 실시함.
- List C: 수입규정서에 제시된 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주로 농·식품 및 광물 등으로 일정량의 저장고 확보(옥수수과 대두의 경우, 연간 수입량의 1/6을 저장·유지)가 필요하고 운송자재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이행이 필요함.

동·식물성 제품은 위생검사를 필요로 하며 수입 시에는 특별허가서가 요구된다. 동물, 육류, 원피, 야채류, 식품첨가물, 동물사료(동물사육용 식품과 식품 수입에는 비 방사능전염 증명서 또한 첨부), 음료 및 기타 식품 등은 보건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가, 식물성 제품은 식물보건 증명서가 요구되며 벌과 꿀 수입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무해성증명서가 필요하다.

농업용 살충제의 제조, 수입, 조제, 포장, 판매 및 배포는 농업학기사, 화학공학자자격증 소지자, 약사 내지는 농업학교의 공중보건학 수료증 소지자에 한하여 인증서가 발부된다.

환경관련 규제

튀니지에는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 관련, 튀니지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제나 결의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도화하고 생물안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환경분야 관련 튀니지의 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과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 금지에 대한 바마코협약(Bamako Convention on the Ban of the Import into Africa)
 - 튀니지는 동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튀니지는 동 협약에 언급된 화학물질(aldrine, chlordane, dieldrine, heptachlore, hexachlorobenzène, mirex, toxaphène, polychlorobiphenyles(PCB), etc)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금지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동 협약의 첨부서1에 수록된 동·식물의 수입은 농산부의 수입허가서 취득 후 가능
-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동 의정서 관련 물질들이 함유

되어 있는 품목들은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ANPE, Age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에서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이 필요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에서 관리하는 “공해방지기금”에 적립된다.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정책

튀니지 정부의 보조금 수혜제도는 투자촉진법(CII: Code des Incitations aux Investissements)에서 정의하는 네 개의 기업형태(‘완전수출기업’, ‘부분수출기업’, ‘상주기업’, ‘비상주기업’)를 기본으로 하며, 가장 큰 보조금 수혜자는 ‘완전수출기업’이면서 ‘비상주기업’인 경우로 기업형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완전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익이 기업 총 수익의 70% 이상인 경우이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으로 구분
- ‘비상주기업’(해외 지·상사)은 기업이 환전 가능한 외환을 투자하여 기업 지분의 66%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환전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동 기업의 수출수익은 본국송환이 불가

튀니지 투자촉진법의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단지(Parc d'activités économiques) 내에 설립된 모든 기업(완전 및 부분 수출기업)은 세무, 재정, 관세상의 혜택을 받으며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는 수출 관련 특별혜택이 있다.

- 완전수출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과세기준에서 수출에 대한 소득 및 수익의 공제(첫 10년간은 전액, 이후는 10%)가 있으며 기업의 기존 지분이나 지분 증액에 재투자된 수익 및 소득 또한 감세의 대상이 됨.
- 완전수출기업의 경우, 생산에 필요하나 현지시장에서의 조달이 불가능한 재화를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 시 입항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의

먼저 혜택을 받음.

- 완전수출기업은 총 수익액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시장 판매·제공이 가능

튀니지 정부는 수출장려 차원에서 수출장려기금(FOPRODEX, Fonds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으로 농업상품 수출 시 상여금(해운 및 항공료 지원) 보조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동 수출장려기금은 튀니지수출진흥청(CEPEX)에서 관리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튀니지는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의 4대 개별협정 중의 하나인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상의 투명성에 초점을 둔 동 협정에 대한 비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단, 1995년 체결한 유럽연합과의 제후협약 범위 내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점진적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조달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는 공공구매자(정부, 지역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포함)의 계약체결(계약서 서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재화·용역, 공사, 감리 분야(5만디나 이상의 주문)
- 컴퓨터 및 통신 분야(4만디나 이상의 구매)
- 기타 분야(3만디나 이상의 재화·용역 구매)
- 감리 서비스(1만5천디나 이상)

※ 단, 국영기업의 경우, 구매액은 최대 10만 디나까지 허용되며 이하 금액의 구매는 계약문서 없이도 가능하다.

튀니지에는 정부조달 관련 계약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으나 규모가 큰 계약의 경우, 즉 공공토목공사(5백만디나 이상), 재화·용역제공(2백만디나 이상), 감리(20만디나 이상), 컴퓨터장비 및 서비스(50만디나 이상) 등의 계약체결은 총리실 산하 정부조달고등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계약은 통상적으로 입찰을 통해 이행되나 직접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입찰은 크게 공개입찰인 경우와 사전선별인 경우가 있으며 국내입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출자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붙여지게 된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입찰에 붙여지는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입찰자간의 공평성 및 절차의 투명성 등이 요구되나 튀니지제품 가격이 외국제품 가격 대비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국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주문배분 또한 튀니지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참여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튀니지기업과 하청계약을 맺을 의무가 있으며(‘튀니지기업과의 하청계약’ 조항 참조), 감리조달 또한 튀니지 감정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튀니지는 1975년부터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했으며 이외에도 동 분야의 아래와 같은 여러 국제협약에 비준한 바 있다.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원산지명 보호 및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조약(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상표의 상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튀니지의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은 INNORPI와 튀니지 저작권보호단체(OTPSA, Organisme Tunisien de Protection des Droits d'Auteur)이다.

튀니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및 유사 분야: 저작권의 포함범위는 문학·영화작품, 작곡, 사진, 소프트웨어 및 민속예술로 유효기간은 50년이다.

- 상표(제조, 판매, 서비스):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이후에는 무제한 재등록이 가능하다.
- 원산지 표기: 국가명 및 지방명을 표기는 자연적 구성요소(토양, 수질, 식물군 및 기후)와 인적 구성요소(생산, 제조, 변형 및 특수처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상품의 가치측정에 도움이 된다. 현재 튀니지에서 원산지 표기가 되는 상품은 포도주(7개의 라벨)뿐이나 향후 모든 농산품, 자연·가공식품(동·식물성 모두 포함)으로 표기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 디자인 및 공업용모델: 등록자의 선택에 따라 5년, 10년, 최대 15년까지 등록이 유효하다.
- 특허: 기술 관련 모든 분야의 발명품에 해당된다. 특허의 유효기간은 20년이며 국민보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다.
 - 튀니지에서는 특허권의 국제소멸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특허상품 내지는 특허절차를 거친 상품이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하에 시장판매될 경우, 튀니지 내에서는 동 상품의 제공, 수입, 소유 및 사용에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국내 보호법령 정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법복제품이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장벽

관광, 통신, 운송 및 기타 전문서비스 분야

튀니지 정부가 현재까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아직까지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 협정은 없으며, 튀니지의 서비스업 분야에는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한 장벽이 상당히 존재하는 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외에도 한정된 기업들의 지역시장 점유로 인해 소비자나 생산성 제고에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 대다수가 튀니지 기업이므로 외국자본의 경쟁은 석유 제품, 부속품 및 건축자재 유통 등의 소규모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09.8월 유통법 개정으로 인해 유통업 활동 규율의 현대화, 상업분야의 수준 향상 및 동 분야 종사자들 간의 균형유지 등이 제시되었다. 신규 유통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점진적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도입된 ‘프랜차이즈’ 및 ‘구매센터’ 분야의 시장개방이라 할 수 있다.

튀니지의 서비스업 전면 대응책, 일명 ‘수직 조치’로 인해 외국투자가 기업 자본의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완전 수출기업의 경우, 외국 국적의 직원 고용이 네 명까지 가능하다.

관광산업

튀니지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통상관광부와 관광청(ONTT: Office National du Tourisme Tunisien)에서 관할한다. 개인, 법인, 튀니지인, 외국인에 상관없이 숙박, 오락, 관광운송, 온천관광, 학술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숙박 및 오락 관리업체 지분의 절반 이상 소유가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경우, 절반 이상의 여행사 지분 획득을 위해서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장려지대(Zones d’encouragement au développement régional) 내에서 시행되는 관광프로젝트는 수입세 100% 면제(10년간) 및 50% 삭감(11년째부터 10년간), 고용인들을 위한 주택자금 출자 면제(5년)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광산 재전환 지대에서의 투자는 프로젝트 총 투자액(단 부지가격은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관광청의 건의와 통상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투자자에게 지불된다. 기타 지역개발 장려지대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의 8%에 해당하는 상여금 혜택을 받는다.

여행사 영업용 차량 수입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외에도 부가가치세 10%(기본 18%)적용 등의 혜택이 있으며 여행사나 호텔의 영업용 대형 차량(운전자 좌석 포함, 좌석 수 30개 미만) 수입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있다.

현지 제작 대·소형 버스 구매 시 튀니지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프로젝트 창안의 경우)나 부가가치세 10% 적용(프로젝트가 실행 중인 경우)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통신산업

튀니지의 주요 통신서비스(유선전화, 텔렉스, 인공위성 및 임차전신)는 국영기업인 Tunisie Telecom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신서비스 가격은 공식적으로는 튀니지 산업기술부의 권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Tunisie Telecom에서 모든 통신서비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튀니지 제2무선통신서비스 민간 사업자인 Tunisiana는 쿠웨이트와 이집트 민간합작회사인 Orascom Telecom Tunisia의 자회사로 2002.5월 튀니지 무선통신 분야에 진출하였다.

유·무선통신 및 고속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튀니지 정부는 2008년 말 제2민간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국제입찰(사업기간 15년, 서비스 개통 2010.1월)을 실시하였고 France telecom-Orange가 튀니지의 제2유선 및 제3무선 사업자로 확정(2009.6월)되어 2010.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편, 2012.3.26 튀니지 정부는 상기 Tunisiana를 제3 유선 및 3G 모바일통신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010년말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자는 1,120만 명으로 보급률이 105%에 이르고 있으며, 3개 무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간 점유율은 대체로 Tunisiana, Tunisie Telecom, Orange가 각각 60%, 30%, 10% 로 알려져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인터넷서비스 보급률은 38%로(아프리카 평균은 9.6%), 최근 10년간 3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서비스는 12개의 공급회사(7개 국영기업, 5개 민간기업)가 분담하고 있으며 규제가 엄격하다. 튀니지의 모든 인터넷통신은 Tunisie Telecom에서 임대하는 전신을 통해야 하며 관할은 국영기업인 튀니지 인터넷 관리청(ATI Agence tunisienne de l'Internet)에서 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보인 분야는

외국계열사들의 콜센터 운영이다.

우편서비스

국가독점사업으로 체신청(Office National des Postes/Poste Tunisienne)에서 우편물수거, 운송 및 국·내외 발송을 담당(44%)한다. 이외에도 금융서비스(40%), 신속배달우편 등의 신규서비스(16%) 등이 있다.

외국 민영기업이 튀니지에서 신속배달우편서비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튀니지체신청 산하 Rapid-Poste EMS사와의 합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튀니지 체신청은 보통예금, 적금구좌 관리 및 우편환, 환전업무 등의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튀니지 금융서비스시장의 주요 기관이기도 하다.

운송서비스

튀니지는 2001년 운송정책, 특히 해운 및 육상운송서비스의 생산성 증진 관련 중요한 개편을 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지속가능 운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정책은 인프라개발, 도시고속철도망 개발,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저공해·저소비형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육상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도시교통망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경제 구축을 위한 교통시스템 개발을 위해 교통부는 산업기술부와 협력하고 있다.

(1) 해운서비스

해운은 튀니지 국제무역(96%)의 주요 수단으로서 유럽(주로 이태리와 프랑스)과의 무역에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 튀니지정부는 컨테이너 이용가격 절감, 민간선주 및 다용도운송전문 국제기업 참여 장려, 물류보급지대 개설 등을 통하여 경쟁력강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튀니지 물류교역의 80~90%는 외국선박이 담당하고 있고 국영선박회사인 튀니지해운공사(CTN: Compagnie Tunisienne de Navigation)는 7개의 민간선박회사와 공동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영역은 석유벌크 운송 사업이다. 튀니지의 해운서비스 시장은 1992년부터 개방되어 가격은 선주들의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지고 있으나 연안항해 분야는 아직 튀니지 해운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튀니지 해안 및 항구 내에서 발생하는 예선작업 또한, 특별요청을 제외한 경우, 튀니지 해운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항만서비스

튀니지에는 현재 7개의 무역항(Radès, Sfax, Bizerte, Gabès, Sousse, Zarzis, La Goulette 등 7개이며, Enfidha 심해항은 현재 건설중)이 있으며 연간 물류 이동량은 2천8백만톤 이상이다. 무역항 관할은 튀니지항만청(OMMP: Office de la Marine Marchande et des Ports)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육상운송서비스

1996년 개혁(국제 육상운송서비스업을 위한 튀니지국적소유 조건 폐지)이후 육로를 통한 물류수송 분야는 전면 개방되었으며 민간기업 경쟁(대다수는 튀니지 기업)도 활성화된 추세이다. 단, 외국인회사가 동 분야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튀니지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운전수와 기타 고용인은 튀니지국적 소유자여야 한다.

민간기업의 시장참여에도 불구하고 일반육상운송서비스(철도, 시내 및 고속버스 운행) 관련 튀니지정부의 독점율은 상당히 큰 편이다. 고속도로 운영의 경우, 도로인프라 개발에 국가전략의 초점을 맞추어 2016년까지 1,200km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1년 진행 중인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은 기존의 Tunis-Sfax 구간을 Gabès까지 확장하고, 향후 2016년까지 추진될 주요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은 Oued Zarga-Boussalem 구간, Gabès-Médenine구간, Médenine-RasJedir구간, Enfidha-Kairouan-Sidi Bouzid- Kasserine-Gafsa구간 등이며 Hammamet-Enfidha구간은 확장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 1,220km 도로 개보수공사, 760km의 농업지대 전용 도로망 구축사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철도운영의 경우, 2개

의 국영기업인 튀니지철도회사(SNCFT: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와 튀니스운송회사(STT: Société de Transport de Tunis)에서 각각 전국(일반 철도이용자 및 물류수송 포함) 및 수도권 운영을 분담하고 있다. 최근 들어 튀니지 고속철도망(RFR: Réseau Ferroviaire Rapide) 구축사업(총 투자 규모 30억 디나)을 위해 Société Tunisienne du Réseau Ferroviaire Rapide가 설립되어 동 철도망의 제1구간(Tunis-Manouba, Tunis-Ezzouhour 연결) 공사에 착공(2009.12.10일)하였고, 점차 D선(Tunis Barcelone-Gobâa연결) 11.3km, E선(Saida Manouba-Cité Bougatfa 연결) 6.3km와 남북중단노선(Bir El Kassa-Bourjel연결) 115.5km를 구축하여 Tunis교외선을 확장할 예정이며, Sfax에 전철 및 고속철도망 구축사업도 검토 중이다.

튀니지 정부는 철도운송을 다용도운송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3월부터는 Radès항구에 입항한 컨테이너의 전국 대도시 운송에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튀니지 철도운송정책의 우선과제는 다용도운송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철도망의 전동화 및 품질개선, 수도권내 고속철도망 확장(교통체증 완화, 도로안전 향상,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적) 등이며 동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9.12 EU와 Don de la Facilité d'Investissement pour le Voisinage(FIV)를 체결한바 있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TIR: 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 관련, 튀니지는 서명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협정 체결국들과의 육로접근에 대한 양자간 허용 시스템을 개설하였고 상호간에 통관 및 과세면제 또한 시행하고 있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튀니지인은 소수이며 물류 수송량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튀니지회사의 참여가 적은 주요 이유는 영업을 하기 위한 비자취득이 어렵고 유럽표준에 적합한 운송자재가 적으며 실제 국제 육상운송업자들의 활동영역은 자국 내에서의 외국 세미트레일러 견인 정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운송시장 점유율 증가 및 국제육상운송투자 개발을 위해 튀니지정부는 국제 육상운송용 차량 수입 시 관세 및 수입세 면제, 수입량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4) 항공서비스

튀니지 경제개발 전략분야 중의 하나로 연간 외환소득이 GDP의 2%를 차지하며 1만2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2004년 민간항공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의 항공서비스 분야 참여는 개방된 상태이다. 튀니지정부는 국내운항 및 화물선 활용을 통한 수익증대와 민간항공사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튀니지에는 30개의 공항이 있으며 이중 7개가 국제공항이다. 2009년 말부터는 Enfidha공항(튀니스에서 남쪽 100km)이 문을 열었다. Tunisiair는 튀니지 대표 국영항공사로 튀니지항공서비스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55개국으로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 Tunisiair의 자회사인 Tunisiair Express(기존의 Sevenair)는 국내선 및 인근지역의 국제선(이태리 남부, 트리폴리, 말타 운항)을 담당하며 Karthago Airlines(유럽-튀니지 및 Djerba운항)이나 Nouvelair Tunisie(패키지여행 전문) 등의 민간항공사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Freejet와 Syphax Airlines, 2개의 민간항공사가 국가민간항공위원회의 영업승인을 받았다.

기타 전문서비스

튀니지는 회계, 감사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튀니지 회계표준은 국제회계표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며 대략 2000개의 감리회사(엔지니어링 및 건축분야)가 있다. 유럽으로 활발한 전문서비스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는 STUDI그룹과 SCET-TUNISIE 그룹 등이다.

투자장벽

2010년 튀니지 투자율은 GDP의 24.3%로 투자액이 가장 큰 분야는 서비스업이며 비제조산업, 제조업, 공공장비 및 자재, 농·수산업 순이다.

투자진출분야, 지분소유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4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광산, 에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는 특별투자법이 적용되며 사업허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동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다.

- 외국투자가 가능하나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며 금융업이나 투자회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보험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분야 등에 외국투자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튀니지의 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도 사업지분의 100%까지 승인 없이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 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완전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투자자들의 튀니지 기업지분 획득을 승인·관할하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 Commission Supérieure des Investissements)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외국투자자들은 기업 지분의 50% 미만은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도 튀니지 기업의 유가증권 획득이 가능하지만 50% 이상인 경우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관련사항은 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석유정제산업, 의약품제조업(국영기업인 SIPHAT 생산), 무기, 군수품 및 탄약 제조업,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업, 양탄자 및 융단 제사업, 양조업(맥주, 맥아, 와인 제조), 제분업, 식용유 정제업, 협강 및 시멘트원반 제조업, 직물분해업, 담배제조업 등은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자본투자가 기업지분의 50%를 초과할 경우 고등투자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투자 인센티브

튀니지 내 투자자에게는 통신, 우편, 도·소매 유통, 전기, 가스, 수도 등, 정부 및 국영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분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일반 인센티브와 특별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 일반 인센티브는 투자수익의 35%내의 재투자 면세, 튀니지 비생산 기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및 튀니지 비생산 투자 필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임.
- 특별 인센티브는 완전수출기업과 지역개발권장지역 내 기업(농업개발, 관광 및 중소기업 진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완전수출기업: 10년간 수출수익에 대한 면세, 10년 이후부터는 10% 감세, 재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면세,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제품 운송장비등), 1차 원료, 반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면세, 세금납세를 전제로 생산된 산업제품이나 농산제품의 30%까지 현지시장 판매가능
 - 지역개발권장지역: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지역에 따라 제조업, 관광, 중소기업 등의 이익에 대해 5~10년간 100% 면세, 운전 자본을 제외한 투자액의 8%(32만디나까지), 15%(60만디나까지), 25%(100만디나까지)의 보조금(premium)지급
 - 농업개발: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10년간 운영비용에 대한 면세, 튀니지 비생산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초 투자액의 7%의 보조금 지급, 기후약조건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액의 8%의 보조금 지급, 광산지역인 Gafsa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서는 25%까지 추가 보조금 지급
 - 환경보호: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해 50% 면세, 투자수익에 대해 10% 감세, 투자액의 20% 보조금 지급, 특수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아울러 튀니지는 투자 계획 신고, 회사 설립, 튀니지 투자환경 관련정보 제공 등에 관련, 다단계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24~48시간)

하기 위하여 'Guichet Unique'(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튀니지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과 '투자보호 및 이중과세의 방지 협약'에 비준하였고 세계 50여개 국가는 '상호투자 보호에 대한 양자 간 협약'에 비준하였다.

수출진흥정책과의 연계성

튀니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 사회·지역·세대·계층 간의 공정분배인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가 수출진흥책이다. 민간자본투자 장려책(민영화, 양도, 기업창설절차의 간소화 등)의 개발은 국가 우선사업 중의 하나이며 주요 관련분야는 제조업 및 관광산업이나 이외에도 안전성과 자급자족량 생산을 도모하는 농업정책, 자국민 및 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업 정책도 수출전략분야로 전환 중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자본의 튀니지 국유 농경지에 대한 투자는 장기임대료만 가능하며 구매가 불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40년까지이다.

금융상의 제한

부분수출 상주기업의 경우, 수출로 획득한 수익전액의 본국송환 금지 및 튀니지은행에 위탁해야할 의무는 지속되나 최근 외환시장의 개방조치에 따라 수익금 전액(2005년 이전에는 70%)의 외환구좌 예치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가격경쟁 제한 분야

튀니지에서는 법률상 모든 재화·용역의 가격을 자유경쟁에 의해 정하고 있으나 가격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포함된 '1차 필수품', 국가 독점운영서비스

업, 경쟁력이 미진한 분야 등은 자유경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튀니지정부의 가격통제 분류는 크게 3등급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 A등급: 생산공정부터 유통과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격 및 가격변동을 정부에서 사전 결정하는 부류이다. 1차 생필품(빵, 밀가루, 국수, 식용유, 설탕, 우유, 차 및 커피 ; 종이, 교과서 및 학습지 ; 휘발유, GPL ; 전지, 가스, 수도물 ; 교통이용료 ; 의약품 및 진료 ; 우편 및 통신 이용료 ; 담배, 성냥, 주류 ; 향만이용료) 등이 해당된다.
- B등급: 생산과정에서 동일가를 책정하는 등급으로 주로 소금, 베이킹파우더, 맥주, 금속포장 및 철통, 자동차, 석회, 시멘트 콘크리트 원반, 압력 가스 등, 경쟁력이 미약한 제품들이 포함된다.
- C등급: 생산원가에 정부가 지정한 이윤을 첨부한 가격을 기업이 유통과정에서 적용하는 등급으로 쌀, 과일(오렌지류, 포도, 대추야자 등), 채소(감자, 토마토, 고추, 양파 등), 닭고기, 계란, 제분품 및 버터, 토마토 농축액, 각설탕, 효모균, 인공시멘트, 자가용 차량, 트럭, 버스, 전인차, 학습용 잉크 및 공책, 압축가스 등이 포함된다.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튀니지 사업자의 독점

자유경쟁 및 정당한 상업활동의 방안으로 가격표통보의 의무 및 손해판매·판매거부·최저가강요·차별대우·반경쟁행위(독점권, 영향력 행사, 비밀거래 등)의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튀니지 정부의 독점 분야가 많은 이유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로는 농업, 농·식품산업, 화학, 장비 및 주거, 광산, 상업, 건축자재, 통신, 에너지, 기계 및 전자산업, 서비스업(전기, 수도물, 통신, 철도, 버스, 전철, 케이블카, 보트, 항공이용, 공항관리, 항공운항 통제, 향만, 우편서비스)등이며 성냥, 담배, 놀이카드, 화약 등의 제품 수입도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한다.

국가독점기업은 다음과 같다.

- 튀니지곡물청(Office des Céréales): 국영기업으로 밀과 보리를 독점 수입하며 옥수수과 사료용 대두는 민간기업에게도 수입이 개방된 상태이다.
- 튀니지상업청(OCT: Office du Commerce de Tunisie): 설탕의 독점수입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독점수입이 아닌 차, 커피, 감자 등의 1차 식료품에는 도매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석유공사(ETAP: Entreprise Tunisienne des Activités Pétrolières):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석유제품(GPL: Gasoil 등)을 독점수입하며 튀니지정유산업회사(STIR: Société Tunisienne des Industries de Raffinage)에 일차 공급하고 남은 원유를 수출한다. ETAP과 STIR는 석유제품 생산 및 국내상권 독점기업이다.
- 튀니지중앙약국(PCT: Pharmacie Centrale de Tunisie): 의약품 및 기타 제약품의 수입독점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주류공단(Régie Nationale des Alcools): 주류 수입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에게 독점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 튀니지 전기·가스회사(STEG: Société Tunisienne de l'Electricité et du Gaz): 튀니지 전기 및 가스의 생산, 유통, 공급까지 전과정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다.
- 튀니지 국립철도회사(SNCFT: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 튀니지 전국 철도 운행권(철도 이용자 및 물류 운송)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국립운송회사(SNTRI: Société Nationale de Transport Interurbain): 국내 및 국제 육상여객운송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 튀니스 도시운송회사(TRANSTU: Transport Urbain de Tunis): 수도

권 내 버스 및 전철 이용에 관한 독점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체신청(La Poste Tunisienne): 우편·금융서비스 관련 국가에서 독점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민영화 정책

튀니지 정부가 민영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1987년부터이며, 2010년 말 까지 민간 기업으로 전환된 국영기업은 219개이다. 기업의 생산수단과 관리 절차의 현대화,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변화는 있었으나 고용창출이나 금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큰 파급효과를 얻지 못했다. 24년간의 민영화정책으로 튀니지 정부가 획득한 양도수익은 60억디나이며 민영화의 90%는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 219개 기업 중 완전히 민간 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은 116개(53%)이며 41개(19%)는 파산대상 기업이고 나머지는 부분매각 및 양도조건으로 민영화 되었다.

분야별 민영화 분포는 서비스업(53,9%), 공업(37,8%), 농·수산업(8,3%)로 나뉘며 수익금 분포는 서비스업(84,5%, 약 50억디나), 공업(17,6%, 10억디나), 농업(4천백만디나) 순이다.

2011.1월 시민혁명으로 Ben Ali와 친인척이 불법으로 획득한 회사를 정부에서 몰수하여 점차 민영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교환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은 현지에서 1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 중 튀니지 교통부에 한국면허증을 보관하고 튀니지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튀니지에서는 행정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튀니지 거주 6개월 이후부터 튀니지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권장하며 신청 시 서류와 함께 수속비로 11디나를 지불해야 한다.

현지 면허증 발급기관 주소는 다음과 같음.

Agence Technique pour la Transport Terrestre(ATTT)
Avenue du Japon -6 impasse n°1
Montplaisir El Borgel
1073 Tunis

금융시장

튀니지 금융시장 현황

보험업계를 제외한 튀니지의 주요 금융기관으로는 2012.10월 현재 튀니지 중앙은행(Banque Centrale de Tunisie)을 비롯하여 21개의 상업은행, 2개의 기업은행(Societes de factoring), 8개의 비상주은행, 9개의 외국은행 지사, 9개의 장기신용임대차은행(Etablissements de leasing), 2개의 투자은행(Banques d'affaires)과 튀니지 채신청과 같은 재정관련 기관이 13개 있다.

이외에 증권시장 관리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튀니스유가증권(Bourse des Valeurs Mobilières de Tunis), 금융시장 관리와 증권투자 보호를 관할하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Conseil du Marché Financier), 유가증권 보상·예치전문회사(Société Tunisienne Interprofessionnelle pour la Compensation et le Dépôt des Valeurs Mobilières) 등이 있다.

한편, 2012.10월 현재, 21개의 보험 및 재보험회사가 있는바, 이중 전문 보험 회사로는 Hayett, Maghreb Vie, Amina(생명보험), Assucredit(대출보험), Cotunace(수출대출보험), MAE(교육보험) 등이 있다.

보험 분야는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하고 시장개방을 기피하는 성향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약한 편이었으나 2008년 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자본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의 새로운 보험 법으로 49%로 제한되어 있던 외국자본 참여율제도가 폐지되었고 튀니지

보험위원회(Conseil des Assurances)에 재정적 독립권이 부여되어 중재권리가 강화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금융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시장 진출 장벽

튀니지 정부의 외환관리법은 튀니지 내의 상주기업(개인 및 법인)에게 외환 송금, 입금 및 해외금융서비스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상주기업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8개의 비상주은행에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동 특별법은 비상주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비상주기업에도 적용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종류로는 튀니지법에서 정의하는 주식회사, 해외에 본사를 두고 거래영역이 비상주 기업에 국한 된다는 것을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무부에서 승인한 기업 등이며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 비상주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비상주 은행과 상주 기업 간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의 지분 참여, 중·장기적 재정지원(외환자본, 수입·수출 거래, 현지화(디나) 자본, 튀니지 내에서의 수익, 무역거래)이며 해외차용 자본으로 상주기업의 상거래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상주 기업이 비상주 은행을 통해 외국자본을 차용할 시 외환 차용액에는 통상적으로 제한이 있으나 차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연간 천만 디나 이상인 경우에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다. 은행예치도 총 예치액의 1.5% 한도 내에서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며 2002년부터는 신용저당서비스 또한 허용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튀니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승인기준(외국투자자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활동계획)에 따라 허용되며 외국자본의 유가증권 중개업 투자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권중개상(개인 및 법인)은 법적으로 협상자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DR콩고

일반동향

(1) DR콩고 진출 여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은 면적 235만km²(한반도의 11배, 알제리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 크기)의 광활한 국토에 7,30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부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부국이다.

구리, 금, 다이아몬드, 코발트 등 자원의 보고이며, 풍부한 강우량으로 “아프리카의 물 저장고”, 비옥한 땅으로 “아프리카의 양곡 창고”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제2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기회의 땅이다.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직후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남아공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으나 32년에 걸친 모부투(Mobutu)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 1990년대 들어서는 모부투 정권의 몰락과 함께 5백만 이상의 사망자, 2천만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내전이 일어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국가 행정서비스, 교통 인프라, 산업기반이 대부분 와해되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는 DR콩고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구리, 금,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코발트, 폴탄 등 주요 희귀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DR콩고 남부 카탕가 지역의 구리광산 개발에 국제적인 자원개발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부의 출범 이후 정세가 안정되고 있어 프랑스, 벨기에, 미국, 중국 기업들이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분야의 진출은 계속 가속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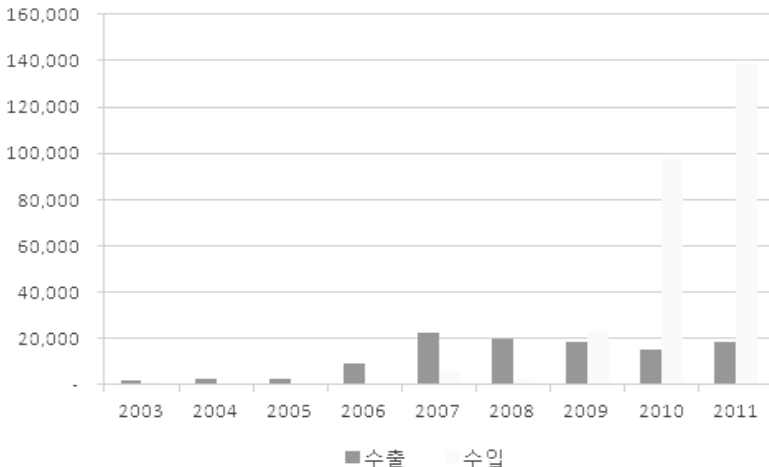
비록 2010년 현재 총 GDP 126억달러, 1인당 GDP 189달러의 세계 최빈개도국으로 브룬디, 라이베리아와 더불어 세계 최하위권 경제에 속하여 있으나, 2010.7월 IMF 및 세계은행의 123억달러 규모 부채탕감 및 2010.11월 파리 클럽의 73억달러 규모 부채탕감으로 DR콩고 정부는 국가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증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리, 코발트 등 광물자원 수출 증가,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연 5~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6.12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래 수도 킌사사를 중심으로 국가재건을 위한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은 2011.11월 실시된 대선을 통해 연임에 성공하였다.

향후 5년간 DR콩고의 국가재건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향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동부 지역의 정세 안정, 인프라 재건, 공공분야 구조 개혁, 부패 방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고, 2012년의 GDP 성장률은 6.3%, 2013년에는 새로운 광업 생산이 본격화되어 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대DR콩고 수출입 추이

단위: 천달러



(2) 주요 경제상황

2011년 중 전년대비 인플레이션은 2010년의 고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연말에는 15.4%를 기록하였으며, 추정 연간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7%이다.

농업과 광업생산이 개선되고 전국에 걸쳐 농산품의 유통이 나아진 것은 안정된 환율과 아울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된 부가세는 물가를 끌어올려 평균인플레이션은 2012년 중 15%, 2013년에는 13%를 기록할 전망이다.

평균 환율은 2012년 중 FC910:US\$1, 2013년에는 FC900:US\$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고 있다.

환율에 대한 위험요소로는 콩고의 주요 광물자원인 구리의 국제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관련 수출이 줄어들고 대외 경제의 어려움으로 콩고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의 감소에 따른 계획되지 않은 과도한 재정적자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012~13년 중 광물 수출은 Katanga주의 광산, 특히 Tenke Fungurume 구리-코발트 광산과 Katanga Mining의 생산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th Kivu주의 Twangiza에서 금의 산업적 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공식적인 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연간 수천 온스(troy ounces)로 추정되는 등록되지 않은 금 수출은 수그러들지 않은 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재정 지원한 광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콩고의 무역흑자는 2012년 US\$ 23억에 달하고, 2013년에는 US\$ 28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콩고에는 숙련된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관계로 광업 및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숙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입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도 늘어날 것이다.

경상수지는 2012년에는 GDP의 0.5% 적자를 나타내고 2013년에는 무역흑자가 확대되어 GDP의 0.7%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와 선거 이후 불확실한 정국 상황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콩고의 경제전망에 크게 불리한 면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 DR콩고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실질 GDP 성장률(%)	7.1	6.5	6.3	7.0
총 고정투자 성장률(%)	10.0	13.0	12.0	14.0
소비자물가 인플레이(평균, %)	23.1	17.0	15.0	13.0
정부 수지(% of GDP)	2.4	-6.9	-5.3	-4.4
상품 수출(fob, US\$백만)	8,350	10,931	11,420	12,562
상품 수입(fob, US\$백만)	7,829	9,021	9,137	9,777
경상수지(US\$백만)	-897	-419	-110	191
경상수지(% of GDP)	-6.9	-2.5	-0.5	0.7
총외채(연말 기준, US\$백만)	13,141	14,815	15,098	15,465
평균환율(FC:US\$)	912	899	910	900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수입정책

(1) 관세

DR콩고의 관세는 HS2007에 기초하고 있고 WTO 회원국으로서 최혜국대우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로 0%(수입인지 등),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및 20%(완제품) 4개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영세율은 우표 등에 적용되고, 5% 세율은 자본재, 원료, 농업에 필요한 물자, 약품, 부속 및 액세서리, 반조립품, 우유 및 육아 준비물, 디지털화선용 기기 등이며, 10% 세율은 반조립 부품, 대량 소비용 식품, 장비 부품 등에 적용되며, 20% 세율은 기타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콩고 관세의 상한 비율은 100%가 상한이며, 단순평균 최고관세율은 96.2%로 농산물 98.1%, 비농산물은 98.1%이다. 관련 과년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DR콩고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인 바, 2008년 총 7.2억달러의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전체 정부 세입의 28%,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평균 실행관세율은 11.3%로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섬유류, 종이, 화학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DR콩고는 중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CAS), 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개발협력체(SADC), 대호수지역국 경제공동체(CEPGL)에도 가입하여 있으나 별도의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 수입품종별 관세율 현황

단위: %

	양허관세율(U/R)	2010 실행관세율 평균
농산물	30.0	11.2
비농산물	15.2	11.3
광업 및 채석	0.0	7.1
공산품	26.3	11.4

출처: OCC

콩고에 투자되는 장비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새로운 장비, 기계 및 도구와 초기부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면제되고 있다. 중고 중장비 차량, 선박과 항공기의 수입은 완전히 면세가 허용되고, 면세되는 자본 및 수입장비는 최소한 5년 동안 콩고 영토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은 CIF 가격에 5%의 행정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콩고의 관세는 이외에 상이한 추가 세금이 다양한 기관에서 징수되고 있다.

콩고는 오랜 내전과 정세불안의 여파로 경제 전 분야의 국내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와해되어 높은 수준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서

중장기 국가개발 계획에서 무역 투자 증진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2) 수입규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할 수 있다.

우선, US\$ 2,500 이상 가치의 모든 수입품은 DR콩고 정부의 위탁업체 BIVAC에 의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기본료 100달러에 CIF 금액의 0.75%이다.

* 0.75% 상정시, 기본료 100달러는 최소 CIF 금액 13,333달러에 해당하는 바, 2,500달러에서 13,333달러 사이의 수입품의 경우 0.75%보다 많은 검사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며, 기본요금으로 인해 CIF 금액의 최대 4%에 상응하는 요금이 산출된다.

* DR콩고 정부는 수입품 검사 업무를 2006.2.1일부로 프랑스계 통관 대행 업체 BIVAC(Bureau Veritas International)에 독점 위임하고 있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달러)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 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금액의 2%), 하역요금(1톤당 5달러), △산업 증진청(FPD)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1.8%)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달러)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달러)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부가가치세(VAT) 16%가 부과된다.

콩고의 수입통관 관련 기관은 관세국(DGDA, La Direction Generale des Douanes et Accises), 수출입통제국(OCC, L'Office Congolais de Control), 국가항만국(ONATRA, L'Office National des Transports), 상선운

영국(OGEFREM, L'Office de gestion de Fret Maritime), 산업진흥기금(FPI, Le Fonds de Promotion de L'industrie)이 있다.

(3) 수입금지

DR콩고는 국민의 안전과 정서에 위해할 수 있는 총기류, 총탄, 부레옥잠,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며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4) 수입허가 및 통제

국경무역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의 수입에는 허가가 필요하고, 자동 수입허가는 통계목적에 위해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 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가 필요 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 허가 신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5) 덤핑 및 반덤핑

콩고는 상품의 수입 통제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No 0011, 1997. 1.22) WTO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콩고는 아직 WTO 규칙에 따른 보호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6) 통관절차

DR콩고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다수 관련기관의 중첩되는 개입, 책임 기관 및 관료의 무능과 부패 문제다.

특히 수출입업무에 관해서는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업무의 지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조율 부재 등으로 인해 통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R콩고 정부는 2011.2월 발효된 관세법을 통해 △통관업무의 창구 일원화 및 전산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세계은행에 따르면 DR콩고는 통관업무(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에서 총 183개국 중 167위를 차지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DR콩고에서는 수입시 평균 63일에 걸쳐 9가지 종류의 서류와 US\$ 3,285의 비용이 소요되며, 수출시 평균 44일에 걸쳐 8가지 종류의 서류와 US\$ 3,055의 비용이 소요된다.

DR콩고는 마타디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은 1969.12월 제정된 칙령 No.69/054를 폐지하고 2010.4월 새로이 제정하여 프로젝트의 준비, 정부조달계약체결, 집행 및 감독과 정부조달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새로운 기본원칙을 원하고 있다.

정부조달 법률은 국가, 지방, 국영기업 및 정부기업이 조달하는 작업, 공급,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며, 차별을 철폐하고 경쟁을 조장하며 정부조달에 있어 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달통제국은 정부조달 계약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정부조달과 공공서비스 권리의 부여 칙령 No.10/27(2010.6.28)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

제 입찰 또는 국내 입찰 후 총리와 예산담당 장관이 조달을 승인한다.

정부조달 계약은 입찰초청 또는 단독입찰의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단독입찰 방식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다.

입찰방식은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 및 지역 우선권이 주어지며 입찰모집시 명시되어야 한다. 콩고 기업에 대한 작업, 공급 또는 서비스 계약의 총가액 30%를 하청할 계획이 있거나 콩고 출신 전문가를 40% 이상 사용할 계획인 외국 입찰자에게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투자

(1) 투자법

2002 투자법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정적, 관세 및 일반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투자법은 특별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업, 석유, 은행 및 상업 활동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법의 특혜는 기계류, 도구, 신 장비 및 필요 부품에 대해서는 5%의 행정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중고 중기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완전 면세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에서 생긴 이윤수입에 대해 법인세 면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산세 면제, 유한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 증액시 누진 관세 면제, 유한책임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해 초기자본에 지불해야하는 US\$ 175 또는 US\$ 800의 고정관세 면제 등이 있다.

투자법의 관세 및 세금 면제는 해당 상품이 콩고내에서 제조될 수 없는 것과 기업에 공급되는 상품의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동일한 수입품 가격보다 10% 이상 비싼 경우이다.

특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특혜신청은 기획부 산하 투자진흥청(ANAPI)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ANAPI가 검토하여 장관령으로 승인되고 특혜기간은 3~5년으로 경제지역에 따라 결정되며 갱신되지 않는다. 2005년에는 투자자들이 사업체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ANAPI에 마련되어 있다.

특혜제도의 기간은 경제지역에 따라 좌우되며 갱신될 수 없다. A경제지역은 3년, B경제지역은 4년, C경제지역은 5년간 특혜가 부여된다.

(2) 투자진흥기관

DR콩고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02년 투자진흥청(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API)을 설립하여 공공, 민간 등의 투자 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분야 입법, 제규정 등 홍보, 투자 관련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행정적 장애 제거, 국내외 투자 동원 및 증진, 투자자 유치 노력, 투자 장려자가 행한 약속의 이행 여부 감시, 지역별 다양한 부문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투자승인 절차

투자법이 정하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ANAPI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미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단일창구로서 ANAPI는 투자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계획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승인에 관한 결의를 한 후 기획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며 부처간 명령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된다.

(4) 투자승인 기준

승인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자가 충족해야할 기준은 콩고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에 대한 투자이어야 하고, US\$ 20만 이상의 투자 및 창출되는 부가 가치의 비율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승인 결정을 통보하는 시간은 신투자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실제 일한 날) 이내로 축소되었으며, 정해진 시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해석 된다. 승인되지 않는 모든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 투자 신청건이 투자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ANAPI는 권한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를 감독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투자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의견을 듣고 투자 승인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통상의 법률체계가 적용되어 투자법에 의해 부여된 혜택이 제거된다.

(5) 투자저해 요인

콩고는 훼손된 경제적 환경과 투명하지 못한 사업 환경에 따른 여러 문제점으로 아직 많은 액수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 은행 대출의 어려움, 부패와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비싼 비용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예로 등록번호, 무역등록 등기, 노동감독관 및 노동사무소 신고에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6) 투자환경 개선

콩고는 UN 부패방지협약 가입, 2004년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 채택,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무역등록 등기 수수료 인하, 주민등록번호 부여 소요 시간 단축, 건축허가비와 부동산 이전 등록세 인하 등을 통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콩고정부는 특히 광업, 산림, 농업 및 인프라 등 개발 잠재력이 큰 부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 체계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 투자 유의사항

법적, 행정적, 물류 및 재정적 측면을 무시하지 말 것이며, 이를 위해 좋은 변호사회사, 화물대리점 또는 신탁관리자와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적, 법적, 세무 및 위기관리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끼지 말고 현지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회사가 현지에 주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민간부문의 진지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며, 이 파트너는 고객 및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지 파트너, 고객 및 행정당국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사업의 성공과 위기관리의 관건이다. 콩고의 문화는 계급에 대한 존경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콩고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운송은 자주 지체되고 정전, 단전, 더위 및 모기 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광업법상 특혜제도

투자법에 추가하여 광업법도 특혜적인 관세 및 재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혜제도는 광업권 또는 토석채취권 소유자, 광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방계회사, 광업권 소유자와 서명한 계약이 있는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하청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광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관세 인센티브는 광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역 가능한 물품의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완전 면제, 교역 가능한 물품 또는 역외 가공을 위해 잠정 수출되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상하기 위해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광산이 실제 가동을 개시하기 전 광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 2%의 관세 그 이후 5%의 관세, 프로젝트 기간중 광업을 위해 사용되는 연료, 윤활유, 시약 및 소모품에 대한 3%의

관세, 재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를 위한 6개월간(2차례 갱신 가능)의 면제가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광산채굴권 지역내에 소재한 건물은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광업 프로젝트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및 특별고속도로세 면제, 해외에서 차용한 외화대출금에 지불한 이자는 동산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용, 이윤세는 30%, 콩고내 가공시설에 대한 제품 판매는 매출세가 면제되고 콩고 내 다른 판매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광업권 소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가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5%의 매출세 부과 대상, 광업활동과 관련된 현지 생산 제품의 구매에 대한 매출세는 3%, 국외거주자 보수에 관한 특별세는 광업의 경우 10%이다.

특혜신청 절차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광업권 소유자는 특혜제도의 범위에 속하는 동산의 숫자와 가치, 자동차, 장비 및 기타 투입물임을 증명하는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이 명단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광업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공동 명령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물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채굴산업의 경우 7.1%, 비철광물의 경우 15.6%(최소 5%, 최대 20%)이며, 그 외에도 수입관세와 세금이 추가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DR콩고는 최혜국대우 예외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은 없으며, 다만,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의 수출은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지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콩고에는 관세국(DGDA)이 비상호주의적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지역 협정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규제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으며, 다만, DR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로서, 표준 규정의 집행은 1974.1월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수출입통제국인 OCC(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DR콩고내에서 매매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OCC는 법령 NO.74-013(1974.1.10)에 설립되었으며, DR콩고의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련된 수입, 수출 및 국내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국가표준화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OCC에는 기술통제 및 도량형국이 있으며, 독일 도량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ISO 17025 공인 과정에 있고, 전국적인 인정 시스템이 없다.

2010년 현재 DR콩고에는 산업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정단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성 평가 1)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바, 이론상 모든 광물자원 수출시 광물성분 감정평가 기관인 CEEC의 원산지 확인증을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는 다이아몬드 및 금 수출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1) 검역

DR콩고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가입국으로서,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다.

위생 및 검역 부문에 있어서도 수입품 인증서 발행기관인 OCC, 농축수산물 관할 부처인 농촌개발부, 공공보건 관할 부처인 보건부 및 경제무역부 등 사이에 상당한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 통관시 검역 지연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OCC의 활동은 주로 품질 및 적합성 관련 무역 업무에 집중되고 있고, 농촌개발부는 동물 및 식물 검역에 관한 권한이 있다.

식물재료 및 식물위생, 수의검역, 식품제품의 수출입 통제를 포함한 동식물 보호에 관한 업무, 식물위생증명서 발급과 식물 위생 및 수의학 제품의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식물 위생검사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업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업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콩고에는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으나 관련 법률이 검토되고 있고, 콩고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경표준은 없다.

검역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 CDF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5CDF, 100톤이상 1킬로당 0.002CDF,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1CDF, 100톤이상 1킬로당 0.002CDF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3CDF, 100톤이상 1킬로당 0.002CDF이다.

라벨링 및 포장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제는 ISO 및 국제포장기구(WPO)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 포장기준국(Departement de la normalisation des emballages, DNE)에서 관할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 여부), 상품명,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명, 그리고 중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DNE측의 요청시 업체는 15일 이내 라벨 및 포장의 적용 규격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입쿼터

DR콩고는 수입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보조금

DR콩고는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콩고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BCC)과 21개 상업은행, 저축/신용협동조합, 소액금융기관, 금융이체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편예금과 신용협동조합이 있으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콩고내 대부분 상업은행들의 활동은 극히 제한된 숫자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단기대출, 회환시장 활동과 수출입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콩고은행들은 기술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며 콩고전쟁 이후 유동성 위기는 대부분 종식되었으나, 민간 개인들은 은행에 자신들의 돈을 은행에 저축하려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은 거의 없는 편이고, 특히 채권회수 및 담보 문제에 있어서 법적체계도 불충분하다.

많은 콩고 상업은행은 은행계좌 개설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최소한 US\$ 100이상의 저금을 요구한다. 시티은행과 스탠다드은행은 기업 및 기관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며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최소한 US\$ 2,500의 저축을 요구하고 있다.

콩고정부는 중앙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출업자는 수출품목, 가격, 통화 등을 명시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업은행에 제출한다.

콩고의 상업은행은 매우 제한적으로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 사업체들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재산권 보호

콩고는 신헌법과 현행 법령을 시행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보장은 아직 미미하다. 일부에서 법률 및 행정체계를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 실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비나 자동차등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공증사무소에서 등록되며,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 소유는 해당등록 사무소를 통해 등록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콩고정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을 개선하고 이행 및 시행을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콩고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나 지적 재산권의 규정의 이행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콩고의 법률시스템과 공공행정은 지적재산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

저작권 및 권리보호 업무는 문화예술부내 저작권 권리관리청(ONADA)에 위임되어 있으며, 콩고 경찰도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특허는 소유자에게 잠정적인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고, 법률은 발명특허, 수입특허, 개선특허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의 보유기간은 20년이며, 약품에 관련된 발명특허는 15년간 보호된다.

특허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작동되어야 하며, 공업소유권은 산업중소기업부의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으며, 상표, 특허 및 발명을 보호한다.

노동법

콩고의 노동법은 2002년 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 합치하도록 개정되었다. 노동법은 노동관행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채용, 계약, 여성 및 아동 고용, 일반적인 노동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엄격한 노동법은 고용인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노동법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고향, 성,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노동법은 여성이 남편의 허락 없이 집 밖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의료 및 사고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기업은 현장에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회사의 의무도 증가한다.

고용주는 가족수당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공휴일 및 연례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매일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는 곳에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고용위원회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업할 권리는 인정되며 노동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상사법원

콩고는 2008년 수도 킨샤사와 루뭄베시에 처음으로 상사법원을 설립하였으며, 나머지 콩고의 주에도 곧 상사법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상사법원은 상사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법관이 이끌 계획이며 불충분한 사법시스템 하에서 상사 사건에 있어서 투자자를 지원하게 된다.

DR콩고 진출장벽

(1) 진출시 유의사항

DR콩고의 엄청난 부존자원, 7천만 이상 인구의 잠재 시장규모, 개방적 대외 무역 및 투자 제도 등을 감안할 때, 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2년 『기업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DR콩고는 전체 183개국 중 178위로 평가되는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다.

전 세계 자원개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 캐나다 Fraser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법집행에 대한 불확실성, 제반 인프라, 노동 및 기술력 공급 등 분야에서 투자 최하위국에 속하며, 전체 71개 투자대상국 중 56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향후 개선능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11위)를 받아 기업환경 개선시 투자대상국으로는 19위로 평가되어, 투자대상국으로서 DR콩고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2) 열악한 기초인프라 및 높은 물가

지난 수십년에 걸친 내전, 정부기관의 무관심, 정비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 전력, 상수도 등 사회 기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물자 운송비, 사무실 유지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수도 킨샤사 및 루분바시를 중심으로는 주택 및 생활품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물가가 매우 높다.

(3) 불확실한 법집행

세계은행에 따르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사법부의 무능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 따른 것이다.

카탕가주내 외국계 광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법적 비용으로만 연 평균 5백만달러 정도가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경우 약 50만달러, 캐나다에서의 경우 약 20만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DR콩고내 모든 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당국의 무원칙적인 탈세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들은 이와 같은 DR콩고 당국의 행태에 대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4) 언어장벽

DR콩고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공무원 또는 기업인 사이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현실적으로 불어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비불어권 투자자에게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5) 불필요한 의사결정 구조 및 만성적 부패

장기간에 걸친 독재와 분쟁의 잔재로 보이는 권력에 대한 불신과 공포, 열악한 통신 환경으로 인한 정보공유 부재 등의 사유로 DR콩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생계형 부정 및 권력형 부패도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사업들의 진행 과정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공무원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크고 작은 뇌물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투자자들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취약한 행정능력 및 안전상의 리스크

수십년에 이르는 독재와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반인에 대한 자산 수탈로 인해 정부의 행정능력은 매우 취약하며, 심각한 정보 부재로 인해 관할 관청

의 담당 공무원들도 특정 사안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수도 킨샤사 또는 루뎀바시와 같은 주요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동부지역에서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